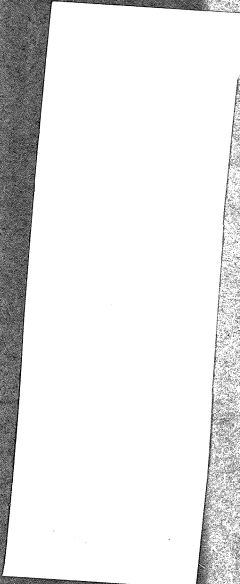


日本統計 Data Bank 研究報告書



통계청자료실



B0004493

經濟企劃院 統計局

經濟企劃院 統計局



日本統計 Data Bank 研究報告書

目 次

第 1 編 統計資料의 蒐集 利用에 관한 調査研究	3
第 1 章 統計 Data Bank 의 概要	3
1 . 統計 Data Bank 의 必要性	3
2 . 統計 Data Bank 의 目的	4
3 . 統計 Data Bank 의 構成	5
4 . Net Work 의 形成	9
5 . 統計 Data Bank 의 機能	13
6 . 統計 Data Bank 의 業務	14
7 . 統計 Data Bank 에 관련된 기타사항	19
第 2 章 個別 Data Bank	21
1 . 個別 Data Bank 의 意義와 役割	21
2 . 個別 Data Bank 의 業務	23
第 3 章 Clearing Center	27
1 . Clearing Center 의 意義와 役割	27
2 . Clearing Center 의 業務	28
第 4 章 統計 Data Bank 活動의 維持發展	33
1 . 統計資料의 細分化等	33
2 . 秘密의 保護	38
3 . 統計 Data Bank 活動에 따른 機能, 責務等	41

4 . 統計資料等の提供에 따르는 費用問題	48
第 5 章 統計 Data Bank 形成의 順序	51
1 . 意義	51
2 . 段階	51
3 . 方法	53
第 2 編 Data Bank 의 基本体制와 周邊問題	81
第 1 章 統計 Data Bank 의 基本体制 (本分科會)	
- 統計 Data Bank Net Work 의 形成	83
1 . Net Work 의 形成에 관하여	85
2 . Net Work 의 構成單位에 관하여	91
3 . Clearing Center 에 관하여	98
第 2 章 統計 Data Bank 에 있어서의 周邊問題	105
1 . 統計資料의 蒐集 利用과 法的諸問題에 관하여	108
2 . 窓口 体制에 관하여	127
後 記	129
參考資料	144
1 . 統計資料의 蒐集 利用研究會 및 同作業을위한 모임의 開催狀況	
2 . 統計資料의 利用과 著作權	

第3編 物価 關聯 統計資料의 利用에 關한 具體的인 例	217
第1章 利用面에서 본 物価關聯 情報등에 대한 必要性	218
第2章 物価, 賃金, 生産性分析에 있어서 資料利用方法 에 關하여	227
第3章 畜産短期 “모델”에 있어서의 價格資料	257
第4章 燈油의 價格分析과 資料에 關하여	291
第5章 消費者 物価指數와 物価關聯 資料에 關하여 — 輸入物価의 影響에 關한 檢討를 中心으로 —	303
第4編 統計 Data Bank에 關한 諸問題	319
第1章 調査統計 情報体制의 概要와 運用에 關하여 — 日本銀行의 例 —	324
第2章 新 SNA와 家計調査—社會計定에 있어서의 Deflator 作成의 觀點에서	341
第3章 資料의 質的 吟味의 方法 — 특히 品質變化의 處理에 關하여 —	395
第4章 精密資料의 分析例	425
第5章 流通研究와 物価資料	455

結 言	466
物価關聯情報 体制의 實現	466
1. 物価 關聯 情報體制의 稼動을 위하여	467
2. 統計 Data Bank 의 運用에 관한 諸問題	477
附 錄 I. 分科會議 議事錄要旨	489
II. Data Service Center 및 Terminal에 관한 考察	
1. Data Service Center 의 問題点 考察	
2. Terminal 및 運用에 관한 經驗的 考察	

第1編 統計資料의 蒐集利用에 관한 調査研究

第1編 統計資料의 蒐集利用에 관한 調查研究

第1章 統計 Data Bank의 概要

1. 統計 Data Bank의 必要性

1975年度에 있어서 統計 Data Bank에 관한 調查研究의 一環으로 實施한 「統計 Data Bank의 必要性調查」에 의하여 統計 需要의 形態는 把握하였지만 最近 統計需要를 나타내는 몇개의 報告書가 나와있으며 그 중에서도 政府 地方公共團體의 行政的利用, 學術研究機關의 研究的 利用, 民間의 經營面에서의 利用등의 面에서 統計資料에 대한 需要는 近年 漸漸 增大되고 있는것이 指摘되고 있다.

그 需要의 具體的인 例를 들면

- 統計調查結果 公表의 迅速性的 確保
- 統計資料間의 調整性的 確保
- 細分類 統計資料의 作成 提供
- 새로운分野의 統計의 開發
- 統計資料의 所在 內容등의 目錄作成 提供
- 磁氣테이프等을 記錄媒介體로 하는 統計資料의 提供
- 注文에 의한 統計資料의 檢査와 分析加工 서비스
- 未公表統計中 需要가 많은것에 대한 發表 提供
- 個別資料의 提供 等を 들수 있다.

從來 統計의 作成은 各 部處가 主로 當該部處의 行政上의 目的을 위하여 作成된 것으로 調査結果의 公表로 作成機關이 必要로 하는 形態로 取捨하여 一般利用者에게도 印刷刊行物의 形式으로 提供되었기 때문에 統計需要에 대하여 充分히 対応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에 있어서 統計利用의 實態를 보면 國內에 供給되고 있는 대부분의 統計資料는 거의 國家機關이 作成 供給한 것이므로 이러한 需要 要請에 應하는 것은 國家의 責務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最近의 電子計算機의 普及, 利用, 技術의 進歩는 이러한 要請에 充分히 應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우리는 위와같은 條件下에서 國家가 作成供給하는 統計資料는 國家의 資產이며 國民의 利益을 위하여 還元시킨다는 것은 國家의 重要한 責務의 하나가 된다는 共通認識을 바탕으로 國家가 以上과 같은 要請에 應하기 위하여 統計 Data Bank라고 하는 새로운 機能體가 必要로 한다는 것을 考察하였다.

2. 統計 Data Bank의 目的

統計 Data Bank의 目的은 統計資料에 관한 多樣化한 利用要請에 適切히 対応한 統計資料의 提供活動을 行하는 것을 말한다.

利用者가 統計資料를 要請할 때는 行政上의 政策의 立案, 樹立 및 政策結果의 評價, 社會, 經濟事象에 관한 動向의 觀察 및 將來 豫測 또는 市場動向의 分析에 의한 經營戰略의 樹立등을 위한 基

礎的 資料로서 必要로 한다.

近年의 社会, 經濟環境의 複雜化, 急速한 變化에 的確히 対処하기 위하여는 正確하고 舍當한 統計資料를 迅速히, 그리고 利用者가 希望하는 形態로 提供하는 것이 要請되고 있다. 이에 應하여 가는 것이 統計 Data Bank의 重要한 使命이다.

Data Bank에 關하여 여러가지 定義가 試圖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統計 Data Bank란 電子計算機를 使用하여 處理하는 統計資料에 의하여 統計 Data Bank를 作成하여 그 維持管理를 하고 利用要請에 應하여 迅速 正確한 情報를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機能體」로 看做했다.

統計 Data Bank가 取扱하는 統計資料는 各 行政機關이 統計調查 기타의 行政活動에 隨伴하여 蒐集作成한 것이며 各種施策 樹立을 위한 行政資料로서 各部處가 利用하는 外에 널리 一般에게 利用되는 것이다.

또 統計 Data Bank는 大量 複雜한 統計資料를 取扱하기 때문에 그 正確性の 維持, 種類에 따라서는 被調査者의 秘密을 保護할 必要가 있다는 点등의 社会的 任務를 띄고 있다. 이때문에 統計 Data Bank 活動은 公共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3. 統計 Data Bank의 構成

3.1 分散型 Data Bank에의 指向

가. 理想的인 統計 Data Bank體制를 想定할때 이른바 分散型

Data Bank를 指向할 것인가 아니면 集中型 Data Bank를 指向할 것인가 問題가 된다.

勿論 分散型 또는 集中型이란 相對的인 意味이며, 그 折衷型도 있을 수 있고 行政府에서 集中型을 挾한다고 하여도 立法, 司法機關, 地方公共團體, 民間等에 있어서 別途의 統計 Data Bank를 設置하게 되면 国内全體로 보면 分散型이 되는 것이다.

나. 集中型 Data Bank는 統計資料를 一元적으로 蒐集, 整備, 蓄積, 加工, 提供하려는 機能體이므로 利用者가 한곳으로부터 必要한 統計資料를 入手할 수 있다는 利점이 있다.

統計資料의 作成이 各部處別로 行하여 가고 있는 現狀과 統計資料量의 膨脹 및 統計資料表章 樣式의 複雜化가 進行되고 있으므로 이를 取扱함에는 專門的, 技術的 知識을 必要로 하고 또 關聯資料의 蒐集, 維持, 管理, 提供을 円滑히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을 一元적으로 包括하여 充分한 資料提供 體制를 탄다는 것은 人員의 確保, 技術的 対応등 困難한 問題가 많다.

다. 이에 대하여 分散型 Data Bank는 各部處에 統計 Data Bank를 設置하여 統計資料를 蒐集, 整備, 蓄積, 加工, 提供하려고 하는 體制이다.

이미 各部處는 當該部處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統計資料를 作成하고 또 外部機關으로부터 資料를 蒐集하여 利用하고 있지만 各部處가 이러한 統計資料中 提供possible한 것에 관하여는 利用要請에 따라 이 資料를 各各 提供하는 것은 統計資料의 正確性, 利用者에 대한 責任의 明確性등의 見地에서 妥當하다고 생각되며 分散型의 長점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觀点에서 우리는 分散型 Data Bank를 基本的 形態로서 檢討하고 있다.

그러나 分散型 Data Bank에서는 資料提供窓口가 分散되어 있기 때문에 利用者側에서 不便이 있으며 利用要請에 대하여 迅速, 正確히 應한다고 하는 統計 Data Bank의 目的에 符合되는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없다는 問題가 남아있다.

이에 対処하기 위하여 個別 Data Bank 相互關係의 調整을 圖謀하면서 全體로서 統計 Data Bank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Clearing Center라고 하는 機能體를 設置하고 이 機能體와 各 部 處 個別 Data Bank와의 사이에 情報網을 形成하여 分散型體制로부터 오는 欠陷을 補充하는 것이 좋으며 實現性도 높은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3.2 統計 Data Bank의 構成

分散型 Data Bank를 前提로 한 경우 統計 Data Bank의 全體的 體系는 「各 部 處에 있어서 統計 Data Base를 中心으로 利用 및 提供의 機能體로서 各 部 處別의 個別 Data Bank (以下 「個別 Data Bank」라고 함)」 및 「個別 Data Bank의 機能을 補充 向上 시키기 위한 機能體인 Clearing Center - (以下 「Clearing Center」라고 함)」의 2種類의 것 과 이들을 相互 연결하는 情報網으로 構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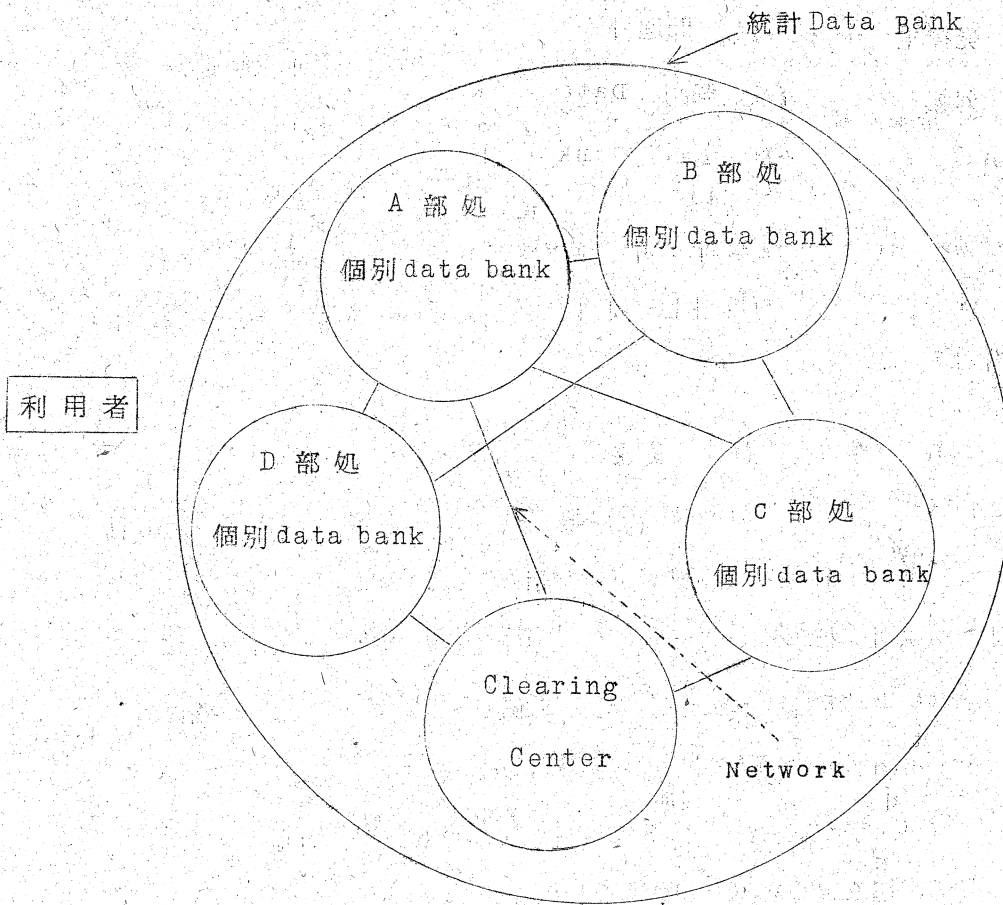
또한 이들 機能體間의 業務遂行의 円滑를 期하기 위하여 連絡調

整機能도 必要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統計 Data Bank를 넓은 意味의 機能體로 본다면 個別 Data Bank 및 Clearing Center는 機能面에서 좁은 意味의 統計 Data Bank라고 할 수 있다.

統計 Data Bank의 構成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圖 1. 統計 Data Bank의 構成圖



4. Network의 形成

4.1 意 義

情報網 體制은 分散型 Data Bank의 欠陷을 補完하여 狹義의 統計 Data Bank間의 統計資料의 相互流通의 円滑化등을 圖謀함으로써 統計 Data Bank의 機能을 綜合적으로 發揮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情報網이란 電子計算機에서 處理可能한 記錄媒體에 의하여 統計資料를 相互利用할 수 있도록 流通하는 定形的 經路를 말하는 것이며 個別 Data Bank間 및 Clearing Center와 個別 Data Bank間을 연결하는 連絡網이다.

이 連絡網은 各 機能體를 有機的 効率的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하여 統計 Data Bank에 있어서 重複投資, 競爭의 排除등을 講究하고 個別 Data Bank에 있어서 統計資料의 蒐集, 提供등의 機能을 補完 助長하여 그 効率化를 期하는 것이다.

4.2 情報網의 類型

情報網의 構造的 類型으로서 檢討된 것은 다음과 같다.

類型 1 ; 統計資料를 1個所에 集中하여 利用者에 提供한다.

類型 2 ;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은 各部處 個別 Data Bank에서 行하고 統計資料 및 統計出處源情報提供 서비스는 Clearing Center에서 一括하여 行한다.

類型 3 ;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 提供 서비스는 各部處 個別 Data Bank에서 行하고 統計出處源 情報의 提供서비스

스는 Clearing Center에서 한다.

類型 4 ;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은 各部處 個別 Data Bank가
行하고 統計出處源情報의 提供 서비스는 Clearing
Center가 한다.

또 統計資料의 提供서비스에 關하여 各部處는 當該部處의 行政
目的上 作成한 固有의 統計資料 및 기타 保有統計를 取扱하고
Clearing Center는 Clearing 活動을 通하여 얻은 各部處 業務
와 關聯된 加工統計等を 取扱한다.

今年度에는 類型 4를 基本으로 하면서 個別 Data Bank의 開發
進行등을 考慮하여 個別 Data Bank와 그 機能을 補完하는
Clearing Center와의 業務分擔體制를 構成하여 統計 Data Bank
의 機能을 早期에 実行可能할 수 있는 形態로 修正했다.

即, 個別 Data Bank에 있어서도 所管統計資料의 所在 등에 關한
情報를 整備하여 統計所在源情報로써 提供한다.

한편 Clearing Center는 個別 Data Bank가 整備될 때까지
個別 Data Bank가 取扱하지 않는 統計資料의 蒐集 提供등을 行
하고 또 相異한 個別 Data Bank間에 位置하여 統計資料등의 仲
介 斡旋을 하는 外 個別 Data Bank의 業務의 一部를 代行하는
것이 考慮된다. 以上이 主된 修正點이다.

4.3 情報網의 形成

情報網을 如何히 形成할 것인가를 檢討하기 위한 參考資料
로써 各部處의 實情을 보면 統計資料의 相互利用實施를 크게 希望

하고 있으며 一部部処間에 實現되고 있는것중 完全한 定形的 經路를 밝고있지 않는 狀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또 統計資料의 利用을 크게 바라고 있으면서도 顯在需要化 하지 않고 單純히 潛在的인 需要에 그치고 있는 事例가 많다. 各部処 研究員등으로부터 報告된 需要 狀況을 보면 다음表와 같다.

表 1. 統計資料의 利用者로부터 본 作成提供者와의 關係

作成提供 收集利用	總 理 府 統 計 局	行 政 管 理 廳	經 濟 企 劃 廳	環 境 廳	法 務 省	大 藏 省	國 稅 廳	文 部 省	厚 生 省	農 林 省	通 商 產 業 省	運 輸 省	郵 政 省	勞 働 省	建 設 省	自 治 省	最 高 裁 判 所	(<u>防</u>) 高 裁 判 所	(<u>外</u>) 務 省	(<u>日</u>) 本 銀 行	(<u>其</u>) 他
總 理 府 統 計 局																					
行 政 管 理 廳	○																				○ ○
經 濟 企 劃 廳	◎																				○ ○
環 境 廳	(不明)																				◎
法 務 省																					
大 藏 省																					
國 稅 廳	○																				
文 部 省																					
厚 生 省	○																				
農 林 省	◎ ◎																				○ ○
通 商 產 業 省	◎ ○																				◎ ○
運 輸 省	◎																				◎
郵 政 省	○																				○ ◎
勞 働 省	◎ ○																				○
建 設 省	◎ ○																				○ ○
自 治 省	(不明)																				
最 高 裁 判 所	(不明)																				

註 1) 「기타」에는 例컨데, 亜細亞經濟研究所, 日本貿易振興協會, 日本不動産研究所, 日本商工会議所, UN統計局 등을 包含한다.

註 2) 統計 Data Bank 研究会, 統計資料의 蒐集, 利用分科會가 作成한 「統計資料의 蒐集 利用」이란 報告書로부터 轉載했다.

註 3) 記号說明

○表示 ; 統計資料를 磁気테이프로 提供했거나 入手한 일이 있다.

○表示 ; 將次 利用者側에서 入手하기를 願한다.

◎表示 ; ○表示와 ○表示를 合친것.

入手, 提供活動이 繼續 与否는 關係가 없다.

註 4) 괄호內 機關으로부터는 統計資料의 蒐集, 利用分科會 研究員이 參加하지 않고 있다.

情報網이 形成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要件을 充足시킬 必要가 있다.

① 狹義의 統計 Data Bank間에 있어서 統計資料의 經常的 相互利用이 行하여 지고 있을 것.

② 情報網의 構成에는 2個以上の 狹義의 統計 Data Bank가 연결되어 있을 것.

情報網形成의 充實段階에서는 參加를 希望하는 個別 Data Bank가 모두 參加하여 統計資料의 利用者가 所要資料를 쉽게 入手하는 狀況에 到達한다.

그리고 情報網을 거치는 統計資料量이 潛在的 需要의 顯在化에 의하여 增大될 것이 豫想되므로 情報網은 體系的, 效果的으로 發展되지 않으면 안된다.

5. 統計 Data Bank의 機能

5.1 機能

統計資料에 대한 利用要請에 迅速, 正確히 対応하기 위하여 必要的 基本的 機能은 다음과 같다.

가. 統計資料에 대한 利用要請에 応하기 위하여는 素材로써 統計資料를 蒐集, 整備, 蓄積, 加工등을 當然히 하여야 되지만 膨脹하는 統計資料中 統計 Data Bank 活動에 必要的 것을 蒐集, 整備하는 機能

나. 統計資料에 관하여 이미 利用되고 있는 것에 관한 充分的 活用은 勿論, 利用不充分한 것에 관하여도 積極的인 活用을 圖謀하여 많은 費用과 大量의 勞力을 들여 作成하고 있는 統計資料의 徹底的 利用을 促進하고 한편, 利用要請은 많지만 資料가 欠如한것은 이를 作成토록 要請하여 그 整備를 促求하는 機能.

다. 從來의 印刷刊行物 등에 의한 統計資料의 提供方法에 대하여 電子計算機에 의한 大量資料의 迅速, 正確한 處理機能을 活用하여 磁氣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등 多様な 記錄媒介體 또는 資料의 電送, 資料通信 등의 새로운 情報提供方法의 採用 등에 의한 提供內容의 多様化를 圖謀하는 機能.

라. 統計資料의 利用의 円滑化를 위하여 統計資料의 所在 등에 관한 情報를 蒐集, 整備하여 利用照會 등에 対応하는 機能.

마. 統計資料의 利用의 多樣化에 応하기 위하여는 以上の 統計 Data Bank 活動에 關聯되는 電子計算機의 利用 技術을 充實케 하는 機能.

5.2 機能要件

統計 Data Bank는 統計資料 提供등의 活動을 擔當하는 機能體이므로 다음의 3가지 要件이 必要하다. 狹義의 統計 Data Bank도 이에 準하여 考察해야 될 것이다.

가. 要件 1은 統計 Data Base의 保有이다. 電子計算機에 의하여 處理가 可能한 記錄媒介體에 整備한 統計資料가 蓄積되어야 한다.

나. 要件 2는 統計資料의 提供機能을 保有하는 것이다. 즉 利用者側의 要請에 따라 保有하는 統計 Data Base로부터 適當한 情報를 抽出하여 提供하는 機能을 갖는 것이다.

다. 要件 3은 利用者側으로부터 要請을 받아들이는 窓口機能을 保有하는 것이다.

6. 統計 Data Bank의 業務

統計 Data Bank의 活動의 中心은 統計資料의 提供이다. 이를 위하여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 電子計算機에 의한 利用技術의 保有등을 行하고 全體로서의 機能의 向上, 充實을 期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必要한 業務는 다음과 같다.

以下 利用者 및 統計資料의 種類別 蒐集, 蓄積 提供 등의 業務內容에 관하여 記述한다.

6.1 統計 Data Bank의 利用者と 取扱하는 統計의 種類

6.1.1 統計 Data Bank의 利用者

利用者は 統計 Data Bank가 保有하는 統計資料 및 그 所在에 관한 情報의 入手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機關 地方公共團體 民間人과 企業 등이다.

6.1.2 取扱하는 統計資料의 種類

統計 Data Bank가 取扱하는 統計資料의 種類로서 優先하여 選擇할것은 行政의 向上에 크게 寄与하는 內容의 것과 여러 部処에 걸쳐 共通하게 利用되는 것이라야 하며 이외에 民間 등의 需要에 対応하기 위하여 統計需要의 實態를 把握한 후 이에 対応하여 取扱할 統計資料의 種類를 選定하여 가는것이 必要하다.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對象으로 한다.

가. 國家가 作成하는 統計資料에 관하여는 結果資料, 綜合資料, 個別資料 등이다. 다시 이들 資料에 관하여 正確한 理解를 할 수 있도록 定義, 概念, 說明資料 등이다. 이를 總稱하여 統計資料라고 한다.

그리고 個別資料란 統計調査 등에 의하여 얻어진 回答內容을 말한다.

나. 國家以外의 機關이 作成하는 統計資料에 關하여는 公表되는 것을 主로 取扱對象으로 한다.

그리고 統計 Data Bank가 取扱하는 對象으로 한 統計資料는 統計 Data Bank内部에서 取扱하는 것을 前提로 考慮된 것이며 그 中에서도 提供可能한것, 使用上 制限을 붙여야 할것, 提供이 不可能한 것 등이 있다. 이에 關하여는 第4章에서 서술한다.

6.2 統計資料의 蒐集, 整備, 蓄積, 提供

가. 統計 Data Bank가 蒐集, 整備, 蓄積하는 統計資料에 關하여는

- ① 資料에 關한 正確성과 責任 所在의 明確化
- ② 二重投資의 回避
- ③ 獨自性을 發揮한 個別 Data Bank의 育成, 助長등의 見地에서 狹義의 統計 Data Bank間에 있어서는 原則적으로 競合을 避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個別 Data Bank는 當該部處가 作成하는 統計資料 및 當該部處 業務遂行上 必要한 外部機關이 作成한 統計資料를 對象으로 하며 Clearing Center는 個別 Data Bank의 機能을 補完하는 立場에서 個別 Data Bank가 取扱하지 않는 統計資料를 對象으로 한다.

나. 이러한 分擔에 따라 個別 Data Bank 및 Clearing Center는 統計資料를 直接 또는 情報網을 通하여 蒐集하여 電子 計算機를 媒介하는 利用을 위하여 必要한 整備를 行한다.

그 중 蓄積에 必要한 統計資料에 關하여는 統計 Data Base에 收納하여 이를 維持, 管理한다.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 등에 있어 派生하는 責任問題에 關하여는 다음에서 言及한다.

6.2.1 統計資料의 提供

가. 提供하는 統計資料의 記錄媒體에서 보면 磁氣테이프 등 電子計算機로 處理可能한 것과 結果 프린트 등 電子計算機로 處理한 것이 있다.

나. 統計資料의 提供서비스의 形態에서 보면 磁氣테이프, 結果 프린트 등의 記錄媒體 및 on Line에 의한 複写資料의 提供 및 加工, 分析, 再編輯 등 結果의 提供이 있다. 또, 要請의 內容도 個別資料로 부터의 集計結果, 結果資料 및 綜合資料에 의한 加工分析結果 등 今後 統計 Data Bank의 進展에 따라서 利用方法도 極히 多樣하게 될 것으로 본다.

統計資料를 提供함에 있어서 派生되는 責任等 問題는 다음 章에서 言及한다.

6.3 統計의 所在, 情報內容 등의 整備 提供

利用者가 指示한 統計資料는 어디서 入手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利用者가 必要로 하는 課題에 適合한 統計資料인가에 關한 情報案内서비스는 從來부터 圖書館 등의 活動에 의하여 處理되어 왔지만 統計資料의 增大, 統計表의 質的인 複雜化와 利用方法의 高度化 등에 따라 入力에 의한 서비스만으로는 充分히 対応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統計所在源情報로서 整備하여 電子計算機를 使用하여 迅速, 正確히 提供할 수 있는 體制를 確立하여야 할 것이다.

6.4 其他의 業務

統計 Data Bank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其他 業務는 다음과 같다.

6.4.1 統計資料등의 仲介, 斡旋, 業務의 代行

統計資料 또는 電子計算機에 의한 統計資料의 利用技術에 관하여 個別 Data Bank가 蒐集 提供하려는 경우에 있어 利用者와 提供者와의 사이에 서서 仲介, 斡旋을 行하고 또 個別 Data Bank의 依頼를 받아 그 業務의 一部를 代行하는 機能이 必要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이런 業務를 Clearing Center에 擔當시켜 統計 Data Bank活動을 円滑히 遂行하는 것이 要請된다.

6.4.2 利用技術의 開發

國家가 作成한 統計資料는 所管部処의 業務上 必要에서 縱적으로 作成되기 때문에 特定한 橫的 利用에 있어서는 統合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와같은 橫的 資料利用이 今後 더욱 增加될 것이 豫想되므로 統合 不一致의 程度를 檢討하여 統合利用이 可能한 것에 관하여는 資料의 連結方法을 開發하여 利用要請에 応할 必要가 있다.

이외에 統計資料 提供을 위하여 必要한 技術을 充分히 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6.4.3 其 他

其他 統計資料의 利用等に 관한 統計相談 統計 Data Bank의 内部管理等의 業務가 있다.

7. 統計 Data Bank에 關聯된 其他 事項

統計 Data Bank의 開發 推進에 있어 留意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7.1. 統計 資料에 對한 需要의 把握

社会經濟 環境의 急速한 變化와 複雜化에 따라 統計資料의 利用도 變化하고 多樣化가 予想된다.

이러한 利用要請의 推移를 正確히 把握하여 統計 Data Bank 活動上 資料로 남고 統計作成機關에 이러한 需要에 対応할 수 있도록 促求하는 機能이 附隨的으로 必要하다.

7.2. 統計資料 提供의 正確·迅速化

統計資料는 各種資料 中에서도 가장 基礎的인 것이며 그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作成機關을 國家등에 限定하고 被調査者에 申告義務를 課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統計資料의 蒐集·提供등에 있어 統計數值의 正確性維持는 勿論 그 說明資料에 關하여도 利用者가 正確히 理解할 수 있도록 充分히 配慮할 必要가 있다.

또 社会의 急速한 变化에 適應하기 위하여 提供의 迅速化를 위하여 努力해야 한다.

7.3 統計資料의 統合化 努力

統計資料에 관한 時系列的 連續性的 確保 및 相異한 統計間의 統合比較 利用의 實現은 統計作業의 基般에 미치는 큰 문제를 內包하고 있다. 現行의 統計分散型 生産方式에서는 作成者 独自の 方針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統合性的 確保는 相當히 困難한 狀況에 있다.

今後 統計資料를 여러가지로, 組合시켜 利用增大시키는 것이 予想되므로 統計体系 整備의 一環策으로 積極적으로 寄与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

7.4 統計 Data Bank의 秩序있는 活動

統計 Data Bank가 活動함에 있어 被調査者の 秘密保護를 徹底히 하여야 한다.

또한 統計資料의 蒐集·提供등 관계자가 여러사람에 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責任所在 權利的 歸屬등을 明確히하여 紛争이 생기지 않도록 配慮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그 活動에 있어 現行統計制度上的 隘路点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整備調整하여야 할 것이다.

第 2 章 個別 Data Bank

1. 個別 Data Bank 의 意義와 役割

個別 Data Bank 는 当該省庁의 業務上 必要한 統計資料를 蒐集하여 主로, 当該部 處内部의 利用에 應하여가는 機能体로써 設置된 것이다.

그리고 統計資料의 利用擴大를 期하기 위하여 当該部 處 所管 統計資料에 對한 他機關으로부터의 利用要請에 對하여 迅速 正確히 提供하려는 데 있다.

1.1 意 義

各部 處는 当該部 處의 行政을 遂行하기 위하여 統計資料를 스스로 作成하며 또는 外部機關이 作成한 統計資料를 蒐集하여 利用하고 있다.

또 当該部 處가 作成한 統計資料의 利用要請에 對하여 應할수 있다.

個別 Data Bank 는 今後 当該部 處를 비롯하여 各方面으로부터의 需要增大에 迅速, 正確히 應하기 위하여 所屬部 處를 母体로 하여 그 内部에 設置되어 担当하는 統計資料등의 蒐集 整備 提供등을 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個別 Data Bank 는 統計 Data Bank 의 基幹이 되는 것이며, 統計 Data Bank 의 機能의 充實한 發展을 위하여 重要な 役割을 한다.

1.2 役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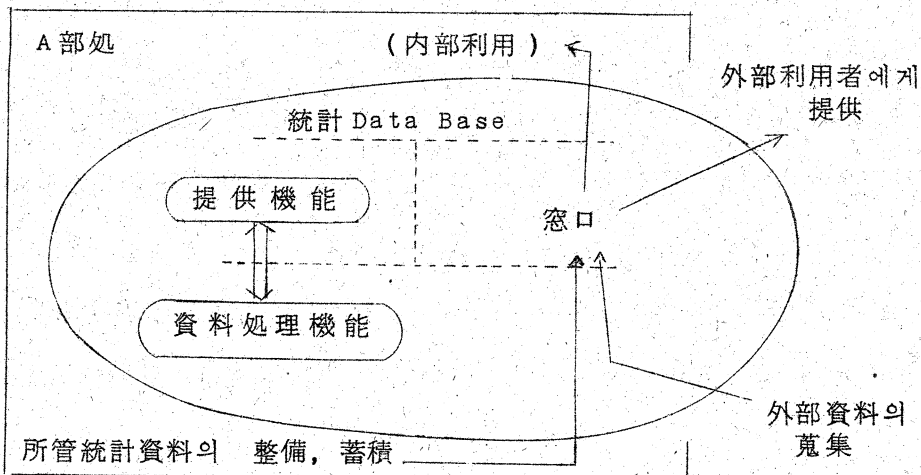
個別 Data Bank는 統計 Data Bank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시키기 위하여 情報網의 構成單位가 되며, 다른 個別 Data Bank 및 Clearing center 과의 業務上의 重複, 競争等を 回避하고 統計 Data Bank의 秩序있는 發展에 寄与하지 않으면 안된다.

個別 Data bank의 役割은

- ① 担当한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을 行하여 統計 Data Base를 作成하고,
- ② 当該部處 内部의 利用을 充足시키고 外部利用者로부터의 利用要請에 대하여 提供possible한 것을 提供하고,
- ③ 所管統計資料등에 關하여 所在源資料를 整備하여 照會에 応하고,
- ④ 統計 Data Bank의 目的遂行에 寄与하는 것이다.

個別 Data Bank의 機能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 圖 2. 個別 Data Bank의 機能



2. 個別 Data Bank의 業務.

個別 Data Bank의 業務는 担当하는 統計資料등에 대한 利用要請에 迅速正確히 應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을 蒐集, 蓄積하는 것이다.

2.1 統計資料의 蒐集, 整備, 蓄積

2.1.1 對 象

個別 Data Bank가 蒐集, 整備, 蓄積하는 統計資料는 當該部處 所管의 것과 當該省庁業務에 必要한 外部機關이 作成한 것이며, 多樣化하는 統計需要에 應할 必要性에서 結果資料뿐만 아니라, 綜合資料, 個別資料 및 이들을 正確히 理解하기 위한 定義, 概念, 說明資料를 對象으로 한다.

但, 其他個別 Data Bank, clearing center 기타 外部機關의 未公表 資料에 대하여는 蒐集, 整備, 利用은 하지만 秘密保護의 徹底 및 重複投資 責任의 明確化등의 趣旨에 근거하여 原則적으로 資料蓄積은 行하지 않는다.

2.1.2 方 法

各部處內에서 作成되는 統計資料에 관하여는 個別 Data Bank의 独自の인 蒐集方法에 의하고 있으며 外部機關으로 부터 統計資料를 蒐集할때의 經路는 直接蒐集하는 方法과 情報網을 經由하는 方法이 있으며 後者中 다른 個別 Data Bank 및 Clearing center로부터 經常적으로 蒐集할때는 情報網이 形成된다.

2.2. 統計資料의 提供

2.2.1 內 容

個別 Data Bank 은 蒐集, 蓄積한 統計資料中 提供可能한 것에 대하여는 利用要請에 따라 提供하고 있지만 統計資料에 대한 註文의 內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가. Ready made service 로써 利用要請에 適合한 素材를 提供하는 것 例를들면 結果資料, 時系列資料, 用語의 定義, 說明資料等 統計資料를 素材로하는 複写機供이다.

나. Order made service 이며 利用者의 注文樣式에 맞도록 作成 提供하는것. 例를들면 個別資料로부터의 特別集計 結果資料 또는 綜合資料를 利用한 加工分析, 統計解析計算等の 結果提供이다.

2.2.2 方 法

外部利用者에 대한 個別 Data Bank 가 行하는 統計資料의 提供은 다음 經路에 따라 行하여진다.

가. 다음 個別 Data Bank 및 Clearing center 에 대한 經常的 提供은 情報網을 經由한다.

나. 個別 Data Bank 및 Clearing center 以外の 利用者로부터 直接要請되는 경우는 直接提供한다.

다. 個別 Data Bank 以外の 利用者로부터 Clearing center 를 經由하여 利用要請이 있는 경우는 個別 Data Bank로부터 直接 또는 Clearing center 를 經由하여 提供한다.

2.3 統計所在源資材의 整備 提供

個別 Data Bank는 當該部處 所管統計 資料에 關하여 當該部處內 利用 및 外部利用의 擴大를 企圖하기 爲하여 本在 內容의 概要, 記錄媒体 등에 關한 情報를 蒐集整備하여 Clearing center에 提供하고 또 기타 利用者로부터 照會 案内要請이 있을 때는 이에 依할 수 있다.

2.4 其他의 業務

個別 Data Bank는 上記의 基業的인 業務外에 當該部處의 組織運營 및 統計 Data Bank 機能의 充實을 爲해 付業的으로 다음 業務를 行한다.

2.4.1 個別 Data Bank의 運營

個別 Data Bank는 担当하는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 및 提供活動을 늘 円滑히 그리고 適切히 行하기 爲하여 統計資料의 維持, 更新, 管理의 體制를 整備하는 외에 個別 Data Bank를 円滑히 運行하기 爲한 業務를 遂行할 必要가 있다.

2.4.2 統計需要의 把握

國家가 作成한 供給統計의 表章內容은 늘 利用者의 需要를 充足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實際는 行政面으로 부터의 需要와 一般利用者로부터의 需要를 完全히 一致하지 않는 點등의 困難한 問題가 있다. 그러나 需要自体가 社會環境의 推移에 따라 變化하는 側面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定形的인 統計資料의 作成時 需要

에 適合하지 않을것도 생각될 수 있다.

統計 Data Bank 目的台에서 需要에 適合한 서어비스 提供을 充分히 遂行하기 위하여, 늘 需要実態를 把握하는것이 必要하다.

2.4.3 그외에 個別 Data Bank가 開發한 利用技術의 提供 統計相談등의 業務가 있다.

第 3 章 Clearing Center

1. Clearing Center 의 意義와 役割

Clearing Center 는 統計 Data Bank 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시키기 위하여 個別 Data Bank 와 같이 情報網을 形成하여 그 構成單이 되어 個別 Data Bank 의 機能을 補完하여 이른바 分散型體制로부터 오는 缺陷의 一部를 補完하는 것이다.

1. 1 意 義

個別 Data Bank 가 外部機關이 作成한 統計資料를 蒐集하고 또는 外部機關으로부터 個別 Data Bank 가 所管하는 統計資料에 대하여 利用要請이 있을때 個別 Data Bank 가 각기 그 業務를 處理하는 것이 可能하다.

그러나 統計資料가 增大하고 複雜化함에 있어 그러한 業務도 따라서 增加되고 複雜化하여 가며 利用者和 資料提供者間에서 仲介등을 行하는 이른바 Clearing 機能이 必要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統計資料의 利用의 円滑, 迅速化등을 위하여 資料仲介등의 일외에 統計資料의 名稱, 種類, 所在 등에 관한 情報를 綜合적으로 整備하여 要請에 따라 資料를 提供하는 機能이 必要하게 된다.

이러한 機能을 가지는 것이 Clearing Center 이며 統計資料利用의 擴大를 期하기 위하여 必要不可缺한 것이며 統計 Data Bank 에 機能體中에서도 重要な 役割을 遂行하는 것이다.

1.2 役割

Clearing Center 는 個別 data bank 의 機能을 補完 하면서 全体로서의 統計 Data Bank 의 目的에 奉仕하는 것이다.

따라서 個別 Data Bank 와 業務가 重複하여 個別 Data Bank 의 育成發展을 沮害하는 것이 되어서는 勿論 안되며 取扱하는 統計資料種類에 關하여도 個別資料와 같은 個別 Data Bank 가 取扱하는 것이 適當한 것은 Clearing center 에서는 取扱하지 않게될 것이다. 또 業務의 競爭등에 의하여 國家機關 以外の 機關의 利益을 손상하지 않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2. Clearing Center 의 業務

Clearing Center 는 廣義의 統計 Data Bank 의 業務中 個別 Data Bank 가 所管하지 않는일을 遂行하는 任務를 띄고 있다.

그 業務의 性格이 本質적으로 個別 Data Bank 의 機能을 補完 하는 것이라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2.1 統計所在源情報의 蒐集 提供

가. 統計資料를 利用하기 위하여는 그 前提로서 資料의 名稱, 內容의 概要, 記錄媒体, 所在, 入手條件, 入手方法 등에 關한 正確한 情報를 얻을 必要가 있다. 또 行政施策등의 資料로써 統計資料를 必要로 하는 경우 이에 適當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體制가 必要하다.

그러나 統計資料의 增大 多樣化에 따라 그 內容이 점점 複雜

化하여 이러한 情報을 迅速 正確히 入手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 이 때문에 Clearing Center 에 있어서 統計所在源情報을 綜合적으로 蒐集 整備하여 利用者の 要請에 應하는 體制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 統計所在源 情報의 蒐集은 個別 Data Bank 로부터 所管統計資料에 관한 情報提供을 받아 行하는 경우와 個別 Data Bank 以外의 機關으로부터 情報을 入手하는 경우가 있다. 蒐集한 統計所在源情報의 利用者로서는 個別 Data Bank 는 勿論 國家의 内外에 걸쳐 廣範圍한 部門에 이르고 있다.

2.2 統計資料등의 仲介, 斡旋, 業務의 代行

2.2.1 意義

Clearing Center 는 個別 Data Bank 가 다른 機關의 統計資料 또는 電子計算機에 의한 統計資料의 利用技術을 必要로 할 경우 或은 利用자가 個別 Data Bank 의 所管統計資料 또는 利用技術을 必要로할 경우에 있어 스스로 提供可能할 때는 스스로 行하고 不可能할 때는 仲介 斡旋을 行하여 利用要請에 應할 必要가 있다.

個別 Data Bank 가 이러한 業務를 行하는 것이 언제나 不可能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業務가 增大하여 複數의 個別 Data Bank 가 關係하는 業務가 複雜化하여 지면 個別 Data Bank 가 處理하기 어렵게 되고 또 効率的으로 行할 수 없게 된다.

더우기 Clearing Center 는 個別 Data Bank 間에 있어 發展

段階의 不統一 때문에 廣義의 統計 Data Bank 의 機能이 充分히 發揮되지 않을때 發展이 늦은 個別 Data Bank 의 業務의 一部를 必要에 따라 代行한다.

2.2.2 內 容

Clearing Center 가 仲介 斡旋, 代行 對象으로 하는 서어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된다.

가. 個別 Data Bank 의 統計資料 또는 利用技術의 蒐集의 仲介, 斡旋

나. 個別 Data Bank 가 保存하는 統計資料 또는 利用技術의 提供 仲介 斡旋

다. 個別 Data Bank 에 있어서 統計資料의 蒐集, 整備, 蓄積 加工 提供의 代行

라. 기타 廣義의 統計 Data Bank 의 業務中 元來 個別 Data Bank 가 맡아야 할 일을 Clearing Center 에서 行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되는것

2.2.3 方 法

Clearing Center 는 ① 仲介, 斡旋만 行할 경우 ② 仲介 斡旋의 對象이된 統計資料등을 受授하는 경우 ③ 資料의 受授에 있어 加工等 處理를 行할 경우에 ② 또는 ③은 一種의 代 行業務지만 그중 어느것을 行할 것인가는 当事者間에서 決定하여야 한다.

2.2.4 樣 態

가. 統計資料등의 仲介, 斡旋 業務의 代行은 臨時的인 것과 經常的인 것이 있다.

仲介, 斡旋은 臨時的인 것이 많고 代行은 經常的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可能的 限 業務를 定形化하여 円滑化를 圖謀하여야 한다.

나. 利用者로부터 依賴를 받아 義務를 遂行할 경우 資料 提供者의 行爲를 必要로 할때는 仲介, 斡旋을 依賴할 方法이 없다. 때문에 Clearing center 는 늘 仲介, 斡旋에 必要한 情報를 正確히 把握하는등 資料利用 要請에 대하여 迅速, 正確히 應할 수 있도록 準備하여 두어야 한다.

그리고 仲介, 斡旋義務를 經常化할 경우 Clearing center 는 資料提供者가 事전에 統計資料등의 提供을 받아들 것도 考慮하여야 한다.

다. 個別 Data Bank 로부터 業務의 一部를 依賴받은 경우 Clearing center 는 当該 個別 Data Bank 의 指示등을 받게 되지만 그때 責任關係등을 明確히 하여 두는것이 重要하다 (第 4 章參照)

2.3 기타業務

Clearing center 는 上記의 基本的인 業務外에 附隨的으로 個別 Data Bank 의 機能을 補完하기 위하여 또 自体組織의 運營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業務를 行한다.

2.3.1 統計資料의 蒐集, 整備, 蓄積 提供

가. Clearing center 는 個別 Data Bank 가 開發한 統計資料의 利用技術과 電子計算機에 의한 利用技術로 實用성이 높고 또

有益한 것은 다른 利用者에게도 利用價值가 높으므로 이러한 利用
要請에 따라 統計資料의 有效한 活用 및 技術開發을 위한 重複投
資를 避하기 위하여 利用技術을 應用하여야 할 것이다.

2.3.3. 그의 相異한 統計間에 있어서의 比較分析과 加工統計資
料의 作成 提供

第 4 章 統計 Data Bank 活動의 維持發展

統計 Data Bank 가 円滑한 活動을 行하기 爲하여는 이를 뒷받침 하는 制度 體制가 必要하다.

現行 統計法規을 바탕한 統計制度, 運營體制는 統計資料의 徹底하고도 迅速한 利用, 加工 編輯利用등과 같은 高度化하고도 多樣化한 要請에 대하여 充分히 對應할 수 있는 狀態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統計 Data Bank 活動을 円滑하게 하고 이를 發展시키기 爲하여는 現行 統計制度 및 運營體制를 全般的으로 考察하여 이에 必要한 施策을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問題의 廣範圍性, 複雜性등으로 이러한 모든 事項을 明白하게 서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특히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事項에 한하여 考察한 結果를 取合하기로 했다.

1. 統計資料의 詳細化

統計資料에 대한 需要의 多樣化는 統計分類(地域分類, 産業分類 등)의 詳細한 表章區分에 의한 統計資料를 要求하고 있다. 또 統計資料의 增大, 利用의 多角化에 따라 統計資料를 正確히 理解하기 爲한 情報가 必要하게 되고 또한 統計資料의 迅速한 提供이 要請되고 있다.

이러한 要請에 應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對應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1.1 統計資料種類的 多樣化

1.1.1 結果資料

統計調査의 結果에 關하여는 指定統計의 경우는 法令에 의하여 公表가 義務化되어 있지만 그 統計資料에 關하여는 質量 共히 반드시 滿足할만한 狀態는 아니다. 기타 各種 統計의 경우는 公表가 義務化되어 있는것이 적어 全部가 公表되고 있지는 않다. 또 公表되어 있는것도 報告書의 部數가 적기 때문에 그 結果의 利用이 充分하지는 않다. 이 때문에 既公表되고 있는것에 對하여는 더욱 擴充하고 未公表資料에 關하여는 可能한限 公表하도록 努力하여 統計資料의 利用을 促進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結果資料의 거의 대부분이 印刷刊行物에 의하여 公表되게 되어 있으므로 統計資料의 擴充, 利用의 促進을 阻害하는 面도 있어 公表媒体의 多樣化, 公表方法의 再檢討가 必要하다.

1.1.2 集約資料 (Summary Data)

近年統計調査의 集計는 電子計算機로 行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 集計過程에서 作成되는 中間集約資料는 結果資料 보다 詳細한 것이므로 詳細한 資料의 하나로서 利用要請의 對象이 되고 있다. 그러나 普通은 個別資料와 같이 被調査者의 調査事項을 하나 하나 識別할 수 없기 때문에 被調査者의 秘密을 保護하는 觀點에서 보아도 問題가 적으며 詳細한 統計資料로서의 利用價值는 非常히 높다. 따라서 磁氣 테이프에 의한 活用을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既公表資料의 경우와 달리 集約資料의 使用에 있어서는

① 被調査者의 調査事項을 하나하나 識別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가 어떤가를 살피고 內容이 識別할 수 있는 경우 使用目的 使用
方法등에 問題가 있는가 없는가 .

② 指定統計의 경우 統計法의 承認을 必要로 하는가 어떤가 .

③ 綜合資料와 公表資料와의 사이에 있어 統計數値의 不一致는
없는가.

不一致가 있는 경우 그 対策은 充分한가등을 慎重히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1.1.3 個別資料

個別資料는 結果資料 또는 集約資料만으로 要求를 充足
하지 못하는 利用者의 要請에 의하여 特別한 集計, 加工등을 行할
경우 또는 抽出集計등을 行할 경우 使用되지만 被調査者의 秘密保
護의 觀點에서 可能한限 다음 1.1.4 項의 資料로 代替하도록 努力
해야 할 것이다.

1.1.4 項의 資料로도 要求가 充足되지 않을 경우만 使用目的, 使
用方法등을 限定하여 使用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個別資料로부터 秘密事項을 變形(例컨데 階級區分別로 表
章하는일 등)한 資料(例컨데 企業名單作成用 資料)도 個別資料의
一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 資料는 秘密保護등의 面에서 다른
個別資料와 性格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取扱을 同一하게 할 必
要는 없다.

1.1.4 個別資料로부터 識別要因을 除去한 資料.

個別資料로부터 識別要因을 除去한 資料는 被調査者의 秘密保護를 위하여 識別要素를 個別資料로부터 除去하든지 또는 亂數로 配列함으로써 詳細한 重複 交叉集計를 하여도 個個의 被調査者의 調査事項을 識別할수 없도록 加工한 資料이다.

利用者는 이 資料를 使用하여 必要한 集計分析을 行할 수 있으므로 從來의 統計資料로부터 새로운 形態의 資料를 얻을 수 있다.

이 資料는 細分集計等 個別資料가 아니면 需要要求를 充足시킬 수 없는 경우에 秘密을 保護하면서 要求에 應할 수 있는 두가지 長點을 가지고 있어 今後 集約資料와 더불어 活用이 期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資料의 作成에 있어서는 個個의 統計別로 個別資料類推의 難易性등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共通의 基準을 根拠로 行하는 것은 困難하다.

따라서 個個 統計別로 多方面으로부터의 檢討를 必要로 하며 그 結果도 綜合資料만큼의 配慮가 必要하다.

1.2 統計資料의 記錄媒體의 多樣化

指定統計調査結果의 公表는 統計法施行令에 의하여 「官報 其他의 刊行物로써 行한다」라고 規定되어 있으나 官報 其他의 刊行物에서는 統計調査結果의 公表가 量的으로 制約되어 있을뿐 아니라 質的, 時間的으로도 制約되어 統計資料의 詳細化, 提供의 迅速化 등의 要請에 應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따라서 基本的인 重要한 資料에 관하여는 磁氣테이프등 大量資料

가 記錄可能한 媒体에 의하여 公表를 하도록 하고 그 所在등에 관한 公表를 官報등으로 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統計資料의 入手를 希望하는 자는 公的機關에 있어서 機器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入手할 수 있도록 事前措置가 必要할 것이다.

現行統計法施行令은 이點에 있어 障害가 되고 있는바 例컨대 「公表는 官報기타의 刊行物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規定을 追加하는등 關係法改正이 必要하다.

以上은 指定統計에 대한 경우지만 指定統計 以外の 統計의 경우도 手續面은 어떠한 實態面은 같은 方向을 指向하여야 할 것이다.

1. 3 統計資料利用의 正確性 確保

統計數字의 正確性이 要求되는 것은 当然하지만 한편 利用者에 對하여도 表章하는 意味, 内容등을 正確히 理解할 수 있도록 表示하는 것이 重要하다.

예를 들면 同種類統計資料의 時系列 比較利用 또는 相異한 統計間의 比較利用에 있어서도 觀察이 細密하게 進行될 때는 表章事項의 概念, 定義等의 說明資料를 必要로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統計調査方法등에 관한 情報도 必要로 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情報提供도 하고 統計資料가 正確히 利用되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1.4 統計資料 提供의 迅速化

統計調査의 結果는 迅速히 公表되어야 하는 것이 当然하며 이러한 趣旨는 統計法에도 規定되고 있지만 統計 Data Bank의 活動에 있어서도 統計資料의 利用要請에 迅速히 應할 수 있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統計 Data Bank의 整備, 統計需要의 把握, 情報網의 強化등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2. 秘密의 保護

被調査者의 秘密保護를 위하여 統計調査實施에 있어서 回答者로부터 信賴를 얻고 回答의 眞實性을 確保하는 面에서도 重要하며 統計調査結果 얻어진 結果를 利用할 경우 가장 注意를 要하는 點이다.

이에 關하여는 統計法 14條에 規定되고 있는 指定統計뿐만 아니라 國家가 實施하는 其他統計에 關하여도 適用되어야 할 原則이다.

2.1 被調査者의 秘密의 範圍

被調査者에 대한 어느事項을 秘密로 할 것인가는 아주 어려운 問題이다.

一般的으로는 「被調査者가 秘密이라고 主張하는 事項이 秘密이라고 하는 主觀說」, 「被調査者가 一般的으로 秘密이라고 主張할 것으로 생각되는 事項을 秘密로 하는 客觀說」, 「客觀說을 主軸으로 하여 여기에 主觀的 要素를 加味한 折衷說」등이 있지만 被調査者

側으로 보나 統計調査實施面에서 보나 主觀說을 採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主觀說을 基本으로 하는 限 모든 被調査者에 대하여 秘密인가 아닌가의 意見을 묻는것은 困難하며 실혹 意見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結果가 가지각색인 때가 많으므로 個個의 被調査者가 識別할 수 있는 形態로 統計資料를 公開하는 것은 避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一般的으로 秘密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事項에 대하여는 使用目的이 公益性이 있고 事前에 被調査者全員の 同意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를 들면, 調査票에 使用目的을 明示하고 있을 때) 또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을 두고 있는 경우에 限하여 例外的으로 公開가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2. 2 秘密保護의 体制

가. 統計調査로 얻어진 調査票를 어떤 目的으로도 自由로이 使用하여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指定統計는 統計法에 있어서 全 調査票를 統計上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는 것을 制限하고 있지만 指定統計 以外의 統計에 대하여도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即, 被調査者는 統計를 作成하기 위하여 秘密事項(情報)도 提供하고 그 目的 範圍內에서의 情報使用에 同意하고 있지만 統計上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는것 까지 同意한 것으로는 一般的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現行의 指定統計 以外에 國家가 實施하는 統計調査에 있어서는 이러한 取扱이 擔當部의 慎重한 配慮에 의하여 維持되게 되어있는

바 統計 Data Bank 活動에 있어 利用要請에 대하여 누구가 어떤 方法으로 秘密保護에 대한 審査를 行할 것인가에 대한 法的 根拠는 없다.

여기에 관하여 우리는 調査票를 統計上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는 것은 그에 관한 被調査者의 同意를 얻은 경우外에 法律에 特別한 規定(指定統計에 관하여는 統計法)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認定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調査票를 統計上의 目的 以外에 使用할 경우에 있어서 審査는 指定統計에 대하여 現在 다음과 같은 基準으로 實施되고 있지만 이 基準은 기타 統計에 대하여도 準用되어야 할 것이다.

- ① 使用目的이 公益性을 가질것.
- ② 調査票使用者를 秘密保護上 問題가 없는 者に 限定할것.
- ③ 調査票의 使用場所를 特定할것.
- ④ 調査票의 使用에 있어 特定人을 立會시킬것.
- ⑤ 使用後의 調査票에 대한 燒却等 措置를 取할것.

또 指定統計를 作成하기 위하여 모은 調査票에 대하여 統計利用目的 以外의 使用에 대한 承認基準을 明確히 하여 秘密保護에 支障이 없도록 充分히 配慮하여야 할 것이다.

다. 個個의 調査票取扱을 아무리 嚴重히 하여도 統計로써 集計되어 公表된 結果로부터 單數의 被調査者에 대한 情報가 明白히 들어나면 結果적으로는 調査票의 內容이 公開되는 結果가 된다.

따라서 集計結果에 대하여도 單數의 被調査者의 調査事項은 勿論

合計欄으로부터 逆算하여 單數의 被調査者의 調査事項이 判明된다든지, 두사람의 被調査者의 調査事項이라도 두사람중 한사람의 被調査者로부터 다른 被調査者의 調査事項이 識別될 수 있는 形態의 公開도 避하도록 配慮하여야 할 것이다.

라. 以上の 秘密保護를 보다 徹底히 하기 위하여 이에 必要한 体制을 迅速히 整備하여야 할 것이다.

即, 秘密保護에 관한 体制에 대하여 現在의 狀況은 반드시 統一된 思考方式下에 体系的整備가 되어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承認統計, 届出統計에 있어서 秘密保護에 관한 統一의이고도 慎重한 審査가 行하여지도록 体制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3. 統計 Data Bank 活動에 따른 權能, 責務等

3.1 統計資料의 蒐集關係

3.1.1 統計의 公表는 一般的으로 刊行物에 의하여 行하여지지만 利用者가 이 刊行物을 自由로 蒐集할 수 있는것에는 아무런 問題가 없다. 이때 對價를 支払하는 問題, 刊行物의 部數가 蒐集할만큼 있는가 등의 問題는 別個의 問題이다.

또 刊行物以外의 形態로 公表되어 있는 경우에는 刊行物의 경우만큼 實際上 入手 또는 利用이 容易하지 않더라도 公表되고 있는 以上으로 資料蒐集이 自由롭다고 할 수 있다.

3.1.2 非公表資料의 蒐集

非公表資料에 관하여는 作成者가 提供하는 것을 기다려 蒐集할 수 있으므로 資料가 提供될 것인가 아닌가, 提供에 있어 어떠한 條件을 붙이는가는 提供者의 意思에 의한다.

다만 國家機關이 作成하는 非公表資料의 蒐集에 관하여는 統計 Data Bank 活動의 存在形式에도 關係되므로 統計資料의 提供을 說明함에 言及한다.

3.2 統計資料에 대한 著作權

個個의 統計數字는 著作權保護의 対象은 안되지만 創作性을 隨伴한 統計資料結果表등에 관하여는 著作權을 主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今後 統計資料의 公表, 利用의 樣態가 크게 變化하는 것이 豫想되므로 統計 Data Bank 活動에 있어서도 미리 著作權에 관계되는 問題에 대하여는 考察하여 둘 必要가 있다.

3.3 統計資料의 蓄積 加工關係

3.3.1 公表資料의 蓄積 加工

利用者가 公表資料를 蓄積 加工하는 것은 原則으로 自由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地方公共團體, 民間等)이 作成한 統計資料의 蓄積 加工에 있어서도 著作物의 複寫等을 行할 때는 著作權法上의 問題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도 可能한 限 事전에 問題를 解決하여 두고 擴大하

는 統計利用의 要請에 應하기 爲하여 公表資料를 自由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2 非公表資料의 蓄積

가. 非公表資料의 蓄積은 一定한 制限을 두어야 한다.

即, 非公表資料를 作成한 者가 當該資料를 自由로 蓄積, 加工할 수 있는것은 當然하다 (個別資料에 關하여는 例를 들면 指定統計의 경우 保存期間과 保存責任者를 承認을 얻어 指定하지 않으면 안되는 制約이 있다)

그러나 기타 (他部處, 地方公共團體, 民間等)에서 作成한 非公表資料를 蓄積, 加工할 수 있는가는 作成者 (提供者)의 意思에 의한다.

그러나 統計 Data Bank 活動의 바람직한 모습은 公表資料와 非公表資料의 不一致에 따른 情報公害의 發生, 秘密의 漏洩, 重複投資 등의 問題를 避하기 爲하여 提供받은 非公表資料에 對하여는 使用後에는 消去, 返還등을 하고 原則으로 蓄積을 認定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에 個別資料의 蓄積에 關하여는 被調査者의 同意가 必要하지 않은가 등의 問題가 있다.

西獨에서 檢討되고 있는 이른바 個人 秘密法案에서는 「官廳, 기타의 公的機關에 있어 個人資料가 새로히 保管될 때는 즉시 保管資料의 種類를 告示한다. 다만 檢察, 警察, 稅務, 軍事等 官廳의 경우는 除外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韓國에서도 個別資料가 被調査者의 秘密事項을 包含하고 있는 關

係上 個別資料의 濫用防止등의 觀點에서 그 所在情報가 公開되고 秘密事項이 누설될 우려가 있을 때의 救濟措置등을 認定하는 것은 基本的으로 必要한 것이다.

指定統計에 관하여는 統計法에 의하여 統計關係書類의 保存에 대하여도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하고 있는 限 經濟企劃院長官이 國民의 委任에 의하여 國民을 代身하여 個別資料의 蓄積에 관하여 同意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指定統計以外的 國家統計에 대하여서는 特別히 定하여진 것이 없다.

따라서 위와같은 趣旨를 法令上 또는 實際 運用에 있어 可能한 限 살려야 할 것이다.

具體적으로는 調査票에 그 趣旨를 明記하고 指定統計와 같이 承認制度로 하는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3.3.3 加工等 處理結果의 歸屬과 責任

統計資料의 使用 또는 提供에 있어 統計資料를 加工한 경우 그 加工에 의하여 얻어진 結果는 누구에게 歸屬하는가 (權利者는 누구인가) 또 加工에 관하여 責任問題가 생겼을때 누가 그 責任을 지는가에 問題가 있다. 이 點에 관하여는 다음표에 要約하고 있다.

表 2. 加工處理結果의 歸屬과 責任

統計資料의 形態	加工處理結果의 歸屬者	加工處理에 따른 責任者
<p>1) 原統計資料(以下 源泉資料라함)가 그대로 處理後에도 나타나 處理에 創作性이 認定되지 않는것</p>	<p>源泉資料의 作成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源泉資料는 그 作成者 ○ 處理에 관하여는 處理者(委託에 의한 경우는 指示内容에 있어서는 處理委託者)
<p>2) 源泉資料가 그대로 處理後에도 나타나지만 處理에 創作性이 認定되는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源泉資料에 관하여는 그 作成者 ○ 處理後의 結果에 관하여는 處理者(委託에 의한 경우는 處理委託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源泉資料 自体에 대하여는 그 作成者 ○ 處理에 대하여는 處理者(委託에 의한 경우는 指示의 内容에 관하여는 處理委託者) ○ 處理結果에 대하여는 處理者(委託에 의한 경우는 處理委託者)
<p>3) 源泉資料處理에 의거 當該資料가 變形된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處理者(委託에 의한 경우는 處理委託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處理者(委託에 의한 경우는 指示의 内容에 관하여는 處理委託者)

3.4 統計資料의 提供關係

3.4.1 提供의 條件

가. 個別 被調査者의 調査事項이 識別되지 않는 形態의 統計資料(結果資料, 綜合資料의 一部, 個別表로부터의 識別要因을 除去한 資料)에 관하여는 提供先, 利用目的 등을 特히 限定할 必要는 없다.

이중 非公表資料에 관하여는 使用後에는 消去, 返還 등을 行하여야 할 것이다.

나. 個別 被調査者의 調査事項이 識別되는 形態의 統計資料(個別資料, 綜合資料의 一部)에 관하여도 提供先을 國家, 地方, 公共 團體, 學術研究機關等 公共의 性格을 가진 特定者에 限定하고 그 利用目的도 制限할 必要가 있다.

또한 이러한 資料는 普通 非公表資料이므로 使用後에는 消去, 返還 등을 行하여야 한다.

다만 個別 被調査의 調査事項의 識別이 可能하더라도 收錄되고 있는 資料가 秘密에 屬하지 않는 事項인 때는 반드시 위와같은 取扱을 할 必要는 없다.

3.4.2 再提供의 制限

가. 統計資料의 提供은 當該資料의 作成者가 行하는 것이 情報公害를 防止하고 責任의 所在를 明確히 하게되며 現行 또는 今後의 統計制度 등의 見地에서 보아 妥當하다고 생각되므로 作成者 以外의 者가 他에 資料를 提供하는 것은 原則적으로 禁止하여야 할 것이다.

統計資料의 提供을 有償으로 할경우는 財産保護의 見地에서도 그렇게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면서도 統計資料利用의 拡大利用面에 있어서의 創意研究의 実施등을위하여 例外的으로 資料의 再提供을 認定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例外的경우로서는

- ① 個別統計資料를 引用이라는 形式으로 提供할때.
- ② 統計資料의 編輯物로서 그 素材의 選擇또는 配列에 創作性을 지닌 形態로 提供할때
- ③ 統計資料의 加工등의 結果 源泉統計資料가 變形되어있는 形態로 提供할때 등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이는 거의 現行著作權法의 趣旨에 따른것이다.

資料 作成者인가 作成者以外인가의 區別은 國家行政機關의 경우 部処別로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더욱이 仲介 斡旋에 의하여 個別 data bank가 clearing center를 통하여 또 clearing center가 個別data bank를 통하여 提供할 경우 그 範圍內에서 再提供制限原則을 適用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國家가 作成公表라는 統計資料는 統計調査등에 의한 申告. 登記. 登錄. 許可. 認可등 行政活動의 結果 生産되는것으로 公共財産의 性格을 고려하면 本來 著作物的性格을 가지는것이라도 國民에 대하여는 原則적으로 自由使用을 認定해야한다는 意見이 있었다.

나. 再提供의 制限을 實質적으로 確保하기위한 方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것이 생각될수 있다.

- ① 非公表 資料에 관하여는 統計 data bank 가 提供할때 條件을 부친다.
- ② 公表資料에 관하여는 著作權法을 活用한다.

3.4.3 資料提供에 隨伴한 責任의 所在

資料提供에 따른 責任問題가 生길경우의 取扱은 大략다음과 같이 하여야한다.

가. 統計資料의 作成者가 스스로 當該資料를 提供할경우는 그 作成者가 모든 責任을 진다.

나. 他者가 作成한 統計資料를 提供하는 경우는 統計資料에 대하여는 作成者 提供에 대하여는 提供者가 責任을 진다.

다. 나項의 提供이 委任에 의하여 行하여지는 경우는 指示内容에 대하여는 委託者가 責任을 진다.

라. 統計資料를 提供하기 前에(加工等 處理를 한 경우는)前述한대로 한다.

4. 統計資料等の 提供에 따른 料金問題

國家가 作成한 統計資料는 國民의 資産이며 國民에 還元시키는 것은 國家의 義務인 關係上 統計資料提供에 대한 對價로서의 料金は 徵收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資料提供에 있어 特別한 經費를 必要로하는 경우는 原則적으로 그 經費를 徵收할 必要가 있을것이다.

4.1 料金徴収対象行爲

4.1.1 統計資料等の 提供

統計 data bank 에 있어서 統計資料, 統計所在源 情報 등의 提供은 國家業務의 一環으로서 行하여지는 것이며 이러한 情報는 公開을 原則으로하며 널리 一般에게 利用되는것을 前提로하고 있으므로 그 對價로서의 料金は 徴収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統計 data bank 가 統計資料등을 有償으로 外部로부터 収集하여 提供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4.1.2 特別 서어비스의 提供

統計資料의 提供에 따른 特定者에 대한 加工處理등을 特別히 行한 경우등은 經濟合理性의 見地에서 또 國家로서 그 部分까지 널리 서어비스提供을 無償으로 한다는것은 經費支出面에서 困難하므로 實費弁償으로써 그 經費를 徴収하여야 할것이다.

4.2 料金徴収 対象者

4.2.1 國家機關의 경우

統計 data bank 가 國家機關으로 利用者도 國家機關인 경우는 國家라고 하는 同一組織体内에서의 서어비스의 提供이므로 原則적으로 料金を 徴収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統計 data bank 가 國家事業체또는 特別한 組織체로서 運營되는 경우는 事情은 반듯이 同一하지는 않을것이다.

4.2.2 國家機關以外の 경우

國家의 統計 Data Bank와 民間等 其他機關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組織, 經費負擔原則등의 相違点에서 原則적으로 料金を 徵
收하여야 할것이다.

第5章 統計 Data Bank 形成의 順序

1. 意 義

統計 data bank는 統計資料에 대한 利用要請에 迅速, 正確히 應하여가는 機能體이지만 取扱하는 統計資料를 전부 스스로 作成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른곳에서 作成되는것을 蒐集加工하여 提供되는것도 있는 關係上 作成機關의 提供體制에 制約되는 面이 많다. 또 電子計算機의 發達과 그 利用技術의 進歩程度에 의하여 統計 data bank가 가려야할 機能이 制約될수도 있으며 더욱이 統計 data bank內에 있는 많은 個別 data bank의 存在와 相互間의 關係, 國家財政支出能力등의 問題도 있다.

以上과 같은것을 考慮하면서 統計 data bank形式의 순서를 綜合的 体系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다.

2. 段 階

가. 統計 data bank의 形式은 業務의 円滑性和 經濟合理性을 基本으로 그러나 上記의 諸般事情도 充分히 配慮하면서 計劃的으로 順序를 進行시켜야 한다.

即 統計 data bank의 機能은 대략 10年以內에 充實한 段階에 到達할것으로 想定하고 形式의 段階를 各 部處의 動向, 現在의 技術 등을 勘案하여 3期로 大別하여 順序를 考案했다.

또한 clearing center에 관하여는 個別 data bank의 整備狀況

과 統計資料의 相互流通実績을 보아 推進하는 方案도 고려되었으나 統計 data bank의 早期實現과 各個別 data bank의 育成強化的 期待에서 最初案을 支持하는 意見이 많았다.

以下는 이 方案을 中心으로 考案한 것이다.

나. 第1期는 統計 data bank의 機能中當場 必要하고도 實現 가능한 機能의 充實을 圖謀한다.

即一部部處에 있어서는 當該部處 發展的인 個別 data bank로서의 機能을 開發하고 他機關이 作成한 統計資料의 利用을 計劃하고있는 것으로 그 供給體制는 상당히 未成熟한 段階에 있으므로 이를 育成하여 充實化하여 갈 必要가 있다.

clearing center는 個別 data bank의 機能을 補完하여 業務의 代行, 統計資料의 仲介, 斡旋을 行한다.

한편 公表資料中에서도 基本的으로 重要な 統計資料利用頻度가 높은 統計資料를 對象으로 各 部處의 利用要請의 相當部分을 充足시 다.

提供은 주로 複写資料를 對象으로 行하고 있으며 이에의거 情報網이 形成하게 된다.

이 段階에서는 적어도 主要한 統計資料의 部處間 相互利用이 促進된다.

다. 第2期에는 統計 data bank의 機能水準의 高度化를 圖謀한다.

即 各個別 data bank가 組織面에서 成立되고 情報網도 確固하게 形成된다.

統計資料에 관하여는 種類의 補充에 의하여 國家의 利用要請을 充足하고 加工分析能의 處理技術의 多樣化, 高度化에 의하여 複写資料의

提供뿐만 아니라 處理結果의 提供도 實現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統計資料의 相互利用을 活潑히 하고 加工分析資料 등의 利用擴大가 期待된다.

한편 利用目的, 利用手法이 類似한 地方公共団体로부터의 利用要請에 대하여 充分히 應하여 갈수있으며 이 期間에 民間으로부터의 利用要請의 一部에 관하여도 應하여 갈수 있게된다.

다. 第3期에는 統計 data bank의 機能의 充實段階에 到達한다.

即 利用者도 民間等 広範圍하게되며 複雑, 多様化한 注文에도 容易하게 対応하여 迅速, 正確히 統計資料를 提供하게 된다.

한편 變化하는 需要에 即應하여 適切한 서비스의 提供도 可能하게 된다.

3. 方法

統計 data bank의 形成을 推進하기 위하여 하나의 方法으로 窓口体制協議會의 活用이 있다.

이 協議會의 機能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窓口締制協議會는 各部處의 個別 data bank 및 clearing center의 窓口担当者에 의하여 構成되지만 個別 data bank를 設置하지 않아도 統計資料의 利用部處가 있으면 參加할것이 要望된다.

나. 窓口体制協議會의 役割은 統計需要의 把握, 統計에 關한 情報의 交換을 行하는 外에 統計 data bank의 開發方法의 檢討, 窓口担当者間의 協力關係의 樹立등을 期하는 것이다.

結 言

그 以上과같은 統計 data bank가 存在할 狀態, 構成의 段階, 統計 data bank 活動을 円滑化를하기 위한 方案등에 關하여 調査 研究를 進行시켜 여기에 그 成果를 取合했다.

우리는 統計 data bank의 必要性, 重要性및 實現의 緊急性에서 이 成果를 國家의 統計行政分野에 可急的 迅速히 採択토록 積極的으로 具體化할것을 促求하는바이다.

그리고 檢討對象이 複雜, 多岐하므로 充分히 檢討하지못한 事項도 많지만 이중 主된것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가. 우리는 統計 data bank의 機能面을 中心으로 다루었다. data bank의 實現에 있어서는 이에 適合한 組織, 機構를 明白히 하지않으면 안된다.

나. 統計 data bank의 形成, 維持, 運用等に 必要한 經費의 算出을 重要한 事項이지만 위와같은 事情上 考慮되지 않았다.

다. 考案過程에서 可能한 限 原則의 設定에 그쳤다.

統計 data bank를 具體化하여가기 위하여는 이 原則에 근거하여 詳細한 基準의 檢討가 必要하다.

統計 data bank를 具體化하는데 있어서는 各 部처가 共通적으로 必要性을 認識하고 國家가 이러한 活動을 緊密한 關係를 가지는 地方官署로부터의 協力을 얻어야함은 勿論, 國民으로부터의 理解와 信賴를 얻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data bank의 實現 및 發展에 대하여는 關聯分野를 充分히 考慮하여 周到綿密한 計劃을 세워 推進되도록 期待하는 바이다.

参 考 资 料

参 考 資 料

1. 統計資料의 蒐集, 利用研究会 및 同, 作業市会의 開催狀況

第 1 回

- (1) 日 時 : 1973 年 9 月 27 日
- (2) 出席者 : 14 部処 28 名
- (3) 議 題 : 1973 年度 統計資料의 蒐集, 利用에 관한 調査研究
에 관하여

第 2 回 (情報網構式 作業市会第 1 回)

- (1) 日 時 : 1973 年 - 10 月 25 日
- (2) 出席者 : 11 部処 19 名
- (3) 議 題 :
 - ① 統計 Date Bank 의 考察方案
 - ② 目 的
 - ③ 情報網形式의 進行方法
 - ④ 個別 Date Bank 를 諸構成하기 위한 方法과 問題点

第 3 回 (情報網構成 作業市会第 2 回)

- (1) 日 時 : 1973 年 11 月 14 日
- (2) 出席者 : 12 部処 21 名
- (3) 議 題
 - ① 個別 Date Bank 와 情報網의 役割에 관하여
 - ② 対象統計에 관하여

③ 情報網構成, 方法에 관하여

第4回 (Clearing Center 作業市会第1回)

(1) 日時 : 1973年 11月22日

(2) 出席者 : 8部処 14名

(3) 議題 :

① 目的에 관하여

② 業務分擔에 관하여

③ Clearing Center 의 組織에 관하여

第5回 (統計關係法制等 週邊問題作業部会 第1回)

(1) 日時 : 1973年 11月29日

(2) 出席者 : 7部処 14名

(3) 議題 :

統計關係 法制度의 檢討에 관하여

第6回 (Clearing Center 作業市会第2回)

(1) 日時 : 1973年 12月6日

(2) 出席者 : 7部処 12名

(3) 議題

① Clearing Center 機能의 内容에 관하여

② 設置擴張의 手順에 관하여

第7回 (統計關係法制度 週邊問題 作業市会 第2回)

(1) 日時 : 1973年 12月18日

(2) 出席者 : 9部処 16名

(3) 議 題 :

著作權等の 檢討에 關하여

第 8 回

(1) 日 時 : 1974 年 1 月 17 日

(2) 出席者 : 13 部 処 26 名

(3) 議 題 : 1973 年度 研究結果에 關하여

第 9 回

(1) 日 時 : 1974 年 2 月 27 日

(2) 出席者 : 10 部 処 18 名

(3) 議 題 : 1973 年度 統計資料의 蒐集, 利用에 關한 調査研究
報告 (等) 에 關하여

2. 統計資料의 利用과 著作權

(이 報告書는 總理府 統計局의 文部省 文化 處, 文化 部, 著作權 課,
佐佐木 正峰 氏에 執筆 依頼한 것이다.)

統計 Date Bank 는 統計資料를 蒐集, 蓄積하여 所要處理를 한뒤
使用者에게 提供하는 것이며 이 活動을 統計資料의 著作物性, 그
處理過程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使用등을 通하여 著作權問題
와 깊이 關係하고 있다.

以下 統計資料 利用에 隨伴하는 著作權 問題에 關하여 檢討하기
로 한다.

1. 統計資料의 著作物性

統計資料는 調査對象에 關하여 個別資料와 그 中間集計인 綜合資料 및 이를 集計하여 얻은 結果資料로 分類할수가 있지만 이들이 著作物인가 아닌가는 問題가 된다.

著作物에 關하여 著作權法은 第2條第1項 第1號에서 「思想 또는 感情을 創作的으로 表現한것으로 文芸, 學術, 美術 또는 音樂의 範圍에 屬하는것을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即 著作物을 思想, 感情의 表現 그것이지만, 表現을 創作的이어야만 한다.

이 創作性은 他人의 表現을 模倣하지 않고 作者가 独自로 表現한것이 認定되어 結果적으로 他人의 表現과 同一한것이 있어도 別個의 著作物으로써 著作權法上의 保護를 받는다.

어떤 作品이 著作物인가 아닌가는 前記定義에서 個個別로 具體的으로 判斷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統計資料에 關하여는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수 있다.

(1) 個別資料

個別資料란 統計調査의 調査事項을 컴퓨터에 人力하는 것에 의하여 磁氣테이프에 의하여 記錄된 資料를 말한다.

一般的으로는 誤謬資料의 處理를 거치지 않고 磁氣테이프에 記錄된 資料를 말한다.

個別資料는 通常, 調査表上의 資料를 “펀치카드”나 “마크카드” 상에 옮겨 이 “카드”上의 資料를 磁氣테이프에 記錄하여 作成

되지만 이 調査表는 著作物인 경우가 많다.

統計調査는 各種調査目的에 必要한 特性을 綜合的으로 把握할수 있도록 設計되어야하며 調査表는 이 要請에 符合되도록 創意 研究 되어야 할 경우가 많고 따라서 調査表 作成者의 思想內容을 創作的으로 表現한 學術의 範圍에 屬하는 著作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調査表 各個의 調査事項을 分離하여 視察할때는 日常볼수있는 事項을 列舉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思想內容을 創作的으로 表現하고 있다는것을 肯定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볼수있으나 調査事項의 精神的 努力이 加하여지고 独自の인 考察을 內包하고 있다고 볼수있는 경우의 當該調査表는 著作物이다.

調査表는 이러한 見地에서 著作物性を 認定할수있는 例가 적지않다고 생각되지만 이 點에 關하여 著作権法은 「編輯物으로써 그 素材의 選擇 또는 配列에 의하여 創作성을 띄고있는것은 著作物으로써 保護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第12条第1項)

이것이 編輯著作物이며 編輯者가 一定한 計劃을 세워 全体로서의 特定目的에 提供하기 위하여 素材를 選擇 配列함으로써 作成된 百科辭典, 選集 등이 그 典型的인 例이지만 判例를 보면 職業別 電話番號簿 또는 訴訟日誌등도 編輯著作物일수있다고 判示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指定된 方式에 따라 記載되어있는 個個의 數值나 記號自体(調査表上的 資料)는 著作物이 아니다.

이러한 數值나 記號는 一定한 目的下에 配列함으로써 처음으로

創作的인 表現이 될수있으며 個個의 價値나 記號만으로는 思想의 表現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個別資料는 이 調査表上의 資料를 수록한 方式에 따라서 磁氣테이프에 記錄한것이지만 個別資料는 調査表上의 資料를 機械的으로 記錄함으로써 自動的으로 作成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創作性이 加하여지지 않기때문에 著作物은 아니다.

個別資料의 作成에 있어 通常, 誤謬資料의 修正이 行하여지며 이 修正이 個別資料의 價値를 높이는것은 勿論이지만 이 경우에도 思想의 表現이라고는 볼수없다.

(2) 結果資料

結果資料란 結果表의 印刷樣式에 合數하도록 項目別로 編輯되어 磁氣테이프에 記錄된 資料를 말한다.

結果資料는 一定目的下에 數値를 作成하여 이를 一定한 形式으로 整理한것이며 結果資料 作成者의 思想內容을 創作的으로 表現한 學術範圍에 屬하는 著作物인 경우가 많을것으로 보고있다.

더욱이 結果資料는 컴퓨터의 計算裝置와 制御裝置의 作動에 의하여 作成되며 그 内部記憶裝置에 入力된 後 磁氣테이프에 記錄된다

그 結果 資料가 内部記憶裝置 또는 磁氣테이프에 記錄되어있는 狀態는 人間은 知覺할수 없으며 著作權法 第2条第1項 第1號의 要件의 하나로써 「表現된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著作物이 되기 위하여는 人間의 思想 또는 感情이 어떤 表現手投(言語, 音符, 記號等)을 通하여 公衆이 直接享受할수있는 容觀的인 存在形

態가 되어있어야 하며 結果資料가 著作物이 되기 위하여는 結果資料가 產出되어 人間이 知覺할수있는 客觀的 存在를 獲得할수있는것을 要한다.

이 意味에서 볼때 “프린터”에 의하여 結果表가 作成될때 비로서 結果資料는 著作物이 된다고 말할수 있다.

이에 대하여 結果資料를 構成하는 個個의 數値自体는 이를 作成하는데 多大한 勞力과 費用을 要하며 그 價値가 높다고는 하나 前述한 바와같은 著作物은 아니다.

(3) 綜合資料

綜合資料란 個別資料를 基礎로하여 結果資料를 作成할때까지의 過程이며 必要에 따라 作成되며 磁氣테이프에 記錄된 資料를 말한다.

綜合資料에 관하여는 그 作成者가 相當히 研究하여 새로운 思考의 結晶体라고 認定할수있는 程度에 到達한것이라야 著作物이라고 할 수 있다.

2.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

(1) 既存統計資料蒐集 및 蓄積

統計 Date Bank가 既存統計資料를 蒐集, 蓄積하는 경우 通常 印刷物을 蒐集하여 當該統計資料를 磁氣테이프에 記錄한다.

이 行爲는 統計資料가 著作物인 경우에는 著作物의 複製에 該當한다.

이는 著作物의 複製가 著作物自体 또는 그 實質的인 部分을 有形的으로 再製作하는 行爲를 말하며 이에 의거 作成된 有體物을 媒介로하여 人間이 當該著作物을 直接 知覺할수있는 (펀치카-드, 마-크 카-드等) 것. 또는 機械裝置의 操作에 의하여 間接적으로 知覺할수가 있는 (磁氣테-프, 磁氣드람等) 것인가는 가리지 않는다.

더욱이 磁氣테-프의 作成에 있어 人力된 統計資料는 우선 컴퓨터의 內部記憶裝置에 記憶材의 磁氣的인 狀態로써 記憶되지만 이 記憶은 瞬間的이고 過度的인것이므로 作成된 有體物이 어느程度의 永續性 또는 安定性을 要하는가 하는 從來의 複製概念에 비추어 이 記憶을 著作物의 複製에 該當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統計資料를 얻기위한 事前段階에 該當되는 경우는 統計資料의 人力으로부터 產出에 이르기까지를 一連의 複製過程이라고 간주하여 統計資料를 內部記憶裝置에 記憶시키는 行爲를 著作物의 複製에 該當한다고 생각할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같이 統計 Date Bank 에 있어서 既存의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은 펀치카-드나 마-크카-드의 作成과 磁氣테-프에 記錄하고 때로는 內部記憶裝置에 記憶시키는 各段階가 著作物의 複製에 該當한다.

그렇다면 이 統計 Date Bank 의 行爲에 관하여 著作權이 미치지 되는가가 問題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統計 Date Bank 의 行爲가 著作物의 自由利用이 認定되는 경우인가 아닌가를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著作権法은 第30条에서 私的使用을 위한 自由複製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지만 이 경우의 著作物の 使用目的의 '限界는 家庭內에 準하는 限定된 範圍內的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는 非營利的인 私的인 少人數의 集合體에서 그 構成員間에 緊密한 關係가 있어 著作物을 使用하는 것이 最少限 必要하다.

따라서 最終的으로는 利用者에게 統計資料를 提供하는것을 目的으로 資料蒐集, 蓄積등을 하고 統計 Date Bank의 行爲는 私的使用을 위한 複製에 該當하지 않는다.

또 著作権法 第42条는 行政의 目的을 위한 自由複製을 規定하고 있지만 이를 위하여는 著作物이 行政의 目的을 위한 内部資料로서 必要할것이 要求된다.

統計 Date Bank는 國家機關이므로 特定部局에 있어서 内部行政事務執行의 必要性에서 少部數著作物을 複製하는 경우가 여기에 該當되지만 行政上 必要가 있다고는 하나 外部에 複製物을 配布하는 경우는 이에 該當되지 않는다.

따라서 統計 Date Bank의 行爲는 行政目的을 위한 複製라고 할수없다.

이와같이 統計 Date Bank에 있어서 統計資料의 複製에 관하여 自由利用이 認定되지 않는以上 複製權이 미치게 때문에 (著作権法 第21条) 統計 Date Bank는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에 있어 著作権者와 交渉하여 그 利用에 관하여 許諾을 받지않으면 안된다 (著作権法 第63条第1項)

이 契約은 通常有債契約이며 統計 Date Bank 는 著作者에 著作物 使用料를 支拂하게 되지만 그 額數에 關하여는 特別히 定한것이 없고 當事者間의 自由로운 意思決定에 맡겨지고 있다.

利用許諾을 받은 統計 Date Bank 는 統計資料를 使用하여도 著作權者로부터 著作權을 가지고 對抗할수 없는 權利-債權-를 取得하지만 許諾에 關제되는 利用方法 또는 條件 俾反하여 統計資料를 使用한 경우는 著作權 侵害가 된다. (同條 第2項)

따라서 統計 Date Bank 가 統計資料 利用許諾을 받은 경우는 단 단순히 그 蒐集, 蓄積뿐만 아니라 그 處理(集計 加工等을 말하며 著作物의 複製, 翻案에 該當하는 경우도 있다) 및 利用者에 對한 提供에 關하여도 著作權者의 許諾을 받아 두는것이 좋고 또 現實的으로 이것이 要請되고 있다.

그런데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에 있어 그 記錄物인 磁氣테이프等을 入手하여 複製를 하지않는 경우는 蒐集, 蓄積에 對한 著作權의 處理는 不要하다.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統計資料의 處理 또는 提供에 있어서 그 複製, 翻案을 行할때는 著作權者의 許諾을 얻어야 할것을 말할 必要도 없다.

다만 統計 Date Bank 는 國家機關이므로 다른 國家機關이 作成한 統計資料에 關하여는 著作權法上 自由利用할수가 있다.

(2) 새로운 統計資料의 作成

統計 Date Bank 가 스스로 作成한 統計資料에 關하여는 統計

Date Bank 는 當該 統計資料에 關하여 著作權을 自動的으로 取得한다. (著作權法 第 17 條第 2 項)

即 著作權法의 享有는 登錄, 納本, 著作權留保의 表示等의 手續은 一切 不要하며 또 著作物을 公表할 必要도 없다.

統計 Date Bank 가 統計資料 作成者가 되기 위하여는 다음 要件을 充足할 必要가 있다. 即 ① 統計 Date Bank 가 統計資料 作成을 構想하여 그 具體的인 作成을 從事者에게 命하는 일.

그런데 從事者란 統計 Date Bank 와의 사이에 使用關係를 가지고 있는 者. 即 實質的인 指揮監督關係에 있는 者를 말한다.

② 從事者가 職務上 義務로서 統計資料를 作成할것.

③ 統計資料를 統計 Date Bank 의 著作名義下에 公表하느냐 또는 公表豫定이 없어도 假令 公表한다면 統計 Date Bank 의 著作名義로 公表되는 것일것.

④ 統計資料 作成時의 契約, 勤務規則 기타 從事者를 그 作成者로 한다고 묶어져있지 않아야하며 統計 Date Bank 는 多數의 從事者에 의하여 作成된 統計資料뿐만 아니라 從事者 個人이 職務上 作成한 統計資料에 關하여도 그 作成者로써 著作權을 原始的으로 取得할수가 있다.

이 경우 統計 Date Bank 는 國家機關이기때문에 作成에 關계되는 統計資料에 關하여 大幅的인 著作權의 制限이 認定될 때가 있다 即 著作權法 第 32 條第 2 項은 「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機關이 一般에 周知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作成하고 그 著作名義下에 公表

하는 弘報資料, 調查統計資料, 報告書 其他 이 部類의 著作物은 說明材料로써의 新聞, 雜誌 기타 刊行物에 轉載할수가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그러한 著作物이 國民에 널리 利用되도록 企圖하고 있다.

轉載 可能한 範圍에서 制限은 없지만 統計資料 全部에 걸쳐도 좋지만 轉載는 自己 著作物中에 說明資料로써 全部를 轉載하여도 좋지만 轉載는 自己의 著作物中에 說明材料로써 即 報導, 批評, 研究등을 위하여 行하는 경우에 限定되며 統計資料만 轉載하는것은 許諾되지 않는다.

더욱이 統計資料의 自由轉載를 禁止할 必要가 있는 경우는 統計資料의 公表時 그 趣旨를 表示하여야 한다.

3. 統計資料의 處理

(1) 處理過程에 있어 統計資料의 作成

統計 Data Bank 에 있어서 統計資料處理에 관하여는 蒐集, 蓄積한 統計資料를 그대로 利用者에게 提供하기 위하여 處理 또는 蒐集, 蓄積한 統計資料를 集計, 加工하여 利用者에게 提供하기 위한 處理가 있다.

前者의 處理過程에 있어 統計資料는 內部記憶 裝置에 記憶되지만 이를 著作物의 複製에 該當된다고 해석할 餘地가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後者에 관하여는 集計 加工에 의하여 作成된 統計資料가 著作物

인가 아닌가가 問題가 된다.

當該 統計資料가 著作物이 되기위한 條件은 다음과 같다.

첫째 編輯著作物인 경우이며 既存 統計資料를 素材로하여 그 選擇 또는 配列에 獨自의인 考察이 加해져 이 點에 대한 創作的인 表現을 看做할 수있는 統計資料가 이에 該當한다. (著作權 第 12 條第 1 項)

이 경우 素材로 使用되는 統計資料가 著作物일때는 그 著作權이 作用한다. (著作權法 第 21 條)

둘째 2 次的著作物인 경우이며 著作物인 統計資料를 翻案함으로써 作成한 統計資料가 이에 該當한다. (著作權法 第 2 條第 1 項 第 11 號)

翻案이란 小說을 脚本化하든지 小說을 兒童趣向의 읽을거리로 改書한다든지 또는 小說을 要約하는 경우와 같이 原著作物의 主題, 줄거리 등의 “內容”을 간직하면서 그 “形式”에 變更을 加하여 새로운 著作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統計資料를 原著作物으로써 利用하는 경우 새로운 著作物의 作成을 隨伴하지 않는 單純한 修正增減인가 아니면 새로운 著作物을 만드는 翻案인가 그 境界는 애매하다. 그러나 修正增減이 獨自의인 考察이 되기위하여는 處理에 의거 作成된 統計資料가 原著作物인 統計資料와 別個의 精神的勞作의 結果로 認定되는 程度에 屬하고 있는것은 2 次的 著作物이라 할수있다.

이때 原著作物으로써 利用되는 統計資料의 著作權이 作用된다. (著作權法 第 27 條)

그리고 處理에 의하여 作成된 統計資料가 單純히 修正增減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原著作物인 統計資料의 著作權이 作用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著作權法 第21條)

세째 獨立된 著作物인 경우로 著作物인 統計資料에서 “아이디어” 其他의 示唆를 받아 作成된 統計資料 및 기타 統計資料의 數値만을 抽出하여 새로이 作成된 統計資料등이 여기에 該當한다.

前者는 이른바 他著作物의 自由利用이라고도 할수있으며 翻案에 의한 利用과 境界를 긋는것은 困難하지만 利用된 著作物의 個性인 特徵이 利用한 著作物의 本質的 特徵으로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것은 완전히 獨立된 著作物이라고 할수 있다.

著作物의 個性이란 著作物作成者가 独自の 思想的 表現이며 定義公理, 理論, 學說등의 內容은 包含되지 않는다.

處理에 의하여 作成된 統計資料가 著作物인 경우 著作權은 그 作成者인 統計 Date Bank 가 享有하지만 當該 統計資料가 編輯著作物 또는 2次的인 著作物일때는 그 利用에 관하여 그 素材인 統計資料의 著作權에 마친다.

即 著作權法은 第12條第2項에서 編輯物을 著作物로서 保護하는 것은 그 部分을 構成하는 著作物의 著作權의 權利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뜻을 規定하고 또 第28條에 2次的著作物의 原著作物의 著作權은 當該 2次的 著作物의 利用에 관하여 當該 2次的 著作物의 著作權者가 가지는 權利와 同一한 種類의 權利를 享有하는것. 즉 2次的 著作物의 利用에 관하여는 그 著作權者의 權利와 原著作

물의 著作자의 權利가 重疊하여 作用한다는 趣旨를 規定하고 있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保護

統計 Data Bank 에 있어서 統計資料의 處理는 컴퓨터에 의하여 行하여진다.

이 경우 使用되는 프로그램은 스스로 作成하는 것과 他處에서 購入하는 것이 있지만 프로그램의 開發을 위하여 長期에 걸쳐 많은 勞力과 多額의 資金이 投入되고 있는 것 등을 背景으로하여 프로그램의 有効 適切한 保護方策에 關하여 檢討가 進行되고 있음을 考慮하여 프로그램의 著作權法에 의한 保護에 關하여 略述코자 한다.

프로그램은 具體的인 存在形態로서 종이, 카-드, 磁氣테이프 등의 有体物에 記錄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自体는 프로그래밍 言語로 表現된 「指令」이라고 하는 無形의 것이므로 그 著作物性이 問題가 된다.

덧붙여서 著作物을 統計資料에 대하여 보면 著作物은 統計資料를 記錄한 有体物으로써 磁氣테이프가 아니고 磁氣테이프에 記錄된 無形의 統計資料(思想의 表現) 그것이다.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대한 指令이며 하나의 結果를 얻을 수 있도록 몇개의 命令을 組合시킨 것이며 프로그램의 大部分은 命令의 組合方法에 作成者의 學術的 思想이 具體化되어 命令의 組合方法 및 그 表現은 그 作成者에 의하여 個性的인 相異점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思想內容을 創作的으로 表現한 것으로 學述의 範圍에 屬하는 著作物이 될 수가 있다. (著作權法 第2條第1項)

第1號)

또한 프로그램은 Flow Chart (프로그램의 理論構造를 나타내는 흐름)를 근거로 作成되지만 하나의 Flow Chart로 부터 多數의 프로그램을 作成하는 것이 可能하게 되며 프로그램은 通常 그 自体로서 獨立된 著作物인 것이다.

프로그램의 保償에 관하여는

- ① 프로그램을 無斷 複製하는것.
- ②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作成을 위하여 無斷使用하는것.
- ③ 프로그램을 無斷讓渡하는것.
- ④ 프로그램을 無斷 實施하는것

등으로 부터 프로그램作成者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으나 ①과②의 行爲는 著作權에 의하여 規制할수가 있다.

即 複製權은 著作權中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權利이며 프로그램은 印刷複寫하는 行爲는 勿論 프로그램은 펀치카드, 磁氣테이프 등에 記錄하는 ①의 行爲를 規制할수 있는 權利이다.

또 프로그램作成을 위한 既存 프로그램을 複製하는 行爲에 관하여는 当然 複製權이 미치므로 複製權은 ②의 行爲中 一部分을 規制할수도 있다.

②의 行爲의 錢金部分은 翻案權에 의하여 規制할수가 있다.

即 翻案權은 프로그램의 基本的인 줄거리, 組合等を 維持하고 그 表現을 變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作成하는 行爲에 미치는 權利이다.

그리고 複製權은 프로그램의 프로그래밍言語를 變更하는 行爲에 미친다.

프로그래밍言語는 어휘도 적고 文法도 簡單하여 그 變更에 創作性이 加하여질 餘地가 없기때문에 프로그래밍 言語를 變更하는 行爲가 著作物의 複製에 該當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ource Program (사람이 쓴 最初의 프로그램) 을 Compiler 等の 變換 프로그램에 의하여 Object Program (機械語의 프로그램) 으로 變更하는 行爲에도 複製權이 미친다.

그러나 ③과④의 行爲는 著作權에 의하여 規制할수가 없다. 卽 프로그램의 頒布란 有債이나 또는 無債이나를 不問하고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公衆에 讓渡하고 또 貸與하는것을 말하지만 프로그램에 관하여 頒布權을 認定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実施란 컴퓨터에 의거 프로그램을 実行하는 것을 말하며 프로그램의 內容이되고있는 一定한 方法을 使用하는 行爲이지만 表現形式의 保護라고 하는 著作權의 性質上 프로그램 実施權은 著作權의 內容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實施過程에 있어서 内部記憶裝置에 프로그램記憶을 著作物의 複製에 該當한다고 해석할수는 없으므로 프로그램의 實施에 著作權을 作用시킬수는 없다.

③ 및 ④의 行爲를 著作權法으로 擔保하기 위하여는 프로그램의 作成者에게 頒布權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使用許可 契約 当事者 以外の 者가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하는것을 当事者の 善意 惡意를 가리지 않고 直接規制할수가 있으므로 第3者에 의한 프로그

램實施를 事實上 禁止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프로그램 實施權이 實際的 意義를 가지고 있는가 프로그램의 複製를 手반하지 않는 實施(例를 들면, 프로그램 使用許可 契約의 當事者 以外의 者가 프로그램을 벌려서 實施)인가를 考慮할 때 한층 더 妥當性을 가진다.

프로그램複製를 手반하는 實施는 複製權에 의하여 프로그램實施를 事實上 現制할수 있다.

4. 統計資料의 提供

統計 Data Bank는 使用者의 要請에 應하여 統計資料를 提供하게 되지만 提供되는 統計資料가 著作物인 경우 다음과 같은 行爲에 대하여 著作權이 미친다.

첫째 統計資料를 印刷 또는 鋳공 등의 形式으로 有形的으로 再製하여 提供하는 行爲는 著作物의 複製에 該當하며 複製權이 미치는 (著作權法 第21條).

統計資料가 電氣通信回線에 의거 傳達된 場所에 있어 그 印刷物 등이 提供되는 경우도 著作物의 複製에 該當된다.

둘째로 統計資料를 音聲의 形式으로 無形的으로 再製하여 提供하는 行爲는 著作物의 口述에 該當하며 口述權이 미친다. (著作權法 第24條).

即 著作權法이 規定하는 口述이란 本來 自然人을 念頭に 둔 것이지만 著作物 利用의 社會的, 經濟的 實態에 對應하도록 著作物을

音聲에 의하여 傳達하는 行爲를 말한다고 널리 해석하여야 하며 統計資料를 音聲의 形式으로 提供하는 行爲는 著作物의 口述에 該當한다.

또 統計資料의 音聲에 의한 提供을 不特定 또는 特定多數人에게 들리게 하는 경우는 어떤 個人의 申請에 따라 行하여진 統計資料의 音聲에 의한 提供이라 할지라도 著作物을 「公的으로」口述하는 行爲라고 할수있는 것을 그 理由로 한다.

다만 著作權法은 口述에서 著作物의 口述을 電氣通信設備를 利用하여 傳達하는 行爲中 放送 또는 有線放送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하고 있으므로 統計資料를 電氣通信回線에 의하여 傳達하고 音聲의 形式으로 公衆에 提供하는 行爲는 著作物의 有線放送에 該當되며 有線放送權이 미친다. (著作權法 第23條第1項)

세째 統計資料를 電氣通信回線에 의하여 傳達하고 影像의 形式으로 公衆에 提供하는 行爲는 著作物의 有線放送에 該當하며 有線放送權이 미친다. (著作權法 第23條第1項)

그러나 統計資料를 影像의 形式으로 無形的으로 再製하여 提供하는 行爲를 著作權에 의하여 規制할수는 없다.

이는 이러한 行爲가 著作權法이 規定하는 上映에 該當하는것중 上映權이 映画의 著作物 및 映画의 著作物을 근거로 複製되고 또 翻案되고 있는 著作物에 限하여 認定되는 權利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著作權法第26條, 第28條)

統計Date Bank가 使用者에게 提供한 印刷物등의 有体物에 記錄

한 統計資料를 使用者가 複製하여 第3 者에게 提供하는 行爲는 著作權에 의하여 規制할수가 있다. (著作權法第21條)

또 使用者가 著作權法第30條의 規定에 근거하여 私的使用을 위하여 作成한 複製物을 第3 者에게 提供하는 行爲도 著作物의 複製을 行한것으로 간주된다. (著作權法第49條 第1項第1號)

이와같은 使用者의 違法한 再提供에 대하여 著作權의 侵害를 主張할수 있는 者는 著作權者에 限하기 때문에 (民事上의 措置-著作權法 第112條, 民法第709條, 710條, 刑事上의 措置-著作權法第119條, 第123條) 統計 Date Bank는 著作權을 갖지않는 統計資料에 관하여는 使用者에 對하여 아무런 權利主張을 할수없게 된다

이와같은 경우에 對備하여 統計 Date Bank는 統計資料 提供契約 등으로 使用者가 統計資料의 再提供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을 다짐하여 두는 方案도 생각할수 있다.

5. 統計 Date Bank 活動을 위한 布石

統計 Date Bank는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 處理 및 提供의 各段階에서 著作物을 大量으로 또한 頻繁하게 利用하는 巨大한 著作物의 使用者이며 國家以外의 者가 作成에 關聯한 著作物인, 統計資料 및 當該 統計資料를 素材로하여 統計 Date Bank 또는 他國의 機關이 作成한 編輯著作物 또는 2次的 著作物인 統計資料에 관하여는 그 利用을 할때마다 事前에 著作權者의 許諾을 얻지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統計 Date Bank가 統計資料를 利用할때마다

그 著作權者의 許諾을 얻는것은 煩雜하며 事實上 困難한것을 考慮하면 統計 Date Bank는 統計資料의 蒐集, 蓄積段階에 있어서 그 處理 提供을 包含한 統計資料의 利用許諾을 그 著作權者로 부터 얻지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統計 Date Bank에 있어서는 大量 統計資料가 蒐集, 蓄積되어 狀來 漸次로 그 量的으로 增大될것을 充分히 豫想할수 있다.

여기서 現代社會에 있어 統計 Date Bank의 活動이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分野에서 遂行하여야할 主要한 役割을 考慮하여 著作權者의 利益을 不當하게 害치지 않는 範圍에서 統計 Date Bank에 있어서 統計資料의 簡便한 利用을 위한 方案에 關하여 檢討할것이 要請된다.

이에는 다음의 두가지 方式을 생각할수 있다.

(1) 包括 許諾方法

이것은 著作權者의 團體와 統計 Date Bank間에 있어서 統計資料의 利用에 關하여 契約을 締結하여 그 契約의 內容 및 條件의 範圍內에서 統計 Date Bank는 統計資料를 使用함과 同時에 著作權者의 團體에 一定한 使用料를 支拂하는 方式이다.

이 方式의 問題點은 日本에 있어서의 著作權者의 團體 特히 Date Bank에 있어서 利用되는 學術的인 著作物의 著作權者 團體가 完全히 組織되어 있다고 할수없으며 또한 國際著作權條約에 加入하고 있는 主要한 國家(美國, 英國, 프랑스, 獨逸, 이태리, 소련등)

에 있어서도 著作権者団体는 거의 結成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現段階에 있어서 早急하게 이 方式을 導入하는 것은 困難하지만 著作権者 団体が 世界的 規模로 形成되는 경우 이 方式은 著作権者의 利益을 해치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強制許諾制, 法定許諾方式

強制許諾制度란 著作물이 發行된 후에 著作者로 부터 著作물을 利用할수있는 許諾을 얻을수 없는 경우에 統計 Date Bank가 權限있는 当局의 許可를 얻어 補償金を 著作権者에게 支拂하여 著作물을 利用하는 制度를 말한다.

著作権者와 協議不潤 또는 協議不能을 前提로 하는 점이 法定許諾制度와 다르다.

이 方式의 問題點은 一般的으로 強制, 許諾制度 또는 法制許諾制度의 導入에 관하여는 國際著作権 條約上의 問題가 있으며 公益性이 높은 限定的인 著作者의 利用에 限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教科用 圖書에 著作물을 掲載하는것等)

統計 Date Bank의 活動은 學術의 進展等に 크게 貢獻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方式의 採用에 관하여 國際적으로 아직 檢討되어 있지않는 現在 이 方式을 導入하는 것은 時期尙早이다.

統計 Date Bank는 情報化 社會에 固有한 새로운 行政서비스의 하나이며 그 活動의 進展이 著作물의 利用을 不可随하게 增加

시키는 것을 考慮하여 統計 Date Bank 의 統計資料 提供에 期待하는 社会的 要請과 著作権者의 個人的 利益의 調整을 圖謀하여 理想的인 著作物 利用体制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統計 Date Bank 는 著作権者間에 統計資料 利用에 관한 規定을 作成함에 있어 積極的인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다.

第2編 Data Bank의 基本体制와 周边問題

第1章 統計 Data Bank의 基本体制 (本分科会)

- 統計 Data Bank . Net Work의 形成 -

序 文

統計 data 의 收集・利用分科會에서는 研究事項으로 72年度의 第1 亞分科會가 擔當했던 統計 data bank 의 基本問題에 關한 研究를 이 어받아 情報 net work system 에 對해서 研究했다 .

72年度에 取扱했던 基本問題는 다음과 같다 .

- (1) 統計 data 의 그 收集에 對해서
- (2) 統計 data 의 提供에 對해서
- (3) 國家의 data 收集 system 과 地方公共團體와의 關係에 對해서
- (4) 統計 data bank 의 構成에 對해서

한편 (4)의 統計 data bank 의 構成에 對한 概略은 다음과 같다 .

- ※ 統計 data bank 에 對해 各部處가 共通理念을 갖을 必要性
- ※ 統計 data bank 의 構成과 分散型 data bank 에의 指向
- ※ 情報 net work 構成의 組織 Pattern (형태)

@ Pattern 1 (형태 1)

各 部處의 統計 data 를 1個場所에 集中해서 利用者에게 提供한다 .

@ Pattern 2 (형태 2)

統計 data 의 收集・蓄積은 各部處에서 行하고 統計 data 및 統計情報源의 提供 service 나 clearing center 에서 一括 해서 行한다 .

@ Pattern 3

統計 data의 收集 蓄積 提供 Service는 各部處에서 行하고 統計情報源의 提供 service는 clearing center에서 行한다.

以上 3個 Pattern中, Pattern 2와 3이 研究對象으로 되었다.

※ Network에 있어서 Clearing center가 다하는 役割의 重要性의 指摘

72年度의 研究에서는 國家의 統計 data bank의 存在方式으로서 集中型 data bank와 分散型 data bank가 檢討됐다. 集中型 data bank란 各部處의 統計 data를 한場所에 集中해서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system이고 分散型 data bank란 各部處마다 別個의 data bank를 갖고 共同利用은 network를 使用하는 system을 말한다.

集中型과 分散型을 現時點에서 比較 檢討해 보면 于先은 分散型을 採用하는 것이 妥當하다는데에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다.

分散型을 取하는 境遇 가장 重要한 問題는 network의 形成이다. 따라서 73年度는 이 network形成을 最優先테마로써 前年度에 比하여 보다 詳細한 檢討를 加한다는 立場에서 研究를 했다.

取扱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 network의 構成에 對해서

@ 統計 data의 利用狀況의 把握

@ network 構成單位의 役割의 考察

@ Clearing center機能의 明確化

@ network에 關한 其他檢討事項의 考察

1. Network의 形成에 對해서

Network은 몇個의 點과 點을 相互 連結하는 線으로서 構成된다. 統計 data bank에 있어서의 network은 이 點에 該當하는 것이 各部處의 data bank이며 線에 該當하는 部分이 統計 data의 흐름을 意味한다.

一般的으로 network라는 말은 on line에 依한 情報交流의 連結活動을 말하는 境遇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on line 接統의 與否를 不問하고 統計 data를 Computer readable 한 媒體로 交換利用의 觀點에서 network를 生覺한다.

即 統計 data의 交換利用에 依한 統計 data의 흐름이 없이는 network의 第1條件은 充足되지 않는다. 이 흐름을 形成하고 있다면 恒常적으로 統計 data의 交換이 있어야 한다. 恒常的이라 함은 月1回 또는 4半期에 1回라는 것으로도 可하다. 적어도 1回째의 新規手續을 마친 후에는 入手할 때마다 簡單한 手續으로 足하여야 한다. 萬一 그때마다 新規手續과 같은 일을 한다면 各回의 交換으로서 作業은 完結된 것으로 看做될 것이다. 때문에 다음까지의 協調關係는 繼絶된 것으로 解釋된다.

第2의 條件은 最少의 連結機關이 몇個인가 라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그것을 二機關이라고 생각한다. 흐름을 規定하자면 最少限 두

점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net는 여러 점을 相互 結合해서 이루어진 2点間의 連結의 全体인데 이 最少의 두점이 있으면 統計data의 흐름을 形成할 수가 있다. 이곳에 data交換이 存在할 때 network의 하나의 條件이 充足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現在 施行中인 部處間등의 磁氣 tape에 依한 統計data의 交換狀況을 보면 2点間의 連結이 몇個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다. 各其가 經常的으로 行해지고 있는限 가장 小規模의 network이 實現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本分科會의 問題는 이같은 小規模 network을 보다 發展시켜 各部處間의 全体network의 形成을 생각한다. 이 境遇 考察의 方法으로서 network 全体의 構成을 問題로하는 境遇와 그것을 構成하는 各 單位를 問題로하는 境遇의 둘이 있다.

그곳에는 全体network 形成에 있어서의 共通機能의 問題와 各構成 單位의 獨自의 機能의 問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前者의 問題를 中心으로 考察한다.

1) 統計data bank의 network 構成

統計 data bank 機能의 存在方式에서 가장 基本이 되는 問題는 集中型 data bank인가 分散型 data bank인가이다. 72年度의 研究에서는 于先 分散型을 採用하는 便이 妥當하며 分散型을 採択하는 境遇 가장 重要한 問題가 되는 것이 統計 data bank 機能의 network 構成이라 했다.

이때문에 統計 data bank의 network 構成을 考察함에 있어서

分散型 data bank 로써 分科會는 다음의 두가지 組織 Pattern 을 檢
討했다 .

① Pattern 2 (형태 2)

統計 data 의 收集・蓄積은 各部處에서 行하고 統計 data 및
統計所在源 情報의 提供 service 는 clearing center 에서 一括處
理한다 .

② Pattern 3 (형태 3)

統計 data 의 收集・蓄積・提供 service 는 各部處에서 하고
統計所在源情報의 提供 service 는 clearing center 에서 한다 .

이 두가지 組織 Pattern 의 基本的 差異는 別表와 같다 .

	統計 data 의 收集蓄積	統計 data 의 提供 service	統計所在源情報의 提供 service
Pattern 2	各 部 處	Clearing centre	clearing centre
Pattern 3	//	各 部 處	//

即 Pattern 2 와 Pattern 3 의 根本的 差異는 統計 data 의 提供
service 의 問題이며 , 이로 因해서 clearing centre 가 保有하는
機能 또는 各部處의 役割이 影響을 받는다 .

73 年度에는 進一步하여 Pattern 2 와 Pattern 3 의 中間型의
새로운 Pattern 을 考慮해야 한다는 意見이 提示됐다 . 또한
Pattern 2 에 依하면 data 의 提供은 그 全部를 1 個場所에서

行하게 되어 非現實的이다. Pattern 3 만을 考察하면 足하다는 意見도 있었다.

Pattern 3 을 取하는 理由로는 network에 있어서의 clearing centre는 그 機能으로써 統計所在源情報의 提供 service에 限定되어야하며, 이에 計算 center의 機能, data 提供機能 其他機能 등을 追加하면 統計 data의 集中化를 促進하고 따라서 分散型指向의 精神에 違背되기 때문이다.

Pattern 2와 3의 中間型인 Pattern 4를 取하는 理由는 各部處의 個別 data bank 体制를 基礎로해서 機能不足의 data bank에 關해서는 各構成單位에 걸치는 統計 data의 處理를 代行하는 등 構成單位 및 利用者가 보다 便利하게 되기 때문이다.

Pattern 4는 圖示하는 바와 같다.

이 組織 Pattern에서는 統計 data의 收集·蓄積은 各部處가 統計所在源情報의 提供 service는 clearing center가 各其 行한다. 또 統計 data의 提供 service에 關해서는 各部處는 自体部處의 行政目的上 作成한 個有의 統計情報 및 其他의 保有統計를 取扱하고, clearing center는 clearing 活動을 通해서 얻은 各部處에 걸치는 加工統計등을 取扱한다.

이 곳에서는 network을 構成하는 모든 部處가 統計 data의 供給側이며, 反對로 統計 data의 供給을 하지 않는限 network 構成單位 日수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實際로는 모든 部處로하여금 data 提供을 義務지우는 것은 아니다.

將次 利用部處群에 있어서도 當然히 供給된 統計 data 를 加工하여 利用하고, 이들 data 도 漸次 蓄積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利用型部處群도 이들 data 를 使用해서 提供하는 일도 充分히 考慮되므로 그 때에는 다시 提供・利用複合型部處群으로서 network 에 編入될 것이다.

또한 利用型部處가 提供・利用複合型部處로 移行하는 段階에 있어서는 各種 必要한 機能을 Clearing centre 가 代行하게 될 것이다.

2) Network 形成의 推進

全體的 network 의 形成에 있어서는 既存의 (1)規模 network 을 中心으로 生覺하는 境遇와 人爲적으로 network 形成을 위한 model 을 生覺하는 境遇가 있는데 後者の 境遇 現實로 있는 것을 無視하게 되는 것이므로 考察을 하더라도 實現性은 적다. 그러므로 前者에 對해 考察하기로 한다.

Network 形成을 推進하는 境遇 分科會에서는 当面需要가 높은 統計 data 를 中心으로 各構成單位의 그需要를 充足시키는 體制의 確立을 生覺한다.

여기서 新規로 必要로되는 統計 data 를 包含해서 各構成單位의 潛在的 needs 를 充足시키는 方向으로 推進擴充해 간다.

이를 위해서는 于先 統計 data 를 提供하고 있는 部處, 統計 data 를 必要로하는 部處에서 連結되고 있는 既存의 小規模 network 에 다시 그 data 를 必要로 하는 他部處의 參加를 促進한다. 逆說의 으로 既存의 小規模 network 에의 他部處의 加入 促進인 것이다.

이 境遇 既存의 小規模 network이 形成되었을 때의 必要性, 條件 등을 明確히 하여 他部處의 加入에 있어서의 參考로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未參加部處는 當該統計 data에 關해서 顯在的 needs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무슨 理由로 加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등의 事情을 分明히해서 加入을 위한 條件을 考察해야할 必要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 data 提供側, data 利用側의 個別事情도 있을 것이고, 加入에 있어서의 對話의 缺如, 小規模 network의 存在 不明, 加入條件의 合意未達 등의 理由가 있을 것이다.

이들 狀況을 勸案하고 network 形成의 推進에 있어서는 다음을 考慮해야한다.

- ① 既存의 小規模 network이 形成된 環境條件, 當事者間條件 또는 形成過程에서의 諸問題를 理論적으로 把握한다.
- ② 또 小規模 network에의 加入에 있어서 加入條件을 理論적으로 研究하는 場을 設置한다.
- ③ 나아가서 이들 諸問題 諸條件에 對해 既存 network의 補充에 있어서 必要하지만 困難한 條件, 例컨데 技術的 勞力的 등의 條件에 對해서는 이것을 代行處理하는 機關으로서의 clearing centre 設置 등의 研究를 한다. 等일 것이다.

또한 network 形成推進에 있어서 各構成單位에 있어서의 窓口體制는 重要한 問題가 된다. 이를 위한 研究가 必要하게 된다.

이 같은 推進에 依해서 当面, 顯在 needs 를 充足시키는 方向으로 Network 를 形成하고 또한 潛在的 needs 에 帰因하는 新規 data 를 包含해서 network 을 拡充해 간다.

2. Network 의 構成單位에 對해서

이곳에서 network 의 構成單位는 network 에 參加하는 各部處의 data bank 라고 生覺한다. 各構成單位는 network 의 한單位로서 各單位에 共通되는 機能과 그 單位가 屬하는 各部處의 個別業務上 必要한 特別機能을 갖게 된다.

이들 機能은 多樣하며, 그 內容은 network 의 構成單位로서 어떠한 役割을 갖는가에 依해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지만 一般的으로 必要機能으로 定하여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列擧하는 일이 重要하므로 于先 各構成單位에 있어서의 統計 data 의 利用과 提供現狀을 살펴보자.

1) 統計 data 의 利用과 提供 Pattern (형태)

部處別로 外部機關作成統計의 利用狀況과 利用希望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表는 各研究員이 그所屬部處 所管分에 對해 把握한 統計 data 의 流通量 以外에 他 研究会 등에서 整理한 것을 加味한 것이다.

(詳細한 것은 卷末 Page 參照할 것)

表1. 磁氣 tape data의 利用統計數와 外部機關數

利用機關名 收集對象	現 在		將 來	
	統 計 數	外部機關數	統 計 數	外部機關數
總 理 府 統 計 局	0	0	19	(3) 10
行 政 管 理 庁	4	4	2	2
經 濟 企 劃 庁	3	3	(4) 40	(4) 12
法 務 省	1	1	1	1
國 稅 庁	0	0	2	2
厚 生 省	1	1	0	0
農 林 省	3	3	(4) 18	(4) 10
通 産 商 業 省	5	4	(1) 20	(1) 8
運 輸 省	3	3	6	3
郵 政 省	(1) 1	(1) 1	(3) 17	(3) 8
勞 動 省	1	1	7	4
建 設 省	3	1	(1) 12	(1) 7

註：外部機關數에는 民間의 統計供給機關을 包含한다.

() 内는 中央部處 以外의 機關分

表1에 依하면 自体部處以外의 所謂 外部機關作成의 統計 data를 磁氣 tape로 入手하고 있는 部處가 10餘個 있다. 이들 10個部處가 相對方 提供機關으로 부터 어떤 手續을 거쳐 入手했는지, 提

供側の 意圖는 当該機關에만 限定되는 것인지 또는 他部處에도 希
 望에 따라서는 提供하는지 등은 不明하지만 今後 相當한 潛在的
 needs 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表 2 . 統計 data 利用者로 본 作成提案者와의 關係

作成 提供 收集利用	總理府統計局	行政管理局	經濟企画庁	環境庁	法務省	大藏省	国税庁	文部省	厚生省	農林省	通商産業省	運輸省	郵政省	勞働省	建設省	自治省	最高裁判所 (防衛庁)	(外務省)	(日本銀行)
總理府統計局				○					○	○	○		○	○					○
行政管理局	○			○					○										○
經濟企画庁	◎		○							○	◎	○	○						○
環境庁	(不明)																		
法務省																			◎
大藏省	(不明)																		
国税庁	○																		○
文部省	(不明)																		
厚生省	○																		
農林省	◎◎			◎															○
通商産業省	◎	○		◎															◎
運輸省	◎																		◎
郵政省	○																		○
勞働省	◎	○																	○
建設省	◎	○																	○
自治省	(不明)																		
最高裁判所 (防衛庁)	(不明)																		○
(外務省)	○																		○
(日本銀行)	○																		○

註 1) 「其他」에는 例컨데 亜細亞經濟研究所, 日本貿易振興協會,
日本不動産研究所, 日本商工会議所, UN 統計局등을 包含한다.

註 2) 參考資料 - 2 附表부터 作成했다.

註 3) 記號說明

○印 : 統計 DATA 를 磁氣 tape 로 提供 또는 入手한 일이
있다.

○印 : 將來, 利用者側에서 入手하고 싶다.

◎印 : ○印 과 ○印을 合친것. 入手・提供活動의 繼續 与否
와는 無関

註 4) 괄호內 機關부터는 統計 DATA 의 收集利用分科會 研究員은
參加치 않고 있다.

이 needs 에 依하면 各部處間的 data 入手希望의 關係는 表 2
와 같다.

表 2 부터 各部處의 相互關係를 보면 各構成單位의 機能을 生覺하
는 境遇의 Hint로서 다음의 Pattern을 生覺할 수가 있다.

그 하나는 提供型이다. 即 利用要請을 받고 提供業務를 行하는
統計作成機關 例컨데 다음과 같다.

總理府統計局 (11 機關)

日本銀行 (8 ")

通商産業省 (7 ")

建設省 (7 機關)

農林省 (6 ")

이들 機關은 적어도 needs에 對해서 統計data의 提供機能을 整備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는 利用을 많은 機關에 期待하고 있는 利用型의 機關, 例컨데

經濟企劃庁 (8 機關)

總理府統計局 (7 ")

通商産業省 (7 ")

日本銀行 (7 ")

農林省 (6 ")

建設省 (6 ")

提供型에 比해서 經濟企劃庁이 追加됐을 뿐이다 .

이들 두가지 型에서 보면 적어도 經濟企劃庁은 表2에서 보는 限에서는 3 個機關으로 부터 提供을 期待받고 있는데 利用型을 中心한 色彩가 強하며 他 5 個機關은 提供型과 利用型의 兩面을 갖는다 .

따라서 이들 機關이 中心이 되어 統計data의 流通方法과 이에 付隨하여 必要한 手續面의 檢討를 한다면 이곳에서 얻어지는 結論은 他機關에도 適用시킬수가 있을 것이다 .

2) 構成單位에 있어서의 役割

network의 構成單位의 役割을 國家의 network全体가 要

請하는 問題에서 檢討하자면 組織과 機能面에서 考察할 必要가 있다. 組織面에 對해서는 後述의 「窓口體制에 對해서」에서 取扱하므로 이곳에서는 機能面에 對해서 考察한다.

于先 network 全體의 立場에서 어떠한 機能이 各構成單位에서 必要로 되는가를 보자. 卽 network을 通해서 提示되는 request를 받고 適合情報을 提供하기 까지의 一連의 作業에 對해서 各構成單位는

- ① 利用要請을 接受하는 窓口를 갖일 것 .
- ② 利用者의 希望을 考慮해서 可能한 限 利用하기 簡便한 形態로 處理할 것 등이 期待된다. 이를 위해서는
- ③ 兩者間에 所定의 手續을 行할 것 .
- ④ 約束事項이 있으면、確認(相互)할 것 .
- ⑤ 利用者와 提供者間에 協調關係를 樹立할 것 .

등에 對해 共通의 理解를 갖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

이들 要件을 받고 各構成單位가 具體적으로 어떠한 機能을 갖어야 하는가를 分明히 하여야 한다 .

①에 對해서는 request 受付業務와 統計data의 提供業務인 것이다 .

처음의 request에 對해서는 所定의 事務手續을, 繼續적인 request에 對해서는 이에 相應되는 簡便한 手續方法이 必要하며, 이 같은 方法이 各部處共通으로 定해져 있으면 더욱 좋다 .

이結果로 request가 經常적이면 network을 形成하게 되는 것

이다 .

또한 이들 業務를 實用化하자면 兩者는 서로 約定을 할 必要가 있고 또 이에 對해 相互 確認하는 일이 重要하며 窓口는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

②에 對해서는 data base의 作成, 維持 更新 管理 및 適合情報의 檢索, 加工分析計算, 編集, 出力등의 情報處理機能을 意味한다 .

이들 위해서는 外部로부터 利用要請이 높은 data일수록 早期整備와 提供實現이 期待된다 .

또한 이들 機能의 保有를 할수 없을 때는 後述할 clearing centre에 依한 代行業을 考慮할 수가 있다 .

以上の 役割을 network의 各構成單位에 共通되는 機能으로서 說明했는데 各其 利用者側으로부터 期待되는 것이다 .

이것을 받아서 提供者側이 이것을 全部 充足시킬 것인가는 各部處의 事情에 따라 다른 面이 있으므로 別個問題임을 指摘코자 한다 .

但 提供者側으로서 重要的 것은 擔當의 行政業務에 支障을 惹起시킬지 모르는 利用申請을 어떻게 處理하느냐 하는 것이다 .

利用者로서는 入手하기를 願하지만 提供者側으로서는 豫定業務의 狀況에서 直時 応하기 困難할 때도 있을 것이다 . 이 境遇 提供者側의 役割을 어느 程度까지로 생각하는가는 今後의 重要的 檢討事項이다 . 月別이나 4分期別의 data에 對해서는 提供者側에서 Schedule 할 수가 있을 것이나 單務的인 依賴에 對한 處理는 今後의 研究課題로 된다 .

3. Clearing Centre에 대해서

network構成에 있어서의 組織 Pattern 으로서는 Pattern 3 과 Pattern 4가 있다. Pattern 3에 있어서의 Clearing center는 그 機能으로서 統計所在源情報의 提供 service만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組織 Pattern 4를 前提로하여 考察키로 한다.

前提의 Pattern 4에서의 考察에 依해서 clearing center는 統計 data bank, network system에 있어서의 統計 data의 相互流通을 円滑히 하기 위한 機能을 갖는 것으로 生覺한다.

即 当面의 目的

- ① 潛在的 needs에의 対応을 圖謀하는 것.
- ② 이들을 通해서 統計情報의 流通에 寄与하거나 促進하는 일을 들 수 있다.

clearing center가 갖어야할 機能을 生覺할 境遇, 그 機能을 1個所에 集中해서 갖는 方法을 前提로하여 clearing center의 役割, 機能 및 推進에 對해 考察한다.

1) Clearing center의 役割

Pattern 4에 있어서의 clearing center는 利用者에 對해서 clearing 機能에 따라서 統計 data의 提供 service, 統計所在源情報의 提供 service를 하기로 했다.

이들 提供 service를 行하자면 各構成單位와 center에서 役割

과 機能의 分擔을 할 必要가 있다 .

clearing center의 役割에 對해서는 network을 通해서 各構成單位間에서 統計data를 利用하는 境遇 流通・利用을 促進시킬것 . 統計利用者부터의 利用要請에 對해서 各樣各色의 方法으로 対応할수 있을 것 . 또한 統計data의 供給者에 對해 人事(謝禮)措置를 積極的으로 講究할 것등이 指摘됐다 .

이들 役割은 單純히 Clearing centre 뿐 아니고 network의 各構成單位에도 共通되는 要件인 것이다 . 그러나 各構成單位中에서 共通的인 技術要件을 充足시키지 아니하는 機關의 data를 利用할 수 없을 때는 clearing center는 各構成單位를 代身해서 이들 特定의 統計情報에 對해 提供service를 擔當할 必要가 있다 . 또한 各構成單位가 共通으로 할 必要가 있는 業務 例컨데 data conversion등을 處理하는 일이나 統計情報의 利用을 阻害하고 있는 其他要因등을 除去하는 것등의 役割을 擔當하는 일이 必要하다 .

即 clearing center의 役割은 代理業務, 共通業務 및 其他 流通促進業務를 遂行하는 것이다 .

2) Clearing Center의 機能

clearing center가 그 役割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各種 機能을 必要로한다 . 即 그것은 center自身을 管理運營하기 위한 機能과 center와 各構成單位間에서 統計情報의 收集・利用에 必要한 機能으로 大別된다 . 前者의 管理運營機能은 center가 各構成單位와 어떻게 連繫되는가에 따라 決定된다 .

이 곳에서는 後者の 統計情報의 收集・利用에 必要한 機能을 clearing 機能으로써 考察한다.

clearing 機能은 center 設置의 時点에서 当然히 갖을 機能과 network의 形成이 目標의 狀態로된 時点에서 갖어야 할 機能으로 分類해서 生覺할 수 있다.

當面機能으로서는 network의 形成을 既存의 小規模 network을 核으로 이것을 人爲적으로 發展시키는 方法으로 生覺하면, 當面한 機能은 于先 network 形成에 있어서 必要最少限의 것으로서, 統計 所在源情報의 提供 service가 必要한 것이다. 또한 各部處에 걸치는 加工統計의 提供 service 등 當面の 運用을 圖謀하기 위한 機能도 必要할 것이다.

또 將來의 機能은 當面の 機能 以外로 network 形成의 過程에서 包含되는 構成單位의 範圍 機能 役割의 擴大縮小 및 network 全体로써 取扱하는 data의 範圍, 利用의 範圍 등 各種의 要件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일 것이다.

以上の 考察로써 當面, 갖어야할 機能으로써 다음의 것이 있다.

- ※ network 構成單位에 對한 仲介, 代理業務
- ※ 統計 data 利用者에 對한 統計所在의 案内業務
- ※ 其他 當面の clearing 活動에 必要한 業務

上記外에 今後 檢討하여야 할 機能으로는 다음이 生覺된다.

- ※ 統計利用에 對한 相談・指導業務
- ※ 統計 data의 收集・蓄積・整備・提供 業務

- ※ 統計 data 의 加工・分析・再編集・提供業務
- ※ 統計利用에 對한 需要分析業務
- ※ 其他 code의 整合, 弘報 등 業務

3) Clearing Center 設置에 의 推進

clearing center의 設置에 對해서는 network 形成에 있어서의 推進體制나 推進方法과 關聯시키면서 各種 問題들 考察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center의 組織問題가 重要할 것이다. 組織問題들 考察함에 있어서는 組織形體 規模 經費 및 그 推進에 對해 生覺해야 한다. 그러나 分科會에서 이들을 全面的으로 取扱하기는 困難하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그 組織形體와 推進方法에 對해서 檢討하기로 한다.

于先 組織形體로서는 國家・民間 및 그 中間을 생각할 수 있는데 當面은 各部處間에 있어서의 統計情報의 相互流通을 取扱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國家機關에 對해서 檢討한다. 國家機關으로서는 既存機關의 改編에 依한 境遇와 新規로 機關을 設置하는 境遇가 있다. 이中 어느 便이 役割 遂上에 있어서 보다 適切한 것인가를 생각할 必要가 있다.

前者의 境遇 後者에 比해서 既存의 技術과 勞動을 活用할 수 있고 또 새로운 system에 의 移行이 容易할 것이다. 그러나 이 境遇 center 設置에 있어서 既存機關의 體制에서 어느 程度 影響을 받을 것이다.

다음으로 推進體制로서는 network의 構成單位를 代表하는 關係官에 依한 會議을 開催하고 實現을 目標로하여 關連되는 諸問題에 對해서 討議할 必要가 있다.

이 會議은

- ① 于先 center 設置에 있어서의 諸問題들 分明히 할 것
- ② 이 成果를 받고 實現을 圖謀할 것등에 對해 討議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會議의 推進과 擔當은 統計의 作성과 提供 또는 調整을 하는 部處에서 適當한 機關이 擔當한다.

한편 分科會는 center 設置를 위한 具體적인 schedule의 必要性을 指摘한바 있다.

後記

分科會는 統計 data의 相互流通의 促進이라는 觀點에서 統計 data bank機能의 network-system의 存在方式을 中心으로 考察해 왔다.

考察에 있어서는 于先 network에 關한 問題로서 73年度의 研究를 基礎로 어떠한 組織 Pattern을 生覺할 것인가 또 network의 各構成單位의 役割을 어떻게 生覺할 것인가 다시 network形成을 위한 推進方法등을 取扱했다. (第1部參照)

이 考察에 있어서 分科會가 當面課題로서 取扱하고 또 具體化하기 위한 入口로서 各構成單位에 있어서의 窓口體制의 問題들 다루

었다. (第2部參照)

窓口体制의 問題가 明確히 됨으로서 各部處問에 依한 network 形成의 第1段階는 一旦 完成된 것으로 生覺했다.

그러나 統計data의 相互流通을 보다 促進하고 充實히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機能을 保有하는 clearing center가 必要함을 力說하고 center의 役割과 機能 推進등에 對해 言及했다.

分科會는 이들 3個事項이 解決되고 具體化됨으로써 network이 形成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들 둘러싼 基本的事項으로서 統計法등의 問題가 있다. 이에 對해서는 第II部에서 詳述한다. 또 network 形成의 趣旨가 統計利用의 擴大에 對應하는 것을 前提로 함으로 當然히 對民 service가 主要課題의 하나로 拾頭될 것이다. 이에 對해서는 問題點의 把握이라는 觀點에서 參考로 詳述한다.

72年度의 研究는 그 成果로서 上記 整理한바와 같으며 今後의 研究課題로는 다음과 같은 問題들이 있다. 例컨데

※ network의 各構成單位에 있어서 窓口体制의 具體化에 關한 問題

※ network의 構成單位의 具體적인 役割에 關한 問題

※ clearing center의 設置의 具體化에 關한 問題등이다.

또 network의 形成등에 對해서 國家機關을 中心으로 考察했는데 이에는 國家가 作成하는 統計外에 民間作成分의 利用도 想定되고 있다.

또한 民間에 있어서의 統計利用의 增大에 對해서 國家機關부터 提供을 圖謀하는 것이 重要하다 .

이를 위해서 國家 民間間에 data 交換 利用을 推進하는 일이 必要하며 data 面에 있어서는 補完的關係를 維持하면서 機能的으로 協力關係를 確立하는 일이 必要할 것이다 .

分科會는 이들 諸問題 또는 이에 關連되는 問題에 對해 明確化를 圖謀하고 統計利用의 擴大에 對한 早速한 応答方法을 表示하기 위해 繼續 研究할 必要가 있다 .

第 2 編

第 2 章 統計 Data Bank 에 있어서의 周邊問題

머 리 말

第2編에서는 network을 形成하고 統計利用을 促進하는 境遇의 基本事項으로서의 「統計法에 關連되는 諸問題」와 各部処間에 依한 network形式의 第1段階로서의 「窓口体制」에 對해서 討議한 結果를 中心으로 整理하였다.

「統計法에 關連되는 諸問題」에서는 統計利用의 擴大에 隨伴되는 統計 data에의 需要에 對해서 그곳에 發生되는 各種問題를 統計法의 觀點에서 討議한 것이다.

이 때의 主要 thema는 「調査票의 目的外使用」에 關한 問題, 15條1項에 關한 問題, 統計 data의 公表에 關한 問題등을 取扱했다.

이들 各 thema에 對해 提示된 意見등을 整理한 것이다.

「窓口体制」에서는 國家의 全體的 network을 形成하기 爲해서 各部処担当者에 依한 窓口協議會(假稱)의 設置와 窓口推進을 爲한 會議開催를 提唱하고 있다.

network의 形成이나 clearing center의 設置를 催進하는데 있어서도 이들을 實質적으로 審議하는 場이 必要하며 그 先導的의 役割을 担当하는 것이 이 窓口協議會라는 結論에 到達했다.

研究討議의 時間上 制約으로 아직 많은 未決의 檢討門題가 있으나 討議의 結果에서 各種 意見을 要約報告키로 한다.

1. 統計 data 의 收集·利用과 法的諸問題에 對해서

1) 머릿말

이 곳에서는 統計 data bank 에 있어서의 統計 data 의 收集 蓄積 加工 提供에 關한 法的諸問題에 對해서 統計 data 의 收集 利用分科會가 行한 檢討結果를 整理하고 있다.

Computer 의 發達에 依한 大量高密度의 記錄保持能力과 高速處理 能力은 統計情報의 供給量의 增大를 招來했을뿐 아니라 多重 cross data 의 提供과 詳細統計의 提供등 內容의 擴大를 可能케 하고, 統計調査間의 data linkage 記錄媒體의 多樣化 其他 統計供給體勢의 變化를 惹起시켰다.

한편 Communication 技術의 向上에 依한 情報流通性의 增大, 情報操作技術의 向上에 依해 情報의 影響力은 飛躍的으로 強大해 지고 Privacy 나 機密의 保護는 深刻한 問題로 되고 있다. 情報化時代에 即應한 統計情報法規의 檢討가 必要한 所以이다.

當分科會가 이 곳에서 取扱한 thema 는 이같은 背景下에서의 問題이며 檢討에 있어서는 privacy 나 秘密의 保護를 基本前提로 하고 그 範圍內에서 統計의 多角的利用에의 接近을 試圖한 것이다.

當分科會는 各部處의 統計 data bank 關係官을 中心으로 한 硏究會인데, 元來 이같은 檢討에는 統計調査의 實施機關이나 集計機關 外에 널리 統計의 利用者나 企業 個人등의 被調査者의 參加가 必要하며 또 統計調査關係官中에서도 道郡市邑面등의 統計調査担当者나

現地の 調査員의 意見을 吸收할 必要가 認定된다 . 今後 이들 各界 意見의 收集과 그 反映이 課題로 될 것이다 .

이 곳에서는 統計 data bank의 觀點에서 問題를 提起하고 그 解答을 試圖한 것이다 . 그러나 討議는 充分한 時間이 없어서 問題 點의 整理나 解答을 滿足스럽게 이루지는 못했다 .

于先 中間報告로 다음과 같이 檢討狀況을 整理하기로 한다 .

2) 研究의 經過

(1) 1972年 11月 29日 第3回分科會

統計 data의 收集 利用을 促進하기 위해 data의 流通을 阻害하는 要因과 그 對策에 對한 檢討를 함 . 結果로 統計法 其他 關連法令의 規定과 運用에 對한 問題點이 指適되고 이들 問題는 더 檢討기로 함 .

1972年 12月 26日 第4回分科會

미리 指名된 研究員 3人으로 부터 ①統計 data의 收集 利用에 關한 法制上의 問題點 ②統計法運用上의 問題로서 特히 同法 15條의 現行解釋 ③統計資料提供者의 權利의 保護에 關해 報告가 있었고 , 討議함 .

1973年 1月 31日 第3回重分科會

미리 指名된 研究員부터 統計法에 關한 報告가 있었고 이에 對해 討議함 .

(2) 이들 會合에서 討議된 問題點을 다음과 같다 .

※ 指定統計調査票의 統計目的外 使用에 對해서

- ※ 秘密의 保護에 對해서
- ※ 統計 data 의 公表와 그 利用에 對해서
- ※ 中間 summary 와 其他非公表資料의 利用에 對해서
- ※ 集計에 關한 規定에 對해서
- ※ 關係書類의 保存에 對해서

3) 調査票의 目的外使用

Computer 의 普及에 따른 情報處理能力의 向上과 統計情報에 對한 needs 의 高度化에 따라서 統計 data 의 利用의 增大과 統計提供 service 의 樣態의 變革이 強力히 要請되고 있다.

이에 對해서 現行統計法의 規定은 指定統計에 있어서 規制가 強하고 統計調査에 依해서 얻은 貴重한 情報를 積極적으로 또 多角的으로 利用하는데 阻害가 될 수도 있다는 意見이 있다.

이같은 問題意識에서 統計法15條의 解釈과 運用에 對해 熱된 討議가 있었다.

(1) 15條의 趣旨과 本條 및 14條와의 關係에 對해서

이에 對해서는 다음의 諸說이 있다.

- ① 本條와 14條의 秘密保護를 調査票의 使用面부터 担保하는 規定으로서 14條와 같은 立場에서 解釋되어야 한다.
- ② 本條는 14條와는 獨立된 條文으로서 調査票를 統計上의 目的外에 使用함을 一般적으로 禁止하는 趣旨이다.

即 指定統計調査의 目的을 明示하고 被調査者에게 申告토
록 한 調査票는 秘密事項의 有無에 關係없이 그 調査目
的인 統計上의 目的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는 것으로
14條의 規定에서 發生되는 秘密만 지켜진다면 調査票는
어떻게 使用되어도 無妨하다는 思考를 否定하는 것이다 .

(2) 「統計上」의 意義에 對해서

本條의 「統計上의 目的」은 現行解釋으로는 「當該指定統計
調査의 目的」을 말하는 것으로 되고 있으나 이에 對해서 文字
 그대로 「統計一般」이라고 解釋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다 .

이 意見은 特히 上記의 ①의 說을 取하는 立場에서 主張되며

※ 秘密의 保護가 完璧하다면 調査票를 統計一般의 目的에
使用해도 無關치 않는가

※ 統計 data 의 多角的利用을 阻害하고 同種의 統計調査가
增加하는 原因이 되며 統計法이 目的하는바 統計調査의
重復의 排除에 違反된다는 등 意見이 있다 .

但 統計一般의 目的에 該當하는 것을 例示하면 特別集計,
再集計, 他調査의 補完資料作成, 統計地圖作成, 容體 card 作
成, 調査對象抽出名簿作成등을 위한 使用이다 .

②의 解釋 即 現行의 解釋을 支持하는 立場에서 부터는

※ 指定統計調査는 國民에게 義務를 課하는 것인 以上 目的
을 明示할 必要가 있음과 同時에 公示外의 目的으로 위
해서는 使用할 수가 없다 .

本条는 이같은 생각에서 이 目的外 使用을 不許하는 것으로 当該調査의 目的을 가리키고 있다고 解釈하여야 한다.

※ 이 境遇 当該指定統計調査의 目的이 法7条의 承認을 얻고 그 指定統計調査의 調査要綱에 規定되고 있는 範圍과 解釋해야 한다.

※ 統計上의 目的을 廣義로 解釋하면 調査要綱에 表示된 集計事項 以外에도 必要에 따라서 集計하고 統計를 作成한 다는 것이 調査의 目的에 들어오게 된다. 이같이 不特 定の 目的이 들어 온다는 일은 적어도 調査實施段階에 있어서는 適當치가 않다.

※ 指定統計의 使用目的이 統計一般의 目的이면 어떠한 人士라도 調査票를 使用할 수 있다고 解釈되므로 不適當하다. 한편 本条에서 「統計上」이라 함은 昭和22年の 同法制定當時, 指定統計調査에 依해 收集된 data는 當時의 集計能力으로 보아 集計할 수 있는 것은 全部 集計하여 公表한다고 되어 있고 미리 計劃한 集計事項以外는 集計의 余力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統計上의 使用方法 即 指定統計調査의 目的도 當然히 觀念되고 있었으므로 이같은 表現이 된것이 아닌가 한다.

이곳에서 以上の ②에 對한 再 論으로서 公布된 當該 調査目的에서 벗어난 使用은 不許한다는 見解는 15条2 項은 統計目的以外로 使用의 길을 트고 있는 것은 矛盾

되는 것이 되므로 15条1項의 「統計上の」를 嚴格히 解釋하는 것은 妥當치 않다 .

한편 條文의 前後가 모든 指定統計에 關한 것이므로 이곳에서 말하는 「統計」는 「指定統計全部」라 解釋할 수도 있다 . 特히 指定統計 全部가 法7條에 따라서 行政管理庁長官의 承認事項임을 생각한다면 同條의 活用に 依한 可能性도 있을 것이다 .

(3) 調査票의 範圍에 對해서

① 現行解釋에 對해서

現在의 解釋에서는 15條의 調査票란 個々の 各體에 關한 申告內容이 記載되고 있는 調査關係書類이며 調査票 原票에 限定되지 않고 調査票 中間集計表 磁氣 tape 첨가 cord 도 調査票에 該當하는 일이 있다고 하고 있다 .

※ 이에 對해 秘密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具體적으로 個人 法人등의 個々の 單位를 알 수 있는 狀態의 것은 全部 包含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意見이 있었다 .

이에 對해 後述하는 바와 같이

※ 個々の 各體에 關한 事項이 記載되어 있어도 個人名을 識別할 수 없는 것은 秘密取扱할 必要가 없지 않는가 하는 意見이 있었다 .

② 個別情報가 識別안되는 中間集計表등의 使用에 對해서

다음으로 統計的인 合計가 이루어지고 個別的 申告事項이 識別할 수 없는 形으로된 中間集計表등의 取扱에 對해서 이는 調査票라고 볼 수 없으나 一般으로 利用할 수 있는 가라는 問題가 있다. 調査票 外의 調査關係書類의 當該統計目的外의 使用에 對한 規定은 없다. 그러나 磁氣 tape 에 収納된 summary data 는 詳細分類 data 로써 多角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貴重한 data 로 이것의 使用을 希望하는 要請이 많다.

또 施行令 7 條의 公表의 形式을 取하지 않고 外部利用에 提供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들 資料의 利用은 全然 없게 된다. 이에 對한 對策의 하나로서 實際 運用에 있어서 는 調査票까지 거슬러 利用한다는 形式으로 15 條 2 項의 承認手續을 取해서 利用하는 方法도 生覺할 수 있다. 이에 對해서는

- ※ 이 같은 생각은 統計法第 15 條의 本來의 趣旨(統計上의 目的外 使用禁止)를 逸脱하는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
- ※ summary 의 使用에 있어서 15 條 2 項을 準用하고 있는 것에는 無理가 있는 듯하다.
- ※ 個別情報가 나와있지 않은 것이면 公開해도 좋지 않은가 15 條의 反對解釋으로서 는 個票外는 秘密保護에 欠陷이 없는 限 自由로히 使用할 수 있다고 解釋할 수 없는가
- ※ 立法當時에 比해서 中間集計表等の 活用方法도 開發되고 利用價值가 높아지고 있다. 調査에 依해 獲得한 情報는 最終結果의 數字뿐 아니라 中間集計上의 資料도 國民의 財

産으로서 公開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었으나

※ 中間 summary 등이 公表되면 指定統計로서 公表된 数字와 의 사이에 區別이 없어진다. 統計 data로서 使用할 수 있는 것이라면 7條의 追加承認을 얻어서 指定統計로서 公表해야 한다.

※ 結果의 公表를 全国計에 依한 統計数值로서한 境遇 그 内訳으로서의 道計·郡邑面計는 公表한 것으로서 간주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意見이 있었다.

※ 指定統計로서 公表하자면 問題가 있는 数字를 特定用途를 위해 使用하는 길을 든다는 意味로서 上記의 運用方法이 評價되어야 한다는 意見이 있었다.

보다 根本的으로는 法 16條의 運用에 依해서 이같은 種類의 中間集計表를 利用하는 길을 트도록 研究할 것이 所望스럽다는 意見이 있었다.

(4) 承認基準에 對해서

指定統計調査票의 統計目的外使用의 承認은 行政管理庁長官의 裁量行爲로 되어 있고 行政管理庁은 事務處理要領으로서 承認基準을 定하고 있는데 이에 是 申告者의 秘密保護가 保障되고 있을것, 使用의 公益性이 높을것을 基本的基準으로 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

※ 現行解釈을 15條 1項을 갖고 明示된 目的에만 使用하여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면 本來的으로 他目的利用은 無理가

있다. 따라서 보다 單純하게 行政上의 措置로만 生覺하면 된다.

※ 承認基準은 秘密保護만으로 하여야 한다.

公益性의 承認을 基準으로 하는 點에는 疑問이 있다.

公益性의 內容은 무엇으로 公益性이 높은가의 判斷基準이 不明하다는 意見이 있었다.

한편

※ 行政上의 目的으로 國民의 協力下에 作成된 調査票를 使用함에 있어서 公益性을 考慮하는 것은 統計法上의 明確한 規定의 有無를 不問하고 他公共物의 利用과 꼭같이 當然之事이다. 이는 指定統計調査以外의 調査票의 使用에 있어서도 같다는 意見도 있었다.

(5) 包括承認에 對해서

調査票의 目的外使用承認의 手續은 國家나 地方公共團體 등에서 類型的인 使用이 予想되는 境遇는 個別承認 代身에 包括承認하는 것으로 手續의 簡素化를 圖謀하고 있는데 이에 對해서

※ 「秘密」을 主觀說의 立場에서 보면 秘密保護는 個別的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個別承認을 認定하는 것은 當然히 15條는 秘密과 無關하다 할 것이다.

※ 包括承認은 秘密의 保護를 無實한 것으로 할 危險이 있다. 오히려 統計上의 目的의 解釈을 擴大해서 그 속에서는 自由롭게 하고 目的外承認은 嚴格히 한다는 形式으

로 秘密의 保護를 圖謀해야 할 것이다 .

※ 이에 對해서 上記意見으로는 統計上의 名儀下에서 調査票의 保管者나 使用者가 使用하는 限 統計法上의 check 가 不可하고 秘密保護를 圖謀할 수 없게 된다 .

現行과 같이 承認을 要하는 것으로 하고 包括承認에 依해 手續의 簡素化를 期하는 것이 適當하다는 意見이 있었다 .

以上 調査票의 目的外使用에 對한 討議에서는 全体를 通해서 다음의 意見이 提出됐다 .

※ 統計 data 의 使用에 있어서는 秘密의 保護는 絶對적인 要件으로서 그 保護에 万全을 期해야 한다 .

※ 그러나 무엇이 秘密인가에 對해서는 檢討의 余地가 있다 .

※ 15 條의 現行解釋과 運用은 時代要請에 따라 統計 data 를 널리 活用한다는 視點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 現行法의 範圍内에서도 相當히 柔軟한 運用이 可能하며 運用如何에 따라서는 時代要請에 副應할 수 있지 않을까 .

※ 統計法制定當時와 今日에 있어서는 統計行政의 内外狀況은 顯著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 根本적으로는 統計法의 再 檢討가 必要하다 .

4) 秘密의 保護에 對해서

(1) 統計法 14 條에서 問題되는 것은 「秘密에 屬하는 事項」은 무엇인가, 누가 무엇을 基準으로 制定하는가 이다 .

이에 대해서는

- ① 本人이 秘密을 主張하는 것을 秘密로 한다는 主觀說
- ② 第3 者가 客觀적으로 判斷해서 秘密로 生覺하는 것을 秘密로 하는 客觀說의 두가지가 있다.

主觀說에 있어서는 무엇이 秘密인가에 대해서 個別的으로 確認해야하고 不便하다. 客觀說에 依하면 이런 欠點을 補完되지만 個人의 秘密保護라는 觀點에서는 不充分하다. 이에 대해서

※ 무엇이 秘密인가는 그 情報가 어떤 目的을 위해 어떠한 方法으로 使用되는가에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見地에서 統計調査의 目的의 明示와 그 目的以外에는 使用치 않는다는 것은 秘密保護上 重要한 原則이다. 라는 意見이 있었다.

(2) 個人의 秘密에 관한 事項일지라도 申告者가 確認할 수 없는 것이면 秘密로서 保護할 必要가 없지 않는가라는 意見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申告者의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其他 屬性으로 부터 申告者를 識別할 수 있는 境遇가 있다. 어떠한 標識을 없애고 어떠한 表章方法을 쓰면 identification 을 지울수 있는가, 그 限界를 짓기는 힘들다는 意見이 있었다.

5) 統計 data 의 公表

指定統計調査의 結果는 行政管理庁長官의 承認을 얻은 以外는

急速히 公表해야 한다. 公表는 官報 其他 刊行物에 依하는 것으로 하고 官報以外의 刊行物에 依하는 境遇는 刊行物의 名称과 発行年月日을 行政管理庁長官에게 報告해야 하며 行政管理庁長官은 이를 官報로 公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統計法 16 條, 同施行令 7 條)

이에 對해서

※ Computerization 에 依해 多重 Cross 集計가 可能해지고 集計表는 增加되어 그 全部를 印刷物로 刊行하기는 困難하다. 刊行物에 依한 公表는 이中에서 特히 利用度가 높은 一部 結果表에 限定치 않을 수 없는 狀況인 것이다.

※ 公表되지 않는 結果表나 中間 summary 라도 利用價值가 높고 또 利用의 方途가 열려 있으나 公表 data 가 아니라는 理由로서 一般의 利用으로 資하게할 수가 없다.

※ 記錄媒体가 多樣化되고 있으므로 磁氣 tape, microfilm 등 computer 解讀可能한 媒体에 依한 公表도 認定되어야 한다. 등의 問題가 提起되고, 公表義務規定의 趣旨, 公表의 定義, 公表의 方法, 公表事項 등이 檢討됐다.

(1) 公表義務規定의 趣旨와 理由로서 다음을 들수 있다.

① 統計公開의 原則을 分明히하고 있다고 하는것

이것은 統計가 一部에 独占되고 또 悉意的으로 利用되는 것을 防止하는 것으로써 太平洋戰爭 前과 戰中에 있어

서의 日本国統計의 쓰라린 經驗에 基礎되는 原則으로서 承認되어야 하는 것으로 生覺된다. 統計의 一般利用者の 利用을 促進함에 效果的임은 勿論이다.

② 統計의 確定과 根據의 明確化

国民共通의 利用을 目的으로하는 統計로서 確定하고 그 出典을 分明히 할 必要가 있다.

以上에 對해서 一時期의 不幸한 經驗에 固執하는 硬直化된 規定이 아닌가의 意見이 있으나 널리 利用되는 統計의 性質로 미루어 結果의 公表는 原則적으로 必要한 規定이라고 認定된다. 向後 情報의 洪水中에서 信賴할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하는 手續으로서 現時的 價值가 있다 할 것이다.

公表의 原則을 承認한 後에 記錄媒體의 多樣化와 結果表의 增大에 對應하는 公表形式이나 公表事項의 檢討가 必要할 것이다.

(2) 公表形式에 對해서

公表의 形式은 現行規定으로는 「官報와 其他刊行物」로 되어 있고, 刊行物은 官報를 代身할 수 있는것 또는 官報와 類似한 것일 것이 必要하다고 解釋된다. 이로써 最少限 不特定多數者에게 配布할수 있는 印刷物임이 必要하다고 生覺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現行規定을 떠나 記錄媒體의 多樣化에 副應하는 公表形式의 存在方式에 對해서 檢討한다.

① 于先 公表形式에 對한 制限을 除去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다. 即 施行令 7 条는 法 16 条에 依하는 것으로 法 16 条는 速히 公表할 것을 義務지우고 있다.

여기에서는 令 7 条가 公表의 媒体에 까지 抵触하지 않는다. 統計記錄媒体의 多樣化등을 考慮하고 改正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었다.

② 이 境遇 磁氣 tape 나 microfilm 에 依한 公表에 隨伴되는 問題가 다시 檢討됐다.

이에 對해서는 그 利用에 있어서 特定機器를 必要로 하고 따라서 利用者가 限定된다는 點을 들수 있다. 그러나 公表와 利用可能性은 分離해서 生覺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立場에서 다음의 意見이 提出됐다.

※ 機器의 所有者에게 利用이 制限된다는 問題는 公的인 計算 center 의 設置나 機器의 貸与등 別途로 硏討해야하지 않을까

※ 特殊專門의 用途에 使用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나가 使用할수 있는 形式이 아니며, 그 用途에 適合한 媒体로서 公表해도 可하지 않을까

이 같은 生覺이 是認된다면 어떠한 內容의 것이 어떠한 媒体로 發表되고 있는가를 官報등으로 公表하고 現物을 圖書館등의 公共施設에서 保管하고 利用者에게 必要한 機器를 貸与함으로써 一般의 利用에 資하는 方法도 生覺된다.

그러나 이 같은 形式으로 公表될 data는 現在 指定統計로서 公表되고 있는 것과 어떠한 關係에 놓이게 되는가의 問題가 있다. 即 (1)의 趣旨에서 보아 어디까지의 數字가 指定統計로서 確定되었는지, 最終結果와 中間 summary 와의 區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또 詳細分類까지 公開된 境遇 特히 標本調査의 境遇는 그 精度에 問題點이 없는가 등이다.

(3) 公表에 關聯되는 其他問題

- ① 屈出統計에 있어서는 統計法 8 條에 依해 公表의 方法과 期日이 屈出事項이 되며, 承認統計에 있어서는 統計報告調整法 4 條 2 項 8 號의 「其他行政管理庁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으로써 承認事項記載書에 記載하도록 되고 있다. 그러나 指定統計와 같은 公表義務의 規定은 없다. 그러므로 結果를 公表치 않는 調査도 있다. 이들 統計에 對해서도 結果의 公表原則을 確立할 必要가 있지않을까
- ② 統計法施行令 7 條 規定에 依하여 指定統計調査의 結果公表에 對해서 行政管理庁에 報告된 刊行物の 名稱, 發行年月日이나 上記 統計調査屈出書, 統計報告承認事項記載書에 依해서 行政管理庁은 統計調査結果의 公表狀況을 充分히 把握하고 統計資料의 所在源情報의 **Service** 機能을 加一層 充實히 할 必要가 있다.
- ③ 公表方法·公表媒体의 多樣化, 公表內容의 擴大등의 狀況을

定은 적어도 이것만은 保存치 않으면 안된다는 趣旨로 解釈된다 .

이立場에서의 保存을 위한 條件을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保存해야 할 資料는 調査票 結果表 原票뿐 아니라 中間 summary 등도 包含된다 .

그記錄 媒体는 原票일 必要는 없고 오히려 computer readable 한 媒体가 所望스럽다 .

② 保存期間은 利用效果가 持續되는 限 保存이 所望스럽고 「原則으로서 無期限으로 하고 廢棄時 承認申請한다는 것도 生覺된다 .

③ 保存方法은 秘密保護의 點에서는 最少限度의 것을 集中保管 하는 것이 所望스러운데 利用促進과 防災面에서 數 copy 를 分散保管하는 일도 檢討되어야 한다 .

④ 保存者는 現在는 統計調査主管課가 中心이 되고 있으나 統計資料館등에 依한 保管도 考慮해야 한다 .

이와 關連해서 關係書類의 保存期限經過後의 措置는 消極說에서는 承認後 期間延長 또는 廢棄中 択一토록 된다 . 積極說에서는 期間經過後는 自由롭게 保存할 수 있다고 解釈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또한 保存期間中の 關係書類의 使用에 對해서는 調査票의 使用以外에는 規定이 없다 . 이에 對해서는 別途 檢討한다 .

以上の 積極說에 對해서는

※ 當該指定統計調査의 目的으로서 行政管理庁長官의 承認을

얻고 調査規則등으로 公表한 集計目的이 達成된 後 새로
히 이것 以外의 集計등에 使用할 수 있는가라는 基本的
問題가 남아 있다 .

※ 当該統計調査의 調査事項 概念 定義 分類 標本設計 調査
方法등은 当該調査의 本来 目的에 가장 適合하도록 定해
져 있는 것으로 이로써 얻어진 data 를 이 目的以外에
使用하거나 他調査 data 와 link 하는 境遇 統計学的으
로 問題가 없는지 十分 check 할 必要가 있고 無制限으
로 使用될수는 없는 것이다 . 이런 點을 考慮한다면
保存資料의 一般的인 利用 價值가 얼마나 있는지 疑問이
없지 않다 .

※ 資料의 保存 使用에 있어서 秘密 保護面에서의 檢討가
別途로 必要함은 勿論이다 .

7) 集計에 關한 規定

統計調査相互間의 data linkage, 民間委託에 依한 集計, 集計
의 迅速化등을 위한 地方分査의 普及등 data processing 에 關해
서 法制上の 檢討를 要하는 問題도 많다 . 特히 data linkage
에 있어서는 link 하는 data 의 種類에 따라서 ①指定統計調査相
互間의 link ②指定統計調査와 其他一義統計와의 link ③ regi-
stration data 와의 link 가 있다 . 各其 法律上の 手續과 얻어
진 結果가 指定統計로 되느냐 않느냐의 問題가 있다 . 한편 公表

된 結果 數字를 link 하는 境遇와 未公表의 個別 data 를 link 하는 境遇가 있는데 後者에 對해서 說明한다 .

①의 境遇는 미리 統計法7條에 依해 集計事項과 集計方法으로서 承認을 받은 境遇 承認事項의 變更手続을 하자면 統計法15條2項의 目的外使用承認을 받아 行하는 境遇가 있다 . 前二者의 境遇 얻어진 結果는 指定統計가 되며 後者の 境遇는 指定統計라 할수가 없다 .

어느 手続을 밟는가는 얻어진 結果를 指定統計로 하느냐 않느냐에 依해 選擇할수가 있다고도 할수 있다 .

그러나 目的外使用承認에 依해 他情報과 link 하는 境遇는 當該 指定統計本來의 目的에서 벗어난 또는 그것을 擴大한 形態로 被調査者의 申告事項이 사용된 것으로 된다 . 그 結果 첫째로는 申告者에 의 公約違反이 되고 申告者에 있어서는 申告事項의 予想外使用이 되어 privacy 侵害를 받은 것으로 된다 .

둘째로는 調査方法이나 定義등으로 보아 link 할 수 없는 것을 接合하고 있지 않은가, 調査data의 使用方法으로서 適當한가의 問題가 있다 .

②③의 境遇에는 얻어진 結果의 取扱, data 相互間의 精度의 相違등은 보다 複雜한 問題로 된다 .

또 ①②③의 各々에 對해서 얻어진 結果에 歸屬에 있어서도 問題는 있다 .

link 한 data의 提供者側에 歸屬되는가, 受入側, 集計, 加工側에

歸屬하는가.

한편 上述한바대로 統計調査問의 data linkage 에 있어서의 link 의 可否를 check 할 必要가 있고, 일어진 結果에 對한 表示 方法이나 歸屬에 對해 調整할 必要가 있으므로 data linkage 에 對해서 調整作用이 必要하다고 할수 있다. 指定統計에 對해서는 統計法7條, 15條2項의 承認이 있으나 承認統計 屈出統計등은 어떻게 하는가의 問題가 남는다.

2. 窓口體制에 對해서

1) 統計 data 交換利用의 現狀

政府部處問의 統計 data 의 交換利用은 統計作成機關이 統計報告書에 依한 公表와 함께 關係機關에의 配布등에 依해 從來부터 繼續적으로 實施되고 있다.

또 새로운 利用申請에 對해서는 可能한 限 이에 應하든가 電話에 依한 照會에는 担当 section 이나 service 担当窓口가 있어서 需要에 應하도록 努力하고 있다.

이같은 方法으로 統計 data 의 交換利用體制가 運營되고 있으나 이 方法外에 computer 의 普及과 그 利用技術의 進展에 隨伴하여 別途의 data 記錄媒体에 依한 統計 data 의 交換利用의 問題가 close up 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것을 需要에 맞춰서 即應할수 있는 體制實現을 위한 「窓口體制」를 中心으로 考察한다.

이곳에서取扱하는統計 data의 記録媒体는 Computer readable한 磁気 tape를 主要對象으로 하는데, 까닭은 從來印刷刊行物로서만 供給되던 記録媒体以外를 包含함으로써 넓게 解決하면 punchcard, computer 부서의 出力 list microfilm 등을 包含한다.

(1) 交換利用의 需要增大

最近의 社会經濟의 急速한 變化에 對해서 適切한 行政施策의 展開를 위해서는 統計로서 그 實狀을 把握하여 앞을 予測하고 施策을 樹立, 實行評価를 한다. 社会經濟現象의 複雜한 動態를 捕捉, 有效한 施策으로 適宜 連結시키고자 Computer의 情報處理技術을 活用해서 處理하는 것이 그 業務中の 1分野로 되고 있다. 그러나 現在로는 1部處担当業務의 有效適切한 展開를 위해서는 이와 關連되는 諸分野와의 結合關係, 排反關係 등에도 充分한 考慮를 加해서 balance가 잡힌 政策을 펴야한다는 主張이 많아지고 적어도 關係部處作成의 所要統計 data를 合理的으로 組合한 利用이 可能함이 指摘되고 있다. 이런 事情은 中央部處의 大部分에 共通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統計 data의 利用效率이 顯著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그 利用狀況은 印刷刊行物로 된 統計報告書로부터 所要되는 data를 抽出하고 그것을 利用者側이 punch card에 찍어서 入力하고 computer 作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punch card 入力作業은 同一統計 data에 對해서 여러 利用자가 重復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特히 經濟關係의 統計

data 를 利用하는 部나 局에 있어서는 經濟의 流動的變化에 될수록 빨리 対処해야 되므로 公表直後の 詳細한 또한 新鮮한 data 의 入手를 希望하고 있음에 對해서 이것을 印刷刊行物로서 하고 있는 狀況下에서는 印刷刊行物作成에 相當한 時日을 要하게 되므로 新鮮한 data 의 利用이 充分히 이루어지지 못함도 事實이다 .

이같은 事情에서 廣範한 各種의 詳細하고도 新鮮한 統計 data 의 早期迅速한 供給이 強力히 要求되고 있다 .

여기에 가장 符合되는 方法은 統計作成機關이 Computer, readable 한 磁氣 tape 등의 記錄媒体에 依해서 要請된 統計 data 를 複製하여 提供하는 體制를 整備하는 것이다 .

(2) 交換利用充實을 위한 窓口體制實現의 必要性

實際로 外部機關作成의 統計 data 를 自己機關內에서 punch card 化해서 入力하여 利用하고 있는 곳이 相當數 있으나 아직은 實施하지 않고 있지만 磁氣 tape 에 依한 data 供給을 希望하는 例도 많이 있다 .

이것을 円滑히 하자면 적어도 統計作成機關內에 外部로 부터의 data 提供依賴를 接受하는 窓口組織의 必要性을 指摘할수가 있다 .

即 지금까지는 各部處에서 所管統計調査結果를 編集해서 統計報告書의 配布나 그 內容의 照會에 對해서는 所管의 部局이 回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印刷刊行物の 統計報告書를 中心으로한 統計利用에 關한 方法이다 .

이 root 가 그대로 磁氣 tape data 의 交換利用에 移行되는지는 磁氣 tape 와 Computer 가 密着돼 있으므로 統計를 主管하는 部局 單獨으로 그것을 決定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中央官庁이라 하며 他部處에 對해 磁氣 tape 에 依한 統計 data 의 提供을 依賴할 때는 어느 部課에 申請함이 妥當한 가는 一般적으로 不明確하다.

Computer 處理를 前提로한 統計 data 의 利用要請이 增加되고 他部處作成統計 data 의 入手希望이 漸高되고 있으므로 이 要請을 接受하는 窓口를 各部處가 明確히 하기를 願하는 理由는 以上の 事情에 依하는 것이다.

2) 窓口体制의 意義

이 分科會에서 討議된 內容에서 窓口体制의 必要性이 前述한 바와 같이 指摘된 結果로 窓口体制란 어떠한 役割과 어떠한 機能을 갖이고, 他部處와의 連繫에 있어서 어떠한 機能을 다하면 되는가, 이것과 統計 data 와의 相互關係를 어떻게 捕捉하면 되는가 등이 問題로 된다.

本稿에서는 窓口를 中心으로 考察하므로 窓口가 取扱하는 統計 data 나 統計情報 그自体에 對해서는 言及치 않기로 한다.

(1) 窓口の 意義

窓口体制를 構成하는 것은 個個의 窓口이다. 個個의 窓口가 갖어야 할 基本的인 機能은 内部와 外部의 利用者 關係로부터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가 있다 .

그림 2 ~ 1 窓口의 일 (利用者가 外部에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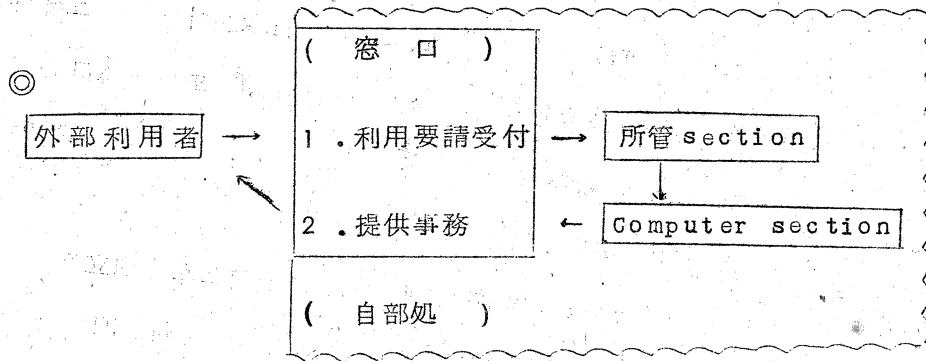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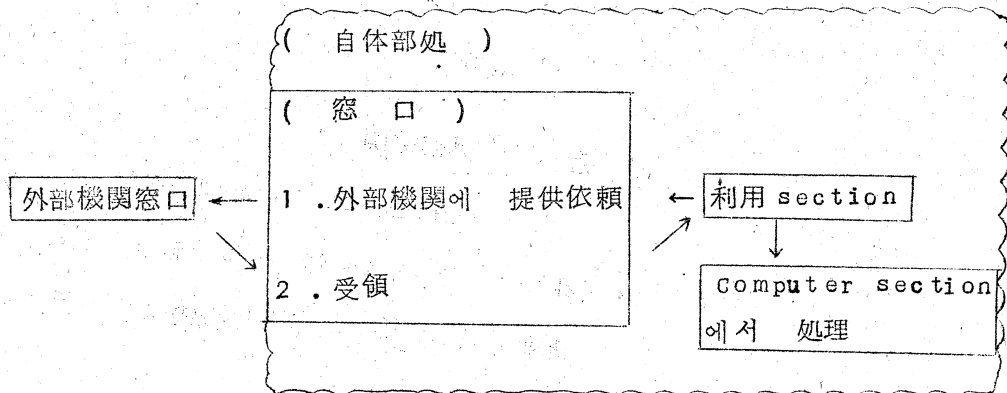


그림 2 ~ 2 窓口의 일 (利用者가 自体部処内に 있을 때)



- 即 ① 利用要請接受業務
 ② 部処内所管局課에 의 提供先依頼代行業務
 ③ 適合정보의 提供業務
 ④ 外部 data 의 提供依頼接受業務
 ⑤ 外部 data 保有機關 앞 提供依頼代行業務

⑥ 全上 data 의 受領 및 依賴者에의 傳達業務
로 整理할수가 있다 .

한 部処內에 設置해야 할 窓口數는 利用者 立場에서 明瞭한 存在
이던 可하므로 一個인 것이 理像的이다 . 그러나 勿論 그 數는
各部処의 事情에 따라야할 것이다 . 또한 窓口는 Computer 部門과
別個의 組織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同一한 部門內로 할 것인가의
問題가 있다 .

Computer 部門外에 있으면 全적으로 獨立해서 部処內에 門戶를
두는 方法 , 圖書館의 外部利用者の 受付部門과 착지는 方法 , 統計所
管部局의 總括的部門과 함께 두는 方法등이 있는데 各其 一長一短
이 있으며 Computer 部門과의 連繫方法도 多様하므로 一般論으로
論하기는 힘들다 .

(2) 窓口와 外部機關

하나의 窓口는 그 目的에 따라 外部機關에 自体内가 利用하
기 願하는 統計 data 의 提供依賴를 行하는 面과 外部로 부터의
利用要請에 対応하기 위한 接受提供을 行하는 面の 두가지 機能을
갖는다 .

窓口가 折衝對象으로 하는 外部機關은 다음表와 같다 .

提 供 者		利 用 者
国 内	各 部 処 ・ 政 府 機 関	各 部 処 ・ 政 府 機 関
	地 方 公 共 団 体 民 間 企 業 (統 計 保 有 機 関)	地 方 公 共 団 体 大 学 ・ 研 究 機 関 ・ 民 間 企 業 個 人
海 外	国 際 機 関 外 国 政 府 其 他	国 際 機 関 外 国 政 府 其 他

表 2 ~ 1 窓 口 와 連 繫 되 는 外 部 機 関 種 類

이 들 의 折 衝 对 象 으 로 서 의 外 部 list 는 将 来 의 所 望 스 러 운 对 象 이 다 .

처 음 에 記 述 한 바 와 같 이 이 미 一 部 部 処 間 에 서 data 交 換 이 实 施 되 고 있 다 . 即 特 定 統 計 data 에 对 象 을 限 定 해 서 統 計 利 用 担 当 者 間 의 利 用 目 的 이 合 致 되 어 定 期 的 으 로 实 施 되 고 있 다 .

따 라 서 이 곳 에 서 考 慮 되 고 있 는 窓 口 機 能 에 비 추 어 보 면 아 지 도 開 放 的 이 아 니 며 달 리 窓 口 가 생 기 드 라 도 協 調 体 制 를 짜 자 면 그 전 에 解 決 해 야 할 事 項 이 있 고 또 많 은 制 限 을 附 隨 한 것 이 될 것 이 다 .

(3) 窓口体制와 network

몇개의 窓口가 適當한 期間內에 統計 data 의 交換利用을 할수있게 하자면 이들 窓口가 data 交換事務의 經由單位로써 整備되고 있어야 한다. 即 各窓口가 統計 data 의 收集과 提供의 中繼點으로서의 役割을 다하여야하고, 需要의 發生이 經常 非經常의 임을 莫論하고 또한 取扱하는 統計 data 가 一定하거나 없나를 不問하고 利用者의 要請自体가 多分히 變化할수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需要를 充足시키자면 적어도 各窓口担当者가 協調的으로 相互 支持하는 것이 必要하다. 더구나 이들이 効率的으로 目的을 達成하자면 相互間에 保有統計에 關한 情報의 交換과 手續의 統一化등이 必要할 것이다.

各窓口가 이같은 体制의 單位로써 相互間에 統計 data 의 交換利用을 推進하는 役割을 遂行하게 된다면 統計 data 의 흐름의 pattern 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이같은 흐름의 關係가 network 인 것이며 窓口는 이 흐름에서 流出點과 流入點에 該當된다.

各部之間에 있어서의 統計報告書以外의 記錄媒体에 依한 data 交換은 前記共通事項이나 處理機能의 進度가 相異하므로 于先은 batch 處理를 中心으로한 network 이 目標가 될 것이다.

既述한바와 같이 一部 部之間에는 data 交換이 實施되고 있다. 即 特定統計 data 에 對象을 限定해서 統計利用担当者間의 利用目的이 合致되어 定期的으로 實施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構想中인 窓口機能에 비추어보면 아직 開放的이 아니며 他窓口가 形成되어도 協調體制를 짜자면 解決을 要하는 事項이 있으며 많은 制限이 붙은것일 것이다 .

한편 各部處作成의 統計 data 에 對한 需要는 增大되고 network 의 最少單位가 徐徐히 實現되고는 있으나 窓口 그自体가 아직 形成되지 않고 또 所望스러운 窓口체제의 構想도 發表되지 않고 있으므로 network 의 進展과 統計 data 의 交換利用의 推進黨을 크게 阻害하고 있음을 指摘할수가 있다 .

따라서 窓口와 窓口체제를 組織과의 連繫關係로 하고 이에 統計 data 를 包含시킨 network 에 對해서 充分한 檢討를 加하고, 早期實現을 期하는 것이 必要하다 .

3) 窓口체제의 檢討事項

窓口체제를 檢討함에는 于先 窓口の 機能과 各窓口の 連繫關係를 分明히 하여야 한다 .

이 중에서 各部處가 獨自的으로 決定하여야할 事項은 指摘하는데 그치고 그內容에 對해서는 이곳에서 取扱 않기로 한다 . 그 以外의 主要 檢討事項을 表 3 ~ 2 에 整理한다 .

表 3 ~ 2 窓口的機能，業務，体制

	目的	機能	業務	体制
對外	利用者에 對한 窓口的 明確化 受付窓口的 統一 對民間，外國 service의 受付	質問의 受付 DATA 案内 DATA 提供 窓口業務의 広報	質問의 受付 質問의 分析 確認 庁内 DATA 의 案内 DATA 提供，料金 収納 受領書의 收受 窓口的 所在，業務 內容의 広報，利用의 促進	受付 提供 窓口的 數定 提供 DATA UST, 所管 課 List 作成 依頼表，供給表 提供 業務關係 記錄簿
對內	庁内 連絡의 統一 提供 業務의 統一 処理	質問의 受付 庁内 連絡 提供 DATA 의 収集	質問 分析，定式化 DATA 所管 課의 檢索 DATA 依頼表의 送付 提供 DATA 의 受入，照查 提供 受領書의 收受，提供 記錄 作成，原課에 的 連絡 定期 提供 業務	部内 連絡 窓口 設定 庁内 連絡 Root 設定 DATA 維持 管理 定期 提供 業務의 管理 簿
綜合	交換 手續의 統一 提供 業務의 均質化	手續의 統一 帳票의 統一 部 処間 提供 業務의 均質化	各省 窓口的 連携 情報 交換	標準 手續의 設定 標準 帳簿의 設定 各部 窓口 連絡 會議 業務의 定型化 各部的 統一的인 広報 活動의 統一 窓口的 綜合 PR

4) 窓口体制實現의 方策

窓口の 機能이나 業務 등의 檢討事項과 各部處窓口に 依한 体制의 目標와 network 과의 關係, 問題點 등에 對해서는 이미 必要에 따라 記述했다.

統計 data 의 流通促進의 必要性은 말할 必要도 없고 各部處에 있어서의 統計需索을 充足시키는 体制을 早速히 實現하는 일이 大端히 必要하다.

따라서 窓口体制의 實現方策을 考察기로 한다.

(1) 實現을 圖謀하기 위한 基本條件

統計 data bank 研究會의 各分科會에 關係各部處關係者가 研究員 資格으로 參加하여 197 年度부터 2 年間に 걸쳐서 研究를 實施했다. 昨年度의 研究成果는 行政管理庁과 統計審議會에도 報告되고, 統計 data 의 積極的利用体制 確立의 必要性에 對해 共通의 理解와 認識을 얻은바가 있다.

이것을 行政의 一環으로서 實行可能한 것으로 하자면 몇개의 問題點의 解決과 阻害要因의 除去가 必要하다. 보다 根本的으로는 “各部處의 統計部門의 統計作成供給擔當者에 依한 統計 data 交換實施의 必要性에 對해서 正式으로 合意한다”는 것이다. 國家로서의 方針의 示達로 事務擔當部局은 積極的으로 問題를 擧論하고, 關係方面과 調整을 期하고, 實現方向을 向해 그것의 推進을 圖謀할수 있는 以外에 demerit (短點) 問題에 對해서도 建設的으로 對處할수 있는 것이다. 現在 이 方針이 없으므로해서 이 趣旨에 對해서도

事務擔當部門에 있어서의 保守性이 크고 阻害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

第 2 의 條件은 上記 條件下에서 窓口實現을 目的으로한 各部處窗口體制協議會를 設置하는 것이다 . 이것은 各部處의 統計 data 交換 利用을 實現키 위한 事務擔當者級의 會議로서 이들 擔當者는 自体 部處內의 窓口組織의 設立推進者이거나 推進擔當者와 密接한 連繫을 取할수 있는 者이어야함과 同時에 統計作成部局의 者일 것이 所望스럽다 .

第 3 의 條件은 各部處 共히 窓口組織과 機能의 必要性에 隨伴해서 그 實現을 위해 相當經費가 必要하며 이와 關聯해서 共通의 理解와 推進에 있어서 相互間 配慮를 要함을 確認하는 것이다 . 即 手續이 必要한 外에 人員의 配置가 必要하다 . 또한 統計 data 提供을 위해서는 原 data 의 整備蓄積作業을 隨伴하고 그 機能을 強化할 必要에서 別途로 computer 의 情報處理能力의 level up 을 圖謀하는 것도 必要하다 .

이 같은 認識을 最高會議에서 確認하고 協議會를 開催하는 것이 가장 所望스럽다 .

(2) 窓口體制協議會

協議會의 目的은 參加者를 于先 各部處에 限定하고 있으므로

- ① 政府部處間에 있어서의 統計 data 의 流通을 促進하는 體制를 만들기 위해서 所管의 統計 data 를 磁氣 tape 媒体

등으로 提供可能토록 하는 他部處부터의 利用要請을 接受
하는 窓口를 設置하는 일

② 各部處가 設置하는 窓口를 通해서 統計 data의 相互利用의
推進을 期하면서 協力關係를 맺고 窓口体制에 依한 net
work을 實現하는 일

③ 이 들에 隨伴되는 事務手續등에 關한 諸規定을 檢討하고
標準的이고도 簡便한 統計 data利用手續方法을 開發하는 일

④ 國家로서 所望스러운 方向을 求하고 將來의 方針과 政府
部處以外의 利用要請者에의 提供方針등에 對해 檢討하고
國家로서의 方向을 表示하는 일로 整理할수 있을 것이다 .

協議會의 參加者는 協議會의 決定事項을 自己部處에 갖고와서 決
定事項의 實現을 爲해 努力해야 한다 . 따라서 相當한 指導力을 갖
이는 會議일 것이 所望스럽다 .

會議의 運營에는 事務局이 必要하다 .

事務局은 參加者의 互選으로 決定해도 可하고 適當한 組織이 있
으면 이것이 擔當해도 可하다 . 協議會는 目的達成을 爲해 다음
事項에 對해 處理하여야 한다 .

※ 統計 data交換手續의 規定

※ 窓口事務의 標準化, 帳票類의 標準化

※ 政府部處以外의 利用者에게 data 提供時의 料金算出基礎의
設定

※ 各部處共通事項의 檢討

※ 交換業務推進을 위한 情報交換

※ 其他

이들 結果로서

※ data 交換手續의 統一

※ 提供業務의 均質化

를 期待할수 있고 業務의 円滑을 期할수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重要한 檢討事項으로서는

※ network 와의 相互關係

※ 地方公共団体와의 關係

※ clearing center 와의 關係

등의 思考方式과 連繫의 方式을 어떻게 할 것인가등이다.

(3) 窓口体制實現의 順序

一部 部處에서는 制限된 方法이긴 하지만 data 交換을 하고 있으며 이런 意味에서는 交換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狹意의 窓口가 있는 것이다. 于先 實現을 期하자면 다음의 方法을 생각할 수가 있다.

※ 部處의 自發的意志에 따라 特定統計 data 의 提供을 政府部處로 對象을 限定해서 開始한다.

提供部處는 入手部處와 文書로서 提供入手에 關한 兩者間の 協定을 行하고 network 의 核을 作成한다.

※ 統計主任이 需要가 높은 統計를 選定하고, 그 統計作成部處와 積極的으로 打合 또는 必要한 配慮下에 그 統計의 磁

氣 tape에 의한 他部處利用을 推進한다 .

※ 既히 data交換을 實施中인 部處에 對해 統計主任이 積極
的으로 打合하고 必要한 配慮下에 그 統計의 磁氣 tape에
依한 他部處利用을 推進한다 .

이들과 併行해서 磁氣 tape에 依한 統計 data의 早期利用 등에
關해 그 效果를 높이기 위한 法制面의 檢討가 必要하다 . 아울러
窓口體制를 推進키 위한 協議會事項의 進展도 必要하다 .

(付)

統計 data의 收集・利用分科會 (本分科會) 議題

第 1 回

(1) 日時 197 年 10 月 19 日

(2) 出席者 13 個部處 25 名

(3) 議題

㉠ 197 年度研究成果概要에 對해서

㉡ 197 年度研究테마에 對해서

第 2 回

(1) 日時 197 年 11 月 9 日

(2) 出席者 14 個部處 26 名

(3) 議題 197 年度檢討事項에 對해서

第 3 回

(1) 日時 197 年 11 月 29 日

(2) 出席者 14 個部處 26 名

(3) 議題 統計情報 network에 對해서

第4回

(1) 日時 1972年12月26日

(2) 出席者 13個部處 21名

(3) 議題 統計data bank의 network 構成에 對해서

第5回

(1) 日時 1973年1月25日

(2) 出席者 12個部處 23名

(3) 議題 network에 關한 無記名양케트

第6回

(1) 日時 1973年2月8日

(2) 出席者 11個部處 19名

(3) 議題 ㉞ 양케트調査結果의 概要 등에 對해서

㉟ 1973年度 report 作成方針에 對해서

第7回

(1) 日時 1973年3月24日

(2) 出席者 13個部處 22名

(3) 議題 72年度研究 report에 對해서

統計data의 收集・利用分科会(亜分科会) 議題

第1回

(1) 日時 1972年11月22日

(2) 出席者 13個部處 21名

(3) 議題

㊦ 第2次 computer利用에 依한 統計 data의 流通量調査에 對해서

㊧ 各部處間에 있어서의 data交換의 窓口體制에 對해서

第3回

(1) 日時 1973年1月31日

(2) 出席者 10個部處 17名

(3) 議題 統計法上의 問題點에 對해서

第4回

(1) 日時 1970年2月27日

(2) 出席者 13個部處 23名

(3) 議題

㊦ 窓口體制에 對해서

㊧ 72年度 report 作成方針에 對해서

参 考 資 料

1. 国家의 統計情報活動의 对民間 Service 에 있어서의 諸問題
考察.

2. Computer 利用에 依한 統計 Data 의 流通量調査의 要約.

但. 同上調査票 記入 例.

1. 國家의 統計情報活動의 對民間 Service 에 있어서의 諸問題考察

註 本報告書는 1972 年度의 分科會에서 行한 說明을 基礎로 各問題마다에 考察을 加한 것임.

對民間 Service에 있어서의 이들 問題點에 對해서는 時間上 制約으로 充分한 討議를 할수 없었으므로 今後의 檢討가 必要함을 付記한다.

民間에 있어서의 各種活動의 基礎資料로써 政府作成의 各種統計 Data 가 統計報告書의 刊行이나 圖書館 Service의 一環으로서 또는 統計相談등에 依해 利用되어 왔다.

昨今の 社會經濟環境의 急激한 變化에 따라서 政府作成의 Data 에 對해서 보다 広範多樣한 利用要請이 增大되고있다.

現在 政府는 今後의 統計情報活動의 円滑한 推進을 爲해서 各種의 題에 對해서 調査研究를 實施中인데 그 한例로서 政府作成의 統計 Data 를 單純히 統計報告書나 圖書館에 있어서의 閱覽등 Service 에 限定치 않고 Computer 利用者의 高度의 加工分析利用까지를 豫想한 Service에 對해 考慮하여야할 狀況下에 있다.

그리하여 國家機關이 Service 의 母體가 되어 民間에게 이를 實施하고자 하는바 그間에 介在하는 諸問題를 明確히 把握할 必要가 있다.

이 對民間 Service問題는 既히 1972 年度의 本 分科會에서 指摘되어 統計 Data 의 收集 利用의 하나의 課題로서 採扱된바 있었는데 1973 年度에도 充分한 檢討時間이 없어서 分科會에서는 本稿 付表에 問題事項으로 表示함에 그쳤다.

따라서 若干의 意見이 있었으나 充分한 審議는 없었다. 이곳에서
는 付表에 表示한 各種의 問題事項의 內容과 各問題間의 關連등에
對해 詳述키로 한다.

한편 이것은 個人的見解임을 付記하며 그 內容은 2章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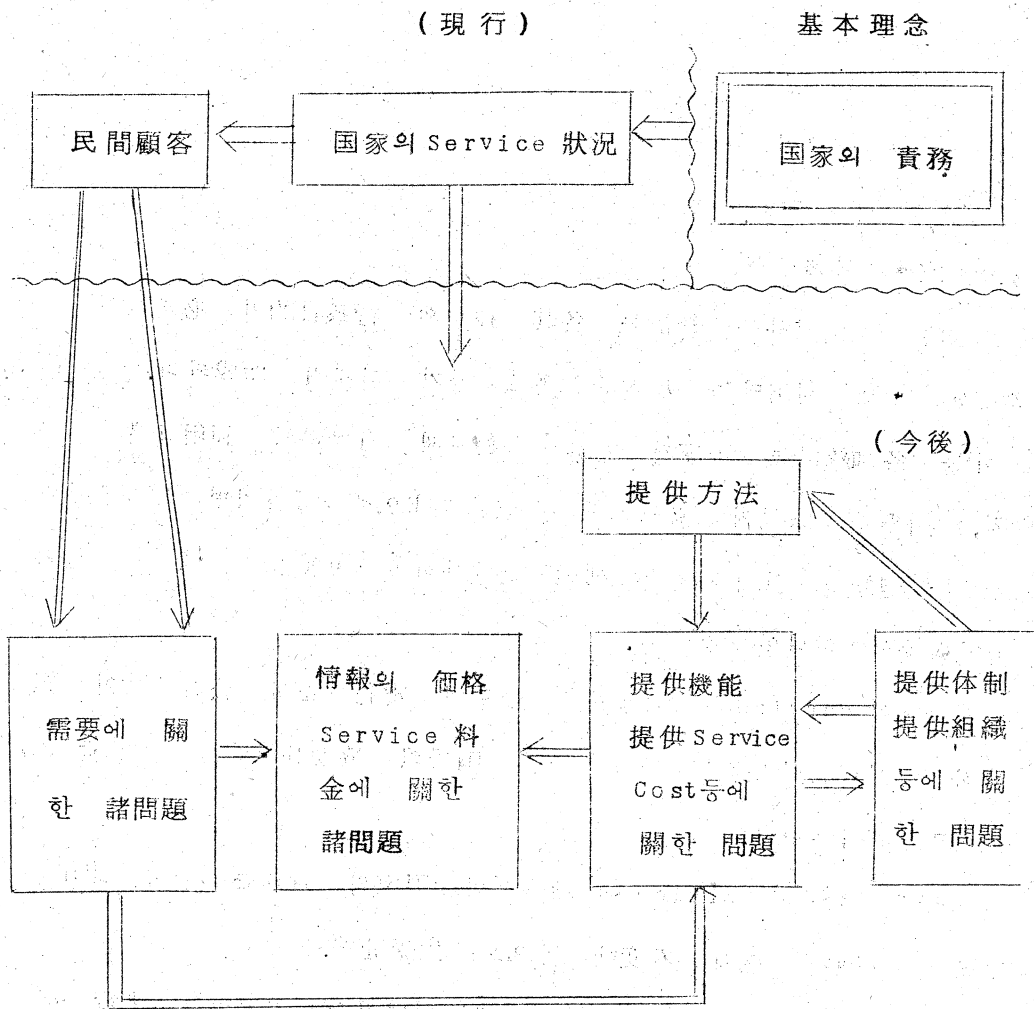
第1章 「關連課題의 概略」에서는 個個의 問題를 보다 큰 課題
로 整理하고 各課題의 座標設定을 明確히 하기 위해서 課題相互의
關連을 概括적으로 表示했다.

第2章의 「問題點의 指摘」에서는 앞으로 남겨진 檢討事項을 分
明히 하기 위해서 問題點을 詳細히 指摘했다.

內
1
鎮

第 1 章 関連課題の概略

国家が作成하는 統計 Data 를 民間에게 Service 하고자 하는 境遇 検討하여야 할 課題의 相互關係는 다음表와 같다.



A

國家의 責務 (公共性)

1. 國家가 作成하는 統計 Data 는 國民的 資產이다.
2. 國民의 利益을 爲해 利用에 提供하는 일은 國家의 責務이다.

1. 國家의 責務

國家가 作成하는 統計는 各其 獨自의 行政目的의 必要性이나, 汎部處的으로 利用되는 基本的資料로 삼기 爲해서 作成된다.

이들 各種統計는 國家의 行政上資料로써 有效하게 利用될뿐 아니라, 이들은 國民의 協力下에 作成된 것으로 말하자면 國民的 資產으로써 國民을 爲해 널리 利用되어야 하고 이것을 成就하는 일이 國家責務의 하나인 것이다.

또한 이 Service를 國家의 責務로서 履行하는데 公共機關이 擔當할 것이며 情報取扱에 있어서는 國民의 協助를 받을수 있는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같은 對民間 service에 있어서의 國家의 責務는 過去 現在 그리고 將來에 걸쳐 不變한 것으로 生覺된다.

政府統計 Data의 對民間 Service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考察함에 있어서는 이 같은 思考方式이 하나의 基盤을 이룬다.

2. 現在까지의 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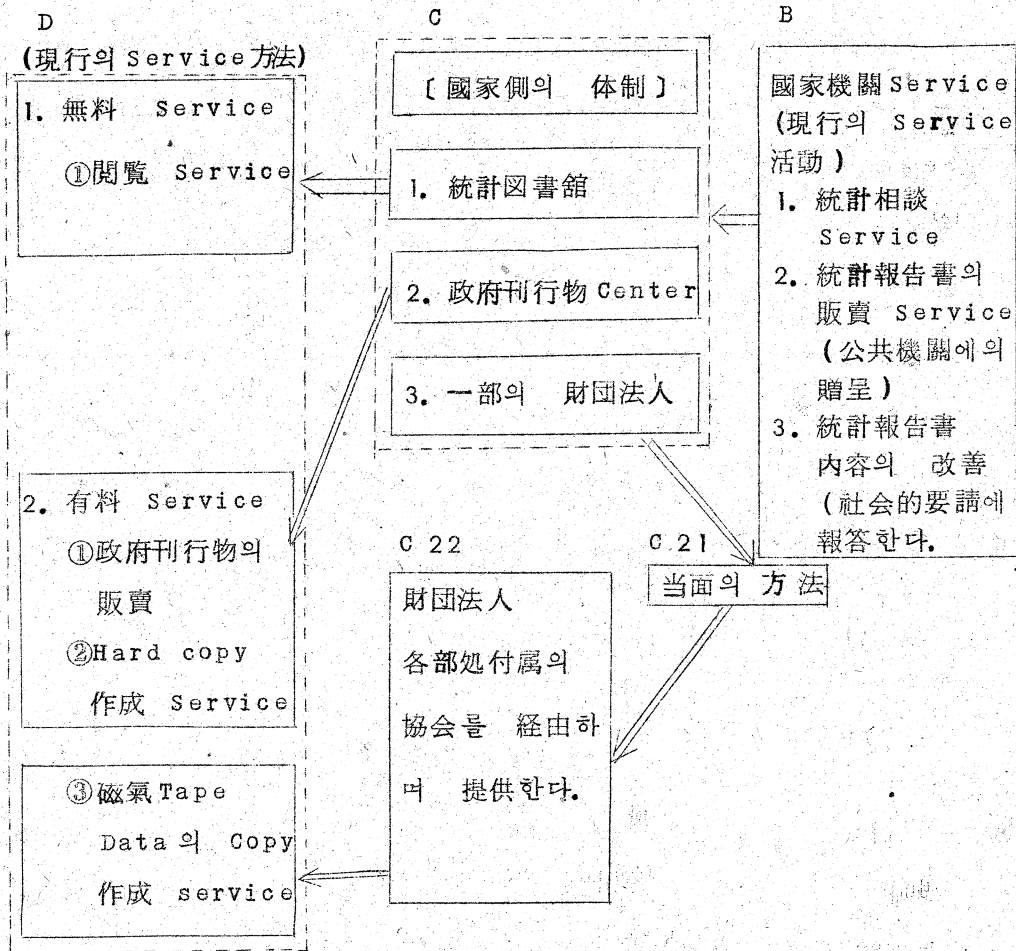
上記 趣旨에 따라서 經由機關으로서는 「統計圖書館」의 閱覽 Service, 「政府刊行物 Center」의 政府刊行物の 販賣 또는 統計担当部門의 電話照會에 對한 回答등으로 從來에도 이런 種類의 Service가 實施되고있다.

磁氣 Tape Data에 依한 提供이 現實적으로 民間이 要求하고 있는 方向으로 看做된다. 換言하면 統計情報活動의 出發點으로써 特定部 処作成의 特定統計에 限해서만 Service root (提供通路)가 設定되고 또한 特定の 利用者에게만 有效한 實情이므로 今後의 發展을 위해서는 充分한 要件을 具備한 適切한 機能의 出現이 期待된다.

3. 今後의 活動

現在로는 많은 利用者의 需要에 對해서 極히 狹義의 Service가 可能할 뿐이다. 広範하게 不特定多數의 需要를 充足시키는데 있어서 는 앞으로의 活動모습을 어느 모양으로 計劃하느냐가 本質的 問題가 될 것이다.

BCD 現行의 对民間 Service



A. A 11의 趣旨에 따라서 政府는 이미 長期에 걸쳐 對民間 Service를 實施하고 있다. 最近에 있어서의 政府提供 Service의 內容은 Service 開治 當時와 比較해서 그內容의 精粗, 範圍의 広狹에 있어서 差가 있을 것이나 그 主要内容은 無料 Service로서

※ 公共圖書館에 있어서의 統計報告書 등의 閱覽 Service

※ 統計相談 Service

또 有料 Service로서는

※ 政府刊行物 Center, 同刊行物取扱店에 있어서의 販賣

※ Hard Copy 作成 Service

※ 特定統計 Data의 部分的實施인데, 磁氣 Tape Copy의 作成提供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需要는 Computer 利用을 前提로 않는 需要家나 臨時로 輕便한 利用을 希望하는 需要家등 今後에도 繼續해서 많은 利用者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3) 磁氣 Tape Data의 Copy 作成 Service

近年의 Computer 普及에 隨伴하여 上記 以外の Computer 處理를 前提로한 利用者가 漸増하는 趨勢에 비추어 一部 部処에서는 特定統計를 磁氣 Tape 化하고 그 外部団体(財団法人의 協會)를 經由하여 有料提供하고 있다.

이 같은 Service 担当의 國家機關으로서는

① 國會圖書館

② 統計作成部局

③ 政府刊行物 Center

④ 政府外部団体を 들수 있다.

政府가 作成하는 統計報告書는 国会圖書館에 閱覽用과 保存用으로 所定の 冊數가 納入된다. 이것은 不特定多數의 利用者에 對한 統計 Data 利用 Service 機關으로서 總理府統計局圖書館에만도 每年 1 萬件을 上回하는 統計相談과 閱覽 Service가 있으며, 他政府 Service를 包含하면 相當數의 利用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統計內容에 對한 問議나 統計調査指導 등에 對해 統計作成部 局에 의 照會하는 境遇도 許多하다.

4. 民間利用者

政府作成의 統計를 利用하는 民間도 多様하다. 利用者の 組織 形體를 보면 株式會社, 公社, 公團, 財團法人, 組合, 個人 등 雜多하며 利用者를 性格別로 보면

- ① 個別民間企業
- ② 民間企業團體
- ③ 其他團體
- ④ 個人이 있고 이中 ①~③의 어느 形態로 「情報産業活動」을 目的으로 한 組織體도 生覺할수가 있다.

이들은 모두 政府統計 Data의 利用者로서 例拳한 것인데 그 利用方式도 自社の 活動을 위한 基礎資料로서 또는 企業團體등에서 는 傘下企業活動의 綜合的 參考資料의 供給先으로서 利用되어 왔다.

이들 利用자가 從來의 刊行物부터 所要統計 Data 入手에 所要되는 時間浪費, 詳細性的 不足, 時間的連續性的 欠如 등으로 統計의 有效適 時的 利用에 不滿이 있고 이에 對処하는 方法으로서 Computer

readable 媒体에 의한 統計Data 入手의 必要性이 漸高되고있다.

MIS 構想, NIS 또는 AI 등의 論議가 나온 以後 數三年이 經過
왔으나 아직도 未解決의 課題가 山積해 있다.

그하나는 政府作成Data의 Computer readable 한 媒体에 의한
提供表現의 問題이다.

民間에 있어서의 이 같은 動向에 對해서 國家도 이에 対応되는
方策을 樹立해야 할 段階에 왔다. 이들 諸問題를 包含해서 第4分
科會에 있어서의 研究過程에서 特別히 民間 Service를 取扱할 것을
指摘 若干의 討議가 있기는 했으나 充分한 審議를 못가졌으며
國家立場에서 考慮할 問題點을 다음章에서 觀察키로 했다.

또 이 같은 政府의 動向에 對해서 Merit 面에서의 強調만이 重要
事가 아니고 이에 附隨해서 派生되는 Merit 問題에 對해서도 十分
考慮하고 對策을 樹立함이 重要하다.

例컨데 統計法이나 統計情報活動에 關한 Panel Discussion에
있어서 「國家의 行政에 必要한 統計調查이므로 韓國民으로서 協力
하나 一般에도 公開利用하게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心理的으
로 協力意識이 稀薄해진다」라는 意見을 被調査者가 提示하고 있다.
換言하여 눈에 띄기 힘든 Demerit의 한例로써 體制를 整備하는데
있어서 어느 程度로 重視하여야 할 것인가는 (別問題로 하고)
無視해서는 안될 問題이다.

第 2 章 問題点의 指摘

A 11 对民間 Service에 있어서의 基本条件

A

国家의 策務 (公共性)

- ① 国家가 作成하는 統計 Data는 国民的 資産이다.
- ② 国民의 利益을 爲해 利用하도록하는 일은 国家의 責務이다.



A 11 (基本条件)

1. 公共性을 充當 할것.
2. 国民의 協助를 얻을수 있을것.
3. 国家活動이 阻害되지 않을것.

国家의 策務로서 国民에게 널리 Service하고자 할 때 国家가 担当해야할 基本的要件이 셋있다. 即

- (1) Service 提供에 있어서는 公益性和 公共性을 重視 할것.

따라서 国家는 때로는 經營 Balance의 限界를 넘어서는 Service가 可能하도록 公益性, 公共性의 目的이 實現되어야 한다. 또한 国民과 民國의 特定分野에의 限定된 Service 提供은 公益性 公共性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보다 廣範하게 国民의 利益에 이바지하는 活動이어야 한다.

- (2) 上記의 公益性, 公共性의 觀點에서 国民의 協力을 얻고 또 그 活動理由에 對한 넓은 支持를 얻을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即 國家에서의 獨自的 Service 體制로서뿐 아니라 그것은 國民의 利益으로서 還元될 것이 널리 認定되는 것이어야한다.

統計情報 Service가 國家政策 樹立에 有用하고 그것이 國民에게 披及되는 間接效果外로 이같은 方法으로 供給되는 各種의 統計情報로 國民이 알고자하는 情報를 올바르게 伝達하고 適切한 判段資料로서 國民의 直接, 間接的活動에 有効하게 利用될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3) 國家의 統計 Data 提供을 위해 政府의 經常業務가 阻害받아서는 안된다. 即 이 Service 提供을 直接, 間接으로 担当하는 政府部門이 이것을 專門으로 處理할수 있음이 所望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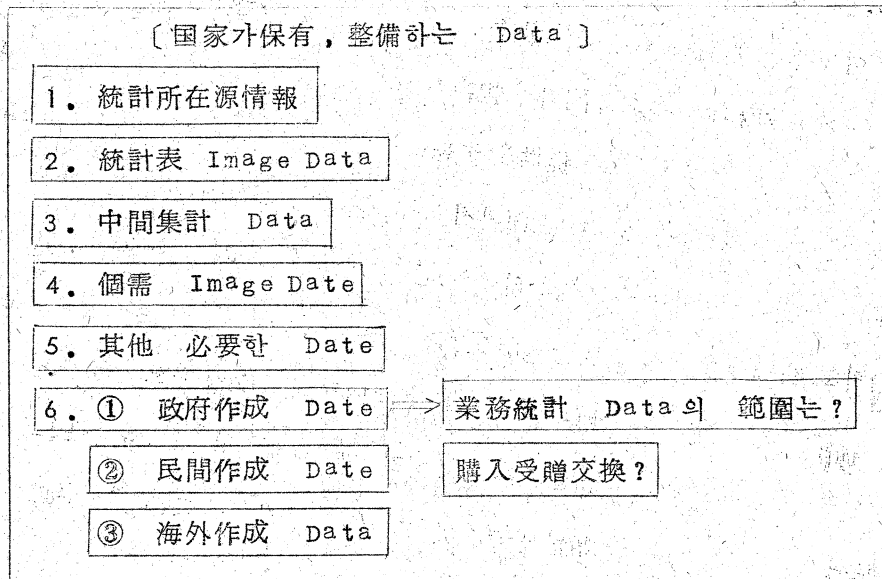
夫除로는 政府의 特定部門이 担当해서 Service 提供을 하는 境遇 自己担当業務와 Data 提供業務를 錯覺해서 政府在來業務의 遂行에 支障이 있어서는 이런 면에서 國民에게 不便을 주어 좋지않다. 따라서 現行대로 또는 若干의 修正을 加한 體制로 Service 를 開始하고자할 境遇는 現行政府業務担当部門부터 Service 를 阻害하는 要因의 發生이 念慮되어 情報提供趣旨에 收할수도 있다. 또 Service 에 重點을 두면 經常業務가 妨害를 받을 可能性도있다. 이로써 Service 에 專念할수 있는 體提 即 이業務를 專担할 部門의 設立을 指摺하는 바이다.

A 12 국가가 保有, 整備하는 Data

A 11 [基本条件]

1. 公益性을 充足시킬것
2. 国民의 協助를 얻을수 있을것
3. 国家活動이 阻害받지 않을것

A 12



국가가 保有하거나 整備중인 數많은 統計Data中에서 對民間 Service의 素材로 삼아야할 Date의 準備에는 國家의 提供体制의 段階的發展이나 作業能力등의 面에서 檢討할 必要가 있으므로 利用 要清이 있는 情報의 性格에 따라서 그들의 特徵을 要約해 본다.

1. 統計所在源情報

國家作成의 統計는 經常的, 非經常的으로 作成하는 것을 包含해서 膨大한 數量에 達하고 더구나 統計表數에 있어서는 統計專門家도 綜合적으로 把握키가 困難하므로 이에 因해서 統計利用者가 自己利用에 適合한 統計나 關連統計를 効果적으로 選擇하기나 甚히 어려운 狀況에 있다.

때문에 國內에 供給되는 統計의 內容을 손쉽게 調查할수 있는 List 의 必要性을 統計利用者側에서 指摘하고 있다.

이에 副應하는 것으로서 國內에 供給되고 있는 統計를 List 한 統計名鑑을 生覺할수가 있다. 또 各統計가 어떠한 統計表를 갖고 있는가를 List 한 것이 있으면 그 利用을 보다 確實하게, 必要 統計 Data 를 빠짐없이 捕捉하기 위한 素材로써 便利하다. 이것이 統計表 List 인 것이다, 또한 統計分類名 List, 統計項目名 List 등에 依해서 利用者가 必要로하는 統計를 손쉽게 接近할수 있도록 情報整備를 하고 利用者가 必要로하는 統計情報를 어느곳이 保有하고 있는가, 어느 資料에 掲載되어 있는가 또는 어느 File 에 收納되고 있는가를 表示하는 統計所在源情報가 利用된다면 利用者側으로 볼때 매우 便利하다.

2. 統計表 Image, Data

統計報告書에서公表된統計 Data와 이들을素材로加工된結果의統計 Data를 말한다. 이들統計는 많은境過 Cross Section Data이다. 이 Data를素材로하여時系列化된 것이一般의分析에使用되는 일이 많으므로一般的으로公表 Data를時系列的으로再編集해서 다시報告書로서刊行하는境過가 많다.

따라서統計表 Image Data라고 하는境過·Cross Section Data와時系列 Data의型態가 있으며 이것을磁氣 Tape化한 것이今後의統計情報活動中에서 가장 많이利用될 것이다. 今後의利用을促進시키자면過去부터現在에이르기까지의公表 Data를提供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当面課題인 것이다.

3. 中間集計 Data

調査結果를入力한個票 Image Data부터所定の統計表를作成키 위해作成되는中間的인集計結果의 Data를 말한다.

例컨데通計 Data를作成하자면郡邑面마다의集計結果를作成하고最綜的으로通計結果를 내는 것인데 이中間의郡邑面마다의集計結果의 Data를中間集計 Data라 한다. (또는 Summary Data)

Summary Data는 그自身公表 Data가 아니므로現在로서는一般이利用할수 없으나將次公表 Data만으로서는利用目的에符合되지 못하는境過個票 Image Data부터의再集計할것이考慮된다. 이境過 Summary Data가 그需要의 많은部分을充足시

켜줄 것으로 期待된다. 從來의 統計利用活動을 広範하게 하고 또 有效하게 하는데 있어서 重要な 素材이다.

4. 個需 Image Data

統計調査를 實施하고 回收한 調査票의 記入內容 即 回答 Data 나 이에 準하는 Data (例컨데 登錄事務로 收集된 것)를 磁氣 Tape化한 것이다.

利用者の 注文이나 統計表 Image Data 또는 Summary Data로서 는 處理할수 없는 境遇와 特別한 研究目的에 依한 自体利用의 境遇는 個票 Image Data로 부터 再集計해서 公表 Data와는 別途의 統計 Data를 作成하게 된다. 이 같은 利用에 對해서 指定統計인 調査票 Image Data로 부터의 集計에 對해서는 統計法 第15條에 依한 利用上의 制限이 있다. 今後의 民間利用者の 注文에 應할 것인가 아닌가, 應한다면 어떤 方法으로 應할 것인가 등의 問題가 檢討對象으로 남는다.

即 政府가 統計行政面에서 關与하는 指定統計, 報告調整法에 依한 承認統計 및 屈出統計는 보다 그 重要性이나 必要性에 비추어 利用者에게 널리 提供되는 性格의 것으로 今後 民間利用要請에 對한 Service對象이 되어야할 것들이다. 이 以外에 政府의 經常行政活動으로 收集된 資料부터 作成되는 業務統計가 있다. 이 中에는 一般의 利用하는데 有用한 것. 또는 어디까지나 特定分野의 行政上의 基礎資料로서만 使用되는 것등이 混在되고 있다.

이것들을 公開해서 一般利用으로 하자면 根元的으로 統計上の 目的을 前提로 하지않는 것이 있음으로 提供對象으로하는 統計의 選定이 必要하다.

또 現行法에 基礎를 둔 統計行政의 面에서 關与할 수가 없는 것도 있어서 今後의 統計利用上 統計情報公害를 避하기 위한 方策도 必要할 것이다.

(2) 民間作成統計

民間機關作成의 統計나 民間機關이 自主的으로 整備中인 統計도 많다. 그러나 政府作成의 統計와는 달리 供給方法은 作成機關의 方針에 따라 반드시 一般公開를 原則으로하는 것이 아니므로 利用者가 손쉽게 求할수 없는 것이 있다. 따라서 民間作成統計中에서 公共性이 높은 것은 政府가 入手해서 一般利用의 便宜를 위한 方策을 講究함도 必要할 것이다.

(3) 海外作成統計

民間作成統計와 같은 事情下에 있는 것이 海外機關作成의 統計이다. 大別하면 外國政府作成統計와 國際機關編集의 統計, 및 特定民間機關編集의 統計가 있다. 前二者統計는 國家의 統計 data 交換등의 root로 比較的 定常的으로 入手되고 있으며, 日本政府가 入手한 것은 그 整備方法에 따라 一般利用에의 方途는 넓다. 그러나 利用要請에 對해 未及한 것에 對해서는 今後 積極的인 收集이 要請된다.

또 國內需要의 利用效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海外의 特定民間機關

의 統計도 國家機關이 獨自的으로 入手하든가 또는 獨自的으로 入手하고 있는 民間이 있으면 그 流通의 方途를 講究함이 必要할 것이다.

A 13 統計情報活動의 組織體

A 13

1. (統計情報活動의 組織體)

組織形體의 種類

- ① 國家機關
- ② 公社, 公團
- ③ 株式會社
- ④ 財團法人
- ⑤ 特殊法人

2. (組織體의 內容)

- ① 法律
- ② 豫算
- ③ 規模: 人員, 機械
- ④ 機能: hardware, data base
- ⑤ 其他

技術開發

system 管理

國家의 責務를 보다 効果的으로 實施키 위해서는 各種의 上記統計를 收集 整備해서 對民間 service 하는 機關이 必要하게 된다.

그 機關數를 몇個로 할것인가는 지금 不問으로하고 이것을 取扱하는 組織體에 對해서 組織形體로 分類해서 各其의 特徵을 살펴보자

(1) 國家機關

國家行政의 一環으로서 이를 行하는 境遇 利點으로는 統計 data의 收集能力이 餘他形體에 比해 良好하다. 그러나 活動과 開發面에서 보면 需要變化에 對한 service system의 順應性을 最適으로 維持함에 있어서 豫算이나 運用面에서 制約이 있기 쉽다.

따라서 이方法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期待되는 附加價值가 높은 情報提供活動을 十分 發揮할 수 없지않나 생각된다. 때문에 그 設立에 있어서는 이같은 點을 回避하는 方策을 미리부터 樹立하고 設定目的을 充分히 다할수있는 機能을 付與하여 統計情報活動에 가장 適當한 專門機關으로함이 必要하다.

이 專門機關은 特定의 統計分野에 치우치지 않고 廣範하게 統計를 取扱할 수 있는 機能을 갖는 機關과 有機的인 連繫을 保持함이 必要하다.

(2) 公社, 公團

이것은 政府資金을 中心으로한 事業體이다. 따라서 收入을 올려서 會計收支의 均衡을 꾀함이 必要하다. 現在 民間需要가 不明確하여 收入豫想을 하니 힘들고 또 將來 赤字 可能性을 覺悟하면서 活動을 始作할수도 없는 것이다.

(3) 株式会社

政府나 民間資金を 導入한 株式会社로하는 境遇 이것은 利益을 計上해서 株主에의 配當을 前提로한 管利目的의 事業체가 된다. 따라서 國家業務의 一環으로서 公共目的의 service 担当 組織체로서는 妥當性이 欠如된다.

(4) 財団法人

政府部処의 外部団体로서의 財団法人이다. 政府出資金과 民間會員으로 부터의 出資金에 依해 經營된다. 이미 財団法人을 經由해서 部処作成의 統計data를 印刷刊行物로서 提供하고 있는 外에 特定data를 磁氣tape에 依해 提供하는 例도있다. 그러나 將次會員에 對한 service, 非會員에 對한 service 方法 및 各部処가 統一的으로 service 實施를 行하는 観点부터의 檢討가 아직 없었다. 따라서 現行의 service 形体로서의 財団法人에 依한 方法은 便宜的이기는 하나 將次 他形体로 移行할 것이 必要하다.

(5) 特殊法人

政府의 付屬機關으로써 專門的으로 統計data를 收集하고 綜合的인 提供을 可能케하는 事業체이다. 政府出資金과 民間寄付金등으로 經營하며 販賣service로 事業收入을 올릴수도 있고 政府管理의 観点에서 data 收集能力을 갖는 同時 公共性을 充足시키고 需要變化에 對해서도 順應性을 維持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따라서 今後 統計情報活動을 担当함에 適當한 候補組織形体의 하나로 손 꼽을수가 있을 것이다.

(6) 國家機關과 民間機關과의 連繫

以上은 单独機關이 行하는 것으로서 考慮했다. 이에 對해서 國家機關과 民間機關과의 兩者의 連繫下에 行하는 方法을 生覺할 수 있다.

國家機關은 國家가 作成하는 統計를 民間機關經由로 民間利用者에게 提供하고 民間이 作成하는 統計를 國家가 利用코자 할때에는 民間機關을 經由해서 收集한다. 따라서 國家機關은 政府側窓口로서 또 民間機關은 民間側의 窓口로서의 役割이 있으며 그 pipe 를 兩機關에서 担当하도록 한다.

이 方法의 利點은 兩機關이 取扱하는 統計data의 흐름을 管理할 수 있으므로 data의 質을 維持할 수 있으며, 料金水準을 一定으로 保持하고 國家와 民間의 協力으로 보다 広範한 統計利用을 促進할 수 있는등을 枚擧할 수 있다.

많은 種類의 統計, 이들 統計data를 蓄積하고 多様な 利用要請에 對해서 適切한 service를 效果的으로 하는 일은 技術的으로 極히 困難한 業務로서 많은 未開拓의 問題를 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一朝一夕에 實現이 可能한 것이 아니므로 段階를 밟아가면서 慎重히 開發할 必要가 있다. 여기서는 特히 統計data의 整備나 蓄積과 이를 위한 作業員과 技術 및 이에 隨伴되는 制約등에 對해 考察토록 한다.

1. Data量

對民間 service의 가장 基本이 되는것이 service素材로서의

統計 data이다. 日本国에서는 每年 數千件的 国内統計가 供給되고 있으므로 一般的으로 利用性이 높은 것부터 順次로 利用可能케 하는 配慮가 必要하다. 이 龐大한 data는 모두 service의 對象으로써 必要한 整備를 하고 提供可能한 것으로 하자면 相當한 準備를 要한다. 이에 相當量의 作業이 所要되고, Computer 技術의 開發등과 어떤 運用方法으로 需要를 充足시킬 것인가 등의 問題가 있다. 이들과의 關連下에서 data의 公表와 非公表, service의 種類등으로 分類 考察했다.

(1) Ready-made Data

公表됐거나 公表가 確實한 data를 ready-made data라 할 수 있다. 따라서 data의 編成方法이 一般에게 熟知되고 있다. 이런 既作成의 data는 그自体가 그 統計上의 目的을 最終的으로 다하는 性格의 것으로서 作成되고 또 널리 利用되고 對民間 service의 第1段階에서 service對象이 되는 data이다. 또한 統計解析이나 再編集에 利用되는 것도 이들 data가 主流를 이룬다. 相當量에 達하는 data이지만 實際의 提供을 위해서는 收集, 蓄積, 整備를 利用要請이 많은 統計로 부터 順次的으로 準備함이 必要하다.

(2) Order-made Data

公表된 data를 素材로하며 이에 加工計算 또는 關連統計의 組合으로서 別途로 加工生産된 새로운 data와 統計調査의 個票 image data를 素材로하여 再集計로 부터 얻어지는 새로운 data를 말한다.

① 公表 Data 의 分析加工

今後의 統計利用에서는 單一統計 data 의 利用이나 比率計算 등의 加工程度の 것이 아니고 市場動向, 經濟動向의 解析이나 豫測 또는 波及效果分析, OR나 Simulation 등을 위한 data 利用이 豫想된다. 解析対象分野의 多樣化에 따라 必要로되는 統計 data 의 種類도 그만큼 많아지므로 service 를 提供하는 側에서는 統計種類를 充實化할 뿐 아니라 時間的, 地域空間的範圍도 詳細하게 또 各統計에 있어서의 data 의 깊이를 考慮해서 充實化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② 個票 Image Data

個票 image data 를 統計調査로써 收集한 個別 data 나 또는 그와 同等으로 取扱해야 할 것으로 生覺하자. 被調査者의 秘密保護와 統計法에 依한 個票의 秘密保護 때문에 利用上 制約이 많다. 따라서 今後 對民間 service 에 있어서 個票 image data 에 依한 再集計結果의 作成이나 特殊研究를 위한 利用등이 考慮되므로 個票의 秘密을 完全히 秘匿하는 技術 例컨데 個票를 識別하는 data 를 除去한 結果의 提供이나 Pass word (暗號)의 設置, 技術이나 法制 또는 運用面부터 充分히 檢討해야 한다.

2. 作業量

上記의 龐大한 量의 data 를 系統的으로 收集整備하고 維持更新해서 管理하며 多様な 利用要請에 効率的으로 対応해야 한다. 이 때문에 data 提供側의 体制은 computer 의 情報處理能力을 有

効하게 驅使해서 業務의 迅速正確을 期해야 한다. 이에 隨伴되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1) Computer 作業量의 急增에 對한 對策

各種의 統計 data 를 利用者의 要請에 有效하게 對應시키자면 大規模의 data base 를 想定해야 한다. 이의 整備 維持 更新管理을 위해서는 Computer 에 依한 data 蓄積과 管理 및 對需要者 service 體制가 必要하다.

또한 要請된 情報을 data base 부터 檢索하고 이에 加工分析 또는 再編集 등 各種의 情報處理技術中에서 必要한 것을 選定해서 效率적으로 處理를 하자면 Computer 의 情報處理能力을 따를것이 없다.

따라서 對民間 service 에 있어서는 現行의 行政活動의 一環으로서 처리하게 되면 service 內容이 制限되기 쉬우므로 別途로 大型의 Computer 를 갖는 專門의 體制를 取해서 할 必要가 있다.

(2) Programm 의 高度化

Data 提供方法은 man machine system이 하나의 目標로써 考慮된다. 利用者는 Program에 對해 門外漢이더라도 自意로 data 를 呼出해서 處理하고 必要한 結果를 얻을수 있어야하고 이에 對應되는 Program System을 提供者側이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中에 對需要者 data 提供에 隨伴하는 Software와 提供者側 data base의 維持更新 管理의 Software, System 및 이들을 尙便케 하기 위한 言語開發등도 必要하다.

從來 開發供給된 많은 Programm이 이 System의 基礎分野를 占하며 相當한 役割을 担当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높은 目標을 指向키 위해서는 高度複雜한 各種의 關係Program의 開發이 必要하다.

(3) System의 段階的擴張

對民間 service를 始作함에 있어서는 經常的 行政事務中에서 Computer 處理時間을 捻出하고 外部團體인 協會를 통해서 一部 data의 tape copy service부터 始作하게 될것인데 現在 實施中인 例도 있다.

그러나 民間利用者는 이에 滿足하지는 않을 것이며 政府의 提供者는 國民的利用을 前提로 하므로 當然히 相當量의 處理結果를 提供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政府自体가 積極적으로 情報提供을 担当하는 機關을 設置하게 된다면 附加價值가 높은 情報의 提供을 目標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提供System로 하여 恒常 需要에 対応할 수 있도록 段階的擴張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

3. 制 約

個票 image data는 元來 統計調査에 依해 收集된 被調査者의 回答 data이다. 그 內容에는 被調査者의 Privacy (秘密)에 關한 data가 包含되고 있다.

한편 統計調査結果의 眞實性確保를 위해서 回答者의 秘密事項을 完全히 保護해야 하며 또 利用面의 要請上의 接点上에서 다음의

問題가 發生된다.

(1) 個票 Image Data의 秘密保護對策

從來에 있어서도 被調査者에 關한 各種 統計調査의 個票 data를 組合하면 被調査者에 對한 相當한 事情이 分明하게 됨이 밝혀졌고, Computer를 利用한 境遇 이 可能性은 보다 實現性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의 利用에 있어서 明白하게된 回答者에 關한 情報가 一般에게 公開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2) 統計法에 依한 Data 利用制限

現行의 統計法은 昭和 23年에 制定되었는바 統計調査에 關한 規定은 充分히 反映되고 있으나 當時에 있어서는 Computer에 依한 統計data의 利用이 豫想되지 않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現狀에 順應되지 못하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① 個票 Image Data의 一般利用制限

政府가 作成하는 統計의 第1要件은 統計의 眞實性의 確保에 있다. 이 때문에 回答內容이 回答者名과 함께 外部에 알려지는 것이 禁止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形態의 個票 image data의 一般公開는 不可能하다.

② Summary Data의 利用制限

個票 image data에 代身해서 summary data는 未作成 data의 新規作成을 補充하는 뜻에서 相當한 對應力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利用은 보다 詳細한 統計의 活用이라는 觀點에서 極히 有效한 것이 된다. 그러나 集計中間에서 作成된 것이므로 現行統計法에서는 公表data로써 公開하는 일이 認定되지 않는다.

(3) 統計 data 의 著作權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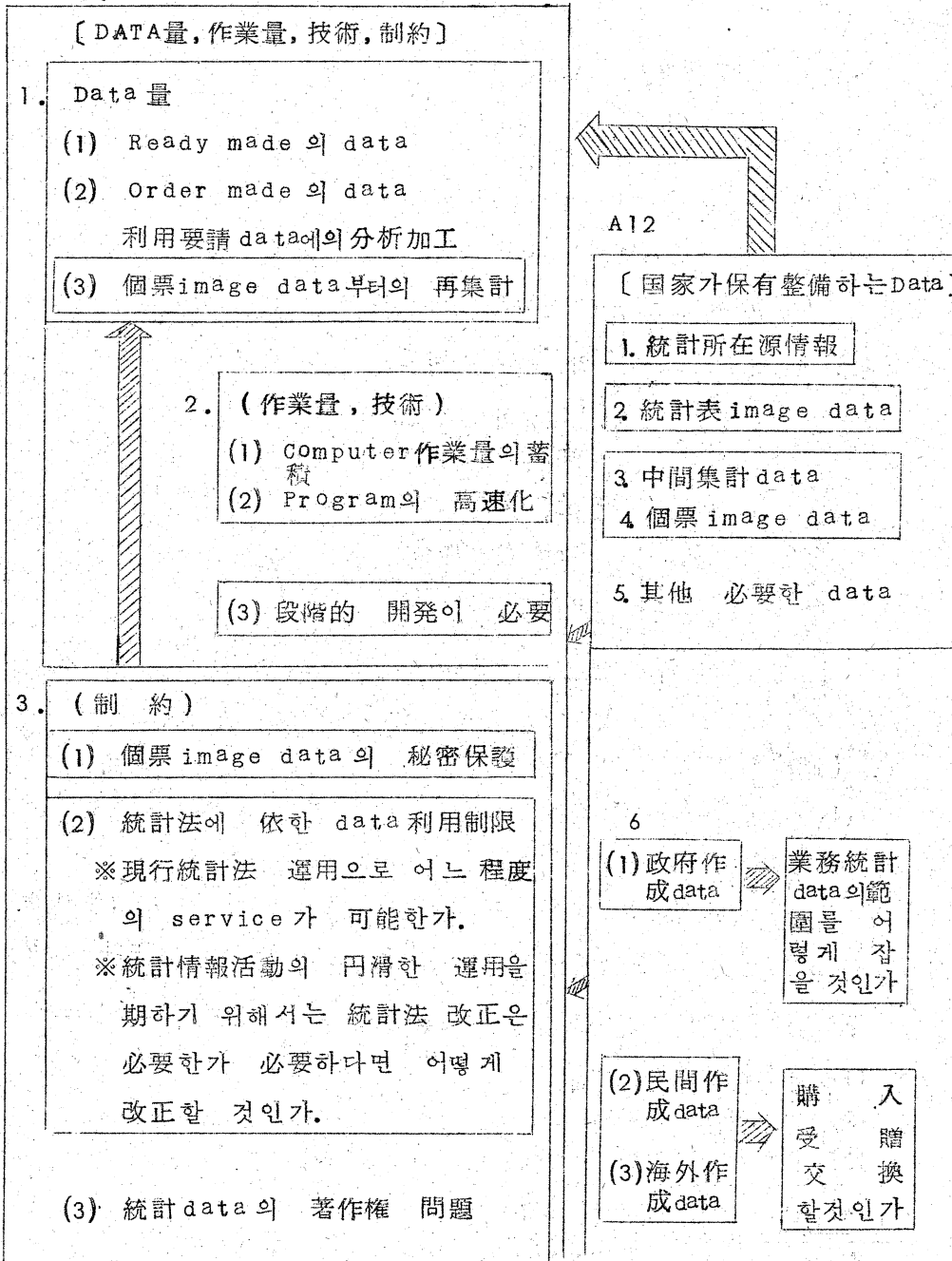
從來의 統計利用의 大部分이 統計報告書에 掲載된 數值 data 를 利用하는 方法이고, 最小限 政府가 刊行하는 이들 報告書의 統計 data 는 널리 利用되어 왔다. 이들 公表 data 를 第三者가 磁氣 tape 化 한다거나 또는 달리 利用시키거나 境遇에 따라서는 販賣하는 것이 考慮中에 있다. 이와 關連해서 國家가 刊行하는 統計報告書의 統計 data 의 著作權, 그것이 公表 data 라 하더라도 第三者가 任意로 磁氣 tape 化해서 媒體의 交換이 可能한가 또는 公表 data 를 加工해서 얻은 結果의 data 는 누가 著作權을 갖는가 또는 갖을수 있는가 등의 問題를 생각할 수 있다.

또 著作權이 國家의 公表 data 에 대해서 認定되는 境遇 어느 data 를 말하는가도 있다.

國民的 資產으로써 國家가 作成公表하는 統計 data 의 廣範한 利用을 目的으로 하며 對民間 service 를 國家가 担当한다 하더라도 統計作成機關의 著作權에 對한 問題가 國家的으로 充分히 檢討되지 않고 있으므로 今後로 남겨진 重要宿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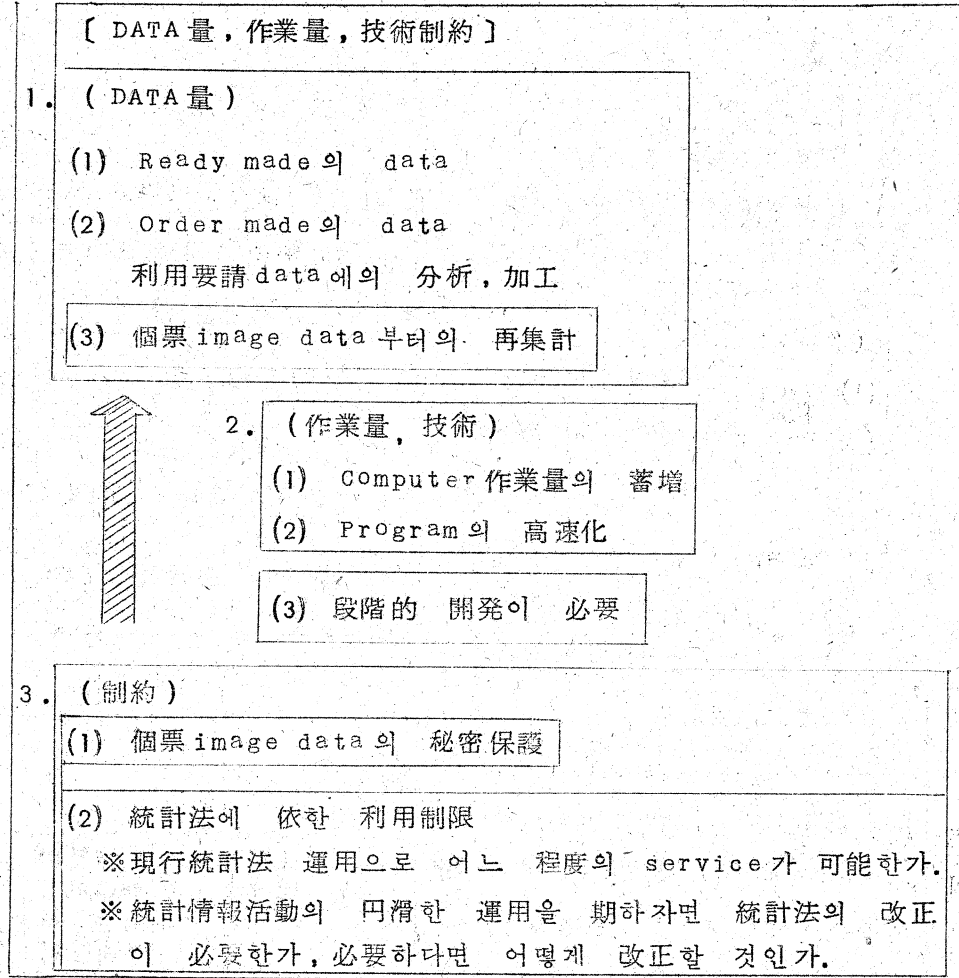
<別添 A 22 >

A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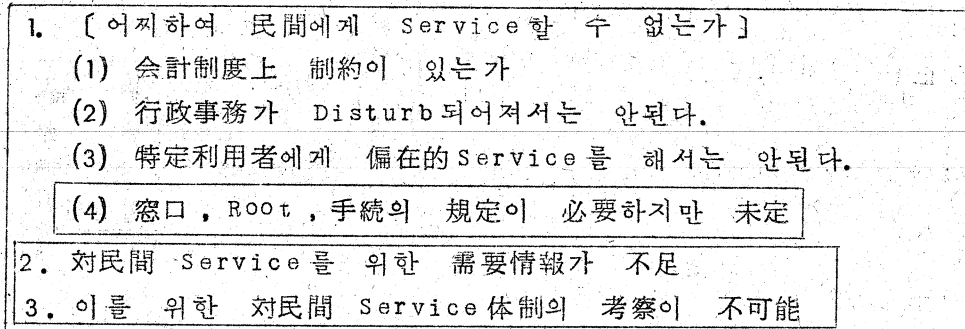


A 22

A21



A 22



1. 對民間 Service 가 不可能한 理由

政府統計의 對民間 Service 에 對해 民間側으로 부터 여러가지 意見이나 要望이 나오고 있다. 한편 一部 部外外部團體를 經由해서 磁氣 tape 에 依한 data 提供이 特定利用者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自體 統一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民間利用者를 滿足시키지 못하고 있다. 現實的으로 統計 Data Bank 의 研究가 進行中이지만 아직은 國家로서 統一的으로 活動을 開始할 수 있는 體制는 아니지만 이에 關連되는 問題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國家의 會計制度上의 制約

國家의 統計作成 및 公表擔當部局의 業務는 一般公計中에서 實施되고 있다. Data 提供 Service 를 民間에게 行하자면 無制限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制限措置로써 適當한 利用料金を 設定해서 受益者負擔原則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國家가 民間利用者부터 直接 料金を 徵收하자면 이것을 可能케하는 會計制度가 制定되어야하고 이에 附隨해서 關連되는 諸般手続을 規定할 必要가 있다. 이들方向이 未檢討의 段階에 있는 것이다.

(2) 國家活動이 阻害받지 않을 것

(A 11 - 3 參照)

(3) Service 擔當窓口, Root, 手続規定

統計圖書館과 같이 利用者가 無料로 利用할수 있는 것이라면 Service 擔當窓口가 行한다. 이 Service 가 磁氣 Tape, hard Copy, micro film 등의 Data 記錄媒體에 依한 提供이나 Computer 處理를 隨伴하는 Service 인 境遇는 國費之出이 必要하므로

特定利用者에게의 偏重된 Service를 避하고 또 国民利益에 依해서 지하는 方法으로 할 必要가 있고 또 Data 提供擔當의 窓口, 利用者の 入手Root 入手手續등의 規定이 必要하다.

現在 이들 問題에 對해 充分한 檢討가 없으나 72年度의 研究는 이들 問題를 다루기 위해 各部處에 依한 「窓口協議會」의 設置가 提案 되고 있다.

2. 民間의 需要情報不足으로 對民間 Service의 考察이 不可能

國家가 國家의 責務로서 統計情報 Service를 從來 方法에서 脫皮하기 위해서는 相當한 政策投資를 失行시켜야 한다.

이 Service의 方法을 方向짓는 것은 需要의 動向이다.

지금까지 民間例부터 여러가지 Report 등으로 統計에 對한 需要가 提定되고 있으나 國家便에서의 있어야할 體制를 示唆할만한 明確한 需要가 記術되지 않고 있다.

既히 MIS構想등이 發表되었으나 그 抽象的必要論은 理解할 수 있으나 現實적으로 國家의 어떠한 使用方法으로 어느곳에서 必要로 하고 있는가의 具體案이 없으므로 國家로서는 對策을 樹立할수 없다 할 것이다.

70年度에 總理府統計局이 野村綜合研究所에 委託하여 統計에 對한 “需要性調査”를 實施한 結果 需要의 詳細한 Pattern은 把握할수가 있었다. 그러나 提供體制를 鞏固히 하자면 需要되고 있는 Data量의 推定値가 必要하다. 例컨데 提供開始時의 Service

機能을豫定하자면 어느 統計 Data가 定常적으로 얼마만큼의 output 量이 되는가, 이에 따라서 data base의 size (크기), Computer의 处理能力, 窓口的 能力確保등의 設計가 必要하며 非定常적인 需要가 加해졌을 때의 处理能力도 豫定해서 設計에 反映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미루어 需要量의 把握은 極히 重要함에도 不拘하고 아직은 詳細히 把握되지 않고 있다.

各部處의 行政政策의 立案 樹立 評價 改訂에 合致되고 그 円滑한 推進을 위해서 自體部處作成 Data 外에 他部處作成의 統計 Data가 不可欠할 分더러 利用을 위해서는 이들 Data를 적어도 Computer Readable한 媒體로 入手코자하는 意向이 漸高되고 있다. 이것을 中央官廳間에서 實視시키기 위해 統計 Data Bank 研究會가 總理府 統計局主權로 關係部處 關係官 및 學識經驗者의 參加 表에 1972年 以來 開催되고 있다.

다음에 統計 Data Bank 研究會 및 統計 Data Bank 準備室에서 研究한 報告書를 紹介한다.

統計 Data, Bank 調査研究報告書

1. 統計 Data Bank의 需要性調査에 關한 調査研究

※ 統計利用狀況과 統計에 對한 要望調査

※ 全上 付屬資料

※ 「統計利用狀況 및 需要性調査」에 回答한 要望意見등

2. 綜合 Software System에 關한 調査研究

※ 統計 Data, Bank, System의 基本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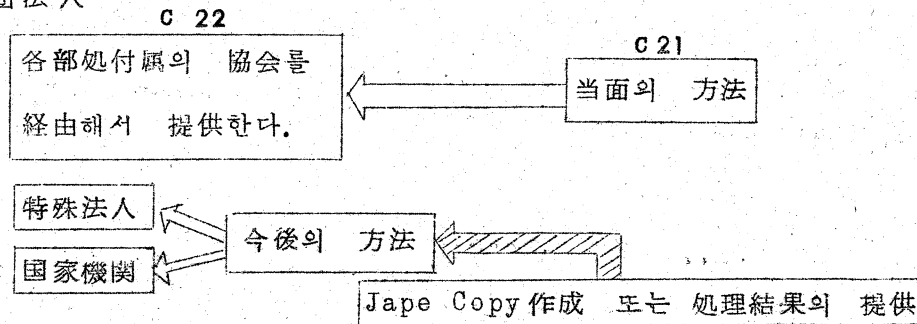
- ※ Summary 提供 Service System과 그 言語의 基本設計
 - ※ Data Base 記述言語
 - ※ Tree Logic Programing System
 - ※ 集計 System의 改善 (參考資料)
 - ※ 統計 Data Base 處理言語
 - ※ 統計檢索에 對해서
 - ※ Date Base 記述言語의 集計 System
3. 小地域情報 System에 關한 調查研究
- ※ 小地域情報 System開發의 基礎研究
 - ※ 地域区分의 問題를 中心으로
 - ※ 小地域基本區設定에 關한 試驗作業
 - ※ 小地域情報의 利用과 Computer matching
 - ※ 接統用 file 群의 製作과 利用技法의 開發
 - ※ 全上
- ① Date 收集 manual ② 街区邊 file 作製 Software
4. 物價關連情報 System에 關한 調查研究
- ※ 物價關連情報 System (1972 年度)
 - ※ 物價關連情報 System (1973 年度)
5. 統計 Data의 收集 利用에 關한 調查研究
- ※ 統計 Data의 收集利用 (1971 年度)
 - ※ 統計 Data의 收集利用 (1972 年度)
6. 統計 Data 交換運用體制에 關한 調查研究
- ※ 統計所在源情報의 試檢的整備

7. 其他調査研究

- ※ 道市計劃에 있어서의 Data의 利用
- ※ 都市에 있어서의 山地城情報 System
- ※ 海外의 Data Bank
- ※ 西独의 Privacy 法令草案 및 關連資料

C 11 对民間 Service 의 担当組織

財團法人



今後 國家責務에 있어서 对民間 Service 擔当機關은 現行의 行政機關이 擔當하는 方法과 特別히 組織된 Service에 力點을 두는 機關 및 兩者의 連繫에 依한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Data 提供에 依한 料金の 收入, 變化하는 需要에 對한 迅速한 順應 必要에 따른 研究와 開發 및 資金의 投入등 資由度가 높은 活動이 可能的 機能體이어야 한다.

이의 實現을 위해서는 두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中央部之間에서의 實驗的相互利用의 實現을 圖謀하고 이

를 土台로 關連되는 謀技術을 開發하고 広範한 對民間 Service 實施에의 自信을 높인후에 行하는 方法이다.

또 하나는 對民間 Service를 위한 組織을 먼저 作成하고, Service 實施까지 이것이 中心이 되어 關連되는 技術開發을 하고 中央部處의 利用도 여기에 包含시키는 組織體로 하는 方法이다.

前者는 設立과 同時에 低水準의 Service로부터 實施하고 그 內容을 段階的으로 높이는 方法이고 後者는 相當한 技術水準에 達한 後에 Service를 開始하는 方法이다.

어느 方法을 取하던 民間需要는 把握과 함께 基礎技術의 開發과 Data 整備를 어느程度 進捗시켜놓은 것이 前提로 될것이다.

C31.32 特殊法人에 依한 Service

國家의 責務와 上記要體에 비추어 對民間 Service를 擔當함에 通合한 組織形體의 하나는 特殊法人으로서의 政府機關이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A14-(5)에서 記術한바와 같이 今後의 方向으로서 Service 實施를 效果的으로 實施키 위해서 需要에 柔軟性있게 対応할수있는 國家의 專門機關을 設置하든가 또는 特殊法人을 後補組織으로서 例 拳했었다.

現在 一部部處의 財團法人이 實施中인 磁氣 Tape Data에 依한 Service는 他部處로 부터 獨立해서 實施하는 것으로서 國家로서의 意志統一과 方向이 없기때문에 他部處 方害와는 無關하다.

국가로서 국민에게 널리 統計 Data를 Service하고자 하는
境遇 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國家의 責務上으로도 이것으로
充分하다고는 할수없다.

적어도 統計所在源情報 Service가 根元的으로 必要할 것이고
또 利用자가 問議를 하는 窓口도 各部処마다에 個別的으로 있기
보다는 專門的으로 擔當하는 部署가 있는 편이 훨씬 便利하다.

現行의 財團法人의 Service活動이 發展되어간다 할것 같으면
어떠한 形態로건 統合된 機關이 必要하다. 또 이것을 專門化하면
統計 Data 收集機能과 Service 提供機能이 훨씬 提高되고 同時에
付加價值가 높은 情報를 提供하는 일도 可能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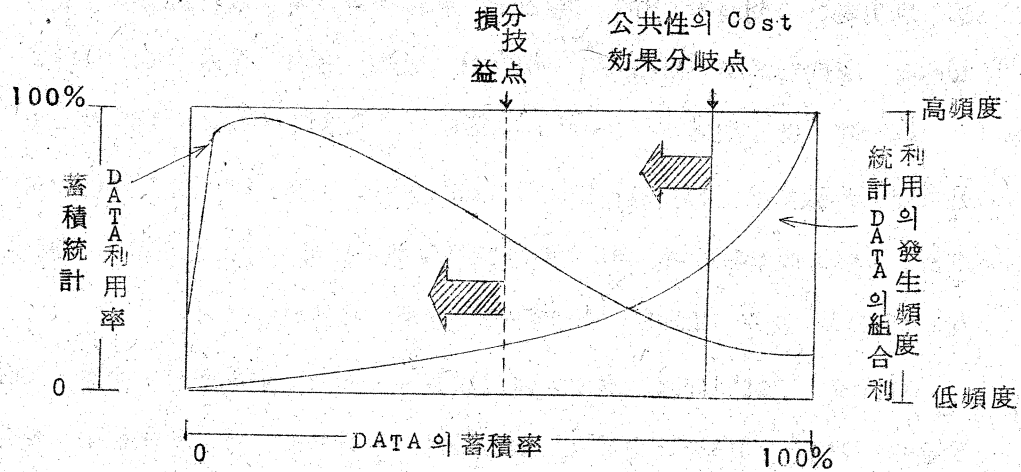
이들을 公共目的의 達成 需要變化에 對한 順應性의 確保 國家
資金에 依한 效率的運用등의 側面에서 考察하면 이 組織體는 國家
의 專門機關의 新設, 特殊法人 또는 이에 連繫되는 것이 가장 妥
當하다고 생각된다.

F 費用 (國家側의 運營 Cost)

國家가 對民間 Service를 實施함에는 利用對象이 되는 統計
Data의 種類나 利用頻度등의 需要를 把握할 必要가 있을 뿐더러
實際의 運用上 Data의 收集, 蓄積維持, 管理 및 技術開發등을 위
해서 相當한 費用을 必要로한다. 따라서 利用效率을 높이는 觀點
과 國家가 負擔하여야할 費用과의 關係를 國家의 立長에서 把握할
때 檢討를 要하는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考察하지 않으면 안된다.

1. Cost Performance

統計 Data의 提供 Service를 國家機關이 行하자면 公共性을 達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特히



- ① 統計 Data의 收集 整備 蓄積 維持 更新 管理를 위한 經費
- ② Computer System 維持費

등이 눈에 떠는 經費인데 ②는 ①의 規模에 準하게 되므로 ①을 中心으로 生覺해보자 (別添 그림)

< 그림의 說明 >

i) Data의 蓄積率 :

需要가 높은 Data부터 優先順位에 따라 蓄積한다. 蓄積率 100%의 狀況은 國內에 供給中인 統計全部를 蓄積하고 利用可能으로 된 理想的인 到達段階를 生覺한다. 따라서 全統計 Data를 100으로 한 境遇의 抽象的 蓄積率을 表示한다.

ii) 蓄積한 統計 Data의 利用率 :

蓄積된 Data 中 特定期間内に 利用된 統計 Data의 利用比率
蓄積率이 낮은 段階에서는 利用率은 大端히 높지만 高位에 達
함에 따라서 特定期間内에서의 利用率은 遞減된다고 생각된다.

iii) 統計의 組合利用의 發生頻度 :

今後 增大할것으로 豫想되는 各種統計의 利用方法에 相異하는
統計 Data의 多角的組織利用이 있다. 蓄積率이 높아짐에 따
라서 이種類의 利用發生頻度는 急激하게 높아질 것이다.

iv) 損益分岐点 :

統計情報의 提供는 營利를 目的으로 行할때는 收支均衡을 生覺
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서 Data 蓄積이 適蓄한 利用率以內
範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基體的으로는 公共性目的의 趣旨
에 어긋나는 것일 것이다.

v) 公共性 費用對效果分岐点 :

營利目的에 對해 公共性目的下에서는 需要全體로 부터의 要請에
될수록 應하도록 하는데 重點을 두어야 한다.

모든 統計 Data를 完全히 蓄積한다면 利用率의 低下가 顯著
하게 됨과 同時에 經營費用이 增大되므로 國費를 投資하는데
있어서는 그 效果를 考慮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 分岐点이 그것이다. 損益分岐点부터 Data 蓄積率은 높고
赤子經營의 可能性이 있으나 利用件數를 높이는 點에 特徵이
있다.

(1) 採算을 맞출것인가

C 11

Tape·Copy 作成 또는 処理結果의 提供

用

1. (Cost·performance 를 生覺할 必要가 있다)

國家機關은 採算을 맞출것인가 / 公共性面에서 費用, 效果를 어떻게 生覺할 것인가

統計 Data bank는 採算性이 있는가

3

將次는 技術進歩로 提供價格은 보다 低廉해질 것이 아닌가

4

需要者가 많으면 支拂한다 .

現在 需要者는 限定

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5

統計를 잘 消化하는 需要者는 果然 많은가

國家가 行하는 Service 提供活動은 公共性을 重視하므로 採算性을 重要視하게 되면 이 公共性의 趣旨는 毀損된다. 오히려 國民에 對한 Service 性 卽 需要의 充足性을 重視해야 하며 採算性을 爲 主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때문에 損益分岐點을 上廻하는 Service에 對한 Data의 蓄積이 必要하며 이에 對한 費用이 投入이 必要할 것이다.

(2) 採算性보다 效果에 重點을

費用效果의 均衡이 統計 Data Bank에 對한 國費投入額의 限界를 決定하는 要素이다. 이 境遇 效果를 어떤 方法으로 判斷하는가가 큰 課題이다.

效果는 利用者의 滿足度에 依해 決定되며 滿足度는 Data의 利用頻度나 利用者부터의 要求의 關係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數量化해서 捕捉하는 自體는 때때로 主視的인 判斷을 包含하게 됨으로 今後 研究를 要하는 點이다.

2. 現在 User (使用者)는 限定돼 있는것이 아닌가.

實際에 있어서 民間側으로부터 政府 Data에 對한 要請이나 意見이 많이 提出되고 있으나 具體的인 needs (需要)가 明示되고 있지 않으므로 需要性調査의 結果, 1972年度의 統計利用狀況과 統計에 對한 要望調査 其他로부터 推理할수 있을 뿐이다.

中決部廻間에서의 實現을 目標로하는 境遇 利用料金問題가 없으므로 窓口, 手續問題와 Data의 相互利用에 附隨되는 物理的技術問題가 中心이 되어 對民間 Service를 取扱하는 境遇와 比較

하면 問題의 範圍는 極히 狹少하게되며 實現의 可能性은 顯著하게 높아진다.

남는 問題는 民間需要의 具體化와 提供側의 具體的體制編成이다. 이에 對해서는 對民間 Service의 境遇와 民間의 需要의 實體가 不明함을 既히 說明한바 있다. (A22-2 參照)

果然 官廳의 Data Base를 共通으로 利用할수 있는가. 共通으로하여 民間需要에 有効하게 對應할수 있는가.

할수없는 境遇 그 gap의 크기는 어떤것이며 이것을 메우는데는 얼마만큼의 投資가 必要한가등의 問題가 있다.

이것은 統計 Data Bank 研究會의 性格으로부터 直接 論議가 不能한 問題이므로 別途로 檢討하여야 한다.

別添表 G11 情報의 價格

1. 適當한 價格水準을 設定하기 爲해서

國家가 保有하는 多樣한 統計 Data를 利用要請에 맞춰서 迅速히 提供하자면 適當한 價格水準으로 實施하여야 하는데 適當한 價格水準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決定하는 것은 누구인가가 問題로 된다.

特定の Service 專門組織을 設置하면 이機關이 所定의 方法으로 取扱하게될 것이지만 國家가 擔當하게 된다면 어떤 方法으로 決定하는가 등의 問題로까지 發展된다.

干先 이 價格水準 그 自體에 對해서 實例를 들어보자.

2. 價格, Service 料金の 決定方法例

(1) 檢索 Service 件當定額料金制

情報檢索 Service 件當料金を 定額으로하는 制度이다.

Service 의 內容은 所在源情報를 提供하는 境遇, 情報를 hard copy 등으로 내는 境遇로서 比較的簡便한 技術로 底廉한 價額일 때 有利한 service 이다.

(2) Data 作成費包含販賣

情報를 磁氣 Tape 化해서 販賣하는 境遇를 생각한다. Data 作成費包含이므로 그 內訳은 「 \int 調査費+集計費(機械賃借料, 人件費, Program 作成費를 包含한다)+磁氣 Tape 代+關連費用 $\} \times (1 + \alpha)$ 」로 될것이다.

但 α 는 利益率, 關連費用은 消耗品費, 危險負擔費 등으로 생각할수 있다. 이것은 政府部局以外의 機關이 主로되며 民間이 作成하는 Data 를 民間이 提供하는 方法의 境遇 該當되는 것이다.

(3) Data 作成費削減 販賣

情報를 磁氣 Tape 化해서 販賣하는 境遇로 生覺할수 있음은 尙上인데 Data 作成은 國家行政事務의 하나이며 이는 元來 國民의 協力下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所要되는 經費를 除外한다. 따라서 上記式을 다음과 같이 變更해서 生覺한다.

「 \int 機械處理費+磁氣 Tape 化+直接經費+ β 」

但 β 는 必要最少限의 margin (餘白利益)으로 한다.

(4) 其他契約方式

經常적으로 定形화된 情報入手를 希望하는 利用者에게 定期的으로 情報提供 함에는 每回 料金を 算定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年間契約方式을 取한다.

이契約中에 Service 料金を 定하게 되며 그 算定方式은 契約者 相互의 Data 作成, 入手의 事情에 依해 上記②나 ③의 方法을 取하게 될 것이다.

3. 價格매김方法

前記例에 對해서 實際로 國家機關이 이를 行하려고 할 때 前記의 算定方法 만으로 妥當할 것인가의 問題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對策에 對해서도 考慮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1) 市場價格基準

情報의 價格 또는 Service 料金は 市場의 需要와 供給의 相互 競争關係에 依해 樹立되는 것이다. 라는 思考方式에 依한 決定方法이다. 따라서 既하 一部民間企業에서 去來되고 있는 價格 (또는 料金) 의 水準으로 決定하는 方法으로서 市場을 安定시키는 效果가 있으나 價格은 相當한 高水準이 될 可能性이 있다.

(2) 限界費用方式

Service 提供하는 情報를 生産하는데 必要한 經費로써 價格 또는 料金으로하는 方法이다. 即 情報 Service 機關이 이것을 國家의 業務로하는 境遇는 그 機械費, 入件費를 除外하고 Request (要請) 을 接收하고부터 解析 檢索하고 Output 을 作成하는 費用과 磁氣 Tape 費, 어떤 基準에 따른 margin 또는 margin 率을

加算해서 얻은 것이된다. 따라서 提供되는 同一 Data의 Data
量과 回数에 依해서도 價格은 變하며 生産費用의 實費를 追加할수
가 있다.

(3)管理價格方式

國家가 提供하는 情報은 國家가 生産하는 Service財라는 思
考方式에 따라서, 또한 市場에서 形成되고 있는 民間情報産業企業
의 情報價格과 競合않고, 補完的關係를 維持함을 考慮하여 國家가
獨自的으로 妥當한 價格水準을 維持하도록 協力하는 方式이다.

國家가 限界費用方式을 取하면 價格水準은 低廉하게 될것으로 豫想
되며 民間企業의 價格水準과 큰 格差를 發生시킬 可能性이 있으며
結果的으로 既成의 市場價格을 攪亂시킬 危險이 있으므로 이를 回
避하기 위한 方法으로 生覺되는데 水準은 相當히 높아지게 된다.

(4)獨占的價格決定方式

國家가 作成하는 Data이며 또한 그의 利用을 廣範하게 促進
시키는 것이 國家의 任務라는 思考方式에 따라서 價格面부터 이에
接 코자하는 方式이다.

따라서 情報의 價格은 低廉하다.

그러나 赤字를 不當하게 發生시킬수는 없으므로 原價計算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 境遇 Data 作成費用을 包含시키지 않고 限界
費用方式이나 想定利用件數에 依한 平均費用方式의 方法으로 價格을
決定하는 方式이다. 이 價格體系에 對해서 民間의 그것은 異質的
인 價格體系로 되므로 民間 Service가 國家의 Service에 對

比해서 質的으로 持徵을 갖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들 中 어느 便이 最適의 것인가는 今後의 論議의 對象이 될 것이지만 但 不當하게 民間을 庄倒 해서는 안되며 한편 情報의 流通도 促進시켜야 하므로 兩者의 方式에 對해서는 慎重한 檢討가 必要한 것이다.

4. 情報化社會志向과 國家方針

統計情報의 提供活動을 擔當하는 機關을 國家가 設立하는 境遇에 있어서 國家의 姿勢에 關한 問題가 있다.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原Data 作成을 위한 國費負擔을 利用者에게 負擔토록 할 것인가.

國家가 作成한 統計 Data를 提供하는데 있어 價格을 매기는 境遇의 根拠로서 統計調査에 所要된 費用과 提供 Data 作成에 關한 費用을 收益者에게 負擔시킬 것인가의 問題가 있다.

實際로 統計調査를 實施하는데는 相當한 調査費가 所要되며 總半이 國費에 依하고 있다. 이것을 利用者에게 負擔시키면 受益者로서의 利用者が 極히 少數인 境遇 件當 負擔은 高類으로 된다.

또 國家가 이方針을 取하는 境遇는 市道部등 地方公共團體作成의 統計 Data에도 이思考方式을 適用될 것이다.

그結果로 統計 Data의 價值는 相當히 高價의 것으로 된다.

따라서 國家의 立場에서 이 方法을 採用하느냐의 輿否나 또는 採用하는 境遇 經費의 全體 아니면 一部를 負擔시키는가가 問題化되며, 同時에 豫定利用件數를 想定해서 分擔經費를 配分해서 加算할 것인가에 對해서도 檢討할 必要가 있다.

이런 問題는 모다 層次의 民間에 의한 統計利用活動에 關係되

는 것으로 大端히 重要な 問題인 것이다.

(2)民間提供 Data 와의 價格差를 無視할 것인가.

提供價格을 決定하는 境遇에 있어서의 國家의 思考方式이 民間에 있어서의 Data 提供과 購入活動의 價格體系를 無視하는가 않는가의 問題이다.

既히 一部 民間企業에서는 契約方式에 依해 磁氣 Tape 化한 Data 의 去來를 行하고 있으며 그 價格은 相當히 高價이다. 但 慣行化되고 있으나 市場을 形成할 地境에는 이르지않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도 民間의 活動이 現狀대로 推移하리라는 保障은 없으며 早晚間 政付가 어떠한 形態로든 參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民間去來의 價格을 無視하고 國家側의 提供價格을 決定하는 境遇 市場價格에 相當한 影響을 미친다. 이것은 市場에 對해서 merit 와 Demerit 로써 波及될 것인데 이 問題를 充分히 檢討할 必要가 있다.

(3)情報産業育成方策과 國家의 提供價格과의 矛盾解決의 必要

情報産業이 새로운 産業으로서 脚光을 받는 趨勢下에서 國家는 적어도 그싸을 몽개버리는 方策을 實施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企業이 營利目的下에 이루어지는 境遇 國家의 提供價格과 競合關係를 取하게되는 것은 어느 程度 當然하지만 公益性을 指向하는 境遇는 國家活動과 補完的關係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萬一 競合關係에 이른다면 價格料金體系上에 矛盾을 낳고 民間經營을 壓迫하게 될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對한 配慮를 檢討할 必要가 있다.

5. 情報提供에 隨伴되는 責任

情報提供을 하는 境遇 情報의 記錄媒體를 Hard 또는 Soft 로 하느냐로 大別된다. 特히 今後 活動에 있어서는 Soft 媒體가 많이 使用될 것이다. 그러므로 Soft 媒體에 依한 提供에 隨伴되는 Data 作成者의 責任範圍의 問題點을 指摘하고자 한다.

(1) Data 作成者의 責任

國家의 提供機關이 民間利用者에게 提供하는 境遇 그 情報의 構造나 表現 등에 關한 說明 Data 를 付帶해서 正確한 處理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提供對象 Data 의 蓄積과 整備에 있어서 Data 를 吟味하고 利用者가 믿고 使用할수 있도록 措置해둘 必要가 있다.

(2) 提供 Data 에 事故가 있는 境遇 누가 損害賠償을 하는가.

Soft 媒體에 依한 情報의 收集利用에 있어서 事故가 發生하는 境遇 어느 段階에서 事故가 發生했는가는 알기가 힘들며 設使 判明된 境遇는 最從利用者가 情報利用의 時機를 놓친다든가 또는 이에 따라서 最從利用者가 經營의 方針樹立上 過誤決定하여 損害를 입는 境遇 損害賠償이 必要한 것인지, 또 必要하다면 어떤 處理方法이 一般的으로 容認되는가 등의 問題가 今後의 檢討事項으로 될것이다.

6. 規定이나 協定이나

上記의 責任問題 賠償問題에 對해서 하나의 方法으로써 提供者와 利用者 兩者間의 契約方式 또는 一般的으로 法的措置의 方式을 生覺할수가 있다.

(1) 提供者와 利用者相互間의 契約方式

情報の 提供者와 利用者相互間의 方式은 經常的方法과 臨時的方法으로 大別된다.

始初에는 經常方式은 契約에 依해 行해질 것이고 臨時方式은 注文이 있을때 마다 契約을 締結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契約方式에서는 臨時利用者는 情報入手에 時間을 要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이體制의 長점이 毀損되는 可能性이 있으므로 보다 簡便한 方法을 考察할 必要가 있다.

(2) 上記에 對한 法的措置로 中間의 事情을 決定하는 方法을 生覺할수 있다.

이에 따라서 提供과 入手의 迅速化를 期할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措置에 依하는 境遇, 있어야할 體制를 慎重히 檢討하고 情報活動을 阻害치 않도록 配慮해야 한다.

7. 再販을 認定하는가.

1次利用者가 入手한 情報를 蓄積하고 第2次利用者에게 再販買하는 일이 今後의 情報活動에서 認定되어도 可한가라는 問題로 特히 重要하다.

例컨데 第1次利用者가 第2次利用者에게 Tape Copy를 作成해서 提供하는 行危를 認定하는가의 眞否이며 特히 提供情報에 過誤가 있는 境遇 그것이 第1次利用者가 不知中에 第2次利用者에게 提供된 境遇 情報作成者の 責任問題와 어떻게 相關하느냐의 問題로 派及되며 提供者가 期持할수 있는 利益을 1次利用者에게 새치기

당하는 것을 認定하는 結果로 된다.

또는 企業團體가 代表로 情報를 構入하고 傘下 會員企業에 經費를 分擔 提供시키는 行危도 생각할수 있다. 이것을 蔡示할것인가 아닌가등의 問題로 民間情報産業의 育成과 民間에 있어서의 低廉料金에 依한 情報入手活動을 阻害할지도 모르는 問題와도 關係된다

(1)再販를 認定치않는 境遇

長点으로서는 情報提供에 隨伴되는 責任範圍가 좁혀지므로 情報公害의 幅을 줄일수 있다. 또한 情報提供에 依한 收入이 再販을 認定하는 境遇와 对比해서 좋아진다.

短点으로서는 統計情報의 利用普及을 阻害할수도 있다. 또한 再販違反行危를 監視할 體制가 必要하게 된다.

(2)再販을 認定하는 境遇

㉠無条件認定時

長点是 利用의 顯著한 普及

短点是 不正確한 情報까지도 市場에 出廻되어 情報公害를 일으키거나 情報産業의 秩序있는 正常的育成이 困難하게 된다.

㉡条件付認定時

上記의 (1), (2)-㉠에 對해 条件을 붙이는 境遇 今後의 情報活動이 情報産業活動을 阻害치 않고 秩序있는 正確한 統計情報가 適時 市場에 出廻되도록 条件이 賦与되어야 한다.

㉔短点回避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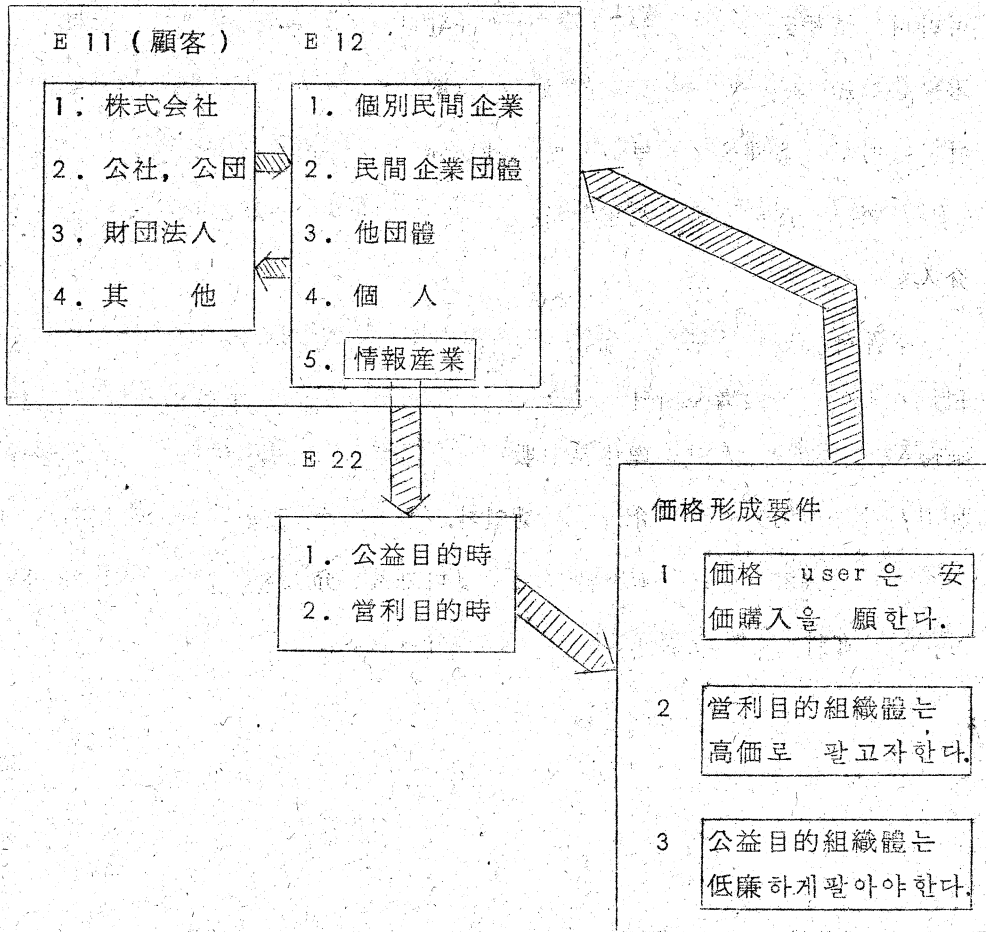
国家가 統計情報提供에 参与하게 되면 그것이 正確하고 利用者가 믿고 利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이 秩序에 따라서 情報公害를 惹起시켜서도 안된다. 이러한 点에서 流通을 阻害하는 短点を 回避하는 有効한 方案을 樹立함이 緊要하다. 그리하여 어떠한 条件을 어떻게 樹立하느냐가 問題로 提起된다.

(3)国家의 提供者는 利用者의 어느 段階까지 介入할 것인가 또는 介入할 수 있는가.

条件付 提供體制로 하는 境遇 情報提供者로서 国家는 利用上の 錯誤防止와 提供者로서의 責任을 다하기 위해서 또한 情報의 價值維持를 위해서 등의 理由로 販賣한 情報의 事後調理의 立場에서 利用者의 利用方法에 介入할 것인가 또한 介入한다면 利用者의 自主性を 阻害치 않는 範圍内에서 어디까지 介入할 수 있는가 등이 再販에 隨伴되는 檢討問題로 될 것이다.

別添 E 22, G 21 價格形成의 要件

E 22, G 21 價格形成要件



1. E 22 情報産業의 活動形體

民間情報産業企業體가 設立되는데는 그 趣旨에 따라 營利目的의 것과 公益目的의 것 2種의 性格을 考慮할 수가 있다. 今後 日本에서 이같은 種類의 企業活動은 統計情報의 利用普及과 流通面에서 重要한 位置를 占하게 된다. 따라서 國家의 統計情報活動과 民間의 그것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有效한 關係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다음 事項에 對해서 配慮할 必要가 있다.

(1) 營利目的

情報活動을 營利目的으로 行하는 企業體이다. 國家로부터 Data 提供을 받는데는 利用頻度가 높은 統計를 中心으로 注文을 할 것이다. 한편 國家側에서도 같은 生覺일 것이므로 競爭問題의 發生이 豫想된다. 特히 國家側의 Service는 Copy Data의 提供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加工度가 높은 情報의 提供까지를 想定하게 되므로 營利目的의 企業體는 競爭을 避하고 個性的인 Data나 Data Set의 提供을 構想할 必要가 있다.

(2) 公益目的

情報活動을 公益目的으로 行하는 企業體이다. 民間이 이것을 行하는데도 經營이 成立될지 現狀으로서는 豫測이 不能하므로 國家機關이나 國家의 補助를 받을 수 있는 代行機關으로 될 것이다.

2. G 21 價格形成의 要件

民間企業으로서의 利用者と 情報産業으로서의 入手希望者가 Data 入手에 있어서는 精度가 높고 잘 吟味된 情報나 Data를 低價로

入手하기를 願하는 것이 当然하다.

入手된 情報를 企業内에서 利用하는 境遇는 情報の 注文者는 民間企業이나 民間의 情報産業企業 등일 것이다. 利用者側이 入手情報の 処理能力을 保有하고 있다면 보다 廉價로 Copy Data의 入手를 期하면 된다. 이 提供者는 國家의 提供機關이나 公共性目的의 民間企業이 될 것이다.

專門的 情報 또는 特定情報에 對해서 加工處理된 結果를 提供받 고자 할 境遇는 이에 所要되는 經費를 加算해서 注文하게 될 것이다.

當面한 Service 提供은 위와 같은데 國家의 提供側으로 보면 付價價值가 높은 情報の 提供을 圖謀하는 것이 重要하며 또한 이를 指向해서 技術開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利用者로서는 所望되는 情報가 低廉하면 購入코자 할 것이고 어느 水準以上 高額이 되면 斷念하게 될 것이다.

이에 對해서 提供者가 營利目的企業이면 原則的으로 價格을 高水準으로 設定하려고 할 것이고, 兩者間의 需要供給의 關係에서 實行價格이 決定될 것이다.

그런데 國家機關이 提供者로서 參與하게 되면 이것은 公共目的의 것이므로 처음부터 低價格水準을 目標하게 될 것이다.

國家機關은 Computer를 갖지 못하는 利用者の 高度의 加工分析計算結果에 對한 入手依賴에도 対応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 것이 重要하다.

H. 民間의 需要

對民間 Service를 實現함에 있어서 必要한 檢討事項中 가장 重要한 일은 民間需要의 實體를 把握하고 이에 適切히 対応할 수 있는 體制를 整備하는 것이다.

그러나 近年 民間에서 表明하고 있는 意向을 보면 情報化社會를 志向하여야 한다는 必要性이 云謂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것만으로는 民間需要의 實情을 理解할 수가 없는 것이다. 特히 國家가 對民間 Service實施體制를 構築함에 있어서 어떠한 統計 Data를 收集·蓄積할 것인가, 어떠한 情報處理技術의 開發이 必要한가, 어느 만큼의 利用頻度가 있는가, output하는 Data量이 어느 程度에 이르는가 이에 附隨해서 어느만큼의 規模의 Computer System을 想定할 것인가등의 基本的인 問題가 있다.

H 11 民間需要의 動向

E 21

- 1. 市場調査 DATA
- 2. 企業內情報
- 3. 一般統計 DATA

E 22

- 1. 公益目的이면
- 2. 營利目的이면

H

H 11

- (民間需要動向)
- 1. 第 1 期 1, 2 年 앞은
 - 2. 第 2 期 3, 4 年 앞은
 - 3. 第 3 期 5 年 앞은

H 21

- (民間의 要望對象統計)
- 1. 政府作成統計中 어느 DATA
 - 2. 民間 " "
 - 3. 海外 " "

H 31

- (DATA 手方法)
- 1. Real Time 인가
 - 2. Batch 인가

H 22

- (統計分野別中 어느 統計인가)
- 例컨 데
- 1. 人口分野인가
 - 2. 經濟分野인가
 - 3. 社會環境分野인가
 - 4. 文化分野인가
 - 5. 自然分野인가

H 32

- DATA 入手頻度
- 1. 每日인가
 - 2. 週, 旬, 月인가
 - 3. 四半期, 半期인가
 - 4. 每年인가
 - 5. 數年間마다인가
 - 6. 臨時인가

H 23

DATA의 詳細性은
(어느 level인가)

- 大分類, 中分類, 細分類 対象은
- (1) 地域分類에서는
- (2) 統計分類에서는
- (3) 時間的廻及의 範圍

H 51

「情報社会」mood의
題目的需要에서는
service의 실마리
는 얻을 수 없다.

H 41

1. 需要의 実状은 어떤가
(1) 顯在的 需要는 무엇인가
(2) 潛在的 "

2. 需要調査實施
(1) 需要豫測
(2) 實施擔當者는
○ 國家인가
○ 民間인가

民間의 需要는 例컨대

第 1 期 ; 1, 2 年 앞 程度의 短期間內에서는

第 2 期 ; 3, 4 年 程度의 中期間에서는

第 3 期 ; 5 年以上 程度 앞의 長期에서는

어떻게 生覺되고 있는가, 國家側이 Service 提供의 構想을 作成하는데 있어서 貴重한 情報이다.

H 21 民間이 要望하는 統計 Data 는 具體적으로 무엇인가.

國內에 供給되고 있는 統計는

- ① 政府作成統計, 地方公共團體作成統計
- ② 民間作成統計
- ③ 海外作成統計

등이있었는데 그 內容은 多岐에 걸치며 國內作成의 統計만도 每年 數千件에 達한다. 더구나 各其 統計는 몇가지 種類의 統計表를 갖고 있으며 또한 統計 項目別로 보면 그 數는 膨大하다.

한편 海外統計나 索引統計, 加工統計를 追加하면 大端히 많은 統計 Data 가 供給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例컨대 統計表別로 需要가 높은 것부터 Service 할 수 있도록 하면 利用者의 便宜性을 크게 維持할 수 있게 되는데, 統計 Data 의 提供體制를 차차면 膨大한 量의 作業을 必要로 하게 되므로 이것을 早速한 時間內에 實現하기란 困難한 일이다. 따라서 利用要請이 많은 Data 로 부터 順次로 利用可能한 方法을 取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需要의 實體를 把握하는 것이 重要하다.

H 22 統計分野別로는 어느 分野에 需要가 많은가.

統計는 社会, 經濟, 自然, 文化등 各分野에 걸쳐 作成되고 있다. 利用者는 이中 어느 分野의 統計에 높은 需要를 갖고 있는가가 提供側으로서는 Data 收集의 觀點에서 重要 関心事인 것이다.

統計分野라 하더라도 各種의 觀點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分類는 어떨런지.

(1) 日本統計年鑑에서 採用中인 分類別

統計를 分類하는데 있어 一般的인 分野分類이며 長期에 걸쳐 使用中에 있으므로 利用者側으로 보면 指示하기 簡便한 分類라 할 것이다.

01 土 地

02 氣 象

03 人 口

04 勞 動

05 事 業 所

06 農 業

07 林 業

08 水 産 業

09 鉱 業

10 製 造 業

- 11 建設業
- 12 電気, Gas 및 水道
- 13 産業活動關係指數
- 14 物資需要
- 15 運輸 및 通信
- 16 商業 및 貿易
- 17 企業經營
- 18 通貨 및 金融
- 19 物 価
- 20 賃 金
- 21 家 計
- 22 住 居
- 23 財政 및 国有財産
- 24 国民經濟計算
- 25 社会保險
- 26 保健衛生
- 27 教育 및 科学技術
- 28 文 化
- 29 公務員 및 選挙
- 30 司法 및 警察
- 31 災害 및 事故
- 32 国際統計

(2) 새로 作成된 分類

統計 Data의 分類別 Code 表

統計 Data에 着眼한 分野分類로서 하나의 統計라도 各其의 統計表가 多分野에 關連되는 境遇가 있다. 이에 着眼한 新分類로 今 後의 需要의 指示 Pattern을 考慮하여 作成된 것이다.

- 0 總合
- 1 0 土地, 面接, 河川, 山
- 1 自然
- 1 1 氣象
- 2 人口, 世帯
- 2 0 性別, 年令階級別, 地域別人口
- 2 1 學歷別, 国籍別, 人種別, 宗教別人口
- 2 2 勞動力人口
- 2 3 配偶關係別人口, 出産力
- 2 4 人口動態, 生命表
- 2 5 移動人口(通勤, 通學人口)
- 2 6 其他의 人口分布, 構成
- 2 7 世帯의 分布, 構成
- 2 8 世帯主의 屬性
- 3 經濟一般
- 3 0 國際収支, 特需, 外資都入, 海外投資
- 3 1 輸出入

- 3 2 經流計別
- 3 9 其他
- 4 經濟部門別
- 4 0 綜合
- 4 1 農 材業, 水產業
- 4 2 鈷業
- 4 3 建設業
- 4 4 製造業
- 4 5 商業 (都小賣, 金融, 不動產)
- 4 6 運輸, 通信
- 4 7 電氣, Gas, 水道
- 4 8 Service
- 4 9 政府, 財政, 國有財產
- 5 經濟 (機相別, 單位가 農家, 農業人口 등)
- 5 0 綜合
- 5 1 設備, 能力, 土地 (主로 固定資本)
- 5 2 勞 働
- 5 3 投入
- 5 4 產出
- 5 5 物 價
- 5 6 經濟活動, 生產性, 景氣, 在庫, 販売
- 5 7 企業經營, 企業投資
- 5 9 其他, 災害, 公害

- 6 社会，文化
- 6 0 立法，公民權，選舉
- 6 1 司法，裁判，犯罪，警察，保安
- 6 2 行政，防衛
- 6 3 医療，衛生，保健
- 6 4 社会福祉
- 6 5 教育，科学技術
- 6 6 文化，放送，Communication media
- 6 7 Recreation
- 6 8 環境住居
- 6 9 家計
- 7 經濟計算
- 7 0 總合
- 7 1 生產計定
- 7 2 支出計定
- 7 3 分配計定
- 7 4 物資需給
- 7 5 通貨，資金計劃
- 7 6 連關表
- 7 7 国富
- 7 9 其他
- 8 国际總計

- 8 0 總合
- 8 1 自然
- 8 2 人口世帯
- 8 3 經流一般
- 8 4 經濟部門別
- 8 5 經濟機相別
- 8 6 社会, 文化
- 8 7 經濟計算
- 8 8 国际統計
- 8 9 其他
- 9 其他
- 9 0 世論調査
- 9 9 分類不能

H 23 Data의 詳細性은 어느 水準까지 必要한가

利用者로부터 要望되는 數 많은 Data 中에서 分類의 組織에 對한 需要의 実体 또한 多樣하다고 生覺된다.

地域分類를 國家水準으로 aggregate (集合) 하고 이에 對應하는 數直 Data 의 分類를 Aggregate 하여 利用하는 境遇라든가 反對로 地域別로도 統計分類에 있어서도 詳細한 것을 所望하는 境遇가 있을것이고 또 地域分類를 細分하고 이에 맞물리는 分類는 Aggregate 하여 時間的으로는 相當한 長期에 걸쳐 過去로 溯及된 統計 Data 를 要請하는 수도 있다.

一般에게 公表되고 있는 統計의 各分類를 詰잡이로하여 어느 分類가 많이 要望되고 있는가, 그 詳細性에서는 中程度인가, 詳細分類까지

必要한가의 情報가 統計 Data를 整備蓄積하는 側에 必要하다.

即 하나의 統計表에 對해 Data를 蓄積하는데 있어서 Aggregate된 것은 容易하지만 詳細分類의 것이면 그 項目數의 增加에 따라서 蓄積해야할 Data量이 增大된다. 限定된 人員으로만 作業할수 밖에 없다면 一定時間 經過後에 提供되는 Service 效果는 크게 影響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要求되는 情報는 다음과 같은 것의 어느 水準까지도 될것이다.

①地域分類에서는 :

国別分類

国内分類

地方別, 都市階級別, 市部郡部別, 道別, 市区洞別, 人口集中地区別

地域, Mesh別, 小地域別 등

②統計分類에서는 :

總合計

中分類, 類別

小分類, 細分類, 其他

③時間的詳細性 및 遡及의 範圍

詳細性 : 日別, 週別, 旬別, 月別, 四半期別, 半年別, 年別, 數年別……

遡及性 : 解放前

: 動亂後

: 動亂後

: 近年

H 3 1 Data 入手의 方法은

Data 提供은 提供技術의 開發에 順序가 있으므로 最後에는 磁氣 Tape에 依해서 不特定多數의 利用者에의 Service부터

始作하여 利用者와 提供者의 關係가 緊密化됨을 따라서 將次는 一部利用者와의 On Line 接續의 開發與否도 問題가 될 것이다.

即 從來부터 統計報告書의 閱覽 Service나 必要部分의 Hard copy 作成 Service에 더해서 Computer를 保有하는 利用者부터의 磁氣 Tape에 依한 Data Service를 Batch 處理에 依한 入手, 더 나아가 一部의 real time access에 依한 入수를 可能케하는 일이 要請됨과 同時에 Computer를 保有치 않은 利用者로부터도 Micro Film 化한 Data의 入手나 Computer에 依한 處理結果의 入手希望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利用者が 이들 中의 어느것을 臨擇할지는 事情에 따라 다르다. 한편 提供側도 이들 提供方法을 豫定해 부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특히 Computer 處理를 附隨하는 Service인 境遇는 On line에 依한 Data 入手頻度가 当初의 設計段階부터 將來를 向해 어떻게 變化하는 傾向에 있는가가 重要하며 提供 System의 効率化 擴張의 方法, 必要 Software System 등의 設計를 위해 重要한 示唆을 준다.

H 3 2 Data 入手의 頻度

H 4 1 需要의 實狀은 어떠한가

情報化社會에서의 Mood에 便乘한 題目的인 需要의 소리 만으로는 需要의 實體는 不明하다고 밖에 할수 없다. 既히 MIS, AIS 및 NIS에의 志向이 이따금 云論되어 왔는데 大部分 抽象的 論議였으며 實行體制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抽象的인 需要를 具體的으로 把握하는 일이 必要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利用形態別의 利用希望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가 提供體制를 構築하는데 있어 重要한 情報로 된다.

- ① 每日入手
- ② 週別, 旬別, 月別入手
- ③ 四半期別, 半年別入手
- ④ 年別入手
- ⑤ 數年別入手
- ⑥ 上記以外의 臨時的入手

Data 提供, 提供의 方法은 利用者의 入手頻度와도 關係된다.

入手活動이 短時日이고 經常化하여 頻繁하다면 On Line 이 所望스러울 것이고 月單位程度의 經常入手이면 提供側에서 미리 Scheduling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臨時的의 入手希望도 發生할 것이다. 提供側에 있어서의 System 設計와 擴張計劃作成을 위해서 利用者의 入手頻度の Pattern 이 必要하게 된다.

現在로는 Computer Readable(컴퓨터可讀)의 한 媒体에 依한 提供이 本格的으로 政府各部處間에서도 充分히 實施되지 않고 있으므로 對民間과의 實際的인 需要를 把握하기란 더더구나 어렵다.

需要自体는 基本的인 Data 에 對한 需要와 그 時期에 相應된 變化있는 需要로 나누어 生覺할 수 있으며, 需要量은 이에 따라서 어떠한 變化를 받는다.

따라서 現狀에 있어서 需要의 實狀을 正確하게 捕捉하기란 困難 하지만 最少限 Service 開始準備을 위해서 需要情報은 必要不可缺하다.

元來 必要한 需要情報은 顯在的인 것이다.

Service 開始後 그 便利性이 一般에게 認識되게 되면 需要가 漸次 擴大될 것이다. 擴大되는 規模는 現狀에서는 豫測할 수 없지만 利用技術이나 分析技術 등의 開發과 同時에 從來 潛在的이던 需要가 顯在化되는 것이 十分 考慮된다.

이에 따라서 Service 開始後 適當한 間隔을 두고 需要調査를 하고 需要量의 實狀을 把握하는 것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需要調査의 實施担当者는 누구인가

Service 를 担当하는 國家가 行할 것인가

아니면 民間의 利用者들이 積極的으로 意見을 表明할 것인가는 亦是 問題로 된다.

整 理

以上の 考察로 여러 問題點이 列挙됐다. 그 하나는 國民的資產으로서 要請되고 있는 國家作成의 統計 Data 에 對한 民間需要에 널리 副應해야할 國家의 責務를 抽象的이나마 指摘했다.

그러나 이것을 實行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担当하는 組織, 技術, 法制面, 權利 및 情報의 價格 등의 問題가 介在되는 것도 指摘했다. 또한 그 背景에는 이들 活動을 國家로서 여하히 推進할 것인가 라는 國家的 目標가 없으므로 個個의 問題의 解決을 爲한 指

針이나 檢討의 方向이나 開發計劃등의 相互 連繫에 依한 均衡있는 成長이 不可能하다.

指摘된 問題點은 今後 檢討를 要하는 事項만을 列挙한 것인데, 이들을 具體化하기 爲해서는 적어도 國家目標에 依拠해서 行하는 것이 不可缺의 要件으로 思慮된다.

2. 컴퓨터 利用에 依한 統計 Data 의 流通量 調査의 要約

1) 調査의 目的

① 磁氣 Tape 를 媒体로 한 各 部處間에 있어서의 統計 Data 의 相互 利用狀況

② 流通에 있어서의 利用의 頻度, 統計 Data 의 流通量의 狀況을 把握하는 것을 目的으로 했다.

2) 調査의 對象과 方法

이 調査의 對象은 本 分科會研究員이 所屬하는 各 部處의 Computer 利用 部門에서 Computer Readable 한 媒体에 依해 過去에 利用한 바 있는 統計, 現在 利用中인 統計, 將來利用希望이 있는 統計이다.

단, 自体部處에서 作成 利用하고 있는 統計는 除外했다.

利用의 時間的 範圍는 過去와 將來의 調査時(昭和 47年 12月) 부터 2年以內를 對象으로 했다.

調査方法은 本 分科會研究員이 所屬하는 各 部處의 該當部署를 選定하고, 調査票는 選定部署에서 記入한 후 分科會研究員을 通해서

事務局에서 回收했다.

3) 調査의 回答

調査回答을 보낸 곳은 17 部處 34 部署이다.

4) 結果의 整理方法

○ 第 1 表에서는 統計 Data 의 利用機關이 作成機關으로부터 提供된 統計 Data 의 磁氣 Tape 數를 表示했다.

단, 對象期間은 調査時부터 過去 2 年間 以內이다.

○ 第 2 表에서는 過去에 利用된 統計와 現在 利用中의 統計, 將來 利用希望이 있는 統計로 分類하여 그 利用頻度別로 利用機關과 作成機關과의 關係를 表示했다.

○ 第 3 表에서는 利用 Data 의 性質과 Computer 處理와의 關係를 「過去와 現在에 걸쳐 利用」 「將來利用希望」으로 分類해서 表示했다.

○ 附表에서는 利用機關과 作成機關間에 過去에 流通한 統計 및 現在 流通中인 統計와 將來 流通希望이 있는 統計를 表示했다.

한편 이 票는 本 流通量 調査外에 다음 報告書에 掲載된 것을 包含하고 있다.

『制度研究班 研究報告書』(中央部處에 있어서의 Data 交換調査): 昭和 46 年度, 工業技術院 電子計算機 利用에 關한 技術研究会 制度 研究班

『綜合 Soft Ware 에 關한 調査研究 報告—物価關連 情報 System』: 統計 Data Bank 研究会物価關連 情報 System 分科會.

단, 본 流通量調査에서 調査한 統計로서 他 報告書에도 掲載되고 있는 統計는 本 流通量 調査分만을 計上했다.

第3編 物価關聯統計 資料의 利用에 關한 具體的인 例

第3編 物価 關聯統計資料의 利用에 關한 具體例

統計情報體制를 考察하는데는 要請되는 統計資料를 單純히 系列을 맞추어 蓄積하는 것만이 아니라 몇개의 統計를 組合한 複合的 利用方法을 可能하게 하는 體制의 一環으로써 資料의 蓄積方法이나 software 機能을 前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것은 統計 data bank가 準備하여야 할 data base와 情報處理機能을 示唆하는 것으로써 理解되고 있다.

適切히 抽出하는 技術이 있더라도 이들을 具體化하기 위하여 資料 그 자체를 詳細히 表章하고 迅速히 提供하며 參考資料를 整備하는 등 이와 關聯하여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을것이다.

어때나 實際의 利用者의 經驗이나 計劃을 通하여 充實한點 充實하지 않는 點등을 明確히 하여 物價關係情報體制이 立場에서 今後考察을 要하는 點, 開發을 要하는 點등에 關하여 示唆를 얻는것이 重要하다.

觀察하는 具體的例는 매우 적지만 最初에 物價政策部門에 있어서의 利用例, 勞動經濟와 物價와의 關係를 例示했다.

뒤이어 畜産物短期모델에서는 特定「그룹」商品의 觀察例를 들었고, 다음으로 特定品目인 燈油의 價格分析例와 個別商品 問題에 觀點을 두고 具體的例를 들었다.

끝으로 統計의 発表事務에 關聯되는 統計利用方法을 記載했다.

第一章 利用面에서 본 物価關聯情報 等に 對한 必要性

本稿에서는 經濟企劃庁 国民生活局 物価政策課의 業務를 例로 들
어 物価關聯資料를 中心으로하여 各種統計資料의 利用 狀況에 대한
概況과 더불어 이들 資料의 利用必要性에 關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1. 物価政策課의 業務 및 統計資料의 利用狀況에 關하여

우선 物価政策課의 業務 및 이 中에서 物価關聯資料를 中心으로
한 各種統計資料가 어떻게 利用되고 있는가에 對하여 概況하기로
한다.

이 特色은 調査分析보다도 統計資料를 行的의 基本資料로서 보다
直接的으로 使用하는 일이 많다는 點이다. 이課의 業務는 資料의
使用形態에 따라 分類하면 크게 세種類로 分類할 수가 있다.

即

첫째 가장 短期的으로는 常時物価動向을 監視하여 必要에 따라
對策을 各省庁과의 協力下에서 機動的으로 講究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 業務에 關하여 特히 必要한 資料는 每月末에 發表되는 消費
者物価指數 (全國 및 東京都區部 速報) 및 都売物価指數 (旬, 月別
速報)이다.

이 中에서도 消費者物価指數에 關하여는 每月末의 消費者物価指數發

表때 中分類, 特殊分類의 指數에 追加하여 個別品目에 關한 指數 및 價格이 必要로 되고 있다.

위와같은 資料를 써서 限定된 時間內에 概括的으로 分析하여 消費者物價動向에 關하여 月別判斷을 取合하여 内部에서의 行政處理上의 目的에 利用하고 있다.

특히 變化가 甚한 商品等에 關하여는 所管 部處로부터 適宜 各種情報를 提供받아 이를 根拠로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고 있다.

最近의 事例에서 例를 들어보면 大豆, 木材, 羊毛等 國民生活에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는 物價의 價格이 騰貴하고 있는 것을 捕着하여 事務次官會議에서 緊急輸入을 促進하고 纖維製品에 關한 過度한 一時購入等에 對해 自肅等의 行的措置를 強化할 것을 決定한 것 등을 들수 있다.

둘째 消費者 物價指數發表때의 概括的인 分析을 基礎로하여 보다 巨視的으로 長期的인 觀點에서 여러가지 分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수 있다.

그內容은 物價動向等에 關한 計量的 方法에 의한 各種의 分析이며 最近의 事例를 例示하면

- ① 最近의 都壳物價急騰의 要因分析
- ② 1972年을 通하여 消費者物價가 比較的 安定되어 있었는바 그 原因分析
- ③ 最近 都壳物價가 急騰하고 있지만 이는 從來의 「消費者物價 上昇 都壳物價安定」이라고 하는 物價構造가 變化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의 分析等이다.

또 每年末에 消費者物價指數에 關하여 翌年度의 展望을 作成하고 있지만 이 作業에 있어서 經濟情勢等を 綜合적으로 勘案하여 巨視的 視点에서 消費者物價動向을 分析함과 同時に 各個別 品目에 關하여도 諸般經濟的事情을 참작하여 그動向을 分析하고 있으며 巨視的 計量 「모델」을 作成하기 위한 資料等に 附加하여 各個別物價別로 여러가지 情報을 必要로 하고 있다.

이에 關하여는 關係各省庁으로부터 情報提供을 받고있으며 그 內容은 價格動向에 附隨하는 各種資料라고 하기보다 이러한 資料를 根拠로 分析한 結果에 關한 것이 많다.

이런 分析結果가 各種物價對策의 企劃 立案 調整에 여러가지 形態로 利用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세째 政府가 取한 各種政策 및 앞으로 取하고자 하는 各種政策이 物價等に 미치는 效果分析을 들 수 있다.

그例를 들면 各種公共料金 (택지料金, 國鉄運賃, 醫療費等)의 引上 등이 物價에 미치는 效果 또 政府가 關여하고 있는 各種價格등例건데 米價 麥價등의 計算에 있어서는 이들이 物價全般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할 必要가 있다.

이에 關하여서는 消費者物價指數中 當該品目の 價格變動에 의한 直接效果에 附加하여 그價格變化가 他品目の 價格變化를 招來하는 間接的 效果를 分析하는 것이 重要하며 이때 産業關聯表를 使用하는 일이 많다.

기타 最近의 事例로는 円切上이 物価에 미치는 效果分析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諸外國의 事例研究, 産業聯関表에 의한 輸入物価底落의 效果試算 外에 簡單한 「모델」을 써서 價格安定效果 및 그때 생기는 時間的 遲延을 分析하고 있다.

以上을 要約하여 物価關聯資料들의 使用形態에 따라 分類하면 物價政策課의 業務는

- ① 物價動向을 監視하고
- ② 그動向의 要因分析을 하고
- ③ 必要한 政策을 企劃立案한다.

그리하여 政策效果를 分析함으로써 行政 判斷의 基礎資料로 삼도록 分類하고 있다.

資料들에 關하여 보면 ①에 있어서는 物價政策課에서 適宜調査를 하고 또는 關係省庁등으로 부터 情報提供에 의하여 價格動向을 注視하고 있지만 以前과 같이 每月末에 發表되는 消費者物價指數가 갖는 役割을 매우 重要하다.

②에 關하여는 이른바 巨視的 觀點에서의 分析에 追加하여 個別物價등에 關한 分析에도 相當한 比重을 두고 있다.

③에 關하여는 既存의 資料에 不充分한 것이 많고 또 既存資料에 다시 細密한 加工이 必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以上을 通하여 볼때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第1의 形態의 業務에 關하여 特히 말할 수 있지만 最新의 大量資料를 極히 短時間

내에 正確히 處理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②에서 자세히 言及하고자 한다.)

이는 그 어느 것도 物價政策의 業務에 限定되어 있지 않고 調査 研究보다는 行政에 重點을 두고 業務를 行하고 있는 部署에서 一般的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從來 Data Bank의 需要者로서는 일반적으로 調査研究를 主로하는 者로 생각했지만 行政에 重點을 둔 業務上 必要性을 充足할 수 있도록 Data Bank가 機能을 갖추어야 할 것이 同時에 되어야 할 것이다.

2. 資料에 대한 必要性

1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物價政策業務와 關聯하여 各種의 物價關聯資料가 여러가지 形態로 使用되고 있지만 이들 物價關聯資料에 대한 必要性을 크게 分類하여 두개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既存資料의 整備 및 새로운 資料作成에 관한 것이다.

(1) 資料의 人手形態에 관하여

1에서 記述한 各種物價政策業務中에서도 特히 첫째에 서술한 것에 관하여는 短期間內에 아주 詳細하고도 꽤 量이 많은 資料를 分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具體的으로는 現在 每月末의 消費者物價發表時에 物價政策 課業을 統計局에 派遣하여 그달의 個別品目에 까지 詳細한 資料를

電話로 人手하고 있다.

그런데 이 資料를 利用하여

① 主要品目の 價格動向에 대한 事實發見

② 主要因 分析

③ 季節調整

④ 業務에 適合한 形態의 指數組合計算

⑤ 「그라프」의 作成等 加工을 行하고 있지만 「컴퓨터」에의 入力等에 要하는 時間을 考慮하면 이러한 作業은 거의 手作業에 의하지 않을수 없고 現在이 상으로 詳細한 分析은 거의 不可能한 實情이다.

따라서 將來所要資料를 磁氣「테프」등에 의하여 公表와 同時에 人手 할 수 있든지 또는 on-line에 의하여 迅速한 利用加工이 可能하게 될 것이 바람직하다.

또 一般에 대한 物價關聯資料의 發表는 반드시 簡明하고 利用하 기 좋은 形態로 提供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data bank 에 있어서 利用上의 便利가 더욱 圖謀되려는 (例컨 데 簡單한 操作에 의한 持數의 檢索, 加工 및 「그라프」化의 可能) 一般利用者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될것이다.

(2) 資料에 대한 必要性에 관하여

특히 主要한 消費者物價持數에 관하여 資料에 대한 必要性을 考察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項에서 두번째로 叙述한 業務 即 物價動向을 中心으로한 各種의 分析에 있어서는 計量的 方法을 쓰고 있는것이 많지만 그렇게 하자면 長期에 걸친 個別品目別 精密資料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現在 月報,, 年報 등에 의하여 發表되고 있는 것으로는 長期에 걸친 資料 入手가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統計局에서는 現在 消費者物價指數에 關하여 長期時系列 資料의 整備를 推進하고 있다고 듣고 있지만 可能限 빨리 發表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一般的으로 現在 各種統計資料의 發表形態는 長期時系列 利用에 대한 配慮가 欠如되고 있다. data bank의 運營에 있어 이點에 대하여 適當한 措置가 取하여 질것이 要望된다.

더욱이 이와같이 仔細한 長期資料의 需要에 關하여 注意를 쏟고 있는 傾向이 있으나 民間出版社에서 出版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相當한 需要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各分類別 指數의 整備가 要望된다.

특히 政策決定에 있어 利用되는 資料는 可及的 正確할 것이 要請되지만 發表機關이 政府公式發表 數字로써 認定된것을 發表하는 것이 重要하다.

예를 들면 特殊分類指數는 1965年以降 것만 (大企業, 中小企業別 指數는 1970年以降) 發表되고 있지만 이들에 關한 過去까지 거스러 올라간 指數를 作成 發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個別品目指數 등의 資料와 磁氣「테프」로 必要한 software 의 開發에 易거 簡單히 利用할 수 있는 體制 또는 on-line 體制가 完成되면 任意로 資料를 加工함으로써 必要한 資料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特殊分類指數 등 代表的인 分類에 關하여 類別指數 등의 整備를 期하여 두는 것이 꼭 必要하다.

또 入手의 簡便性 등을 考慮하면 계속 整備된 形式으로 年報 등 出版物에 依한 資料의 提供은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3. Data Bank 의 機能面에서 본 必要性

끝으로 各種 政策物價 등에 대한 效果分析에 있어서의 必要性에 關聯하여 統計資料 自体에 대한 必要性보다도 Data Bank 의 機能 그 自体에 대한 必要性에 重點을 두어 記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政策效果의 分析을 함에 있어 몇가지의 途路에 直面할 때가 많다.

우선 基本的으로는 效果分析方法이 明確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으나 統計資料에 局限시켜 보아도 分析에 必要한 統計資料의 有無 그리고 이러한 統計의 性質, 使用上의 制約 등을 調査하는데 相當한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Data Bank 의 形態로서는 첫째로 on line 處理가 可能한 경우를 例로 들면 需要者和 供給者間的 이른바 中繼點으로서의 役割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on line 處理以前에 있어서의 例를

들면 資料「테프」의 stock point 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單純한 中繼點에 머무르지 않고 既存 資料에 관한 檢索體制의 完備와 當該資料의 性質, 使用上의 注意點 등의 附帶情報도 同時에 蓄積하여 要請에 따라 資料를 提供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출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既存資料間의 關聯性 등에 관한 情報도 作成 蒐集 備蓄할 것이 要望된다.

예를 들면 最近 都売物價가 急騰하여 消費者物價에 波及되는 것이 問題가 되고 있는데 兩者의 相關係數 共通品目에 관한 情報 등의 蒐集이 必要할 것이다.

또 어떤 品目の 價格上昇의 波及效果의 分析에 관하여는 産業聯關表를 使用하는 일이 많지만 産業聯關表의 部門分類와 消費者物價指數 및 都売價格指數 등과 關係되는 情報등도 有用하게 쓰인다.

더욱이 새로운 資料開發에 관하여도 data bank 의 役割이 期待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새로운 資料開發 및 作成에 있어서 data bank 에 期待하는 것은 別問題가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資料開發에 대한 必要性(既存資料의 改良등에 관한 것을 包含한) 등을 감안하여 關係省庁과 더불어 그 開發 作成을 推進하여가는 것만으로도 data bank 의 主要한 機能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第2章 物価, 賃金, 生産性の 분석에 있어서 資料利用方法에 관하여

物価關聯情報体制에 관한 檢討를 行함에 있어 各種物価關聯資料
利用方法의 檢討 등이 必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特히 物価,
賃金, 生産性等의 資料에 관하여는 그 重要性이 最近 더욱 높아지
고 있다.

이것은 近年 賃金上昇率이 현저히 增加하여 全体로서의 勞動生産
性 上昇率을 上廻하는 事態가 생기고 있는 것이 그 背景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物価, 賃金, 生産性の 動向에 관한 分析을 通하여 物
価關聯情報体制을 檢討하는 視点에서 關聯資料의 利用方法에 관하여
그 實態 問題點 등을 考慮하여 보고자 한다.

더욱이 物価問題로서 檢討하여야 할 分野는 매우 広範圍하지만
여기서의 対象은 주로 資料作業面의 制約에서 製造業分野의 物価
및 費用問題에 限定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미리 양해
를 求하여 두고자 한다.

1. 物価, 賃金, 生産性の 動向

(1) 巨視적으로 본 傾向

日本の 物価動向을 보면 1955年代의 中半部로 부터 消費者
物価의 上昇이 현저하였던 反面 都売物価의 變動幅은 오히려 縮少

또는 下向硬直化의 傾向을 나타내어 消費者物價에 比하면 꽤 安定的으로 變化하여 왔다.

그러나 1965年代에 들어와서 長期的 好況過程이 계속되는 등으로 都売物價의 上昇傾向이 나타나기 始作했고 同時에 生産性 上昇을 上廻하는 賃金上昇이 나타났고 이른바 Cost Push inflation의 現狀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때까지의 賃金 Cost의 上昇이 都売物價上昇의 主因이 되고 있는 事態에까지는 到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即 첫째로 長期的으로 보면, 1955~1965年間に 製造業의 勞動生産性은 年平均 11% 上昇한데 비하여 賃金上昇率は 12% 上昇하여 큰 着異가 없으며 諸外國에 비하면 日本의 賃金 Cost는 相當히 安定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로 短期的인 變化를 보면 1962年 1965年과 같은 경기後退期에는 生産性上昇率의 底下에 比較하여 賃金 Cost가 底下하는 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第一表)

最近에도 1971년에 鈍化한 生産性上昇率は 1972年 後半에는 꽤 높아져 賃金 Cost도 1971年の 上昇에서 多少 鈍化되어 다시 底下傾向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움직임 속에서 最近에는 不況下에서도 賃金上昇率의 鈍化는 낮아 相對的不況下에 있어서 賃金 Cost의 上昇을 促進하여 好況期에 賃金上昇率이 底下의 程度를 鈍化 시키고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

今後 經濟의 動向如何에 따라 賃金 Cost 壓力이 物價에 미치는 影響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第1表 生産性, 賃金 및 物價의 推移

(对前年上昇率: %)

	実質 国民 經濟生産性	雇傭者一人当 雇傭者所得	労働生産性 (製造業)	賃 金 (製造業)	都 売 物 價
1956年	5.9	5.5	13.8	9.3	4.4
57	5.2	6.7	7.5	3.4	3.0
58	4.9	4.5	△ 0.4	2.3	△ 6.5
59	8.3	5.5	12.6	7.5	1.0
60	11.5	10.3	13.0	8.0	1.0
61	14.0	13.3	10.2	11.5	1.0
62	5.1	13.9	2.9	9.4	△ 1.6
63	9.6	14.0	9.4	10.3	1.7
64	12.2	11.8	12.1	10.6	0.2
65	3.1	11.2	3.5	8.7	0.8
66	7.9	10.3	13.0	11.6	2.4
67	11.4	12.6	16.5	13.2	1.9
68	12.5	13.9	14.3	14.9	0.8
69	11.1	14.7	15.0	16.4	2.2
70	9.3	16.5	13.9	17.6	3.6
71	5.8	14.3	6.7	13.7	△ 0.7

資料出處: 經濟企劃庁 「国民所得統計」 日本生産性本部 「生産性統

計」 労働省 「毎月勤勞統計」 日本銀行 「毎月勤勞統計」

(2) 業種別 品目別로 본 動向

物價, 賃金, 生産性의 動向은 産業別로 매우 顯著한 相異性을 띄고 있다. 産業別物價動向을 보면 農業部門과 서비스部門에 있어서의 上昇率이 大幅인데 대하여 製造業部門의 物價는 比較的 安定되고 있다.

그러나 1965 年代에 들어와서는 工業製品의 都売物價가 年平均 2% 程度의 上昇을 示顯하고 있다.

이는 輸入價格의 上昇등 國際的인 影響이 強하게 作用한 結果라고 보며 原材料價格의 上昇에 의한面도 強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都売物價의 上昇「템포」가 빠르게 된 것으로 賃金の 大幅上昇에 의한 賃金 Cost 壓力이 強하게 끼친 影響도 無視 할 수 없다.

日本生産性本部에 의한 生産性指數와 日本銀行에 의한 都売物價指數와의 共通品目 乃至 業種에 관하여 生産性, 賃金, 都売物價의 關係를 보면 賃金 Cost (賃金指數÷生産性指數)가 1955 年代 後半에서 1960 年前半에 걸친 上昇率이 높은것이 約 6 割을 占하고 있다. (第 2 表)

이와 같은 賃金 Cost 上昇品目を 類型化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賃金 Cost가 底下傾向에서 上昇傾向으로 바뀐것 : 段보루, 石油系, 芳香系콜달製品, 유리製品, 亜鉛, 니켈, 알루미늄, 알루미늄壓延, 鐵道車輛, 船舶

② 賃金 Cost가 低下傾向에 있지만 低下幅이 적어진것 : 化学纖維, 펄프, 石油製品, 鉄鋼, 非鉄金屬, 金, 電氣銅, 輸送機械 (鐵道, 車輛, 船舶除外)

③ 賃金 Cost가 上昇傾向에 있고 上昇幅이 넓어진것 : 人絹糸, 「수프사」, 製糸, 紡績纖維物, 染色整理, 縫製品, 火柴類, 塗料, 印刷, 「잉크」, 製革, 製靴, 陶磁器, 電線, 「케이블」, 非鉄金屬鑄物, 鉛筆

第2表 産業別賃金費用 및 都売物価의 變化

	賃金 코스트			都 売 物 価		
	65/60 年 (A)	70/65 年 (B)	(B)-(A)	65/60 年 (A)	70/65 年 (B)	(B)-(A)
食 料 品 담 배	1.490	1.461	△0.029	1.058	1.166	0.108
{ 食 料 品	1.504	-	-	1.069	1.161	0.092
	담 배	1.321	-	0.990	1.202	0.212
織 維	1.252	1.263	0.011	1.008	1.140	0.132
化 学 織 維	0.763	0.785	0.022	0.872	0.895	0.023
人 絹 糸 수 프	1.161	1.226	0.065	0.829	1.105	0.276
合 成 織 維	0.917	0.867	△0.050	0.915	0.793	△0.122
製 糸	1.217	1.398	0.181	1.474	1.557	0.083
{ 紡 績 織 物	1.362	1.443	0.081	0.917	1.051	0.134
	1.443	1.497	0.054	1.025	1.183	0.158
綿 · 수 프 織 物	1.414	1.813	0.399	0.902	1.244	0.342
毛 織 物	1.235	1.351	0.116	0.906	1.223	0.317
絹 · 人 絹 織 物	2.283	2.120	△0.163	1.427	1.335	△0.092

	賃 金 コ ス ト			都 売 物 価		
	65/60 年(A)	70/65 年(B)	(B) - (A)	65/60 年(A)	70/65 年(B)	(B) - (A)
染 色 整 理	1,379	1,396	0.017	-	-	-
織 維 二 次 製 品	1,299	1,451	0.152	1,057	1,166	0.109
메 리 야 스 製 品	1,387	1,382	0.005	1,033	1,229	0.196
縫 製 品	1,422	1,865	0.443	1,081	1,225	0.144
木 材 ・ 木 製 品	1,848	1,602	△0.246	1,208	1,351	0.143
필 프 紙	1,070	1,023	△0.047	1,053	1,129	0.076
필 프	0.946	0.965	0.019	0.993	1,159	0.166
紙 紙 加 工 品	-	1,032	-	1,064	1,126	0.062
紙	-	1,085	-	1,084	1,097	0.013
板 紙	1.147	0.930	△0.217	1.025	1.271	0.246
段 보 - 루	0.833	1.051	0.218	1.012	1.162	0.150
化 学	0.935	0.949	0.014	0.908	0.909	0.001
化 学 肥 料	-	1.166	-	1.035	0.882	△0.153
소 - 다 工 業	0.887	0.856	△0.031	1.039	0.977	△0.062
高 圧 개 스	-	0.449	-	0.870	0.987	0.117
無 機 薬 品	-	1.148	-	1.004	1.023	0.019
火 薬 類	1.052	1.222	0.170	1.150	1.135	△0.015
石油系芳香族콜탈製品	0.975	6.036	5.061	0.671	0.765	0.094
環式中間物合成染料	-	0.879	-	0.785	0.805	0.020
有 機 薬 品	-	0.749	-	0.712	0.762	0.050

	賃金コスト			都 売物価		
	65/60 年(A)	70/65 年(B)	(B)-(A)	65/60 年(A)	70/65 年(B)	(B)-(A)
프 라 스 틱	-	0.789	-	0.743	0.858	0.115
合 成 고 무	-	0.847	-	0.858	0.842	△0.016
写 真 感 光 材 料	-	1.061	-	0.942	1.069	0.127
油 脂 製 品 合 成 洗 劑	1.351	1.272	△0.079	1.016	0.963	△0.053
塗 料 印 刷 잉 크	1.050	1.156	0.106	0.973	0.999	0.026
医 藥 品	1.484	1.391	△0.093	0.930	0.933	0.003
石 油 · 石 炭 製 品	0.781	0.870	0.089	0.935	0.998	0.063
{ 石 油 製 品	0.765	0.835	0.070	0.907	0.982	0.075
{ 石 炭 製 品	0.818	0.992	0.174	1.074	1.142	0.068
고 무 製 品	1.727	1.135	△0.592	0.960	1.112	0.152
皮 · 皮 革 製 品	1.153	1.292	0.139	1.029	1.364	0.335
{ 製 革	1.161	1.453	0.292	0.970	1.354	0.384
{ 革 靴	1.068	1.110	0.042	1.097	1.376	0.279
業 · 土 石 製 品	1.138	1.146	0.026	1.055	1.136	0.081
시 멘 트	1.198	1.006	△0.192	0.910	1.058	0.148
板 유 리	1.235	0.870	△0.365	0.887	0.949	0.062
{ 耐 火 벽 돌	1.475	1.297	△0.178	1.085	1.498	0.413
{ 研 削 石	1.414	1.016	△0.398	0.910	1.002	0.092
{ 陶 磁 器	1.053	1.403	0.350	1.245	1.236	△0.009
유 品	0.970	1.124	0.217	1.186	1.125	△0.061

	賃金コスト			都 売 物 価		
	65/60 年(A)	70/65 年(B)	(B)-(A)	65/60 年(A)	70/65 年(B)	(B)-(A)
시멘트製品	1,931	1,038	△0,893	1,112	1,133	0,021
鐵 鋼	0,889	0,902	0,013	0,892	1,126	0,234
鐵 鋼	-	0,885	-	0,889	1,128	0,239
銑 鐵 鑄 物	-	1,076	-	1,034	1,030	△0,004
非 鐵 金 屬	0,989	1,041	0,052	1,059	1,250	0,191
非 鐵 金 屬 地 金	0,709	0,975	0,266	1,103	1,263	0,160
電 氣 銅	0,671	0,830	0,159	1,093	1,586	0,493
鉛	0,947	0,906	△0,041	1,252	1,000	△0,252
亜 鉛	0,596	1,057	0,461	1,035	0,974	△0,061
니켈	0,806	1,633	0,827	0,775	1,392	0,617
알미늄	0,765	1,262	0,497	0,992	1,099	0,107
非 鐵 金 屬 加 工 品	-	1,066	-	1,029	1,238	0,209
알미늄 圧 延	0,949	1,022	0,073	0,979	1,008	0,029
伸 銅 品	1,395	1,057	△0,338	1,053	1,354	0,291
電 線 , 케 이 블	1,135	1,161	0,026	1,025	1,239	0,214
鑄 物 類	-	1,054	-	-	-	-
非 鐵 金 屬 鑄 物	1,079	1,501	0,022	-	-	-
다 이 가 스투	0,929	0,975	0,046	-	-	-
金 屬 製 品	-	1,003	-	1,037	1,122	0,085
金 屬 製 建 具	-	0,979	-	1,002	1,120	0,118

	賃金コスト			都 売 物 価		
	65/60 年(A)	70/65 年(B)	(B)-(A)	65/60 年(A)	70/65 年(B)	(B)-(A)
鐵 構 物 架 綿 金 物	-	0.999	-	0.918	1.159	0.241
스 프 링	-	0.988	-	-	0.909	-
粉 末 治 金	-	0.755	-	-	-	-
輕 金 属 板	-	2.539	-	1.246	1.181	△0.065
金 属 洋 食 器	-	1.450	-	1.108	1.308	0.200
一 般 機 械	1.293	0.753	△0.540	0.987	1.114	0.127
電 氣 機 械	1.126	0.778	△0.348	0.886	0.986	0.100
輸 送 機 械	0.620	0.993	0.373	0.964	0.960	△0.004
(除 鐵 道 車 輛 船 舶)	0.758	0.885	0.127	0.963	0.953	△0.010
鐵 道 車 兩	0.756	2.230	1.474	0.982	1.042	0.060
船 舶	0.414	1.228	0.814	-	-	-
精 密 機 械	1.074	0.952	△0.122	0.990	1.006	0.016
기 타 製 造 業	1.764	1.165	△0.599	0.900	1.029	0.129
프 라 스틱 製 品	-	0.979	-	0.847	1.021	0.174
藥 器	1.577	1.566	△0.011	0.941	1.002	0.061
鉛 筆	1.701	1.813	0.112	1.008	1.399	0.391
万 年 筆	-	2.247	-	1.000	0.893	△0.107
金 属 製 完 具	-	1.899	-	1.027	1.043	0.016
성 냥	1.406	1.207	△0.199	1.466	1.357	△0.109

資料出處：日本生産性本部「季刊生産性統計」労働省「毎月勤勞統計」

日本銀行「物価指数年報」

註：業種別の賃金コスト(賃金指数/労働生産性指数)의 算定에는 産業中分類의 賃金を 一律的으로 使用하였음.

賃金 Cost 의 動向은 資金과 生産性에 의하여 決定되지만 業種에 따라 生産性 上昇「템포」의 差異가 있어도 資金은 勞動市場이나 勞使交渉局에서 平準化 傾向이 있기때문에 生産性上昇率이 낮을수록 賃金 Cost 의 上昇이 높고 生産性上昇率이 높게됨에 따라 賃金 Cost 의 上昇率이 낮게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賃金 Cost 의 上昇은 여러개 業種에서 進行되고 있지만 業種 Cost 와 都売物価와의 사이에 이때까지 前期的 傾向으로서는 直接的인 關聯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들면 上記 共通品目에 관하여 1965年 - 1970年間的 賃金 Cost 와 都売物価의 變化率間의 相關關係를 보면 그 相關係數는 0.285로 極히 적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勞働省 勞働生産性 統計調査에 의한 賃金 Cost 의 움직임을 보면 이 調査에서는 20種産業의 対象品目에 관하여 商品單位當의 勞働投入量(人.時)을 工種別로 자세히 調査하고 있다.

이 勞働投入量의 減少로 表示되는 勞働 生産性的 向上과 同調査에서 얻어지고 時間當賃金으로부터 單位製品當 勞務費(賃金 Cost)의 變化率을 算出하여 보면 第3表와 같이 된다.

한편 同一品目에 관하여 通産省 生産, 動態統計調査에 의한 出荷額 및 出荷量의 比에 의거 出荷價格을 算出하여보면 第4表와 같다.

第3表와 第4表를 對比하여보면 勞働費上昇率과 出荷價格上昇率 또는 各各의 上昇率의 變動의 相關關係는 全体로 보아 매우 희박한것을 알수있다.

勿論 賃金 Cost.의 變動이 어느程度의 時差를 가지고 出荷價格의 變動과 關聯 짓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各品目的 製品價格의 變動 期間의 總數의 frame 內에서 製品價格이 勞務費와 同時에 平行的으로 變動하는 期間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半數를 넘고있고 時差를 考慮한 경우 同一한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는 期間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半數以下로 되어있다.

또 長期的으로 平均하여보면 各業種의 價格變動은 比較的 적지만 한편 賃金上昇率은 11~15%를 中心으로하여 比較的 좁은 分布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하여 勞動生産性 上昇率은 꽤 넓은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價格의 動向에 比較하여 勞務費의 變化率은 꽤 넓은 範圍로 上昇 또는 下降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製造業의 生産分野를 規模別로 나누어 보면 都売物 價에 關하여는 大企業性製品과 中小企業性 製品으로 나눈 集計値가 있지만 勞動生産省에 關하여는 日本生産性本部 指數로는 規模別 指數를 얻을 수 없으므로 規模別로 組合시킨 推計作業(1965年工業統計表의 規模別 品目別 附加價值 構成比와 加産値로 綜合하는)이 必要하게 된다.

規模別로 보면 都売物 價의 動局은 全般的으로 中小企業性 製品의 上昇率이 大企業性製品의 上昇率을 上廻하고 있지만 1969年 및 1970年度에 各各 中小企業性製品이 3.3% 7.1%의 上昇率을 나타낸 反面 大企業性製品도 各各 1.9% 4.2%의 꽤 높은 上昇

第3表 单位製品当 勞務費의 对前年 上昇率(%)

区 分	63	64	65	66	67	68	69
綿 紡 績 業	1.9	5.9	5.4	1.5	3.1	14.3	22.4
毛 紡 績 業							
{ 梳 毛	3.8	8.2	5.2	1.0	7.6	17.4	16.1
{ 紡 毛	18.1	1.2	11.2	3.1	10.8	7.9	16.7
綿 織 物 業	9.4	5.7	15.3	1.3	16.4	△8.1	28.6
紙 製 造 業	7.6	2.1	10.1	△1.5	7.8	2.0	4.6
{ 肥 料 製 造 業	△8.0	△8.0	0.6	10.0	△2.9	3.4	4.6
{ 小 - 다 工 業	△0.4	68.2	9.8	△8.3	0.6	△11.3	15.4
레 이 온 製 造 業							
{ 레 이 온 糸	1.3	9.0	8.3	16.9	△2.9	44.0	△4.6
{ 레 이 온 스테플	△2.6	0.9	0.6	△3.5	△0.7	18.0	2.0
타 이 어 추 - 부 製 造 業	6.2	△2.3	17.3	△10.3	2.4	6.7	2.8
시 멘 트 製 造 業	5.0	△0.6	5.7	△11.1	7.9	△14.9	27.5
鑄鋼・銑鉄・鑄物製 造 業							
{ 鑄 鋼	△0.7	4.8	11.6	△10.6	△3.2	17.3	16.1
{ 鑄 鉄	14.4	△0.6	3.8	△2.7	△3.7	28.4	△0.4
{ 可 鍛 鑄 鉄	4.4	0.3	18.1	3.1	19.5	0	9.6
旋 盤 製 造 業	△8.1	65.7	17.9	△8.9	3.4	17.5	9.7
軸 受 製 造 業	△1.9	△3.8	7.3	△0.8	64.4	△6.1	8.7
電 動 機 製 造 業	2.8	11.2	10.6	15.5	1.0	24.1	12.6
自 動 車 製 造 業	△6.29	△4.9	8.3	△0.6	7.7	2.5	6.7

註：△表示勞務費의 低下

資料出處：勞動省「勞動生産性 統計調查 및 同附帶調查」

第4表 出荷価格対前年上昇率

(%)

産業(製造業)	63	64	65	66	67	68	69
綿紡績業	1.9	3.7	1.0	△2.4	-	-	-
毛紡績業							
梳毛	33.9	0.8	3.7	△1.3	-	-	-
紡毛	15.1	4.4	6.5	△7.9	-	-	-
綿手平織物業	-	7.6	△5.7	0	4.1	-	-
紙	0.8	3.9	△2.2	1.8	0.4	0.7	0.7
안모니아系肥料	5.1	1.3	6.0	△3.7	△16.2	△8.3	△8.9
소-다工業	-	3.3	1.7	△2.7	△2.6	0.8	△5.6
타이어류-브	△6.9	-5.1	1.4	△5.3	△1.4	△7.7	△2.2
시멘트	△2.2	-5.8	4.0	3.1	3.4	△0.6	△1.8
鑄鋼・鋳鉄							
鑄物製造業							
鑄鉄	△3.6	0.9	1.0	0.6	11.4	7.5	0.3
可鍛鑄鉄	△3.8	1.6	0.3	△8.5	3.8	4.7	-0.1
旋盤	△9.2	△12.6	7.2	1.4	10.7	6.5	7.4
軸受	△8.6	△11.7	△3.7	△8.6	2.9	△0.5	1.2
電動機	△7.7	△4.7	△7.7	△0.4	0.7	△5.7	△6.7
自動車	△2.8	△6.7	△10.9	△3.0	△2.3	2.0	1.9

註: △表는 労務費의 低下

資料出處: 通産省「工業統計表・生産動態統計」

을 나타내고 있다.

賃金 Cost 局의 動向을 보면 中小企業部門에 있어서는 1955 年代 後半에 賃金上昇이 生産性上昇을 上廻하는 傾向이 나타나 1965 年代에 들어와서도 그 傾向이 계속 되었다.

1966 年 1967 年の 景氣回復期에는 한때 賃金 Cost가 低下한 것이 1968 年度以後 다시 上昇趨勢로 轉向되었다.

한편 大企業部門을 보면 1955 年代後半에는 生産性上昇이 賃金上昇을 上廻하여 賃金 Cost는 低下하였다.

1965 年代에 들어와서도 1969 年度까지 이 傾向이 계속되었지만 1970, 1971 年度에는 賃金 Cost는 上昇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註...위에 記述한 物價, 賃金, 生産性的 움직임의 分析은 經濟審議會의 「物價, 所得, 生産性委員會報告」勞動省의 「1971 年の 勞動經濟의 分析」勞動省 勞動統計調查月報 Vol.23, NO.7 等に 의한 것이 많다. 詳細한 資料에 관하여는 各各의 文献을 参照하기 바람

2. 利用資料에 관한 問題

前項에서는 物價, 賃金, 生産性에 관하여 巨視的인 傾向또는 品目別 動向等を 살펴보았으나 物價面의 資料로서는 日本銀行의 都売物價, 工業統計 및 生産動態統計에 의한 出荷價格等이 利用되었다.

또 賃金 Cost 面에서도 每月 勤勞統計에 의한 賃金指數 日本生産性 本부의 生産性指數, 勞動省의 勞動生産性 統計等이 利用되었다.

이 項에서는 그러한 諸般資料의 相互關聯性 等の 問題에 관한 若干의 考案을 試圖코자 한다.

(1) 物価資料의 問題

日本銀行의 都売物価指數는 日本의 價格指數로서는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진 基本統計이며 生産省段階에 가장 가까운 物價의 變動을 綜合적으로 把握하는데 매우 利用價值가 높은 것이다.

分析의 觀点에서 指數의 性格上 消費者物價와 다르며 商品價格에 限定되어 있다는 것 消費財에 限定되지 않고 生産財 資本財의 價格을 包含하고 있는 것등에 注意를 할 必要가 있지만 物價分析을 行하기 위하여는 不可欠한 基本的 資料라고 할 수 있다.

賃金 Cost 와의 対応關係에 있어서는 品目의 構成, 加重値 등이 어느程度 相違하고 있는가가 一応 問題가 될 것이다.

여기서 都売物價指數와 勞動生産性指數의 產出量指數의 基礎가 되는 鉅工業 生産指數와의 品目等의 対応關係를 「체크」하여보면 1965年度 基準指數의 採用品目은 都売物價가 806 生産指數가 404 加重値는 都売物價는 基準時의 去來額 生産指數는 基準時의 附加價值額을 各各 基礎로 하고 있다.

그러나 持用 品目數에 관하여는 品目 單位가 相當히 相異하므로 上記數字만큼의 差異는 現實적으로 存在하지 않고 主要品目이 거의 兩者에 같이 包含되고 있다.

또 加重値에 관하여는 基礎上的 相異를 當然히 反映하고 있는 外에 不採用品目의 附加價值額 및 去來額配分方法이 相異함에 따른

影響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程度인가를 쉽게 把握하기는 어렵다. 都売物価의 分類에 生産指數를 合하는 形에서 加重値를 單純히 比較하여 보면 第5表와 같이 된다.

여기서 生産指數와 都売物価指數를 比較하여 機械類關係의 加重値가 높다는것등의 相異를 볼 수 있지만 兩指數의 性格이 틀리는 이상 어느 程度의 差異가 있는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理論的으로 생각하면 採用品目の 生産段階를 포착하여 生産數量과 出荷價格을 把握하여 生産額등의 加重値를 共通的으로 適用하는것이 可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都売段階에서의 物価를 取扱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관하여는 同一한 結果를 바랄수도 없을것이다.

다만 이와같은 思考方式을 取하면 都売物価가 아닌 生産者段階의 價格 그자체를 追求하는것은 當然히 企圖할만하다.

前項에 掲記한 出荷價格의 算出도 其中 한가지이다. 또 1967年 이후 日本銀行에 의하여 作成되고 있는 工業製品 生産者物価指數의 資料도 이런 意味에서 注同할만한 價値가 있다.

이 指數는 都売物価에 比較하면 品目數가 輸出入品을 除外한 工業製品의 約6割 加重値比로 보면 約9割에 相当하며 약간 範圍가 좁지만 生産者의 月間販賣契約價格을 調査하고 있으므로 生産者 段階의 價格의 움직임을 都売物価보다 正確하게 把握하게될 可能性이 있다.

그리고 1968年 1972年間の 生産者物価와 都売物価의 動向을 對

第 5 表 都売物価 生産指数 比較

	都 売 物 価	生 産 指 数
總 平 均	1,000	1,000
食 料 品	157	106
織 維 品	107	114
鉄 鋼	97	65
非 鉄 金 属	44	30
金 属 製 品	38	58
機 械 器 具	221	300
一 般 機 械	78	93
電 気 機 械	71	92
輸 送 機 械	60	98
精 密 機 械	12	17
石 油 石 炭 製 品	55	34
木 材 ・ 同 製 品	62	20
窯 業 製 品	30	48
化 学 品	76	90
紙 , 珩 紙	34	35
雜 品 目	79	97

資料出処：日本銀行「物価指数年報」通産省「通産統計」

註：1965年基準指数에 의 함

比하여 보면 第6表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全般的으로 거의 비슷한 動向을 나타내고 있는 業種이 많지만 一部에서는 變動幅에 약간 差異가 있는 業種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兩指數의 加重値의 差異에도 影響이 있지만 物價動向 自体의 相異도 相當히 있을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分後 이 生産者物價資料의 整備, 擴充에 關하여 分析面으로 부터의 要請도 增加할 것으로 보인다.

第6表 都壳物價와의 對比에서 본 生産者物價의 動向 (對前年比)

類 別	60年基準品目數		58年	59年	60年	61年	62年
總 平 均	535 (928)	1,000.0 (1,000.0)	0.2% (0.6)	1.5% (3.2)	3.5% (2.4)	-1.2% (-3.8)	1.0% (0.8)
食 料 品	443 (111)	106.1 (133.9)	4.3 (5.2)	3.4 (4.2)	3.6 (2.4)	4.1 (4.3)	1.3 (1.9)
織 維 品	76 (104)	93.5 (77.7)	1.1 (-0.9)	-1.1 (0.4)	5.3 (5.2)	4.4 (-3.3)	2.6 (2.3)
天然纖維·化纖	12	15.6	-0.5	-4.9	9.2	-8.2	14.5
合 織	7	14.6	-6.0	-4.3	-4.0	-14.8	-11.9
織物·編物類	24	32.1	0.7	0.2	2.8	-3.8	3.3
纖維2次製品	33	31.2	6.2	2.6	7.3	1.9	2.2
製材·木製品	32 (42)	49.1 (37.8)	6.1 (5.2)	3.5 (3.0)	7.0 (3.4)	-1.9 (-2.6)	12.1 (11.2)
펄프·紙·同製品	22 (30)	358 (28.1)	-0.1 (-0.9)	1.2 (3.7)	7.5 (6.7)	-1.8 (-2.1)	1.4 (0.8)
鐵 鋼	43 (63)	105.8 (93.7)	-7.1 (-4.4)	4.5 (11.3)	7.1 (2.2)	-6.2 (-6.4)	2.0 (2.5)
普通鋼鋼材	21	71.8	-8.9	5.8	7.1	-8.2	2.5

類 別	60年基準品目數		58年	59年	60年	61年	62年
特殊鋼鋼材	22	34.0	-1.7	0.8	7.3	-1.9	0.8
非鐵金屬	24 (46)	45.9 (42.0)	1.8 (-0.5)	10.8 (18.2)	2.8 (-7.6)	-12.9 (-14.4)	-5.1 (-5.1)
金屬製品	39 (46)	49.5 (37.9)	0.4 (0.7)	1.8 (3.0)	3.4 (4.2)	-0.2 (0.5)	-0.4 (-0.4)
機械器具	124 (185)	313.4 (265.7)	0.4 (0.7)	1.8 (3.0)	3.4 (4.2)	-0.2 (0.5)	-0.4 (-0.4)
電氣機器	48 (67)	109.6 (89.8)	-1.1 (-0.6)	-0.4 (-1.0)	1.5 (0.1)	-2.5 (-3.2)	-2.6 (-1.9)
輸送用機器	11 (18)	77.4 (68.3)	-1.7 (-1.0)	-1.5 (-1.5)	0.0 (0.1)	0.0 (0.0)	0.2 (0.3)
一般·精密機器	65 (100)	126.4 (107.6)	2.5 (2.0)	1.4 (1.6)	3.3 (3.4)	1.3 (1.2)	1.4 (0.5)
化學製品	75 (119)	98.1 (87.8)	-2.8 (-2.2)	-1.4 (-0.4)	-0.1 (0.5)	-1.5 (-0.7)	-0.5 (0.1)
石油·石炭製品	15 (27)	31.9 (46.1)	0.3 (-0.3)	-2.8 (-1.5)	2.9 (4.5)	10.2 (11.2)	0.5 (-0.8)
窯業製品	22 (45)	34.1 (31.0)	0.9 (1.8)	1.2 (2.3)	2.5 (4.8)	2.3 (1.2)	1.6 (1.0)
雜品目	20 (65)	36.8 (75.5)	2.1 (0.9)	3.5 (2.7)	1.0 (3.4)	1.7 (3.0)	-0.2 (1.7)

資料出處：日本銀行「物價指數年報」

注... 1) 1968~1970年의 數値는 1965年基準指數에 의한다.

따라서 類別区分, 品目數, 加重值等도 本表와 一致하고 있지 않는點에 注意를 要함.

2) 都売物價의 種類別中, 非 食料農林産物(品目數 30, 加重值 23.8) 및 金屬, 素材(品目數 15, 加重值 19.0)은 生産者物價類別과 対応시키지 않았으므로 本表에서 除外하였음.

3) () 内는 都売物價의 數値를 表示하는 것임.

(2) 賃金 Cost 資料 問題

賃金 Cost는 賃金과 勞動生産性에 의하여 算出되지만 具體的인 資料로서 勞動生産性은 日本生産性本部の 勞動生産性指數 또는 勞動省의 勞動生産性統計와 그리고 賃金은 勞動省의 每月勤勞統計에 의한 賃金指數가 많이 利用된다.

1) 勞動生産性

日本生産性本部の 指數는 產出量指數와 勞動投入量指數로 부터 產出되지만 모두 主로 通産省의 生産動態統計를 基礎로하고 있다.

加重値는 各各 工業統計에 의한 附加價值와 從業者數를 適用하여 算出한 것이다.

여기서 注意하여야 할 點은

① 生産動態統計는 業種에 따라 調査對象事業체의 規模가 다를것.

② 勞動投入量의 調査方法은 業種에 따라 區區하지만 Monday로 換算되어 있을 것 등이다.

第1의 調査單位를 一觀表로 하여보면 第7表와 같이 된다.

產出量指數 即 生産指數는 生産動態統計에 있어서의 生産量을 基礎로하고 있으며 一定規模이상의 事業所가 調査對象이 되는 品目에 관하여도 그 生産量의 動向이 全体를 代表하는 것으로서 作成되고 있다.

第7表 通産省 生産動態 統計調査의 調査範圍

(1972年1月現在)

品目群	調 査 範 圍	品目群	調 査 範 圍
石炭· 亞炭및 코크스	石炭, 亞炭및 코크스를 生 産하는 全事業所	金 屬 製 品	線材製品, 金屬容器, 鑄鐵器 輕金屬板製品, 金屬洋食器, 金 屬製建具等を 生産하는 全事 業所
石油	原油, 天然개스, 石油製品및 天然개스製品을 生産하는 全事業所		機 械 器 具
鉍物	金屬鉍物 (25 鉍物) 및 非金 屬鉍物 (22 鉍物) 을 生産하 는 全事業所		
第 1 次 金 屬	① 非鐵金屬 (60 品目) 및 非 鐵金屬 一次製品 (伸銅製品, 亜鉛製品, 鉛製品, 알미늄 圧延製品, 電線케블) 을 生 産하는 全事業所 ② 鉄銅및 鉄鋼加工製品 (鋳 鉄, 페로아로이, 粗鋼, 鑄 鋼, 熱間圧延鋼材, 冷間仕上 鋼材, 鍍金鋼材, 冷間로-루 成型鋼, 鑄鉄管鋼管等) 을 生産하는 全事業所		

品目郡	調 査 範 囲	品目郡	調 査 範 囲
機 械 器 具	工具, 펄프콧 및 鐵管繼牛 空氣動工具, 自動車用機械工 具 톱날, 機械刃物 및 줄, 電球, 電氣計測器, 産業車兩, 計測機器, 紛末冶金製品, 可 鍛鑄鉄, 다이가스트에 관하 여 常用勞働者員 30 名以上の 事業所	織 維 織 維 製 品	原則으로 從業員 30 名以上の 事業所 ① 紡績糸·染色整理, 메리야 스원단 메리야스 一次製品 漁網, 麻綱, 合成纖維綱, 敷物 펠트, 不織布類에 관하여는 從業員 20 名以上の 事業所 ② 織物, 노끈 및 래스 原地 製品에 관하여는 從業員 10 名 以上の 事業所
	④ 航空機 및 武器에 관 하여는 全事業所 原則으로 全事業所 但 ① 石灰 및 輕質炭酸칼슘 에 관하여는 從業者 15 名 以上の 事業所 ② 油脂製品, 塗料, 印刷, 잉크 및 와니스에 관하여 는 從業員 10 名以上の 事 業所		木製品 합板을 生産하는 全事業所 펠프 및종이 하는 全事業所
化 学 工 業		고 무 製 品	고무製品, 再生고무를 生産하 는 從業員 5 名以上の 事業 所
業 土 石 제 품 및 建 材	原則으로 全事業所, 但 ① 시멘트 製品에 관하여는 從業者 10 名 以上の 事業所	프 라 스 틱 製 品	프라스틱製品을 生産하는 從業員 30 名以上の 事業所
		雜 貨	① 陶磁器에 관하여는 從業 員 5 名以上の 事業所 ② 유리製品, 법랑鉄器, 段붙, 輕全屬板製品, 金屬洋食器玩具, 工業用革製品, 製革 및 革靴

品目郡	調 査 範 圍	品目郡	調 査 範 圍
工 業 品	에 관하여는 従業員 10 名 以上の 事業所 ③ 樂品, 金屬性家具 및 筆記具에 관하여는 従業員 20 名以上の 事業所		

資料出處：行政管理庁「日本總年月報資料解說編」等

그 代表性은 特別히 큰 결함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賃金과 対応시키는 경우 每月 勤勞統計에 의한 事業体規模 30 인 以上の 賃金과 直接連結하는 데는 問題가 있다.

第 2 의 勞動投入量의 算出에 관하여는 原則적으로는 每月 延勞動 人員을 調査하는 것에 의하여 man day 로 計算되는 形態로 되어 있다.

다만 鋁業 石油精製業 非鉄金屬製品은 月間 実施勞動의 延時間 調査되며 또 紙類 「필프」는 延作業時間 ÷ 8 의 形式으로 月間 實施勞動 延人員이 算出되고 있다.

이들 4 業種을 比較하면 다른 業種에서는 勞動時間短縮의 影響이 勞動力 生産性的 向上을 阻害하는 形態로 나타날 것이 豫想된다.

그러나 勞動時間 短縮의 「템포」는 雇傭의 增加에 比하면 完만 하기 때문에 그 影響을 그다지 크지 않다.

労働省の労働生産性統計の 경우 日本生産性本部の指数에 比하면

- ① 対象이 되는 商品数が 限定되어 있는것.
- ② 单位 生産当 所要労働時間을 가지고 労働生産性を 測定하고 있는것.
- ③ 所要労働時間이 生産工程別로 測定되고 있는것等に 特徴이 있다.

또 賃金과의 対応도 同一한 調査에 依한 時間当 賃금이 調査되고 있지만 工程別로는 賃금이 把握되고 있지 않다.

ii) 賃 金

毎月労働統計에 의한 賃金指数는 規模 30人이상의 事業体の 賃金支払 総額을 總費用者數로 除하여 얻는 平均賃金を 指数化한것이며 企業の 労働 Cost를 表示하기 때문에 指数로서의 性格이 강한 것이다.

賃金指数에는 一般的으로 労働Cost指数 労働의 価格指数(賃金率指数) 労働者 收入指數의 3種類를 들수있지만 Cost를 表示하는 資料로써 毎月勤勞統計에 의한 指數가 採用 되는것을 相當한 理由가 있다.

그러나 이指數에 관하여도 労働生産性的의 对比등의 關聯에서

- ① 品目別調査가 아니고 事業所의 主된 生産品目에 의한 産業別 事業調査 그리고 그産業加重値가 固定된 形態로 되어 있지 않을것.
- ② 製造業中分類보다 자세한 区分으로는 指數가 算定되어있지

않을것.

③ 製造業中分類에 관하여는 30人未滿規模의 指數가 算定되어 있지 않을것 등이 問題로 되어 있다.

첫째 加重値가 固定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産業別勞働者構成 또는 個個 産業에 따른 特別 年令別 勤続年數別 등 勞働者構成이 變化하는것에 의하여 賃金指數가 變動하는것이 된다.

다만 勞働力の 質的構成이 높아져 平均賃金이 올라도 同時에 勞働內容이 向上하고 生産性이 上昇하게 된다면 不便은 없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賃金水準은 勞働者の 性別年令別 構成에 의거 影響을 받는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製造業計에 대한 中分類의 各産業의 勞働者 構成의 影響은 性年令等を 考慮하지 않으면 근소하다.

例를들면 製造業體의 賃金指數를 1965年의 製造業中分類別雇傭者數를 固定加重値로하여 計算하여도 거의 指數의 數値는 變하지 않는다.

따라서 産業中分類 등의 勞働者數의 構成이라는 뜻에서의 加重値問題는 生産性指數의 勞働投入量의 加重値가 工業統計 등의 加重値란 것과 對比하면 主로 對象으로하는 事業所 規模의 相違에 關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産業小分類小規模의 資料에 관하여는 調査標體設計 調査

方法等이 事業所 規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利用上에도 制約이 생기게 된다.

即 常傭規模 30人 이상의 事業체를 對象으로 하는 甲調査로는 事業체 統計도 把握한 事業체 list를 frame으로 하여 製造業中 分類別 規模別로 調査 事業체를 抽出하여 事業체 自体의 計劃에 의한 通信調査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常傭規模 5 - 29人을 對象으로 하는 乙調査에서는 事業체 統計의 調査区中에서 一定數의 調査区를 抽出하여 그中에 所在하는 事業체 會社(産業은 甲調査와 같음)에 關하여 統計調査員에 의한 他計式 實際調査를 行하고 있다.

調査對象이 되는 事業체 또는 調査区는 3年마다 實施되는 事業체 統計의 結果에 따라 抽出을 바꾸고 있으나 甲調査에서는 新設事業체 規模變動 등에 의한 繼屬이 생기기 때문에 이른바 gap修正을 行하여 指數를 算出하고 있다.

反對로 指數化 되어 있지 않는 數値는 그대로 實數値를 時系列的으로 觀察하는 데는 問題가 있게 된다.

이러한 狀況에서 製造業中分類보다 적은 区分의 業種이나 中分類上 30人未滿 規模는 生産性指數를 求할수 있는 것에 대하여도 賃金指數를 求할수 없으며 30人 이상 規模의 中分類指數를 代用하지 않을수 없는 形態(前掲第2表參照)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은 調査限界를 넘는 問題가 되겠지만 調査의 擴充을 期함과 同時에 集計 加工 段階에서 再檢討를 加할 余地(例컨데

特別産業의 集計등)가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3. 資料開發의 必要性

物価 賃金 生産性の 分析에 있어서 資料利用에 관하여는 前項에서 본바와 같이 몇가지 問題가 있다.

특히 相異한 調査結果를 綜合하여 行하는 分析에 있어서는 調査對象範圍의 相異 等の 制約이 있어 統計的 嚴密性은 어느 程度 犠牲되지 않을수 없는 狀況에 있다.

이러한 觀点에서 보면 위와같은 分析을 위하여는 調査의 充實을 圖謀함과 同時에 既存資料에 의하여 精密度를 높게하는 資料의 加工, 開發을 進行시킬 必要性이 느껴진다.

여기서는 그러한 資料開發의 方向을 示唆하는것으로서 結言을 맺고자 한다.

1) 規模別, 勞動生産性, 都壳物価

問題意識의 한가지는 規模別 資料에 관한 것이다.

前項의 資料檢討에 있어서도 基礎資料 調査對象事業所規模의 範圍가 調査에 따라 相當히 相異하게 된다는것을 言及했지만 나아가서 小規模事業체에 있어서의 低生産性, 費用上昇을 分析의 觀点으로 하면 規模別 資料의 欠如는 큰 問題가 되고 있다.

이미 都壳物価에 관하여는 生産分野의 規模의 相異를 意識하여 大企業性製品, 中小企業性製品の 特殊分類指數가 公表되고 있지만

여기에 分類를 맞추는 形態로 勞動生産性과 賃金を 推計하는 것은 容易하지 않다.

여기서 한가지 方法으로서 生産動態統計, 每月勤勞者統計, 工業統計 都売物価等の 資料를 利用하여 規模別勞動生産性과 都売物価를 推計하는 方法을 할수 있다.

勞動省統計情報部에 의한 「規模別(産業別)勞動生産性, 都売物価의 開發試算의 結果」(日本勞動協會 勞動資料速報臨時增刊 1973年 1月5日)는 그와같은 試圖의 一種이다.

여기서는 주로 工業統計表의 出荷額의 規模別 加重値(規模区分은 500人이상, 100-499人, 30-99人)를 作成하고있지만 個別品目에 관한 生産, 物価의 規模別 資料가 없기때문에 各規模別 共同한 指數(規模計)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 큰 制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企圖는 結果의 評價만으로 그치지 않고 資料, 方法등에 관하여도 檢討 改善을 圖謀함으로서 制約을 除去하는 方向으로 積極的인 研究가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2) 勞動者構成 固定賃金指數

問題意識의 둘째는 賃金指數의 變化에 대한 勞動者 構成의 變化의 影響에 관한 것이다.

이미 叙述한바와 같이 現在의 賃金指數는 勞動者의 構成이 變化하는것에 의하여 指數가 變動하는 形態로 되어 있으며 勞動力의

質을 考慮한 事項別 賃金指數 또는 勞働者構成의 同質性を 前提로 한 賃金指數의 必要性이 대두하고 있다. 現在의 每月勤勞統計에서는 各産業規模別 勞動力構成은 性別 生産勞働者 管理事務 및 技術 勞働者別 区分이 把握되고 있을뿐으로 年令, 學歷, 勤続年數等の 要素를 뽑아 낼수는 없다.

이들 諸要素에 관하여는 「賃金構造 基本調査에 의거 把握할 수 있으며 이것을 利用하여 어느 程度의 接近이 可能하다.

1967年 및 1970年에 同調査를 利用하여 産業規模, 性別, 勞働者의 種類 年令 및 勤続年數別 勞働者構成을 1967年의 構成에 固定하여 1965年의 平均定期給與額을 算出하여 1967年 - 1970年의 增加率을 計算하여보면 製造業規模計에서는 59.1% 增이되고 있으며 構成變化를 包含한 實測值의 變化 67.2% 增에 比하여 8.1 Point 낮게 되어 있다.

이는 勞働者構成의 變化가 平均賃金を 끌어당기는 作用을 한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製造業規模別로 보면 小規模일수록 그 傾向이 強한것을 알수 있다.

이와같은 資料를 各期間에 걸쳐 時系列化하는것은 調査集計 表章 方法의 變更등이 수반되므로 容易하지 않고 또 構造面을 明確히 하는 調査內容을 時系列的으로 利用하는 問題가 있지만 調査 結果를 有效하게 活用할 余地가 많다고 생각된다.

第3章 畜産短期「모델」에 있어서의 價格資料

1. 「모델」의 概觀

本報告書는 價格資料가 中心이 되어있으므로 여기서 畜産短期「모델」을 詳述할 必要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價格資料가 이 「모델」에 占하는 地位를 알기 위하여는 우선 「모델」의 自体를 簡單히 說明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본다.

畜産短期 「모델」은 肉豚, 肉用牛, 乳用牛, 採卵鷄, 부로이라 라고 하는 5種部門으로 成立되고 있다.

各部門은 어느 程度 獨立한 「모델」이며 各已 單獨으로 使用할 수가 있다.

이와 同時에 各部門은 代替關係에 의거 數量 乃至 價格을 媒介로 하여 相互 關聯되고 있다.

따라서 各部門은 連關하여 한개의 綜合「모델」을 形成하고 있다.

各部門의 構造는 각기 技術的 前提 때문에 꽤 複雜하지만 基本的으로는 「거미집 理論」에 의하여 「순환함수 모델」로 되어 있다.

即 供給側은 時差價格이 數量에 영향을 미치는 價格反應函數이며 需要側은 數量이 当期價格을 支配하는 價格決定 函數로 되어 있다.

勿論 「모델」은 數十個의 方程式으로 成立되는 連立體系이지만 他人에 의하여 이들을 價格反應函數와 價格決定函數에 還元시키는 것이 可能하다.

第 1 圖 「모델」의 因果序列 概略圖는 各部門의 內容을 極端으로 單純化하여 서로 關聯지은 것이다.

實線은 同時點의 關係이며 點線은 時差를 둔 關係이다.

따라서 이들 關係中에는 순환함수의 關係뿐만 아니라 同時決定的인 關係도 包含 되고 있다.

이는 推定法과 關聯되는 問題이다.

特殊 data bank 資料 「서어비스」뿐만 아니라 「모델」의 作成도 行하게 되면 畜産短期 「모델」은 計量經濟學的 推定法의 거의 全부를 software로서 準備 할것이 要望된다.

순환함수적 「모델」은 元來 普通 最小自乘法의 適用을 正當化하고 있지만 이는 各方程式의 攪乳項目 相互間의 共分散을 零으로 假定한 경우이다.

이 共分散이 零이 아니면 當然히 別途의 推定法을 採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例컨대 結合一般化 最小自乘法 (joint G.L.S)이 그것이다.

各方程式의 攪乳項目 自体도 古典的 線型 回歸 「모델」의 前提를 充足하고 있지 않으므로 普通의 一般化 最小自乘法의 適用도 必要하게 될것이다.

특히 系列相關의 問題가 있기 때문에 그 點에 관한 考慮가 必要하다.

既述한바와 같이 「모델」은 同時 決定的 局面이 있으므로 그곳에서는 同時 推定法의 採択도 登場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成果는 農林省 報告書 No.1 「畜産短期「모델」」(1971年8月)에 要約되고 있다.

여기서는 普通 最小自乘法外에 2段階最小自乘法이 適用되고 있다. 이 作業은 現在 農業綜合研究所에서 進行되고 있으며 前記 普通一般化 最小自乘法이나 結合一般化最小自乘法 및 이에 3段階最小自乘法의 適用이 試圖되고 있다.

여기서의 研究는 最小自乘法의 系統에 重点을 두고있지만 制限情報最尤推定法이 檢討되고 있다.

그러나 完全情報最尤推定法은 現在研究할 豫定은 없다. 「모델」이 作成되면 当然 2 “테스트”가 要求된다.

이 「모델」은 部分「테스트」와 全体 「테스트」間에 그差가 없으므로 後者は 省略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最終 「테스트」가 「모델」의 成否를 決定하게 된다. 豫測은 지금으로부터 3年程度 앞까지 有効할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乳製品「모델」은 前記報告書로는 不充分하며 農政調査委員會 「牛乳製品 需給豫測方式에 관한 研究」(1965年12月 1967年3月)를 参照하기 바란다.

2. 價格資料의 出處

第1表(1)에서 (IV)까지는 이「모델」에 採用한 變數와 그 資料 出處를 모두 列挙하고 있다.

價格資料에 관하여는 特히 下線을 그 어 두었다.

「모델」은 畜産物의 需要에서 消費에 이르기까지의 各段階를 需給關係로서 把握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原則은 現在까지의 경우 農場段階와 都売段階에 適用되고 있을뿐이며 小売段階는 対象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採用되고 있는 價格도 原則적으로 農物價格과 都売價格이며 小売價格은 取扱하고 있지 않다.

第1表 (I)에서 (IV)까지 보다 明白히 나타난 바와 같이 價格資料의 出處는 單純하다.

農物價格은 大部分이 農林省「農村物價 賃金統計」에서 뽑은 것이며 都売價格의 거의 全部는 日本銀行「都売價格指數」에 의거하고 있다.

計算期間은 1961年부터 1964년까지이지만 4分期別 資料가 利用되고 있고 構造 方程式은 最大限 4分期의 時差變數를 包含하기 때문에 資料는 1年前의 1960年度부터 蒐集되었다.

또 이 4分期別 資料는 月別資料를 3個月마다 取合하여 作成한 것이다.

資料를 取合하기 前에 月別資料는 季節變動을 調整하였다.

이 調整方法은 센서스局法 내지 EPA法에 의한 것이다.

이 方法에 의거 調整을 마친 資料는 計劃期間의 兩端의 安定度を 低下시키기 때문에 月別資料는 1969年 보다 半年分을 더 많이 1970年度 6월까지 準備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原資料는 1960年度부터 1970年度까지 蒐集

된 것이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이 期間에 採用形態를 變換한 資料도 있다.

이와같은 경우 모두 어느 期間동안만 新旧兩形態의 資料가 混存하고 있으므로 그 比率을 修正係數로서 旧資料를 新形態로 調整하고 있다. 肉豚部門에서는 仔豚의 農場價格이 1965年 4月부터 「란드레스」의 값을 掲載하였다.

그以前에는 「요-크샤」, 中豚의 값만 나타나 있었으므로 1965年 4月 1966年 3月の 兩者의 平均比率을 修正係數에 使用했다.

乳牛部門에 있어서 생우유의 農場價格은 1966年 이후는 飲料用 생우유價格과 乳製品用 생우유 價格과의 區別을 廢止했다.

생우유의 農物價格은 元來 이와같은 明確한 區別이 없기 때문에 廢止自体는 별뜻이 없었고 이는 形態變換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에 의거 農物段階에서의 두가지종류의 생우유의 需給關係의 把握이 弱화된 것은 否認할 수 없다.

「農村物價賃金統計」와 「都売物價指數」를 除外하면 價格資料로써 採用된 것은 적다.

乳牛部門에 있어서 乳製品價格指數는 業務用 乳製品과 家庭用 乳製品과의 諸價格資料에 의거 作成되고 있다.

業務用 乳製品이란 全脂加糖煉乳, 全脂粉乳, 脫脂加糖煉乳, 脫脂粉乳 「빠다」등이며

「家庭用」乳製品이란 飲料日우유, 加糖煉乳, 調整粉乳, 「치스」, 「빠다」 등이다.

業務用 乳製品의 價格은 大量需要者 受取價格이 家庭用 乳製品에
는 製造業者販賣價格이 각각 採択되었다.

이 資料出處는 農材省, 畜産局의 “우유製品調査”이다.

또 同部門에 있어서는 乳牛 및 仔牛의 枝肉價格과 乳廢牛의 枝肉
價格은 「都売價格指數」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東京都 「中央都売
年報」에 의하고 있다.

“부라이라” 部門의 “부라이라” 都売價格은 農林省의 「食用鳥
類 流通統計」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 統計는 1965年이전의 것은 없으므로 東京市內價格을
修正하여 여기에 연결시켰다.

修正係數는 1966年 1~12月の 兩者의 比率을 썼다.

그런데 資料의 欠如가 構造方程式의 內容을 不完全하게 하고 構
造方程式 그自體의 成立을 困難하게 할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點을 價格資料에 관하여 보면 肉牛部門의 牛枝肉都売價格이 去勢牛
의 價格만으로 代表되고 있는데 問題가 있다고 본다.

勿論 形態別 價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充分히 整備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 難點이 있다.

乳用牛部門에서는 乳牛仔牛枝肉價格 및 乳廢牛枝肉價格의 農場價格이
存在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價格을 求할수 있다면 都売段階와 対応시킬수 있게
될 것이다.

採卵雞部門에서는 廢雞價格이 農場段階에서만 存在한다.

“부로이라”部門에서는 그 價格을 都売段階에서만 求할 수 있다.

“부로이라”의 農場價格은 「農村物價賃金統計」에서 1964年度부터 求할수있지만 그이전의 것은 없으므로 使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廢鷄價格과 “부로이라”價格은 對等한 次元에서 關聯이 맺어져 있지 않다.

輸入價格은 現在의 「모델」에서는 전혀 考慮되고 있지 않다.

輸入價格은 現在 「모델」로 보아서는 별로 意味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牛肉은 輸入數量이 增加함에 따라 輸入價格을 고려할 必要가 생기게 될 것이다.

鷄卵과 “부로이라”의 輸入은 制限을 두지않고 있으며 豚肉에 대하여도 最近輸入을 自由化하였다.

그러나 輸入數量이 별로 많지않으므로 現在의 「모델」에서는 輸入價格의 效果를 無視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措置와 더불어 금후에는 輸入이 增加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輸入關係指數를 導入할 必要가 생길것이다.

끝으로 外生變數로서의 價格資料이지만 農場段階에서의 deflator (換價指數)는 飼料價格指數 乃至 農村勞賃指數가 使用되었다.

이 모두가 「農村物價賃金統計」에 의하고 있다.

飼料價格에 관하여는 過去에는 家畜別指數를 使用하기도 했고 特別히 肉用牛 및 乳用牛에는 밀기울價格 指數가 適用된 적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큰 差異 없으므로 現在는 飼料價格指數가

모든 部門에 同一하게 使用되고 있다.

都売段階의 deflator (換価指數)에는 消費者 物價指數가 使用되고 있다.

總理府 統計局 「消費者物價指數年報」에 실린 값이 그것이다.

都売物價의 綜合指數 내지 食料品指數를 採択하는 方法이 理論的이라고 생각되지만 計算結果 반드시 좋은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形態로 바꾸었다.

그러나 今後에도 이것으로 充分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 價格資料의 一致性

計量 經濟學的 “모델”은 方程式間에 一定한 一致性 關係가 確立되어 있을 것을 要求한다.

특히 方程式에 定義式이 包含되어 있을때는 “모델”이 前提하는 資料 그 自体에 相互 一致性 있는 關係를 維持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을 意味하고 있다.

畜産短期 “모델”에 관하여보면 종류별 家畜頭數間에 關係가 成立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當期末의 飼育頭數는 前期末의 飼育頭數에 當期の 出生頭數를 加하여 當期の 屠殺頭數 및 死亡頭數를 控除한 것과 같다고 하는 形態이다.

그러나 實際로 入手可能한 資料는 반드시 이러한 關係를 滿足시켜 주지 않는다.

그 때문에 蒐集한 資料를 再調整하는데는 相當한 努力이 投入되고 있다.

또 이 「모델」은 前述한바와 같이 小売段階의 需給關係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一致性 있는 資料가 이 段階에서 欠如하고 있기 때문이다.

畜産物은 고기든 우유든 계란이든 間에 그 어떤 部分은 加工原料로 使用된다.

그러나 그 關係가 乳製品을 除外하고는 아직 資料로서는 利用할 만한 充分히 把握되어 있지 않다.

특히 月別 資料가 不完全하므로 이 「모델」에 小売段階를 登場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問題는 主로 數量資料와 關聯되기 때문에 이 「모델」의 定義式이 數量的 一致性을 中心으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當然한 歸結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價格을 數量의 變化를 說明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때가 많으므로 價格은 動向만 나타내면 되는 것이며 그 水準까지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

即 價格을 이 「모델」에서는 指數化하여 使用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 「모델」이 만일 金額에 의한 定義式을 포함하면 各種價格相互의 一致性도 同時에 重要한 問題로 될것에 틀림없다.

특히 農場 段階와 都売段階間에 어느 程度의 流通 「마진」이

存在하므로 이것이 零이 된다든지 負 (minus)가 된다든지 한다는 것은 異常狀態를 除外하면 있을수 없게된다.

그러나 農場價格과 都壳價格에 適切한 資料를 採択하지 않을때는 實際로 流通 「마진」이 零이나 負 (minus)가 아닐때도 計算上은 그렇게 見做시 있을 것으로 본다.

現在入手可能한 價格資料는 形態別로 되어있으므로 이의 対応시키는 數量資料도 形態別로 分類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容易한 일은 아니며 또 價格資料도 모든 形態를 전부 망라하고 있지 않다.

價格資料는 採択되고 있는 形態가 그 商品의 代表的 乃至 平均的인 것이 아니면 그 價格에 數量을 乘하여 얻어지는 商品의 金額은 現實性을 欠如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前述한바와 같이 이 「모델」은 現在 金額上의 一致性을 要求하고 있지 않으므로 採用된 價格資料에 「모델」 作成上의 不適當性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暗暗裡에 寄妙한 關係를 나타내는 資料를 몇가지 指適할수는 있다.

採卵鷄部門에 있어서는 鷄卵農物價格은 一般的으로는 鷄卵都壳價格을 下廻하고 있어야 한다.

그럴때도 第2圖에서 보는바와 같이 採択된 資料는 兩價格의 關係를 반드시 그와같은 모양으로 維持하고 있지 않다.

특히 1963年부터 1965年에 걸쳐 鷄卵價格이 暴落한 時期였기

때문인지 農場價格쪽이 都売價格을 上廻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같이 明確하지는 않지만 常識적으로 보아 理解할 수 없는 關係가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다. 畜産類에서는 암컷이 수컷보다 高價인것이 一般的 現狀이지만 그 關係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資料가 종종 存在한다.

肉用牛部門에 있어서 肉牛의 農物價格은 1966年4月부터 1967年3月까지 수컷과 암컷이 같은 價格으로 되어 있었다.

또 肉用牛 仔牛의 農物價格도 1965年11月과 12月을 수컷의 價格이 소위 암컷의 價格을 上廻하고 있다.

鷄卵價格이든 肉牛價格이든 仔牛價格이든 價格關係에 현저한 變調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零給關係 그 自体가 약간 異常한 時期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正常한 關係를 逆轉시킬만큼 異常했는지는 問題이다.

오히려 兩價格의 資料蒐集方法 그 自体가 처음부터 一致性을 가지고 採択된 것이 아니므로 異常事態의 出現으로 因하여 一致性의 紊亂이 현저히 나타난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하여 乳用牛部門의 乳用牛仔牛 枝肉價格이 乳廢牛枝肉價格을 1960年1月부터 1961年2月까지 上廻하고있는 事例가 있지만 이는 乳用牛仔牛枝肉의 内容變化에 의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即 乳用牛仔牛枝肉은 처음에는 比較的의 質이 高級이여서 乳廢牛枝肉보다 값이 높을 것이다.

이것이 점차 質的으로 低下하여 乳糜牛枝肉을 下廻하는 價格을 나타내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各種資料는 모두 季節變動調整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資料相互의 一致性은 꽤 損傷되고 있다.

數量資料와 같이 原計數의 段階에서 一致性을 確立시킨 것으로서 季節變動 調整을 하면 當然히 그 關係는 흐트러지게 된다.

하물며 一致性을 配慮하지 않는 價格資料에서는 季節的變動調整後 相互關係가 一致性이 없는 경우가 많다.

流動關係를 檢討하여 今後는 安定된 資料를 整備하여야 한다.

4. 季節變動調整에 있어서의 問題點

이 「모델」이 季節變動 調整을 마친 月別 資料를 4分期別로 다시 묶어 이를 計算의 対象으로하고 있는 것은 前述한바와 같다.

그러나 그이전의 問題로서 季節變動의 調整方法을 檢討하여둘 필요가 있다.

季節變動의 調整方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採扱한것은 센서스局法 내지 그와 같은 部類이다.

農業은 季節性이 뚜렷한 産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供給側은 生物의 生理的 循環에 의거 支給되고 있으며 需要側은 人間의 食慾과 天候의 影響을 받기 쉽다.

畜産의 경우도 그 例外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60年頃부터 經營規模의 大型化가 進行하여 畜産에 있어서

季節性은 徐徐히 平準化되어 周年性生産이 모든 變數에 있어 漸次 變化하고 있다.

이 때문에 季節性은 모든 變數에 있어 漸次 變化하고 있다.

이것이 센서스局法과 같은 調整方法을 採択시킨 理由이다.

最終적으로 採択한 方法은 EPA法 X-4 이지만 다른 方法에 서도 그다지 큰차이가 없는 듯 생각된다.

이하 센서스局法 II X-11 과 比較하여보면서 論議를 進行하여 가 기로 한다.

季節變動調整에서 우선 問題가 되는것은 調整期間의 採択方式에 있어 季節指數가 틀리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1959年부터 1969年까지의 資料에 있어서 季節變動調整을 한 경우와 1959年에서 1968年까지 또는 1967年까지 또는 1966年까지의 資料에 관하여 季節變動調整을 한 경우와를 比較한 경우 같은 해의 季節指數에 관하여 兩者間에 서로 어긋나는 점이 發生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第2表는 병아리 수 ℓ 와 계란 都壳價格 p 에 관하여 이상의 諸點을 檢討하여 본것이다.

即 1959~69年의 資料를 基礎로 하여 算出된 季節指數와 1959年~66年 또는 1959年~67年 또는 1959年~68年을 基礎로한 그것과 対応하는 年別로 回歸시킨 것이다.

同表는 그 相關係數와 回歸係數(常數項은 除外)를 나타내고 있다.

第2表 (1)는 센서스局法 (2)는 E P A法에 의한 경우로 이에 의한
면 調整期間에 의한 季節 指數의 差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注
意하여 보면 最近의 年次일수록 兩者의 乘離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 있다.

最近年次の 季節指數는 豫測值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乘離에는
無理가 될때도 있지만 豫測值가 아닌 경우의 乘離로 볼수 있다.

1965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養鷄의 規模擴大가 加速化하고 있으
므로 이 乘離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센서스局法과 E P A法과는 그다지 큰 差異는 없지만 E P A法에
의한것이 一致의 程度가 센서스局法보다 높은듯 하다.

또 병아리 수 l 과 鷄卵價格 p 를 區別한경우 鷄卵價格 p 를 比較
한 경우 鷄卵價格 p 의 季節指數의 乘離가 더 현저한 듯 하다.

여기서 이번에는 調整을 마친 資料를 3個月마다 묶어 4分期別
資料로 삼고 이것과 原計數의 4分期別 資料로부터 4分期別 季節
指數를 만들어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比較를하여 보았다. 이것
이 第3表이다.

이에 의하면 調整期間에 따른 季節指數의 差는 거의 찾아볼수
없다.

센서스局法과 E P A法에 의한 差異나 병아리수 l 과 鷄卵 都壳
價格 p 와의 差도 2가지 큰것은 아니다.

「모델」을 4分期別 資料를 基礎로하여 作成한 理由의 하나도
이런데서 起因한다.

다음으로 季節變動調整을 마친 資料로써는 傾向「사이클」(trend cycle) (T.C)을 採択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여기에 不規則變動을 附加한 系列 (TCI)을 採択하는 편이 좋은가 하는 問題가 있다.

이를 明아리 수 ℓ 에 관한 供給函數에 관하여 比較하여 볼것이 第4表이다.

方程式은 成鷄 수컷 總數를 T 飼料價格 指數를 F로하면

$$\ell = b_0 + b_1 T - 1 + b_2 (P/F) - 3 + b_3 \ell - 1 \text{ 이 된다.}$$

(0 , 1 , 2 , 3 은 時差를 表示한 것이다)

센서스局法과 田P A法의 어느 경우이든 當然한 사실이지만 TC를 使用한 쪽이 相關係數가 높고 TCI를 採用한쪽은 Darwin Watson比가 良好하다.

같은것을 4分期別 資料에 관하여 試圖하여 본것이 第5表이다.

適用한 方程式은 月別 資料의 경우와 다름이 없지만 時差의 點이 틀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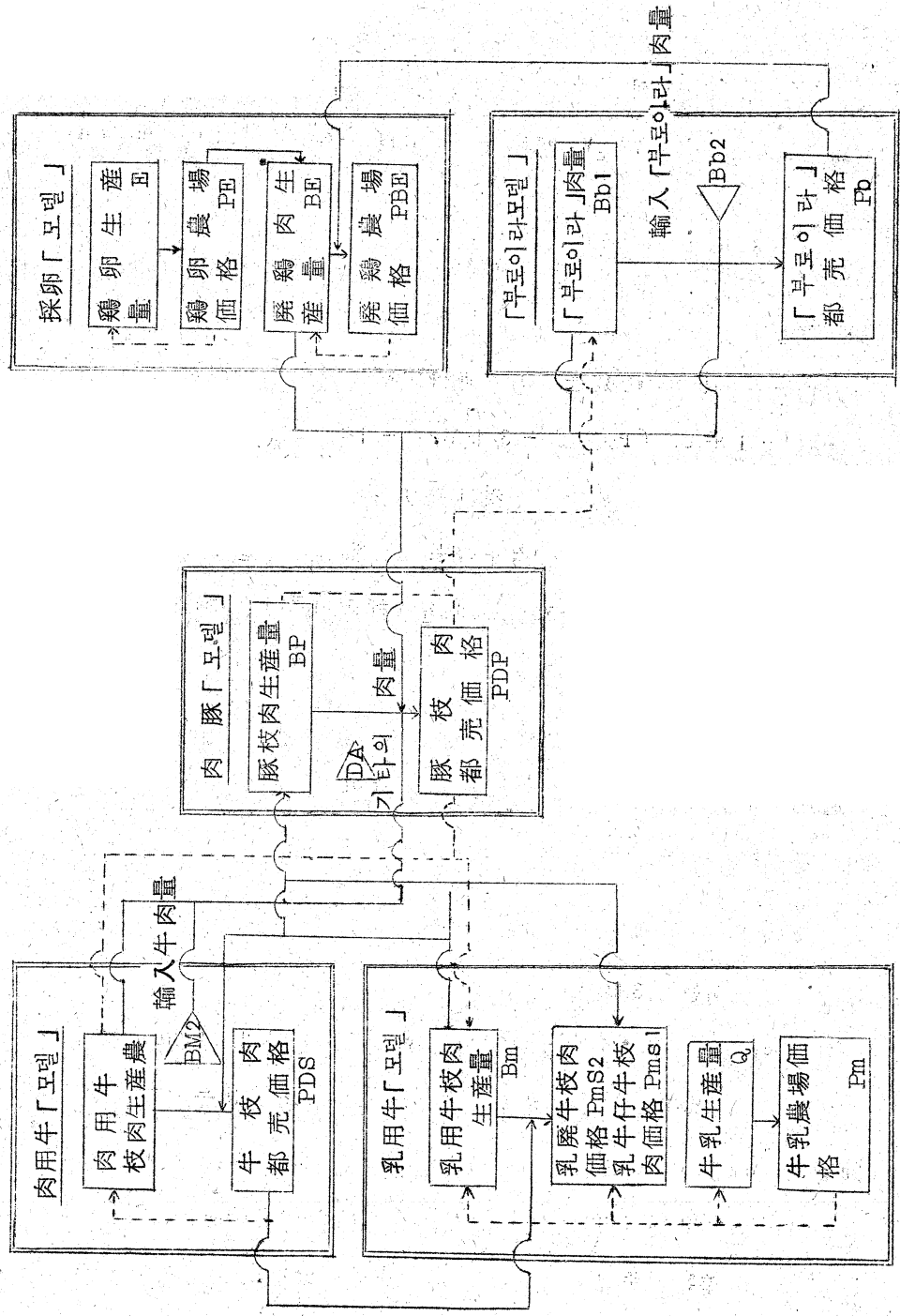
$$\ell = b_0 + b_1 T - 1 + b_2 (P/F) - 3 + b_3 \ell - 1$$

물론 여기서의 1期는 3個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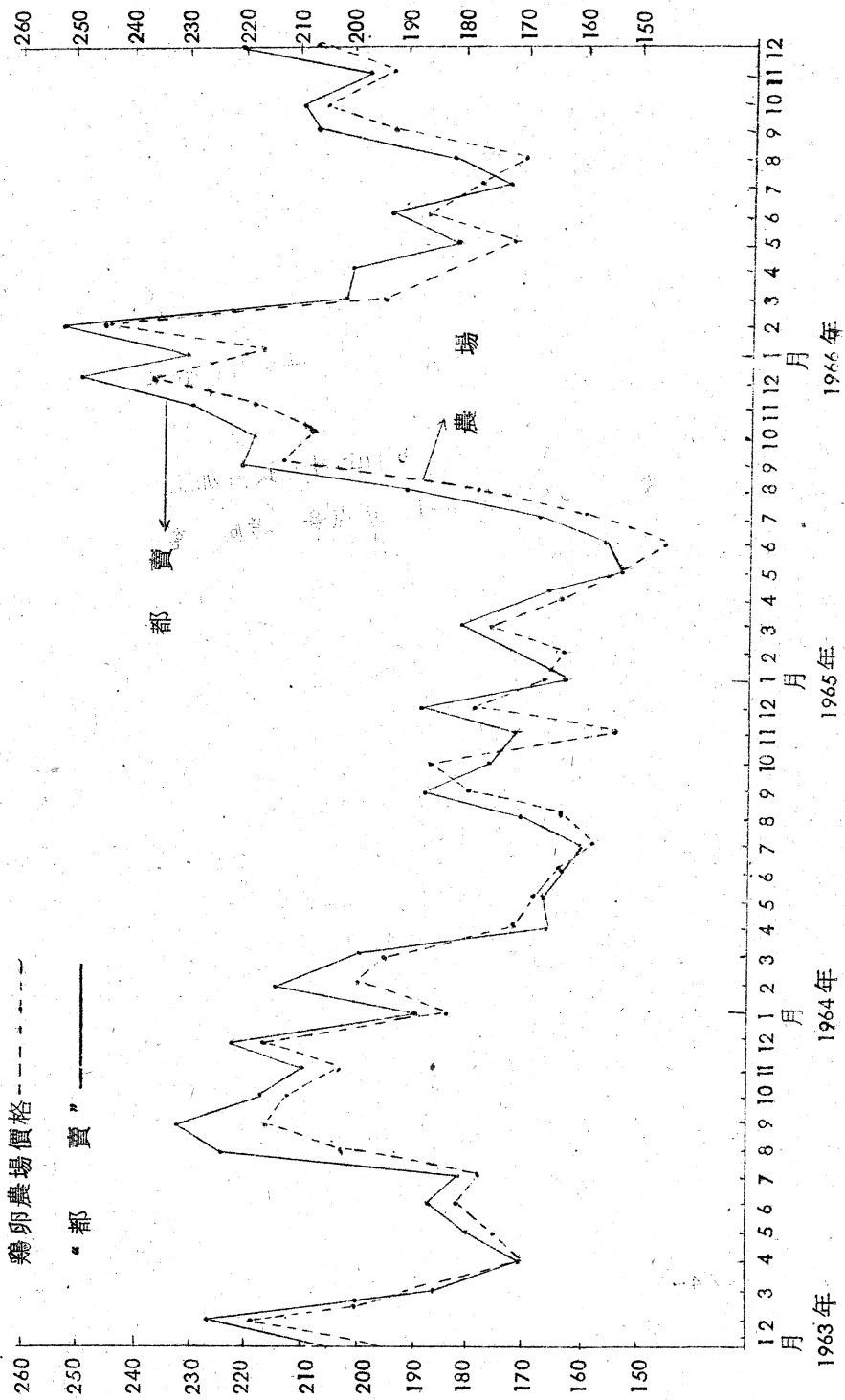
第10表에 있어서도 第4表에 나타난 關係는 變하지 않고 있다.

다만 相關係數는 若干低下했으며 Darwin Watson 比는 약간 크게되고 있다. 特히 TC를 使用한 경우에 Darwin Watson 比의 上昇은 顯저하며 이런 의미에서는 TC를 使用한 경우와 TCI를 使用한 경우와의 差는 줄어들고 있다고 볼수 있다.

第1圖 「모델」의 因果序列概念



第 2 圖 鶏卵價格の 農場と 都賣 比較



뿐만 아니라 回歸係數의 差도 月別資料의 경우보다 4分期別資料의 경우 兩計測值가 현저히 接近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모델이 4分期別 資料를 採用한 理由의 하나를 볼수 있다.

다만 TC를 使用하는가 TCI를 使用하는가 하는 點은 아직 解決되지 못하고 있다.

現在까지는 TCI가 使用되어 있다. 不規則變動部分이라도 回歸式에 있어서는 相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生覺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點에 關한 議論은 後日로 미루고 data bank가 資料加工 서비스를 行하려면 季節變動調整에 있어 이상의 諸點을 考慮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第1表 変数一覧表

(1) 肉豚部門

記号	変数名	資料出所
TP	豚総頭数	「畜産統計」外 厚生省衛生行政業務報告」로부터 推計
LP	豚4個月未満頭数	''
HP	豚4個月以上頭数	''
KP	繁殖用豚頭数	''
LDP	肥育豚頭数	''
LFP	子育生産頭数	''
SP	肉豚斗殺頭数	厚生省「衛生行政業務報告」
BP	豚枝肉生産量	''
β	单位(1頭)当豚枝肉量	$\beta = BP/SP$
BDP	豚枝肉需要量	厚生省「殺統計」大蔵省「通関統計」 畜産事業団「年報」
BA	其他肉類〔外生〕	''
PDP	豚枝肉卸売価格	日本銀行「都売物価」指数年報」
EP	肉豚農場価格	「農村物価賃金統計」
PLP	子豚農場価格	''

II 肉用牛部門

記号	変数名	資料出所
MB	肉用牛総頭数	「畜産統計」外 厚生省 「衛生行政業務報告」로부터 推計
MB1	肉用牛암컷頭数	〃
Mb1	肉用牛 // 未成牛頭数	〃
Mb2	肉用牛 // 成牛頭数	〃
MB2	肉用牛 // 頭数	〃
mb	肉用牛子牛生産頭数	〃
mb1	肉用牛子牛암컷頭数	$mb1 = mb - mb2$
mb2	肉用牛子牛 // 〃	$mb2 = \frac{1}{2} \cdot mb$
BS	肉用牛総屠殺頭数	厚生省「衛生行政業務報告」
BS1	肉用牛암컷屠殺頭数	〃 (加工推計)
BS2	肉用牛수컷 // 〃	〃 (〃)
B	肉用牛総枝肉生産量	〃
B1	肉用牛암컷枝肉生産量	〃 (加工推定)
B2	肉用牛 // 枝肉生産量	〃 (〃)
n1	单位(1頭)当 肉用牛암컷 枝肉量	$n1 = B1/BS1$
n2	单位(1頭)当 肉用牛수컷 枝肉量	$n2 = B2/BS2$

記号	変数名	資料出所
BM	牛枝肉総量	$BM = BM1 + BM2$
BM1	国内産牛枝肉生産量	$BM1 = B + \times Bm$ Bm 乳用牛部門에서
BM2	輸入牛肉量(外生)	大蔵省「通関統計」
PDS	牛枝肉(去勢上)卸売価格	日本銀行「卸売物価指数年報」
PS1	肉牛암컷農場価格	「農村物価賃金統計」
PS2	肉牛수컷 "	"
Pmb1	肉用牛子牛암컷 農場価格	"
Pmb2	肉用牛子牛수컷 "	"

(Ⅲ) 乳肉牛部門

記号	変数名	資料出所
M	乳用牛総頭数	「畜産統計」
M1	乳用牛2才未満頭数	$M1 = M - M2$
M2	乳用牛2才以上頭数	M와 厚生省「衛生行政業務報告」로부터 推計
MK	乳用牛分頭数	「畜産統計」로부터 推計
MS	乳用牛屠殺頭数	$MS = MS1 + MS2$
MS1	乳用牛子牛屠殺頭数	厚生省「衛生行政業務報告」
MS2	乳用牛成牛암컷屠殺數	厚生省「衛生行政業務報告」와 「食肉流通統計」로부터 推計
Bm	乳用牛枝肉生産量	$Bm = Bm1 + Bm2$
Bm1	乳用牛枝肉生産量	厚生省「衛生行政業務報告」
Bm2	乳用牛成牛암컷枝肉生産量	厚生省「衛生行政業務報告」와 「食肉流通統計」로부터 推計
μ_1	单位(1頭)当乳用牛子牛枝肉量	$\mu_1 = Bm1 / MS1$
μ_2	单位(1頭)当乳用牛成牛枝肉量	$\mu_2 = Bm2 / MS2$
PmS1	乳牛子牛枝肉価格	東京都「中柴都売年報」
PmS2	乳廢牛枝肉価格	〃
PmK	乳用牛子牛(純粹)農場価格	「農村物価賃金統計」
Mm	搾乳牛頭数	「畜産統計」

記号	変数名	資料出所
α	単位(1頭)当 生乳量	$\alpha = Q / Mm$
Q	生乳生産量	「牛乳・乳製品에 관한 統計」
Q1	市場向 生乳量	$Q1 = Q - Q2$
Q2	自家用生乳量	「牛乳・乳製品에 관한 統計」
Q3	飲用用 生乳量	〃
Q4	加工用 生乳量	〃
PDm1	飲用牛乳 価格指数	「牛乳・乳製品 価格調査」
PDm2	乳製品 価格指数	〃
PDm	飲用・乳製品 価格指数	$PDm = \frac{PDm1 \cdot Q2 + PDm2 \cdot Q4}{Q3 + Q4}$
Pm	生乳農場 価格	「農村物価賃金統計」

(IV) 採卵鶏部門

記号	変数名	資料出所
LE	병아리發生總羽数	「닭, 병아리부化 数」
LC	鑑別병아리羽数	''
e	種鶏 및 採卵鶏用羽数	''
TE	成鶏암컷 總羽数	「成鶏암컷 羽数和 鶏卵生産量」
E	鶏卵生産量	''
Q	单位(1羽)当 鶏卵生産量	$Q = E / TE$
e	食用卵量	$e = E - qe$
qe	入卵個数	「닭, 병아리 부化羽数」
x	化 率	$\lambda = LE / qe$
PDE	鶏卵都壳價格	日本銀行「都壳物価指数年報」
PE	鶏卵農場價格	「農村物価賃金統計」
SE	廢鶏總羽数	TE와 θ 로부터 推計
BE	廢鶏肉生産量	$E\theta = \epsilon_2 \cdot SE$
ϵ_2	单位(1羽)当 廢鶏枝肉量	1羽 = 1,300 g
PBE	廢鶏農場價格	「農村物価賃金統計」

(V) 「부로이라」一部門

記号	變 數 名	資 料 出 所
Lb	無鑑別병아리羽数	「닭, 병아리부화羽数」
x	無鑑別병아리付率	$X = b/Lb$
b	「부로이라」用병아리羽数	「닭, 병아리부화羽数」
Bb1	「부로이라」一肉生産量	$Bb1 = \epsilon 1 \cdot b - 1$
$\epsilon 1$	单位(1羽)当부로이라枝肉量	「食鳥流通統計」로부터 推計
Bb	「부로이라」肉量	$Bb = Bb1 + Bb2$
Bb2	輸「入부로이라」一肉量(外生)	大蔵省「通関統計」
BB	鶏肉總量	$BB = Bb + BE$ *BB는 採卵鶏部門에서
Pb	「부로이라」都売價格	「食鳥流通統計」

(VI) 外生部門

記号	變 數 名	資 料 出 所
F	飼料價格指數	「農材物價賃金統計」
F2	밀기울價格指數	〃
W1	農材勞賃指數	〃
I	消費者物價指數	總理府「消費者物價指數年報」
Y	消費者水準指數	經濟企劃庁「全國消費水準指數」
N	人口指數	總理府「人口統計」

第2表 1959 ~ 69年月別資料와 다른 月別資料와의 季節要因 相關 및 回歸 1)

(1) 센서스局法 IX - 11

		Q			P		
		1959 ~1966	1959 ~1967	1959 ~1968	1959 ~1966	1959 ~1967	1959 ~1968
1961	相關係數	1.000	1.000	1.000	0.999	1.000	1.000
	回歸係數	1.002	1.000	1.000	1.022	1.012	0.996
1961	相關係數	1.000	1.000	1.000	0.999	1.000	1.000
	回歸係數	1.002	1.001	1.000	1.041	1.036	0.999
1962	相關係數	1.000	1.000	1.000	0.995	0.996	0.999
	回歸係數	1.005	1.003	1.000	1.067	1.064	1.002
1963	相關係數	1.000	1.000	1.000	0.976	0.976	0.997
	回歸係數	1.014	1.007	1.001	1.047	1.064	1.014
1964	相關係數	1.000	1.000	1.000	0.949	0.954	0.994
	回歸係數	1.038	1.018	1.002	0.987	1.020	1.019
1965	相關係數	1.000	1.000	1.000	0.883	0.901	0.977
	回歸係數	1.104	1.048	1.001	0.836	0.940	1.046
1966	相關係數	0.997	0.998	1.000	0.847	0.884	0.981
	回歸係數	1.230	1.117	1.025	0.784	0.897	1.017
1967	相關係數 2)	0.991	0.995	1.000	-	1.000	0.972
	回歸係數	1.369	1.222	1.068	-	0.864	1.042
1968	相關係數	-	2) 1.000	0.999	-	-	0.970
	回歸係數	-	1.336	1.122	-	-	1.026
1969	相關係數	-	-	2) 0.997	-	-	-
	回歸係數	-	-	1.139	-	-	-

註 1) 小數點以下四 桁 四捨五入

2) 季節要因은 豫測值임.

第2表 1959~69年月別資料와 他 月別資料와의 季節要因 및 回帰 1)

(2) EPA法 X-4

		e			P		
		1959 ~1966	1959 ~1967	1959 ~1968	1959 ~1966	1959 ~1967	1958 ~1968
1960	相関係数	1.000	1.000	1.000	0.999	0.999	0.955
	回帰係数	1.000	1.000	1.000	0.992	0.997	0.886
1961	相関係数	1.000	1.000	1.000	0.999	0.999	0.999
	回帰係数	1.000	0.999	1.000	0.988	0.989	1.000
1962	相関係数	1.000	1.000	1.000	0.999	0.999	1.000
	回帰係数	1.000	1.001	1.000	0.997	0.994	1.005
1963	相関係数	1.000	1.000	1.000	1.000	0.999	0.999
	回帰係数	1.002	1.001	1.000	1.011	1.009	1.014
1964	相関係数	1.000	1.000	1.000	0.998	0.999	0.999
	回帰係数	1.012	1.003	1.000	1.004	1.009	1.010
1965	相関係数	1.000	1.000	1.000	0.947	0.958	0.960
	回帰係数	1.049	1.010	1.001	0.867	0.903	0.900
1966	相関係数	0.998	0.999	1.000	0.982	0.997	0.999
	回帰係数	1.155	1.047	1.008	0.929	1.013	1.017
1967	相関係数	2) 0.992	0.997	1.000	2) 0.956	0.991	0.994
	回帰係数	1.336	1.165	1.029	0.892	1.022	1.039
1968	相関係数	-	2) 0.987	0.998	-	2) 0.977	0.982
	回帰係数	-	1.312	1.312	-	1.011	1.059
1969	相関係数	-	-	2) 0.996	-	-	2) 0.954
	回帰係数	-	-	1.098	-	-	1.036

註 1) 小数点以下四桁四捨五入

2) 季節要因은 豫測值

第3表 1959~1969年四分期別資料와 他 四半期別資料와의 季節要
因의 相關과 回歸

(1) 센서스法 IX - 11

		Q			P		
		1959 ~1966	1959 ~1967	1959 ~1968	1959 ~1966	1959 ~1967	1959 ~1968
1960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歸係數	0.994	0.998	1.000	1.004	1.002	0.999
1961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歸係數	0.989	0.996	0.999	1.006	1.003	0.999
1962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歸係數	0.982	0.993	0.998	1.007	1.005	0.999
1963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歸係數	0.968	0.987	0.996	1.008	1.006	0.999
1964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歸係數	0.945	0.979	0.994	1.012	1.012	0.998
1965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歸係數	0.907	0.961	0.997	1.013	1.013	0.998
1966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歸係數	0.873	0.942	0.994	1.021	1.020	0.998
1967	相關係數	-	1.000	1.000	-	1.000	1.000
	回歸係數	-	0.923	0.978	-	1.022	0.997
1968	相關係數	-	-	1.000	-	-	1.000
	回歸係數	-	-	0.973	-	-	0.994

註：小數點以下四桁四捨五入

第3表 1959～1969年四分期別 資料와 他 四分期別資料와의 季節
 要因의 相關과 回帰

(2) EPA法 X - 4

		Z			P		
		1959 ~1966	1959 ~1967	1959 ~1968	1959 ~1966	1959 ~1967	1959 ~1968
1960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帰係數	1.001	1.001	1.000	1.001	1.000	1.001
1961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帰係數	1.000	1.000	1.000	1.000	0.999	1.000
1962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帰係數	1.000	1.001	1.000	0.998	0.999	0.999
1963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帰係數	0.999	1.000	0.999	1.000	1.001	0.999
1964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帰係數	0.994	1.000	1.000	1.001	1.002	1.000
1965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帰係數	0.978	0.998	1.000	1.004	1.003	1.000
1966	相關係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回帰係數	0.941	0.982	1.000	1.006	1.003	0.997
1967	相關係數	-	1.000	1.000	-	1.000	1.000
	回帰係數	-	0.963	0.998	-	1.003	0.993
1968	相關係數	-	-	1.000	-	-	1.000
	回帰係數	-	-	0.992	-	-	0.988

註：小数点以下四桁四捨五入

第 4 表 月別資料에 의한 供給函數

(1) 센서스局法 IX - 11

		b_0	b_1	b_2	b_3	相關 係數	「아인」 「의스」
T	1959 係數	-2798.0013	0.1341	14099.336	0.8838	0.9882	0.2613
	~1966 標準偏差		(0.0293)	(0.0258)	(2106.0002)		
C	1959 係數	-2550.0733	0.1287	12630.146	8941.4502	0.9873	0.1973
	~1967 標準偏差		(0.0308)	(2305.7745)	(0.0272)		
C	1959 係數	-3223.6068	0.1536	15889.072	0.8715	0.9925	0.2242
	~1968 標準偏差		(0.0260)	(2018.2663)	(0.0230)		
T	1959 係數	-2673.8973	0.1343	1299.1845	0.8941	0.9941	0.2435
	~1969 標準偏差		(0.0263)	(209.2542)	(0.0228)		
T	1959 係數	-3177.6330	0.2217	18535.2272	0.7535	0.8969	1.8056
	~1966 標準偏差		(0.0694)	(4995.2548)	(0.0615)		
C	1959 係數	-3279.0716	0.2178	18490.7162	0.7676	0.9198	1.7297
	~1967 標準偏差		(0.0569)	(4308.3706)	(0.0536)		
I	1959 係數	-3462.5692	0.2117	18796.5390	0.7849	0.9393	1.6455
	~1968 標準偏差		(0.0543)	(4297.4632)	(0.0492)		
I	1959 係數	-3058.8505	0.2118	1639.2648	0.7948	0.9520	1.7431
	~1969 標準偏差		(0.0515)	(394.3216)	(0.0476)		

註：回歸式은 $l = b_0 + b_1 T_{-1} + b_2 (P/F)_{-3} + b_3 l_{-1}$

여기서 l 은 병아리付羽數, T는 成鷄암컷 總羽數,

P는 鷄卵都壳價格

F는 飼料價格指數

第 4 表 四分期別資料에 의한 供給函數

(2) EPA法 X - 4

			b_0	b_1	b_2	b_3	相關 係數	$\frac{[a_1 - a_2]}{[a_1 + a_2]}$ 比
T	1959 係數	-19071.63	0.9560	1,0818.56	0.6633	0.9414	1.6243	
	~1966 標準偏差		(0.2906)	(1971.87)	(0.0841)			
C	1959 係數	-20754.06	1.2480	11894.98	0.5597	0.9074	0.9879	
	~1967 標準偏差		(0.3430)	(2450.16)	(0.1021)			
C	1959 係數	-23053.63	1.1919	12090.37	0.6545	0.9636	1.3565	
	~1968 標準偏差		(0.2425)	(1750.31)	(0.0737)			
T	1959 係數	-22521.98	1.0545	11422.23	0.6909	0.9754	1.1543	
	~1969 標準偏差		(0.2011)	(1598.79)	(0.0677)			
T	1959 係數	-21078.95	1.1813	12435.90	0.5242	0.8708	2.4263	
	~1966 標準偏差		(0.3378)	(2771.15)	(0.1157)			
C	1959 係數	-19226.1	1.1774	11443.33	0.5329	0.8757	2.1534	
	~1967 標準偏差		(0.3378)	(2668.21)	(0.1125)			
C	1959 係數	-23693.11	1.3066	13042.73	0.5404	0.9232	2.2601	
	~1968 標準偏差		(0.29581)	(2351.36)	(0.0988)			
I	1959 係數	-22914.35	1.2648	12050.14	0.59916	0.9483	2.1871	
	~1969 標準偏差		(0.2968)	(2101.90)	(0.0909)			

註：回歸式 $\ell = b_0 + b_1 T + b_2 (P/F)_{-1} + b_3 \ell_{-1}$

여기서 ℓ 은 병아리付羽數, T는 成鷄암컷 總羽數,

P는 鷄卵價格都壳,

F는 飼料價格指數.

第 5 表 四分期別資料에 의한 供給函數

(1) 센서스局法 IX - 11

			b_0	b_1	b_2	b_3	相關 係數	다-위 의-비 比
T	19 59	係 數	-21223.08	1.2428	11093.48	0.6478	0.9260	1.5667
	~19 66	標準偏差		(0.3922)	(243253)	(0.1027)		
	19 59	係 數	-25877.31	1.8954	13686.07	0.4525	0.8813	0.9964
	~19 67	標準偏差		(0.4745)	(3109.03)	(0.1264)		
C	19 59	係 數	-26165.94	1.4339	12962.18	0.6338	0.9598	1.3981
	~19 68	標準偏差		(0.3046)	(2050.22)	(0.0821)		
	19 59	係 數	-25649.83	1.3758	12523.53	0.6240	0.9684	1.1015
	~19 69	標準偏差		(0.2888)	(2195.92)	(0.0846)		
T	19 59	係 數	-19740.34	1.3317	11517.97	0.4988	0.8164	2.2211
	~19 66	標準偏差		(0.4820)	(3383.03)	(0.1398)		
C	19 59	係 數	-20576.79	1.4229	11790.05	0.4808	0.8313	1.9806
	~19 67	標準偏差		(0.4261)	(3246.54)	(0.1307)		
I	19 59	係 數	-24475.73	1.4954	13079.87	0.5041	0.8886	2.0790
	~19 68	標準偏差		(0.3850)	(2969.30)	(0.1170)		
	19 59	係 數	-24841.91	1.5245	12645.09	0.5433	0.9258	1.9443
	~19 69	標準偏差		(0.3461)	(2628.48)	(0.1057)		

註：回歸式 $\ell = b_0 + b_1 T + b_2 (P/F) - 1 + b_3 \ell - 1$

여기서 ℓ 는 병아리 仔羽數, T는 成鷄암컷 總羽數,

P는 鷄卵都壳 價格,

F는 飼料價格指數.

第 5 表 月別資料에 의한 供給函數

(2) EPA法 X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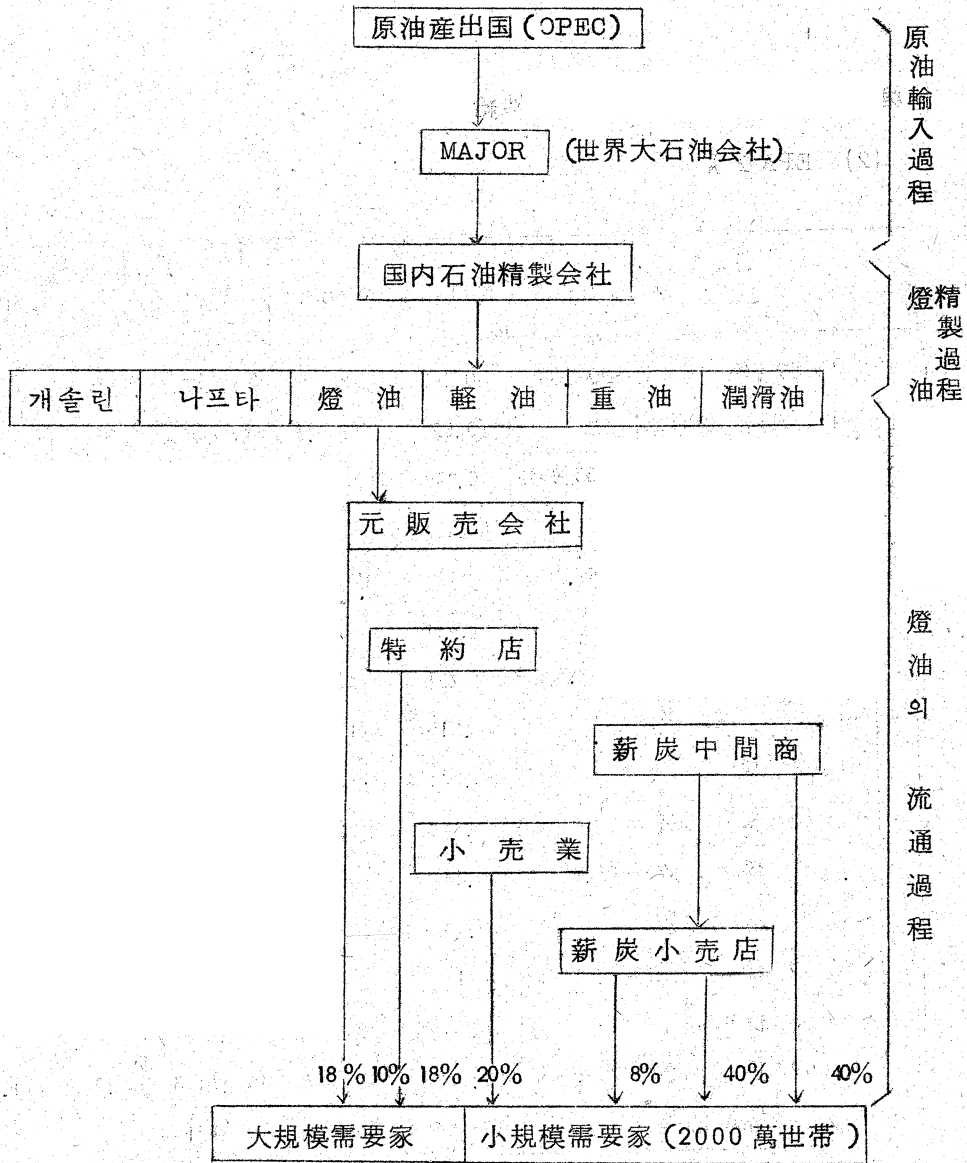
			b_0	b_1	b_2	b_3	相關 係數	「다위」 「외존」 比
T	1959	係數	-2470.5435	0.1075	1396.1329	0.8735	0.9894	0.3665
	~1966	標準偏差		(0.0232)	(184.1642)	(0.0232)		
T	1959	係數	-2333.8342	0.1110	1274.5253	0.8833	0.9885	0.2572
	~1967	標準偏差		(0.0236)	(194.4073)	(0.0241)		
C	1959	係數	-2859.1315	0.1312	1504.4311	0.8723	0.9929	0.2892
	~1968	標準偏差		(0.0212)	(176.4887)	(0.0212)		
C	1959	係數	-2650.6472	0.1213	1339.9510	0.8956	0.9954	0.2819
	~1969	標準偏差		(0.0182)	(152.2925)	(0.0180)		
T	1959	係數	-2838.8667	0.1716	1780.7610	0.7752	0.9254	1.9117
	~1966	標準偏差		(0.0538)	(417.6401)	(0.0529)		
C	1959	係數	-2603.1870	0.1704	1620.9812	0.7869	0.9323	1.8947
	~1967	標準偏差		(0.0477)	(387.0922)	(0.0499)		
C	1959	係數	-3187.9310	0.1872	1825.8731	0.7913	0.9548	1.8559
	~1968	標準偏差		(0.0439)	(360.9188)	(0.0444)		
I	1959	係數	-2858.0983	0.1788	1576.0384	0.8183	0.9667	1.9731
	~1969	標準偏差		(0.0408)	(323.1916)	(0.0414)		

註：回歸式 $l = b_0 + b_1 T_{-1} + b_2 (P/F)_{-3} + b_3 l_{-1}$

여기서 l 은 병아리付羽數, T 는 成鷄암컷 總羽數,

P 는 鷄卵都壳價格,

F 는 飼料價格指數.



註：%表示의 数字는 最終的인 燈油의 販売量

第4章 燈油의 價格分析과 資料에 關하여

1. 通産省의 物價의 把握 및 利用体制

通産省이 “物價”라는것을 把握하여 利用할때 그 方法은 全國 綜合消費者物價指數나 都売物價指數 總平均等 macro (巨視)의 側面에서 취하는 方法과 通産省 所管의 物資를 中心으로 個別 品目別 價格이라고하는 micral (微視)의 側面에서 取하는 方法의 그 種類가 있다.

前者도 그러하지만 特히 後者は 個別 産業別 産業行政을 進行할 때 重要한 指標의 하나이며 省自体에서 所管物資를 中心으로 「價格 그 自体의 動向을 나타내는 資料」 및 「價格의 形式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서의 物價關聯 資料」를 把握하고 있다.

「價格 그 自体의 動向을 나타내는 資料」로써는 日本銀行의 都売物價指數, 輸出入物價指數, 總理府의 消費者物價指數, 小売物價統計 등 既存의 統計를 근거로하여 必要에 따라 資料作成機關으로부터의 聽聞에 의하여 生産者出荷價格, 또는 1971年度에 發足한 通産省의 消費者價格 調査者 (monitor)를 活用하여 (全國에 510名) 店舖에서의 實際 販賣價格등을 把握하고 있다.

物價關聯資料로서는 生産量, 出荷量, 在庫量, 輸出量, 輸入量, 賃金, 生産性, 流通過程과 各段階別 마-진 (margin) 率등을 把握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결과 必要에 따라 適切한 対策을 講究하기로 하고 있다.

上記의 対策을 보다 効果的으로 行하기 위하여는 當該物資의 價格 決定要因이 무엇인가를 把握하여 다시 이들 要因이 從來 需要面 또는 費用面 등에서 價格變動 또는 形式過程에 어떠한 影響을 미쳐왔던가를 分析함과 同時에 價格推移의 豫測을 正確히 行하는 것이 極히 重要的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意識을 토대로 通産省에서는 1972年度부터 「價格 豫測 指標研究委員會」를 設置하여 事例研究으로써 「灯油」의 價格推移를 把握하여 이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을 行함과 同時에 그 要因이 變化한 경우에 어느 程度의 影響을 부여하는가를 推定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여 研究를 계속하고 있다.

本研究会에서의 研究는 現在 계속進行中이며 最終的인 報告를 取 捨할 段階에는 到達하지 않고 있지만 以下에 檢討를 進行하면서 物價關聯資料를 利用함에 있어 느낀 몇가지點을 記述하고자 한다.

2. 價格決定 모델

本研究会에서는 燈油의 價格決定의 메가니즘 (mechanism)을 考察하기 위하여 理論「모델」을 設定하여 議論을 進行했지만 이에 관하여 若干의 說明을 加하고자 한다.

「모델」設定時 目的變數로써 「價格의 動向 그 自体를 나타내는 資料를 說明變數로써 「價格의 形成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

씨의 物價關聯資料」를 가지고 最小二乘法을 써서 推定을 行하고 있다.

또 燈油市場은 꽤 複雜한 市場이지만, 論論의 出發點으로써 完全 競爭市場을 假定하여 여기서는 需要者, 供給者의 雙方에 取하고 價格은 与件으로 하고 이 價格은 各期別로 全需要者가 意圖한 購入量의 合計와 全 供給者가 意圖한 販売量의 合計가 같은 水準에서 決定된다.

그리하여 第1段階로써 各各의 主体的 均衡은 各期別로 다른 期와 獨立의 決定된다고 하는 靜態的「모델」을 쓰고 다음으로는 前期의 變數의 影響을 받아서 決定된다고 하는 動學的인 「모델」을 사용했다.

그외에 各期間의 長이를 1年의 경우와 1個月의 경우와의 種類로 推定을 行하였다.

以上 簡單하게 價格決定「모델」의 概要를 說明하였으나 「모델」 그 自体는 本論文의 主題가 아니므로 以下 「모델」에 關한 言及은 最少限에 그리고자 한다.

3. 燈油에 關하여

燈油는 日本에서 消費되는 「에너지」全體에 占하는 比率이 높고 특히 民生用「에너지」消費量에서 占하는 比率은 極히 높은 水準에 놓여있다.

從來부터 通産省은 國民經濟的觀點에서 에너지全般에 關하여 價格

低廉하고도 安定的인 供給을 위하여 여러가지 施策을 講究하여 왔지만 燈油에 관하여도 最近 그 價格安定化의 要請이 높아져 이에 대한 對策이 消費者側에서도 강하게 要望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現狀을 감안하여 燈油價格安定化를 위한 對策을 세움에 있어 燈油價格의 變動 또는 形式過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을 行함과 同時에 그 要因이 變化한 경우에 燈油價格에 어느 程度의 影響을 미치는가를 推定하는것이 매우 重要하다.

4. 燈油의 生産 및 流通過程과 그 特色

原油가 輸入되어 燈油로써 生産되어 流通하는 過程의 概略圖는 다음과 같다.

(1) 原油의 輸入過程

日本에 輸入되는 原油의 大部分은 OPEC 諸國으로부터 國際大石油会社 (Major)를 通하여 構入되지만 日本의 石油精製会社の 「메저」에 대한 發言權은 極히 적으므로 原油의 輸入契約價格은 OPEC와 國際大石油会社間 決定된 價格에 「마-진」을 상회하는 價格에서 決定되는것이 通例이다.

지금까지 OPEC와 國際大石油会社間的 價格協定으로는 「테헤란協定」「쥬네브協定」「經營者 參加協定」등이 있으며 原油의 輸入價格 決定要因은 複雜하여 이외에 円貨의 切上等에 의하여도 円建의 輸入價格은 變動한다.

여기서는 以上の 要因은 外部的인 것으로 고려하여 原油의 輸入價格은 燈油의 價格에 있어서는 外生變數로서 取扱하였다.

(2) 燈油의 精製過程

燈油는 「개솔린」, 「나프타」, 輕油, 重油, 潤滑油 등과 같이 原油로부터 거의 定한 比率(得率)로 精製된 關聯產品의 하나이다.

이 關聯產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燈油市場에는 다음과 같은 特色이 생긴다.

i) 燈油市場에 있어서의 需給關係만으로 다른 關聯產品과 独立的으로 燈油의 生産量은 操作할 수 없다.

ii) 石油精製業者에게는 全体로서 採算이 맞아가면 다른 關聯產品의 營業成績如何가 燈油價格에 影響을 미친다.

燈油의 價格은 燈油의 需給關係에 의하여 決定되지만 i)의 特色은 燈油의 生産量, 出荷量, 在庫量이 다른 關聯產業이 그것에 관한 意思決定과 同時에 行하여 지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燈油價格決定「모델」에 있어 燈油需給量의 決定까지 「모델」에 內生化 시키려면 다른 關聯產品의 그것을 어떤 形態로든지 「모델」에 집어넣을 必要가 있지만 너무 複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燈油의 需給量을 外生變數로서 取扱했다.

(3) 燈油의 流通過程

燈油가 元 販賣會社로부터 消費者의 손에 갈때까지의 流通過程의 各段階에 있어서의 마-진率을 把握하기 困難하다는 것과 또

流通過程에서 投機的인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點등을 고려하여 燈油價格決定 「모델」에 있어 被說明變數로써 消費者物價指數 또는 小売價格이 아니고 都売價格指數를 두기로 했다.

以上 原油의 輸入 燈油의 精製 流通過程을 說明하면서 燈油의 價格資料와 關聯資料의 一部에 關하여 살펴보았으나 以下에 上記와 약간 重複되는 것이 있지만 價格資料와 關聯資料로 나누어 (이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음) 이 중 特히 本論文의 課題와 關聯이 깊다고 생각되는 點에 대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i) 燈油의 價格資料

- 燈油의 都売物價指數 (日本銀行)
- " 消費者物價指數 (統一理府統計局)
- " 小売物價 (")
- " 消費者價格 monitor 調査 (通産省)

ii) 燈油의 價格 關聯資料

① 燈油以外的 石油關聯產品의 價格資料

○ 「개솔린」, 「나프타」, 經油, 重油, 潤滑油等의 都売物價指數 (日本銀行)

○ 「개솔린」의 消費者物價指數 (總理府, 統計局)

○ 개솔린의 小売物價 (總理府, 統計局)

② 燈油의 需給量

○ 燈油의 生産量 (通産省)

○ 燈油의 販賣量 (")

○ 燈油의 在庫量 (")

③ 燈油의 需要側의 要因

<景氣要因>

- 景氣警告 指標 (經濟企劃庁)
- 国民總生産 (")
- 国民總支出中の 光熱費 (")
- 鉱工業生産指數全産業 (")
- " 石油精製業 (")

<天候要因>

- 氣温 (氣象庁)
- 暖房度日數 (通産省)

<其 他>

- 暖房器具 (石油ストーブ)의 保有台數 (通産省)
- 同生産台數 (通産省)

④ 燈油의 供給側의 要因

<費用要因>

- 原油의 輸入物價指數 (日本, 銀行)
- " 通関輸入價格 (大蔵省通関統計)
- 人件費, 賃金 (労働省)
- 労働生産省 (日本 生産省 本部)
- 金利費用 (全国銀投貸出金利) (日本銀行)

<其 他>

- 原油処理能力 (設備) (通産省)

○ 石油供給計劃

註：1) () 円는 調査機關名

2) 燈油의 價格 關聯 資料의 分類는 便宜的인 것으로 다른 要因의 分類와도 重複되는 資料도 있다.

5. 燈油의 價格資料

(1) 燈油의 都壳物價指數

本研究会에서 利用한 燈油의 都壳物價指數는 現行의 1970年 基準의 指數가 當時 아직 發表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1965年基準의 指數이다.

日本銀行의 都壳物價指數에 관하여는 通産省의 鉦工業生産指數와 磁氣테이프의 交換을 行하고 있으므로 1965年 1月以後 最近時点까지 (現行指數가 改訂되기 까지 1965年 1月부터 1967年 12月까지의 旧指數는 磁氣테이프에 남겨진채 있으므로 現行指數에 关하여는 1969年 12月 以後 最近 時点까지 利用可能)의 指數를 端末器로서 프린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64年 以前에 关하여는 1965年 基準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便宜的으로 当省에서 1965年 平均을 100으로하는 指數로 換算하여 고쳐 利用했다.

이 計算을 1960年 1月부터 1964年 12月의 60時点에 关하여 被說明變數인 燈油의 都壳物價指數뿐만아니라 說明變數인 개솔린, 나프타, 經油, 重油등의 都壳物價指數에 关하여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와같은 不便함을 排除하기 위하여 品目에 따라서는 調査対象關係로 반드시 完全한 連續性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可能的 品目에 관하여는 可能的 年數까지 소급하여 新指數 base에서 指數를 記載하여야 할 것이다.

(2) 燈油의 消費者物價指數, 小売物價統計

燈油의 消費者物價指數의 利用에 있어서도 都売物價指數의 경우와 같은 不便함을 느꼈다.

消費者物價指數, 小売物價統計 一般에 關하여 本研究会에서 利用한 경우以外的 사항이 되지만 특히 通産省에서 行하고 있는 「世界の 消費者物價 比較調査」에 關한 點은 다음과 같다.

本調査는 毎年 JETRO의 海外事務所를 通하여 小売物價統計採用 品目を 기초로 可能的限 이에 가까운 品目에 대한 海外主要都市에서의 實際販売價格을 調査하여 東京에서의 小売價格을 100으로 하여 各都市의 價格을 指數化한 것이다. (1971年度調査에서는 調査対象品目 79品目中 東京都区部 消費者物價指數採用品目 63品目, 調査対象都市 30個都市)

이 調査에 있어서 때로는 品目에 따라서 海外勤務經驗者の 生活 實感과는 꽤 거리가 먼 結果가 나올수가 있으며 이런 原因을 分析하여보면 東京都区部の 消費者物價指數採用品目の 調査対象種類가 相當히 市場에서 代表性을 상실하여 現在 一般에 購入되고 있는 種類와 價格面에서 差가 생기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一般的으로 消費者物價指數의 上昇率은 生活實感보다 낮다고 말하고 있다.

그 理由의 하나로서 上記諸點이 指適되고 있다.

總理府 統計局에서도 이 欠點을 補充하기 위하여 5年마다 大幅 改正을 하는外에 適宜指數 種類의 改廢를 行하고 있지만 生活實感을 反映한 消費者物價指數 小売物價統計의 作成이 要請된다.

(3) 燈油의 消費者價格 monitor 調査

通産省에서는 1971年부터 全國에 500名(1972年 5月の 「오끼나와」 復歸에 따른 「오끼나와」의 monitor 10名을 追加하면 現在는 510名)의 消費者價格 monitor 를 두어 行政의 需要에 適合한 品目을 選定하여 場所別 調査를 行하고 있다.

燈油에 관하여는 1971年度 1972年度 10月부터 3月(各月別 上旬)에 걸쳐 店舖에서 實際 販賣價格을 1人당 3店舖式 調査하여 總理府의 小売物價統計와 併用하여 行政資料로 使用하고 있다.

(이 調査結果에 관하여는 統計의 繼續性的 關係에서 燈油의 價格 決定「모델」에는 採用하지 않았다.)

6. 燈油의 價格關聯資料

燈油以外的 石油의 關聯產品의 都売物價指數 消費者物價指數, 小売物價統計에 관하여는 4項의 「燈油 價格資料」에서 記述한 것과

外
1
2
任

基本的으로 같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 燈油의 需給量

燈油의 生産量, 販売量, 在庫量에 관하여는 数值가 *kl* 单位의 实類이므로 前記의 價格資料의 경우와 같이 指數의 繼續性으로 본 不一致는 일어나지 않았다.

(2) 景氣要因

景氣警告指標, 國民所得統計(國民總生産, 國民總支出중 光熱費)에 관하여는 統計도 잘 整備되어있고 不適合性을 볼수없었으나 鉦工業生産指數에 관하여는 價格資料와 같이 指數의 繼續性問題가 일어났다.

(3) 天候要因

氣溫에 관하여는 統計가 整備되어 있으므로 數字를 蒐集할때 問題는 생기지 않았으나 이를 說明變數로하여 「모델」에 짜넣을 경우 이 資料를 어떻게 加工하는 가하는 問題가 생겼다.

또 暖房度日數와는 하루平均氣溫이 18°C 보다 낮은경우 그 差($= 18^{\circ}\text{C} - \text{平均氣溫}$)를 下半期(10 - 3月)에 관하여 合計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各年度別 資料중 各月別資料가 없는 欠点이 있고 各月別 暖房度日數를 算出하려하면 每日의 氣溫에 관하여 上記 內容을 計算하여 各月別로 合計하면 좋지만 尠大한 勞動量을 要한다.

이 때문에 便宜上 各月別 月平均氣溫에 上記의 加工을 하여 利用하기로 했다.

이 외에 過去 30 年間の 月平均氣溫과의 差를 各月別로 取하여 利用했다.

(4) 費用要因 (原油의 輸入價格)

原油의 輸入物価指數에 관하여는 前記指數의 繼續性的 問題가 생겨 역시 前述한 事項이 要望된다.

原油의 輸入價格으로서는 上記의 輸入物価指數外에 通関統計의 輸入額 (円 base 및 外貨 base)을 輸入數量으로 나누어 單位當 輸入價格을 算出하여 利用했지만 여기에 관하여는 여러 時点에서 價格을 求하려면 莫大한 勞動量을 要하기 때문에 現行의 通関統計에 單位當 價格을 併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란다면 그 單位當의 價格만을 작은 品目別로 記載한 資料를 發表하면 좋을 것이다.

以上の 通産省에 설치되어 있는 「價格豫測 指標研究会」에서의 燈油價格의 事例研究을 進行시킴에 있어 利用한 燈油의 「價格 그 自体의 動向을 나타내는 資料」에 관하여는 當該資料의 性格 利用方法 問題點 등을 記述하여 다시 이와같이 改善하면 좋을 것이라는 希望도 말했다.

이와같은 改善을 한 경우 實際 어느程度의 範圍의 사람 또는 機關이 어느程度까지 利用하는가 또 그 効果는 어느程度인가等., 費用과 效果를 考慮하여 進行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第5章 消費者物價指數와 物價關聯資料에 關하여

- 輸入物價의 影響에 關한 檢討를 中心으로 -

總理府統計局은 그 本來의 業務形態上 基本的인 統計資料의 提供은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直接政策面의 業務를 管掌하고 있지 않으므로 統計資料의 必要性的 面에서도 行政施策에 스스로 利用하려고 하는 方向에서의 利用方法은 전혀 없다.

따라서 他省庁에 作成하고 있는 統計資料를 利用하는 경우도 自然히 그 利用範圍는 限定되어 예를들면 消費者物價指數와의 關聯에 있어 다른 物價關聯資料를 利用하는 경우에 關하여 보면 消費者物價指數의 動向「체크」에 重點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情下에서 消費者物價指數作成을 担当하는 立場에서 data bank의 利用을 생각할때 첫째로는 使用者側에서 要求되는 資料의 迅速한 提供이 있으며 둘째로는 關聯「체크」에 必要한 統計資料를 迅速히 利用하는 것을 들수 있다.

다시 data bank의 機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問題와의 關係도 있지만, 各種의 加工計算의 必要에 應하여 行하는 體制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特히 消費者物價指數의 「체크」와의 關聯에 있어 分析面에 焦點을 맞추어 具體的인 問題를 觀察하여 보고자 한다.

1. 消費者 物價指數 動向의 「체크」

綜合的인 物價動向의 分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物價 關聯統計에 관하여는 前年度의 研究報告中에 要約表로서 整理하고 있지만 具體的으로 消費者 物價指數의 動向「체크」를 위하여 經常的으로 利用하고있는 資料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을수 있다.

1) 都売物價指數

綜合指數, 特殊分類指數의 動物, 共通品目的 個別價格指數의 動向「체크」

2) 輸入物價指數(日本銀行).....關聯品目的 個別價格指數의 動向

3) 農村物價指數-生活資材(農林省) 綜合指數, 類別指數, 個別價格指數의 動向「체크」

4) 農林物價指數-農産物(農林省).....農産物 特히 野菜 및 果実의 種類別指數 個別價格指數動向「체크」

5) 青果物 日日 價格調查(農林省).....野菜 및 果実의 個別價格指數의 動向「체크」

6) 米穀의 小売販売價格調查(食糧庁).....米價의 價格動向의 「체크」

7) 燈油小売價格調查(通産省).....燈油의 價格動向의 「체크」

外
1
3
任

더욱이 最近의 傾向으로써 個別價格의 動向, 예컨대 燈油, 쌀等 그때, 그때의 問題商品의 價格動向이 重視되는 傾向이 있으므로 綜合指數(또는 5大費目, 中分類指數)의 動向뿐만 아니라 個別指數 또는 個別價格水準에 관하여도 높은 精度가 要求되고 있기 때문에 이 點에 관하여 關聯資料(例컨대 都売價格이나 生産者價格等)의 利用이 要望된다.

2. 消費者物價指數의 變動要因의 分析

(1) 分析의 觀點

總理府統計局이 政策官庁이 아닌 性格上 消費者物價指數의 變動要因에 관한 分析은 積極적인 意味는 적다.

實際로 이때까지의 實情을 보아도 統計局으로써는 原資料提供을 行하고 使用者側에서는 利用目的에 應한 各種 分析加工을 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分析은 分析者에 따라 그 方法이 다르게되어 多少 諸意的인 面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總理府 統計局으로서는 積極적인 分析結果를 公表한다고 하는 立場을 取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消費者物價指數의 立場으로써 또 政策目的을 갖지 않는 客觀적인 立場에서 分析을 行하는 意義는 策分히 認定할 수 있다.

(2) 消費者 物價指數에 있어서 最近의 問題

物價問題가 國家의 重點施策의 하나로써 간주되고 있는

오늘날, 消費者物價指數의 動向은 都売物價指數와 더불어 各方面으로부터 注目을 끌고있으며 또 最近의 經濟動向중 各種要因이 消費者物價指數에 미치는 影響이 가끔 問題가 되고 있다.

最近의 例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있다.

- 輸入物價의 消費者物價指數에 대한 影響 (例컨데 円切上等)
- 都売物價의 消費者物價指數에 대한 影響
- 公共料金引上이 消費者物價指數에 미치는 影響

이와같은 問題에 관하여는 이미 各省庁 등에서 試圖한 分析에 관하여 약간의 情報를 얻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중 輸入物價의 消費者物價指數에 대한 影響에 관하여 具體적으로 分析作業을 進行上 어떤 資料가 必要한가 分析方法은 어떻게 할 것인가, 問題點은 무엇인가 등을 中心으로 研究的으로 檢討를 加하여 報告자 한다.

(3) 輸入物價의 消費者物價指數에 대한 影響

(1) 影響의 過程

輸入物價의 消費者物價에 대한 影響이 미치는 過程을 그림과 같이 分解하여 보았는데 當然히 輸入資材에 의하여 影響이 미치는 크기에 큰 差가 豫想된다.

消費財………国内市場에 供給하는 全部 또는 大部分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品目 (例컨데 빠나나, 레몬等)은 流通經費에 變化가 없다고 하면 輸入價格의 動向이 直接的으로 小売價格에 反映하게 된다고 생각되지만 國産品과 競争關係가 있는 商品에 관하여는

国内에 있어서 그 輸入商品의 市場의 大小에 의하여 國産品의 價格에 미치는 影響度는 相違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또 競合品중에서 例컨데 牛肉 「치즈」等 國産品과 代替性이 높다고 생각되는 商品과 高級위스키, 손목時計, 乘用車, 카메라等, 기호성이 높은 商品에 대하여는 國産品의 價格에 미치는 影響度가 다르게 될 것이다.

生産財……………日本の 경우 그 産業構造의 特徵上 輸入品中 生産財의 比重이 非常히 높다(輸入物價指數에 있어서 生産財의 比重은 千分比로 하여 855.1이 되고 있다)

따라서 輸入生産財의 價格動向은 큰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生産費에 占하는 原材料費用의 比率(또는 附加價值率)의 關係等도 있어 小売價格에 미치는 影響의 方法도 消費財에 比하여 훨씬 複雜할 것이다.

資本財……………資本財에 관하여는 그 自体의 價格變化가 直接的으로 消費者物價에 影響을 미치는 部分은 없지만 그 變化는 資本金의 變化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生産費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間接的 効果는 있는 것이다.

(i) 輸入關聯品目

輸入物價는 그需給關係 또는 海外인프레要因等에 의하여 끊임없이 變動하고 있지만 消費者物價와의 關聯에 있어서 특히 最近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換率의 變動에 의한 影響이다.

그런데 消費者物價指數에서 採用하고 있는 品目中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가 또는 輸入品の 市場 占有率이 相當히 커서 그 價格變動이 消費者 物價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고 생각되는것 (原材料가 輸入品인 경우를 包含함) 및 이에 対応하는 輸入物價指數 및 都売物價指數에서 採用品目を 들면 다음表와 같이 된다.

消費者物價指數에 있어서 輸入關聯品目 및 輸入物價指數와 都売物價指數의 対応品目

消費者物價指數		輸入品の 割品		輸入物價指數		都売物價指數	
品 目	加重値 (万分比)	$\left(\frac{\text{輸 入 量}}{\text{生産量 輸入量}} \right)$		品目, 商品部 또는 小類	加重値 (千分比)	品目, 商品部 또는 小類	加重値 (千分比)
빠 나 나	19	100 %		빠 나 나	9.6		
래 몬	3	100		래 몬	1.6		
大 豆	2	%		大 豆	20.4	大豆(輸入)	
小 麦 紛	6	小 麦	91	小 麦	180	小 麦 小麦(輸入)	
砂 糖	3.6	粗 糖	97	粗 糖	15.9	粗 糖 類 精 製 糖	
인스탄트커피	15	커피-피 豆	100	커피-피 豆	4.1	커피-피 豆 (輸入) 인스탄트커피	
紅 茶	5	%		紅 茶	1.0		

消費者物価指数		輸入品の 割品		輸入物価指数		都売物価指数	
品 目	加重値 (万分比)	(輸 入 量) (生産量 輸入量)		品目,商品部 또는 小類	加重値 (千分比)	品目,商品部 또는 小類	加重値 (千分比)
초 코 렛	21	코코아 豆	% 1100	코코아豆	1.5	초 코 렛 코코아豆 (輸入) 茶 種 油	
食 用 油	23	植 物 油	98	採油用種子	6.0	大豆油 食油用種子	
치 - 즈	9		46	치 - 즈	1.9	치 - 즈 치 - 즈 (輸入)	
燈 油	45	原 油	96	原 油	122.8	原 油 개 슬 린 燈 油	
개 슬 린	108						
프로판가스	59	液化石油가스	34	液化石油	5.7	液化石油가스 液化石油가스 (輸入)	
毛 糸	15	羊 毛	100	羊 毛	20.4	羊 毛 毛 糸 手編毛糸	
이 불 솥	28	綿 花	100	綿 花	26.3	綿 花 이 불 솥	
食 塩	4	塩	88	工 業 塩	4.9	食 塩 工 業 塩 (輸入)	

消費者物価指数		輸入品の比率		輸入物品指数		都売物価指数		
品目	加重値	輸 入 量		品目・商品郡 또는 小額類	加重値 (千分比)	品目・商品郡 또는 小額類	加重値 (千分比)	
	(万分比)	(生産量+輸入量)						
石 炭	16	石 炭	57	燃料用炭	1.5	一般用炭	1.5	
落花生	10		52	落花生	1.1	落花生	0.2	
						落花生(輸入)	0.1	
小 豆	5		14	小 豆	1.2	小 豆	0.3	
牛肉로-스	49	牛 肉	11	牛 肉	1.4	牛 肉	2.7	
牛肉(中)	49					牛肉(輸出)	0.2	
板 材	5	木 材	54	木材(梁材)	16.7	国産丸太類	7.1	
	角 材					4	輸入丸太類	6.6
	배니아板					4	製 材	16.1
						加工板材	7.8	
豆 腐	29							
油 揚	16					大豆(輸入)	2.1	
納 豆	5	大 豆	96	大 豆	20.4	된 장	0.7	
된 장	27					간 장	1.6	
간 장	30							
男子구두	18					原 皮	0.5	
婦人가죽구두	19	皮 革	73	皮 革	6.9	가 죽	1.1	
抱 가 방	11					黃 製	3.4	
핸 드 백	26							

消費者物價指數		輸入品의 比率		輸入物價指數		都売物價指數	
品 目	加重值 (万分比)	輸 入 量		品目・商品郡 또는 小額類	加重值 (千分比)	品目・商品郡 또는 小額類	加重值 (千分比)
		(生産量+輸入量)	%				
고무장화	4	生 고무	1000	고 무	8.9	天然고무(輸入)	0.8
自動車타이어	3					고 무 제품	8.6
野 球 公	8					필 프	2.5
노 - 트북	12	필 프	9	紙 .. 필 프	11.3	木林 . 木片	1.7
						紙 . 板紙	11.1
						加 工 紙	3.2
						紙 . 製 品	11.0
담 배	227	葉 연 초	10	담 배	4.1	葉연초(輸入)	0.3
						연 초	11.2
万年筆	4		13	万年筆	0.5	万 年 筆	0.4

註...(1) 여기에 열거한 品目은 筆者의 判斷으로 選定한것으로 받드시 一般通念上 認定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들 品目은 輸入品目的 比率이 대략 10%以上의 것이다.

(2) 原材料輸入品에 관하여는 原材料價格의 變動이 製品에 미치는 影響이라고 하는 点에서 加工度가 적은것(原則으로는 1次的인 加工品만임)을 選擇하였지만 客觀的인 基準을 發見하기는 어렵다.

(3) 輸入物價指數 및 都売物價指數에 관하여는 商品郡 또는 小分類가 그대로 対応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商品郡 또는 小分類에 의거 表示했다.

(4) 輸入品の 比率은 貿易統計 生産動態統計調査, 農作物調査 등의 1970年 또는 1971年の 數量에서 求하였으며 參考한 資料는 다음과 같다.

- 貿易月報
- 農林省統計表
- 食糧管理統計年報
- 纖維統計年報
- 石油, 「코-코스」統計年報
- 종이, 펄프, 統計年報
- 雜貨統計年報

(5) 다음 品目은 各指數에서 採用하고 있는 品目이지만 輸入品의 比率이 적어서 除外하였다.

「위스키」, 손목時計, 乘用車, 카메라, 양말, 필립, 豚肉.

消費者物價指數에 있어서 이들 輸入 關聯品目을 前既한 그림과 같이 輸入物價의 影響의 형태別 觀點에서 区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① 直接消費(아주 가벼운 加工을 包含함)하는 것으로 輸入依存度가 높은것.

「빠나나」, 「레몬」, 大豆, 食塩

- ② 直接消費하는 것으로 輸入依存도가 ①項만큼은 높지않는것.
小豆, 牛肉, 「치즈」, 石炭, 万年筆
- ③ 原材料의 輸入依存도가 높고 加工도가 약간 높은것.
두부, 된장, 간장, 納豆, 초코렛, 燈油, 개솔린, 프로판가스,
毛糸, 이불솜, 男子가죽구두, 婦人가죽구두, 손가방, 「핸드
백」, 고무장화, 自動車타이야, 野球공.
- ④ 原材料가 國産品이 競合的인것으로써 加工도가 적은 것.
板材, 角材, 배니아板, 落花生
- ⑤ 原材料가 國産品과 競合的인것으로 加工도가 다소 높은것
「노-트북」, 편지紙, 담배.

註 1) 輸入依存品이 競合品인가 아닌가의 判斷은 輸入品の
比率이 70%以上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決定했다.

2) 加工도에 의한 判斷은 技術的인 加工도가 아니고
附加價値의 大小(꺼꾸로 보면 原材料 費用의 大小)
라고 하는 觀點에서 判斷했다.

工業統計表의 附加價値率, 産業 聯關表의 原材料投入
의 比率等도 参照했으나 明確한 基準을 設定하는
것은 어렵다.

(iii) 資料의 蒐集

實際數値에 따라 若干의 檢討를 하기 위하여 消費者物價
指數, 輸入物價指數 및 都壳價格指數의 各各에 關하여 前既表에
열거한 各品目的 1971年 및 1972年의 各月別 個別指數 (모두

1970年基準指數)系列을 모았다.

그때 輸入物價指數 및 都売物價指數에 관하여는 1970年 基準의 個別品目指數의 掲載가 豫定되고 있다.

「物價指數年報(1972年)」가 未刊이었기 때문에 直接 日本銀行에 문의하여 轉記하였다.

이點 利用者의 立場에서 基準時 改正後 可能한限 빠른 時期에 印刷物 또는 「테이프」等に 의한 利用이 可能하게 되도록 措置있기를 希望한다.

(4) 分析方法의 檢討

輸入物價는 지난 1971年 8月 換率의 輸入物價의 市場變動制로의 移行을 經계로 1972年 2, 3月頃까지 크게 타락했으나 그後 8月頃부터는 多少의 起伏은 있으나 比較的 安定되게 推移를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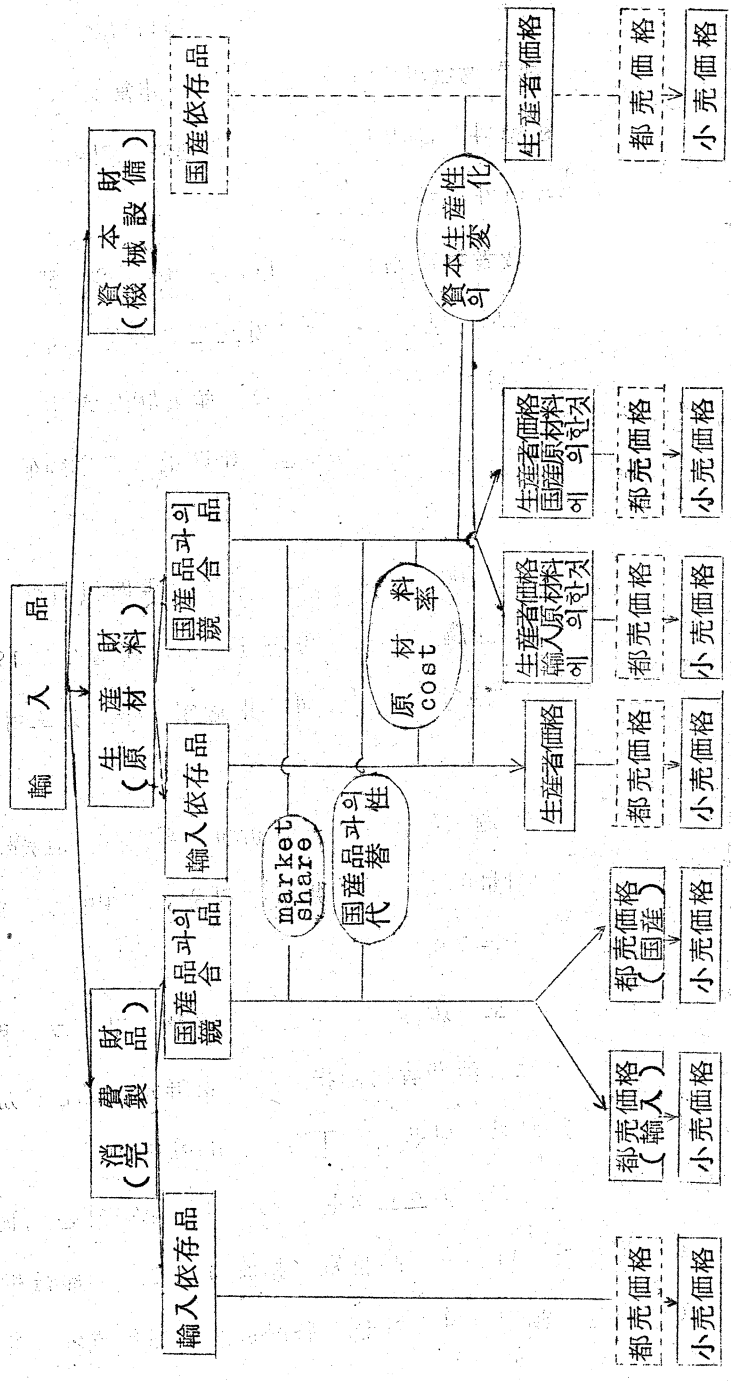
그러나 9月頃부터는 勝勢로 바뀌어 12月에는 거의 1971年 8月 水準가까이까지 回復하고 있다.

몇개의 品目에 관하여는 1971, 72年の 2年間의 消費者物價指數, 輸入物價指數 및 都売物價指數의 動向을 「그래프」에 의하여 보면 品目에 따라 여러가지 特徵을 볼 수 있다.

즉, 「빠나나」, 「레몬」等の 直接消費財(그리고 新鮮品)는 輸入物價의 動向이 상당히 直接的으로 消費者物價指數에 影響을 미치고 있지만 原材料輸入品의 경우는 事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都売物價와 消費者物價에는 대체적으로 상당한 相關을 볼수있지만

輸入物價의 消費者物價指數에 미치는 影響



註1) 原材料投入에 따른 相乘的인 波及效果는 考慮되어 있지 않음.
 註2) 價格形成에 대한 影響이 直接的인 아닌 中間段階 및 経路는 点線로 表示했다.
 註3) ○内에는 價格形의 影響要因을 表示했으나 需給要因의 變化 流通마-진 등은 考慮되지 않았음.

輸入物價와 都売物價에 미치는 影響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것.

輸入物價의 羊毛과 都売物價의 毛糸와 같이 非常히 相關이 높은 것 또는 輸入物價의 粗糖과 都売物價의 精製糖과 같이 時差相關이 있다고 생각되는것等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데 輸入物價의 消費者物價指數에 미치는 影響을 測定할 경우 그 目的에 따라 分析方法도, 당연히 다른것으로 생각되지만 豫測에 연결시켜 고려할 경우 하나의 方法으로써는 産業聯關表를 利用하여 波及的 效果도 包含하여 綜合的인 效果를 計算上의 期待値로써 求할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理論的인 問題는 別途로 하고 現地利用할 수 있는 1965年 産業聯關表의 陳腐化 即 現在의 輸入構造가 1965年 當時와 相違되고 있는 一點이 問題로써 指適할 수 있으며 새로운 資料가 要望된다.

또한 實証的인 見地에서 過去の 時系列分析에 의하여 回歸모델을 說明하여 影響의 크기를 計量的으로 豫測할 경우, 巨視的인 觀察에 의하는것은 약간 問題가 있는듯하다.

前掲한 數의 例에서 보아도 影響이 미치는 形態 및 그 程度가 品目에 따라 各양각색이므로 消費者物價指數는 新鮮食料品은 別途로 하고서도 다른 指數에 比하여 多분히 下方硬直的이다.

이點도 考慮한 한가지의 接近法으로서는 影響이 認定되는 個々の 品目(또는 影響의 形態가 비슷한 品目別 指類)別로 回歸分析의 手法에 의하여 影響度를 測定하여 이를 各品目別 加重値에 의하여

計算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問題는 이번에 取扱한 資料가 円의 切下라고하는 特殊한 事情을 背景으로한 그러면서도 短期間에 관한 觀察에 의한 것이므로 이 結果로부터 즉시 結論지을수는 없을 것이다.

또 消費者 物價指數의 下方硬直性을 함께 고려하여 上昇期만을 때내어 分析하는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今後의 問題로써 檢討코자 한다.

3. 結 言

以上 消費者物價指數 作成의 立場에서 物價關聯資料의 利用에 관하여 具體적인 例를 中心으로 記述했으나 一般的인 觀點에서 data bank에 대한 要望 頃을 列挙함으로써 本稿를 맺고자 한다.

- 註 (1) 資料의 蓄積 整備에 관하여 長期系列의 整備와 더불어 最新情報의 入手가 可能하도록 体制를 고칠것.
- (2) 要求資料에 관하여 即 時提供할수 있는 体制를 取할것. 例를 들면 display 방식에 의한 資料檢討를 利用者가 할 수 있는 体制가 바람직하다.
- (3) 要求資料에 관하여 利用하기 쉬운 形式으로 提供할것. 特來의 方向으로써는 on line 形式에 의한 利用을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out put 表의 形式에 관하여 一般統計 表形式에 의거 보다 보기 쉽도록 編輯하며 또 「그라프」

의 作成提供等도 隨時로 行할수 있는 體制를 갖출 것.

(4) 提供資料에 따른 加工計算서비스를 行할 것.

(例컨데 增減率, 寄与率等)

또 資料의 代替計算 例컨데 特定品目에 의한 代替指數等
의 計算서비스를 行할 것.

(5) 要因分析 모델分析등의 서비스를 行할것 (이 點은 統計
data bank의 存在形式과의 關聯面에서 檢討하여야 할
問題일 것이다)

第4編 統計 Data Bank에 관한 諸問題

第 4 編 統計 Data Bank 에 관한 諸問題

統計 data bank 가 情報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서는 Data Bank, software system 및 그 運用에 관하여 充分히 洞察하는 것이 重要하다.

第 I 部の 具體的 利用例中에는 Data Base 나 統計檢索技術 및 必要한 software 의 種類等에 관하여 相當한 示唆가 包含되고 있다.

이에 의거 統計 Data Bank 의 存在機能의 一部가 指適되고 있다.

특히 統計 Data Bank 의 運用機能이 지금까지의 觀察로서는 얻어지지 않으므로 第 II 部の 冒頭에서 이의 具體的인 利用例로서, 日本銀行의 「調査統計 情報體制」를 보기로 했다.

이 體制는 獨自의 目的으로 開發運用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取扱하는 資料가 物價關聯情報體制의 構想의 面에서 多少 異質的인 點을 除外하면 運用面에 관하여는 參考가 되는 情報가 여러가지 包含되고 있다.

이 情報體制가 對象으로 하는 物價關聯統計資料로는 第 I 部에서 具體的 例以外에 經濟分析등의 換價指數 (deflator) 로 利用되는 것이 많으므로 data base 를 作成할때 이런 種類의 利用을 前提로 하여두지 않으면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注文方式에 따라 deflator 作成도 必要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第 2 章에서는 社會計定과의 關聯에서 前年度의 「社會

計定과 物價資料」의 考察에 계속하여 対象資料를 모아 問題點을 考察했다 .

第 3 章에서는 資料整備에 焦點을 두어 利用者가 充分히 納得하여 使用할 수 있는 統計資料를 提供하는데는 어떠한 配慮가 必要한가를 考察했다 .

특히 國家가 提供하는 統計資料는 統計利用者가 信賴하고 利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

이를 위하여는 統計資料에 대한 質的檢計를 미리 하여둘 必要가 있으며 또는 附帶資料를 用意하여 利用의 正確을 期하는 等의 方法도 必要하지만 具體底으로 配慮할事項이 무엇인가하는것을 明白히 하고 그 한가지 方法으로써 '해드닉, 指數法에 의한 具體的例를 提示했다 .

그리고 第 4 章에서는 特殊한 研究的 利用例로써 detail data (個別資料의 識別을 必要로 하지않고 特定한 個個資料를 判斷하는 것이 不可能하여 아주 詳細한 水準의 資料) 및 集計結果의 資料로부터 特殊分類에 의한 消費者物價指數 加重值 作成의 方法論을 記述했다 .

集計結果를 利用하는 경우에는 이에 使用된 分類項目의 再編成 및 detail data의 計算 集積에 의하여 새로운 統計資料를 作成하는 問題이며 今後의 統計情報活動에 있어서 하나의 重要한 利用 方法으로써 發展시킬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拳論하였다 .

第 5 章에서는 物價關係의 議論으로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는 流通에 관하여 物價資料의 觀點에서 問題點을 要約했다 .

本 情報体制의 發展過程에서 流通研究나 物價形成分析등을 위하여
要請되는 資料分野에 關係되므로 統計 data bank로서는 將來를
위하여 充分히 意識하여 두어야 할 課題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考察
한 것이다 .

第 1 章 査統計情報体制의 概要와 運用에 관하여

- 日本銀行의 例 -

近年 日本에서는 情報處理 및 提供에 관한 体制의 開發이 進行되고 있으며 日本銀行에서도 「調査統計情報体制」를 開發하여 運用하고 있다.

本情報体制은 収録指標가 巨視的 時系列資料일것 利用方法도 計量經濟分析, 時系列分析이 中心일것 등의 諸点에서 物価 關聯情報体制와는 趣指를 달리하고 있지만 同体制의 開發 運用에 多少나마 參考될까 생각하고 그 概要를 紹介하기로 한다.

더욱이 本稿는 日本銀行統計部 職員의 手稿를 빌어 取合한 것이다.

1. 調査統計情報体制의 開發

日本銀行의 統計郡의 重要な 役割의 하나는 景氣動向判斷을 위하여 必要한 各種 經濟分析資料를 作成하는 것이다.

資料를 作成함에 있어 必要한 各種의 計算 예를들면 季節調整 回歸方程式등의 計算 計量 '모델'의 simulation 등에 관하여는 当初는 行內電子計算機의 處理能力등의 關係에서 거의 外部에 依存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1969年9月 銀行內的 機構의 擴張刷新을契機로 資料處理의 外部依存体制에서 벗어나 機械計算도 銀行內的

機構로 行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統計部는 1970年4月 情報体制의 基盤이라고도 할 수 있는 data file system 및 当面必要的 技術計算用 프로그램의 作成에 着手하여 그뒤 file收錄資料의 增加에 따라 차차 一般分析 計算을 위한 一般 '프로그램'의 整備擴充을 圖謀하여왔다.

또한 1970年9月에는 自動作圖機를 導入하여 作圖의 機械化 効率化를 期하였다.

이와같은 file收錄資料의 增加, 利用範圍의 擴大에 따라 統計局에서는 調査統計情報体制 運用面에서도 資料蒐集이나 資料의 整備에 關하여 責任分担制를 採用하는등 file 管理体制의 整備를 圖謀하고 있다.

2. 情報体制開發의 主眼點

統計部가 調査統計情報体制의 開發에 있어 特히 注意를 기울여 온것은 다음의 諸點이다.

첫째는 小規模일지라도 實用에 提供할 수 있는 體制를 開發한다는 點이다.

即 情報의 種類·量·時期等の 點이나 資料의 加工, 分析등의 面에서 처음부터 理想的인 體制를 指向하는것은 適當하지않고 当初는 經常的인 情報需要를 機動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 體制를 만들어 漸進的으로 理想的인 것으로 接近하여 간다는 態度를 取하였다.

둘째는 蓄積資料에 關한 問題이다.

data file은 情報体制의 基幹을 이루는 것이며 動機的이며 效率的인 機械處理가 可能한 것이라야만 한다.

統計局에서는 蓄積資料의 利用의 實態 頻度등을 參考로 data file의 編成方法을 檢討한 結果 從來의 磁氣테이프에 의한 順次 編成에서 磁氣 desk를 使用한 直接編成으로 고치고 任意的인 資料檢索이 容易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프로그램以外的 一般利用者에게도 利用하기 쉬운 情報体制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는 ① file data를 檢索하는 경우 利用者は '코-드' 番号를 指定하면 되고 ② 또 通常使用되는 程度의 計算을 行하는 경우에는 利用者は 미리 作成되어있는 計算用 '프로그램'을 適宜組合하여 指定하면 되도록 하고있다.

2. 調査統計情報体制의 概要

다음으로 調査統計情報体制의 技術的인 構成과 利用方法등에 관하여 說明코자 한다.

(1) data file의 構成과 収録指標

data file体系는 別圖1에 表示한바와 같이 master file 季節調整을 마친 data file 및 計量 '모델'用 data file의 3가지의 主된 file로 構成되고 있다.

이들 file은 그 어느것도 磁氣 desk에 收容된다.

file体系의 中心을 이루는 master file은 經濟分析에 通常利

用하는 經濟指標 (統計作成 機關發表의 原計數外에 , 通商産業省 , 經濟企劃庁等 他官庁이 發表한 季節調整을 한 經濟計數등도 包含함) 가 거의 收錄되고 있다 .

收錄指標數는 約 7,000개이며 原則으로 1953年 1月以後의 月까지는 4分期別 資料가 收錄되고 있다 .

그중 約 2,300개의 主要指標는 새로운 計數가 發表될때마다 資料의 延長을 行하고 있으며 기타 4,700개의 指標는 適宜 取舍하여 延長하는 方式을 採하고 있다 .

資料의 整備에 關하여는 大部分은 各種 統計表등을 資料表에 轉記하여 '펀칭카드'를 거쳐 延長하고 있지만 磁氣帶-프로 收錄을 마친것 (資料交換에 의한 磁氣帶-프로 入手하는것도 包含함) 은 資料 整備를 위한 '프로그램'을 作成하여 機械的으로 file에 流入하는 形態를 取하고 있다 .

다음으로 季節調整을 마친 data file 은 '센서스局法, II. X-11'에 의하여 統計部에서 季節調整한 計數가 또 計量'모델'用 data file 에는 計量經濟分析用으로 加工한 計數가 각각 收錄되고 있다 .

現在 前者는 約 1,400개의 指標 後者는 約 3,500개의 指標가 收錄되고 있다 .

이들 file 은 相互 有機的으로 關聯되어 있으므로 예를들면 master file 에 收錄되고 있는 指標는 季節調整하여 計量모델用 資料 file 에 收錄되고 '모델'分析에 使用한다」고 하는 一連의 作業을 容易하게 行할 수 있다 .

Master file - 収録指標概数

区 分	指標数	中update	主 要 統 計
		指 標 数	
通 貨・金 融	2,850	1,150	銀行券発行高，通貨 供給 率 金 交 換，金融機関別 主要計定
財 政	50	0	財政資金対民間 収支
産 業	1,150	650	生産，出荷，在庫指数，稼働率 指数，機械受注，法人企業統計
貿易・国際収支	400	80	輸出認証，輸入承認，通関輸出 入，貿易数量指数，国際収支
物 価・家 計	850	300	都 壳，輸出入 消費者物価，消 費水準
勞 動	200	20	労働力，雇傭，賃金労働生産性
国 民 所 得	250	50	主要項目の 名目額 実質額
外 国 統 計	250	50	主要国との 都壳，消費者物価
臨 時 資 料 等	1,000	0	適時 分析用 加工計算指標
合 計	7,000	2,300	

이 외에 sub file 로써 macro-model-simulation 用 data file 및 産業聯関分析用 matrix-data-file 을 備置하고 있으며 各各의 分析計算에 利用하고 있다 .

(2) 利用可能한 各種分析計算프로그램

前述한 file 収録資料를 電子計算組織에 의하여 處理하기 위한 分析計算 '프로그램' 으로서는 統計部에서 作成한것, 外에 IBM 社 美国商務省等 外部機關이 作成한 '프로그램' 을 統計部에서 改良을 加한것 등이 있다 .

現在, 利用可能한 '프로그램' 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고 全部 約 130 本에 達하고 있다 .

利用可能한 '프로그램'

区 分	計 算 內 容 等
data file 管理 計量 經濟 分析	file에 資料의 入力, update 等 回帰方程式 時差相関等의 計算 計量 '모델' 의 simulation 等
季 節 調 整	센서스局法, 通産省法에 의한 季節調整에 관한 計算
一般分析用資料加工	各種 移動平均 前月比(差) 加重指數構成比 率의 計算 및 統計表의 作成等
Plotter 用 作圖	file 収録資料 및 加工計算을 마친 資料表 作成

이들 '프로그램'中 一般의 分析担当者가 簡單히 利用할 수 있는 것을 두세개 紹介하여보면 우선 「file 資料檢索프로그램」이 있는데 指標番號를 指定하면 file 収録 資料의 檢索, 前年比 또는 前月比의 計算 作表라고 하는 一連의 作業을 行할 수 있다.

다음으로 「一般用 資料加工프로그램」을 使用하면 (指標番號나 加工計算種類를 원치한 여러장의 Control Card 를 電子計算組織에 入力한다) 다음에 表示하는 各種加工計算, 作表 file 에 記入하는 것 등을 適宜組合시켜 行할수가 있다. (實際例에 關하여는 別紙 1, 2 參照)

(加工計算의 種類)

- ① 各種移動平均의 計算
- ② 前月比(差異)의 計算
- ③ 指定基準時指數(差額)의 計算
- ④ 最大値 最小値의 檢索
- ⑤ 系列形態의 變換(月次→4半期等)
- ⑥ 時差附 變數의 作成
- ⑦ 두 指標間의 比率(積數)의 計算
- ⑧ 複數指標에 의한 加重合計(平均)의 計算
- ⑨ 複數指標에 의한 構成比의 計算
- ⑩ 計算結果의 作業
- ⑪ 計算結果의 Plotting (點圖表)
- ⑫ scatter diagram (相關圖表)의 作成

또 自動作圖機에 의한 作圖프로그램은 各 file 収録資料나 各種 加工計算結果를 線 '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으로 그리기 위한 것이 여러개 있어 그 '그래프'의 크기 눈금의 種類(普通눈금 또는 尙數 눈금), 資料의 期間等を 利用者가 自由로 指定할 수 있다.

(別圖 2, 차-트見本參照)

이들外에 약간 高度의 技術 計算用的 것으로써 情報體制에서 利用頻度가 높은 回歸方程式計算, macro-model-simulation, 센서스 局法에 의한 季節調整計算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은 모두 磁氣 desk에 収録되고 있으며 必要할때 즉시 各 data file과 直結하여 作動할 수 있도록 電子計算組織에 存貯되어 있다.

(3) 利用方法

日本銀行 職員이 이 情報體制를 利用하여 例컨데 各種 加工 計算을 한 巨視 時系列資料 또는 그 '차-트'의 提供을 받으려 할때는 指標番号 計算內容 및 計算期間等を 計算依頼書에 記入하여 Data Control sheet를 부쳐 本體制 管理部署에 提出한다. (Data control sheet의 記入方法에 관하여는 미리 利用者에게 配付되는 「프로그램利用者 便覽」에 說明되고 있으며 또 計算方法 등에 관하여는 情報體制 担当 '프로그래머'가 必要에 應하여 助言을 주고 있다.

本體制의 管理部署는 말은 各種 計算을 適宜 取舍하여 펀치카드作成을 하고 豫定된 機械使用時間에 處理를 하여 原則적으로 翌日中에 利用者에게 計算結果를 提供한다.

3. 情報体制의 運用

現在 調査統計情報体制은 統計部는 物論 他部局에도 널리 利用되어 資料의 加工分析面에서 不可欠의 것이 되고 있지만 統計部에서는 이 体制의 運用上 特히 다음의 諸點에 留意하고 있다.

(1) file 管理

情報体制用 data file의 管理에 있어 特히 配慮를 要하는 것은 資料의 信賴性 確保라고 하는 點과 資料의 蒐集 整備의 組織化에 관한 것이다.

(i) 資料의 信賴性確保

一般用 data file은 時系列의 形態(月別 4分期別等), 資料期間, 資料의 單位, 小數點以下의 有無等이 區區한 各種資料에 収録되고 있지만 不特定多數의 利用者에 의한 任意檢索에 대하여는 正確한 資料를 提供할 수 있다는 것이 이른바 情報体制의 生命이다.

따라서 統計局에서는 잘못된 指示에 의하여 file 그자체가 消滅하든지 Pass word(暗號) 即 file管理權限이 없는者에 의하여 収録指標가 削除되는일이 없도록 防止措置를 講究함과 同時에 萬一 削除될때는 반드시 그 內容 list가 남도록 하는等 資料의 安全確保를 圖謀하고 있다.

또 資料의 updating은 接統時點의 資料가 一致하지 않으면 行할 수 없든지 秘密取扱資料는 key data가 없으면 檢索할 수 없도록 設計되고 있다.

그리고 file 管理担当者를 두어 '코-드' 番号一覽表나 data list (이들은 常時 更新되고 있다)에 의하여 収録資料를 管理하는 体制를 取하고 있다.

(ii) 資料의 蒐集·整備의 組織化

収録하는 資料의 蒐集은 原則的으로 그 所管部署에서 行한다.

現在 master file에 収録되고 있는 約 7,000 個의 指標中 約 2,300 個의 指標에 관하여는 最新資料가 判明될 때마다 그 資料의 所管部署에서 再整備하도록 하고 있다.

勿論, 理想的으로는 収録 全指標에 관하여 資料가 判明될 때마다 再調整하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現實的으로 資料判明時期가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担当部署의 事務負擔이나 資料의 利用頻度等を 勘案하여 約 4,700 個의 指標에 관하여는 適宜 取舍하여 整備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季節調整을 마친 data file에 収録되고 있는 指標는 原計數가 再調整되면 自動的으로 延長計算 되도록 짜여져 있다.

(2) Plotter (自動作圖機)의 活用

景氣指標의 分析等を 위하여 大量의 時系列資料를 觀察하는 경우 '차-트'에 의한 把握이 極히 有効하다.

一般的으로 Plotter는 作圖에 時間이 걸린다는 難點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점은 첫째 簡單히 利用할 수 있는 data file이 있고 둘째 '차-트'의 크기, 눈금等を 自由로 指定할 수 있는 線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用的 '프로그램'이 用意되고 있으면 거의 問題가 없다.

오히려 Plotter의 活用に 의하여 各種 延長率 또는 構成比等이 自動的으로 作圖되기 때문에 人力에 의한 경우 計算上 作圖上의 착오를 除去할 수 있으며 '잉크펜'을 使用하여 作圖한 것은 그대로 印刷原稿로써 使用可能하다는 利点도 있으며 統計部로서도 Plotter의 改善을 圖謀하고 있다.

(3) '프로그램'의 開發과 管理

情報体制의 開發에 있어 커다란 問題는 利用者로부터 여러가지 種類의 計算需要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 効率的으로 處理하여 가는가 하는 點에 있으며 이것이 成功的인 体制維持에 크게 影響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統計局에서는 '프로그램'의 開發에 있어 標準化를 推進하여 重複을 避함과 同時に 一般用 '프로그램'의 作成에 留意하고 있다.

또 i) 制度 取扱方法의 改正等에 따라 計算內容이 變更되는 경우나

ii) '원칭' 處理에서 on line 處理에로의 移行等 電子計算 組織의 利用方法이 變更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管理가 必要하게 되고 그 어느것도 相當한 作業量을 要하지만 이에 處理하기 위하여 處理 '프로그램'의 屬人化를 避함과 同時に 文書化를 行하고 있다.

4. 問題点等

끝으로 .情報体制의 開發 運用上의 問題点等を 생각나는데로 열거하기로 한다 .

(1) 磁気테 - 프에 의한 資料交換

資料交換에 관하여는 将来 情報網体制가 完備하여 通信回線에 의한 on line 处理가 可能하게 되면 別問題겠으나 여하튼 今後 当分間은 磁気테 - 프에 의한 交換이 中心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그러나 磁気 '테 - 프' 에 의한 資料交換에 관하여는 各官厅 등에서 使用하는 電子計算의 相違에서 發生하는 磁気 '테 - 프' 의 記錄方式의 相違等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問題가 있다 .

(i) 磁気 '테 - 프' 의 記錄方式

다음의 諸点에 관하여 資料提供例가 資料入手側間에 調整을 할 必要가 있다 .

- ① '트랙' 數 (7 '트랙' 인가 9 '트랙' 인가)
- ② 記錄密度 (556BPI , 800BPI , 1600BPI 等)
- ③ '패리티' 檢査 , 方式 (偶數 '패리티' 인가 , 奇數 '패리티' 인가)
- ④ revel 의 種類 (standard 인가 non-revel 인가)
- ⑤ 1 Word 當 bit 數 (16bit , 32bit , 48bit 等)
- ⑥ 表示方式 (文字表示 , 2 進數表示 等)

(ii) 資料의 精度

通常 異機種間의 資料交換은 文字表示方式에 의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進數 表示의 資料를 文字表示에 轉換하는 경우 小數 點以上의 處理(有効行數)를 如何히 하는가에 關하여 資料提供側과 入手側의 兩者間에 決定을 하여두는 것이 必要하다.

(iii) 資料變換

資料에 關한 處理는 原則으로 入手側에서 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計算센터等 第3者를 介入하여 資料變換을 할때도 있고 또 提供側에 있어서도 特別한 處理를 負擔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

(iv) '프로그램'의 維持管理

調査方法의 改正 指數基準時의 改訂等에 의한 資料의 記錄方式에 變更이 加해진 경우 入手側에서도 '프로그램'의 維持管理가 必要하기 때문에 미리 雙方의 '프로그램'間에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 資料受入準備를 整備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資料入手의 時期에 關하여는 資料의 公表와 同時에 磁氣 테이프가 提供되는것이 바람직하다.

(2) 情報處理의 on-line 化

今後 情報要求가 一層多樣化함과 同時에 情報의 機動的處理에 對한 要求가 높아질것이 豫想되지만 이러한 必要性에 對處하기 위하여는 情報處理의 on line 化를 進行시켜 各利用部署에 display 裝置等 端末機를 設置하여 機械와의 對話形式에 의한 即時的인 情報處理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要望된다.

이때문에 例컨데 time-sharing-system 下에서 對話形式에 의한 處理 '프로그램'의 開發을 進行시키는것이 今後的 課題가 될 것이다.

別表1 實際例(Print out)

***** KAKCO KEISAN KEKKA-HYOO *****

TITLE		DATA KAKCO KEISAN NO SAMPLE (TOOKEI-KYOKU)	
No.	CODE No.	NAIYOO	
1	30001	SEISAN SHISUU (SANGYOO SOOGOO)	MITI, CI (S45 = 100)
2	30003	" ZENGETSU - HI	(CI) (%)
3	31001	SHUKKA SHISOO (SANGYOO SOOGOO)	MITI, CI (S45 = 100)
4	31003	" ZENGETSU - HI	(CI) (%)
5	32001	SEIHIN ZAIKO SHISUU (SANGYOO SOOGOO)	MITI, CI (S45 = 100)
6	32003	" ZENGETSU - HI	(CI) (%)
7	70000	SEIHIN ZAIKORITSU SHISUU (KOOKOOGYOO)	MITI, CI (S45 = 100)
8	70003	" ZENGETSU - HI	(CI) (%)

鉄工業生産・出荷・製品在庫指数(季節調整을 마친것)

CODE No.	生産 同前月比		出荷 同前月比		製品在庫 同前月比		製品在庫率 同前月比		
	1	2	3	4	5	6	7	8	
	30001	30003	31002	31003	32001	32003	70000	70003	
49	45.1	95.9	1.1	97.4	2.4	91.4	0.8	93.8	-1.5
50	45.2	96.8	1.0	97.8	0.4	91.5	0.1	93.6	-0.3
51	45.3	97.8	1.0	98.9	1.1	92.5	1.2	93.6	0.0
52	45.4	98.7	0.9	98.0	-0.9	94.4	2.0	96.3	2.9
53	45.5	99.8	1.1	97.9	-0.2	96.4	2.1	98.5	2.3
54	45.6	101.4	1.6	100.6	2.8	99.0	2.7	98.4	-0.1
55	45.7	101.4	-0.0	101.3	0.7	100.7	1.7	99.4	1.0
56	45.8	100.9	-0.4	101.3	0.1	102.8	2.2	101.6	2.1
57	45.9	101.6	0.6	101.3	-0.0	104.0	1.1	102.7	1.1
58	45.10	101.7	0.1	101.8	0.4	107.8	3.4	105.7	2.9
59	45.11	100.7	-1.0	99.9	-1.8	110.1	2.4	110.2	4.3
60	45.12	102.8	2.1	103.0	3.1	111.1	0.9	107.8	-2.2
61	46.1	102.6	-0.2	101.9	-1.1	113.5	2.2	111.4	3.3
62	46.2	102.0	-0.5	101.2	-0.7	115.7	1.9	114.4	2.7
63	46.3	103.0	1.0	103.4	2.2	115.8	0.1	112.1	-2.0
64	46.4	102.5	-0.5	103.4	0.0	117.3	1.3	113.5	1.3
65	46.5	100.0	-2.4	100.8	-2.5	118.0	0.6	117.1	3.2
66	46.6	102.2	2.2	102.7	1.9	118.3	0.2	115.1	-1.7
67	46.7	102.5	0.4	103.6	0.8	117.6	-0.5	113.6	-1.4
68	46.8	103.0	0.5	103.0	-0.6	119.5	1.6	116.0	2.1
69	46.9	104.0	1.0	104.7	1.6	120.5	0.8	115.1	-0.8
70	46.10	102.9	-1.1	102.5	-2.1	121.5	0.9	118.5	3.0
71	46.11	104.0	1.1	105.3	2.8	121.1	-0.3	115.0	-3.0
72	46.12	103.6	-0.4	105.4	0.1	121.1	-0.0	114.9	-0.1
73	47.1	104.3	0.7	106.2	0.8	119.7	-1.1	112.7	-1.9
74	47.2	105.5	1.2	107.9	1.6	119.1	-0.6	110.4	-2.1
75	47.3	107.1	1.5	108.8	0.9	119.3	0.2	100.1	-0.6
76	47.4	106.7	0.4	107.5	-1.2	119.5	0.1	111.2	1.4
77	47.5	108.4	1.5	110.1	2.4	118.5	0.8	107.7	-3.2
78	47.6	108.7	0.3	110.2	0.1	118.1	0.4	107.2	-0.5
79	47.7	108.2	-0.4	109.8	-0.4	118.1	0.0	107.6	0.4
80	47.8	111.3	2.9	113.1	3.0	118.9	0.6	108.1	-2.4
81	47.9	112.3	0.9	114.0	0.8	119.8	0.8	105.1	0.0
82	47.10	113.9	1.5	114.3	0.2	118.8	-0.8	104.0	-1.0
83	47.11	115.8	1.6	117.7	-3.0	117.9	-0.8	100.2	-3.7
84	47.12	119.4	3.1	122.3	3.9	115.7	-1.9	96.6	-5.6
AVERAGE	85.37	1.05	85.82	1.08	87.05	0.92	100.33	-0.13	
S. D.	19.22	1.48	19.48	1.57	24.63	1.16	8.20	2.22	

(注) 本表中 漢字部分은 說明 別途補記한 것임.

別表2 實際例 (Print Out)

***** KAKOO KEISAN KEKKA-HYO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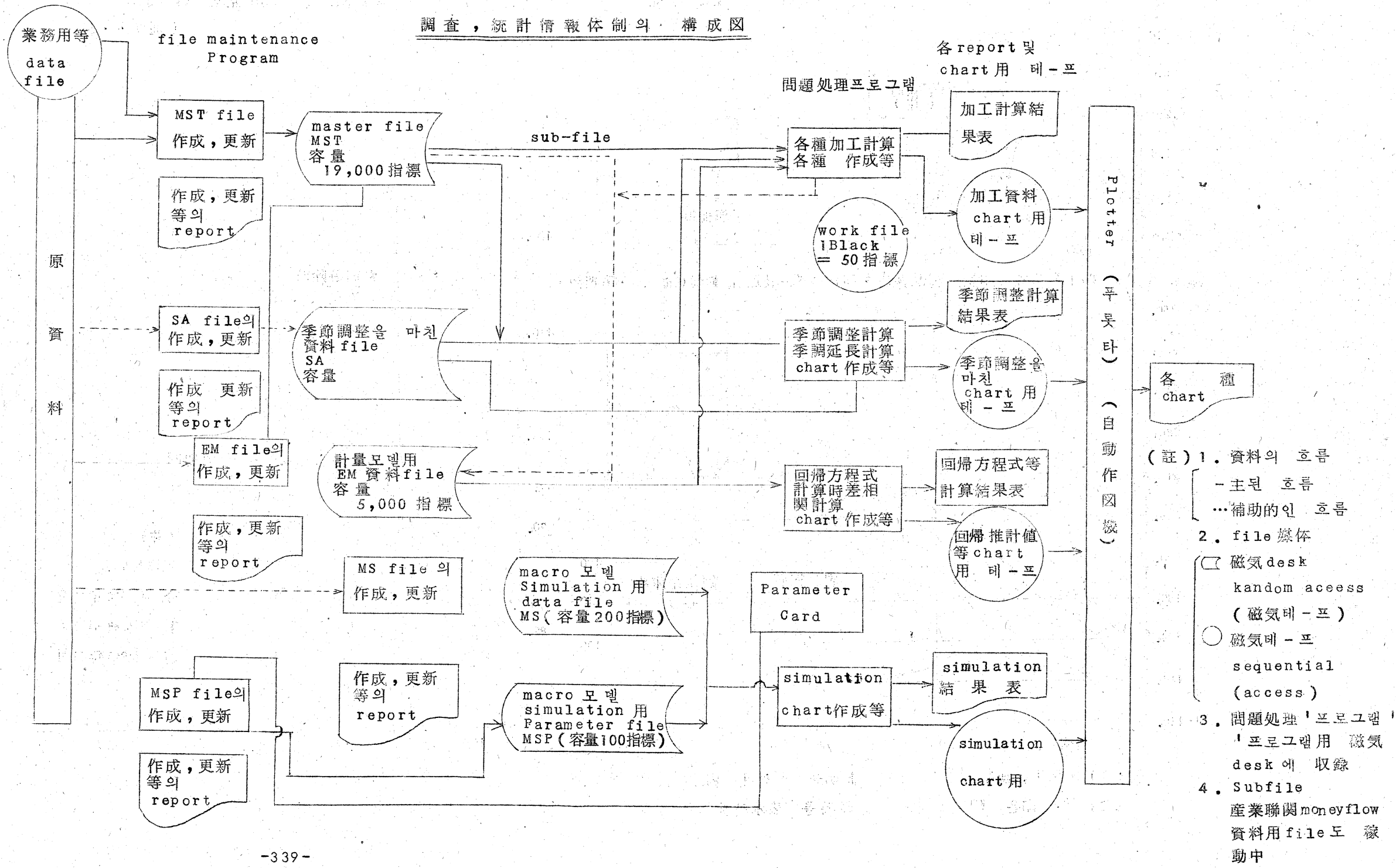
TITLE ... DATA KAKOO KEISAN NO SAMPLE PRINT (TOOKEI-KYOKU)

NO.	CODE NO.	NAIYOO
1	10700	MONEY SUPPLY (TSUUKAZAN) FUKUMI CHOSEI (Y 100MILL)
2	10702	" ZENMEN DOOGETSU-HI (0) (%)
3	10700	MONEY SUPPLY (TSUUKAZAN) FUKUMI CHOSEI (Y 100MILL) (CI)
4	10703	" ZENGETSU-HI
5	10704	" ZENGETSU-HI
6	10704	" ZENGETSU-HI
7	10704	" ZENGETSU-HI
8	30006	SEISAN SHISUU (KOOKOOGYOO)
9	30007	SEISAN SHISUU (KOOKOOGYOO)
10	30008	SEISAN SHISUU (KOOKOOGY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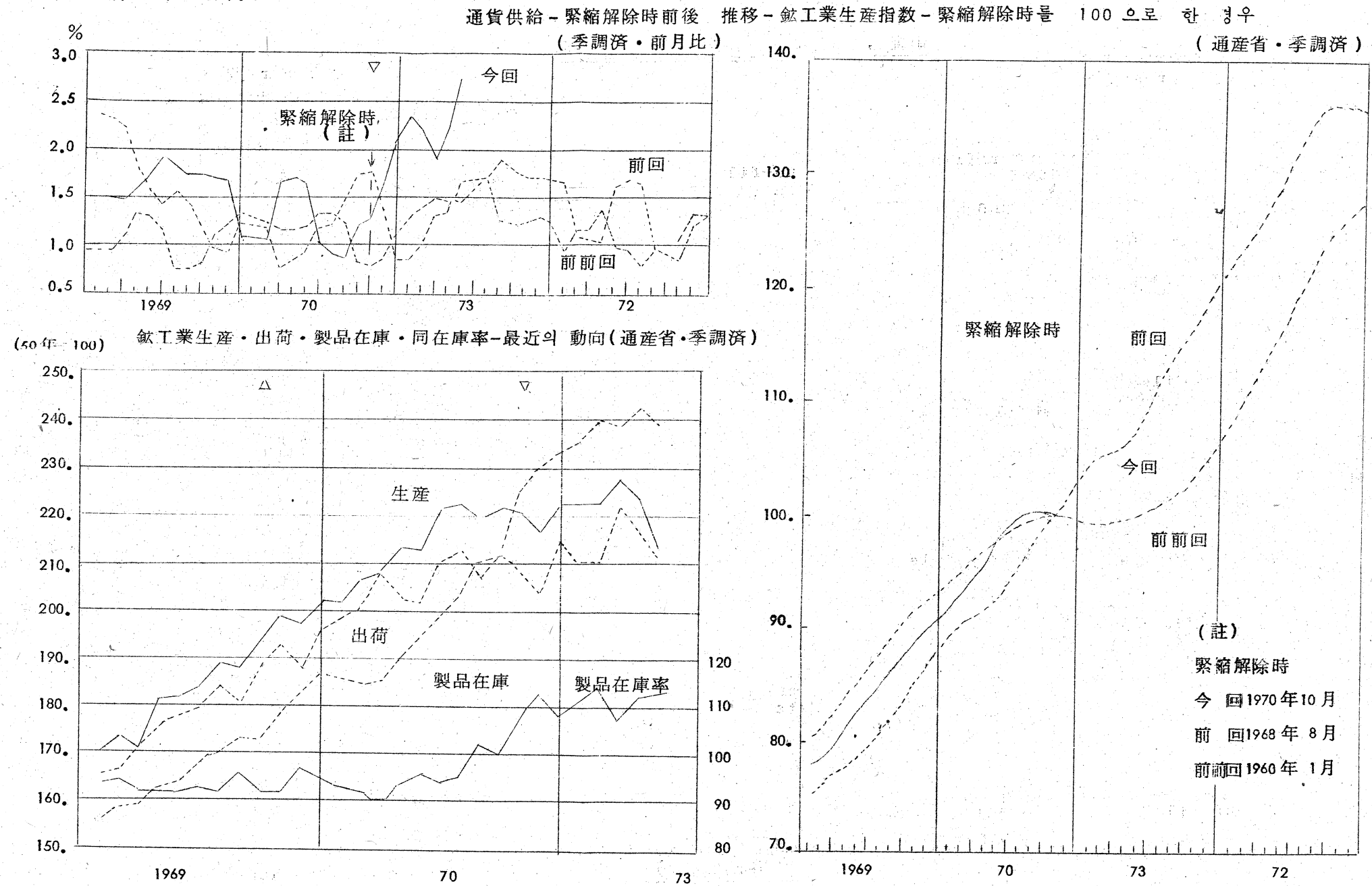
Money Supply 및 鈔工業生産의 緊縮 解除時 前後의 推移

CODE NO.	Money Supply 同前年 同月比 (原計數)		Money Supply 同年月比 (季節調整을 마친것)		Money Supply 前月比의 移動平均值		
	1	2	3	4	5	6	7
	10700	10702	10700	10703	10704	10704	10704
1 44. 1	140676.	15.5	142764.	2.2	1.5	0.9	2.4
2 44. 2	140567.	15.9	144739.	1.4	1.5	0.9	2.3
3 44. 3	148170.	14.5	145946.	0.8	1.5	1.1	2.2
4 44. 4	151264.	16.5	148782.	1.9	1.7	1.3	1.8
5 44. 5	151679.	17.1	151491.	1.8	1.7	1.3	1.6
6 44. 6	156334.	16.3	154530.	2.0	1.9	1.2	1.4
7 44. 7	155250.	18.3	156786.	1.5	1.8	0.8	1.6
8 44. 8	157071.	21.4	161202.	2.8	1.7	0.8	1.4
9 44. 9	158650.	19.7	161931.	0.5	1.7	0.8	1.2
10 44.10	159919.	20.1	164114.	1.3	1.7	1.1	1.0
11 44.11	170978.	24.3	171553.	4.5	1.7	1.2	0.9
12 44.12	182825.	20.6	168917.	-1.5	1.1	1.3	1.2
13 45. 1	168832.	20.0	171251.	1.4	1.1	1.3	1.2
14 45. 2	188732.	20.0	173688.	1.4	1.1	1.2	1.2
15 45. 3	177982.	20.1	175729.	1.2	1.7	1.2	0.8
16 45. 4	181909.	20.2	178899.	1.8	1.7	1.2	0.9
17 45. 5	185794.	22.5	185276.	3.6	1.7	1.2	0.9
18 45. 6	185775.	18.8	183519.	-0.9	1.0	1.3	1.2
19 45. 7	184226.	18.7	185983.	1.3	0.9	1.3	1.2
20 45. 8	182331.	16.1	186884.	0.5	0.9	1.2	1.5
21 45. 9	185761.	17.1	189698.	1.5	1.2	0.8	1.8
22 45.10	187544.	17.3	192571.	1.5	1.3	0.8	1.8
23 45.11	194062.	13.5	194602.	1.1	1.6	0.9	1.4
24 45.12	213595.	16.8	197562.	1.5	2.1	1.1	0.9
25 46. 1	202815.	20.1	205674.	4.1	2.3	1.3	0.9
26 46. 2	205477.	21.8	211505.	2.8	2.2	1.4	1.0
27 46. 3	211873.	19.0	209443.	-1.0	1.9	1.5	1.3
28 46. 4	220000.	20.9	216365.	3.3	2.3	1.5	1.3
29 46. 5	225001.	21.1	224194.	3.6	2.7	1.5	1.7
30 46. 6	*****	*****	*****	*****	*****	1.6	1.7
31 46. 7	*****	*****	*****	*****	*****	1.7	1.7
32 46. 8	*****	*****	*****	*****	*****	1.9	1.3
33 46. 9	*****	*****	*****	*****	*****	1.8	1.2
34 46.10	*****	*****	*****	*****	*****	1.7	1.3
35 46.11	*****	*****	*****	*****	*****	1.7	1.3
36 46.12	*****	*****	*****	*****	*****	1.7	1.3

調查，統計情報体制의 構成圖



別圖 2. 實際例 (Chart)



註：1) 本圖中，漢字部分은 모두 説明을 위하여 別途補記한 것임.
2) △・印은 緊縮時 및 同解除時를 表示한것

第2章 新SNA와 家計調査(註)

- 社会計定에 있어서 deflator 作成의
觀點으로부터 -

序論 資料와 假說과의 關係

社会計定統計는 一次的인 統計를 基礎로 하여 推計되지만 重要的
論點은 兩統計가 갖는 理論的 側面, 即 어떠한 經濟分析에 適用可
能한가 하는 것이다.

만일 兩者의 視點이 完全히 一致한다면 調査 推計上의 相違는
있다 할지라도 資料設計上에서는 新 SNA (New System of National
Account)라고 하는 手段 利用의 側面에서 社会計定の 使用이
一次 統計에 있어서는 必要不可欠한 것이 된다.

이에 관하여 多費目 消費函數의 例를들어 생각해보기로 한다.
(勿論 1次統計도 別個의 分析目的이 存在한다)

多費目函數는 1960年代에 들어서서 急速한 發展을 보았는데 그
中心은 消費函數의 動勞化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消費量은 選好函數와 豫算制約에 의하여 決定되기 때문에 그 動
勞化에 있어서는 어느한쪽의 shift라고 하는 形態에서 展開되어
왔다.

그中 몇가지를 들어보면 第1表와 같이 된다.

第1表에서 볼 수 있는바와같이 한마디로 「多費目消費函數」라고
하여도 그 假說의 設定에 따라 費目的 選擇方法이 다르게 되며

資料의 選擇도 다르게 된다 .

예를들면 R, Stone은 그의 第 I 모델에서 一般均衡体制型的 計測上의 困難性도 있어 費目數를 적게 취하고 分析目的 (stock , 調整原理)에 맞추어 耐久性에 力點을 두는 分類方法을 取하였다 . 한편 第 2 ' 모델에서는 time trend에 의한 選好場 可變型的 假說 때문에 이른바 目的別 分類를 採用하고 있다 . 그리고 日本에 있어서도 述村氏의 體系에서는 Gossen型的 選好函數에 世界人員과 消費의 累積額에 의한 選好場可變의 假說을 設定하여 家計調査를 基礎로 計測을 實施한바 있다 .

(第 I 表) 多費目消費関數의 計測例

a) R . Stone의 第 I 모델

$$V = \hat{r}u + (I - \hat{r}) \times (a - I)$$

但, u 는 各 財貨의 消費를 表示하는 vector 임.

\hat{r} 는 各消費의 調整係數를 表示하는 對角行列 $\circ x$ 는 耐久財이

이면 價値償却을 마친 stock , 經常財이면 前期의 消費

$$P u = b \mu + (I - b i) \hat{C} P \quad (a - 2)$$

但, P 는 各財貨의 價格을 表示하는 對角行列, μ 는 後支出을

말함 . 上記의 2式으로부터의 計測式은

$$\hat{P} u = \hat{r} b \mu + \hat{r} (I - b i) \hat{C} P + (I - \hat{r}) P \times (a - 3)$$

- o stock 調査原理에 근거한 動學化
- o 費目은 耐久性에 力點을 둔 7費目
- o 一般均衡體系이지만 뒤음에 問題點이 남아있다 .

b) R. Stone 의 第2 ' 모델

$$\hat{P} u = b \mu + (I - b i) \hat{C} P (b - 1)$$

$$\left. \begin{aligned} b_0 &= b^* + \theta b^{**} \\ c_0 &= c^* + \theta c^{**} \end{aligned} \right\} (b - 2)$$

$$i b = 1, \quad i b^* = 1, \quad i b^{**} = 0 \quad (b - 3)$$

但 θ 는 time trend

- o time trend 에 의한 選好場可變型의 動學化
- o 費目은 目的別 分類

c) H. S. Houthakker 와 L. D Taylor 의 모델

$$q_t = a + \beta S_t + x_t + 3p_t + v_t \quad (c - 1)$$

但 q_t, x_t, p_t, v_t 는 t 期의 消費, 所得, 價格의 交叉項. S_t 는 物理的 (耐久財貨의 경우이며 이때는 $\beta < 0$) 또는 心理的 (消耗財의 경우로 $\beta > 0$) stock

이 誘導形을 使用하여 離散型으로 變形시킨 다음式이 計測式임

$$q_t = A_0 + A_1 q_{t-1} + A_2 \Delta x_t + A_3 x_{t-1} + A_4 \Delta p_t + A_5 p_{t-1} + v_t \quad (c - 2)$$

stock 調整原理와 習慣形成假說의 一元的解釋

- o 部分均衡體系이지만 自己相關의 除去를 研究한것임.
- o 計測費目은 84 品目

d) 辻村 모델

選好函數를

$$v = \sum_{i=1}^n a_i y_t + \frac{1}{2} \sum_{i=1}^n y_i y_t^2 \quad (d - 1)$$

로 特定化하여 選好場의 shift 要因으로써 世帯員 消費의 累積值 H_i 를 導入하여

$$A_i = \alpha_i + \beta_{im} + \gamma_i H_i \quad (d-2)$$

여기에 通常의 豫算制約에 의한 効用極大化로부터

$$A_t, q_t = \beta_t \quad (d-3)$$

但

$$A_t = \begin{pmatrix} a_{11} & 0 & -P_{1t} \\ 0 & \dots & -P_{nt} \\ P_{1t} & \dots & 0 \end{pmatrix} q = \begin{pmatrix} q_{1t} \\ \vdots \\ q_{nt} \\ x_t \end{pmatrix}$$

$$B_t = \begin{pmatrix} -d_1 - \beta_{1mt} - \gamma_1 H_{1t} \\ \vdots \\ -d_n - \beta_{nmt} - \gamma_n H_{nt} \\ y_t \end{pmatrix}$$

○ 一般均衡体系에서, 選好函数를 그 中心으로 하고 있다. 多重共線性 등의 고려를 위하여 完全決定法이라고 하는 推定上的 研究가 行하여가고 있다.

○ 計測對象은 家計調査의 16 費目

e) KEO 모델

選好関数 特定化

$$V = \prod_{i=1}^n (\alpha_i + q_i) \alpha_i \quad (e-1)$$

으로 되고있는 点以外에는 (a)에 準한다. 計測対象은 国民所得推計의 5大費目임.

f) 波谷' 모델

$$q_{io} = q_{io} (N : m^* : P_1 \dots P_n : W : P_1^e \dots P_n^e)$$

但 N은 年令, W는 資産, m^* 은 正常所得 P_i^e 는 i 財의 期待 價格이라고 하는 一般型에서 出發한다.

우선 需要量, 所得, 資産等を 成人男子로 換算하여 N를 消去하고, 正常所得 m^* 은 y 로써 近似値로 하고, 線型을 例로 들어보면

$$q_i^* = a_i + b_i y + b^* w_i + [b_{i1} \left(\frac{P_1}{P_r} \right) + \dots + b_{in} \left(\frac{P_n}{P_r} \right)]$$

(f-1) 期待價格에 關하여는

$$b_{ii} = b_{ii}^* + b_{ii}^* \cdot i \left[\Delta^* \left(\frac{P_i}{P_r} \right) / E^{-1} \left(\frac{P_i}{P_r} \right) \right]$$

[f-2.]

$$i = \frac{\Delta^* \left(\frac{P_i^e}{P_r^e} \right) / \left(\frac{P_i^e}{P_r^e} \right)}{\Delta^* \left(\frac{P_i}{P_r} \right) / \left(\frac{P_i}{P_r} \right)}$$

$$\Delta^* = 1 - E^{-1}$$

shift 要因으로서의 資産效果는

$$b_i = b_i^* + b_i^{**} \left(\frac{w}{y} \right) \quad (f-3)$$

stock 調整原理와의 關係에서

$$q_i = X_i q_i^* + (1-X_i) E^{-1} q_i \quad (f-4)$$

이들 (f-1) ~ (f-4)으로부터

$$q = b^* n \cdot \Delta^* y + b^* \cdot E^{-1} y + b^{**} \cdot \left(\frac{w}{y} \right) + (b_{ii}^* + b_i^{**} \cdot i \cdot \Delta^* \cdot \left(\frac{P_i}{P_r} \right))$$

$\cdot \left(\frac{P_i}{P_r} \right)$

$$+ \beta^{**} \sum x [(P_i / P_r) / E^{-1} (P_i / P_r)] + b_{ji} (P_j / P_r)$$

$$+ (1 - x) E^{-1} q + a \& xD + ax \quad (f - 5)$$

o 農家, 非農家別半期の 26 品目

o 豫算制約에 의한 動學化

g) 이외에 R. Parks에 의한 同一資料에 의한 各假說의 檢討 R. Pollak에 의한 linear expenditure system의 檢討 古原氏에 의한 各體系의 檢討等이 存在한다.

[1] R. Stone and G Croft - Murrey Social Accounting and Economic Models, 1959,

[2] Cambridge, 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 The Model in Its Environment: a Progress report, 1964.

[3] H. S. Houthakxer and L, D, Taylor, Consumer Demand in the United States, 1929-70, 1966 (黒田 西川 辻村訳)

[4] 辻村江太郎 「消費構造와 物價」 「勁草書房」

[5] 波谷行雄 「消費者需要의 分析」 (東洋經濟)

[6] R, Pollak and T, Wales, " Estimation of the Linear Expenditure System " Econometrica , 1967.

[7] R, Parks, "System of Demand Equations " Econometrica, 1969.

[8] K, Yoshihara, "Demand Functions : An Application to the Japanese, Expenditure Pattern", Econometrica, 1969.

또 選好函數를 " 배르누 - , 라프라스 " 型으로 取하여 같은 選好場可
可變要因下에 國民所得統計의 5大費目에 의한 計劃이 行하여졌다 .

그리고 波谷氏의 體系에서는 恆常所得假說에 가까운 形態로 豫算
制約의 shift에 의한 動學化의 假說下에 農家經濟調査, 家計調査
報告를 使用한 計測이 行하여졌다 .

이와같이 經濟分析에서는 假說 - 資料 - 測定方法의 三位一體가 要求
되지만 資料의 設計에 있어서도 背後의 分析理論이 없이는 成立하
지 않는다는것을 銘心하여들 必要가 있다 .

社會會計의 경우에도 거기에는 一定한 假說이 說定되어 있으며
特定한 資料間의 一貫性만에 그치고 있지는 않다 .

또 이 多費目消費函數의 경우에는 既存의 計測例에서 보는限 適
切히 處理만 되면 兩統計間의 一貫性도 고려될수 있을 것이다 .
(그 때문에 一次的 統計를 기초로 한 多費目消費函數와 國民所得
을 기초로 한 多費目消費函數가 計測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社會計定의 implicit deflator (隱在換價指數) 의
作成에 있어서 一次統計와 社會計定의 統計와를 聯關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

社會計定으로써는 하나의 試圖로서 SNA를 對象으로 했으나 以
上의 「假說 - 資料」間의 相互關係를 고려하기 위하여 家計消費支出
에 있어서 新旧SNA의 位置를 살펴보고(§ 2節) 新SNA와 家
計調査와의 關係(§ 3節)에 焦點을 맞추었다 .

implicit deflator는 現行의 國民所得統計의 作成方法에 의하

면 (이 점은 § 1 節을 参照) 上記의 聯關이 確定되어야 그에 따라서 算出되기 때문이다.

deflator 作成에 있어 本稿에서는 人的 推計方法의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 理由는 價格系列이 單價方式이고 消費者物價指數와 같이 具體的인 價格의 系列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兩者의 價格系列의 問題는 今後一層檢討를 要하는 課題이지만 (兩者의 情報가 基礎統計의 段階에서 把握可能한가 아닌가에 依存한다)

本稿에서는 그 意味에서는 後者の 경우만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社會計定에 있어서 implicit deflator의 作成이라고 하여도 以上の 叙述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社會計定중 消費支出 그것도 家計調査와 消費者 物價指數에 의한 人的推計의 部分에 限定되어 있으며 그것도 不完全한 形態로만 展開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하여두고자 한다.

註

本稿는 後節에서 展開되는바와 같이 新SNA와 家計調査와의 対応關係가 中心으로 되지만 이는 implicit deflator 作成의 對象으로써 加重值를 新SNA에 合쳤기 때문이다.

新 SNA와 家計調査의 対応에 관하여는 筆者가 1971年度 統計學會에서 報告後 「1971年 家計調査」의 品目分類와 新SNA와

의 対応을 北山直樹氏 (現 勞動力 統計課長) 總理府統計局 消費 統計課 經濟製表課의 여러분과 行할 機會를 얻었으나 그 結果를 근거로 1970年의 品目分類에 筆者나름대로의 調整을 行한것을 使用했다.

이 機會를 빌어 當時 페를끼쳤던 여러분에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또 implicit deflator의 計算에 있어서도 計算業務를 부탁했던 data bank 準備室의 여러분을 비롯하여 關係諸位에게 感謝를 드린다.

1. 家計消費支出과 implicit deflator (隱在換價指數)의 作成

日本의 支出國民所得의 implicit deflator의 推計方法 및 社會計定의 deflator가 갖는 뜻에 關하여는 別途로 미루고 여기서는 家計消費支出 (특히 非農家에 限定하여)에 關하여 약간 자세하게 展開하기로 한다.

家計消費部 支出部門의 推計方法을 整理하면 (第2表)와 같이 된다.

implicit deflator의 綜合化의 基本的인 手順은 (各 名目額 會計) ÷ (名實質額會計)라고 하는 形式이다.

이 方法은 加法性을 充足한다는 利點이 있으며 또 指數算式上에서도 各己 名目支出金額은 이 方法으로 求한 Laspeyres型의 數量指數로서 除하면 結果로서 Pasche型의 物價指數가 얻어진다.

그러나 個別項目에 關하여 보면 難點이 없는것은 아니다.

첫째는 既存의 物價指數를 比較的 큰 項目段階에 適用하고 있기 때문에 前述한 Pasche型指數로써의 近似程度의 問題가 있다. 試驗적으로 基礎統計와 概念上 一致하는 光熱費(개솔린)를 調整하면 된다. 그 結果 1970年度에 消費者 物價指數=103.8 implicit deflator = 100.5가 되어 약간의 集計 偏倚(bias) 생긴다.

둘째로는 農家 非農家部門間에 있어서 基本項目의 段階에서의 處理方法이다.

指數論에서 보면 一般的으로 固定加重值보다 變動加重值쪽이 바람직하지만 그 意味에서 보면 農家部門에는 약간의 研究를 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點은 多分히 計算上の 關係에서 오는 制約이라고 생각된다.

(第2表) 家計消費支出의 deflator 推計方法

5大費目	農 家 部 門	非 農 家 部 門
(1)飲食費	(①)穀類(米麥) deflator 米麥에 관하여는 農村物價指數의 固定加重值를 使用한 Laspeyres 式으로 算出 (②)豆, 감자 野茶 海草 加工食品 deflator (③)魚介 肉卵乳 deflator (④)調味料	費目으로서는 (①)主食, (②)生鮮 魚介, (③)塩干魚介, (④)肉類, (⑤)乳卵, (⑥)野茶, (⑦)乾物 (⑧)加工食品, (⑨)調味料 (⑩)菓子, (⑪)菓子, (⑫)果實, (⑬)酒類, (

5 大費目	農 家 部 門	非 農 家 部 門
	<p>술, 菓子果實 deflator ② - ④에 관해서도 穀類의 경우에 準하여 算出(⑤) 農家飲食費 綜合(①)~ (④)의 費目別指數 및 ⑤담배 ⑥學校給食費 (⑦) 自衛隊現物給与를 移動加重 値로 綜合化한다. 그때 (⑥)에 관해서는 農村物價 指數「雜品」 담배 ⑦에 관 해서는 消費者物價指數 「食 料」 ⑧에 관해서는 都売物 價指數「食料品」을 使用</p>	<p>(⑭)飲料, (⑮)담배 등 中分類 및 (⑯)學校給食 費, (⑰)自衛隊現物給与로 나누어 각각 移動加重値를 써서 綜合한다. 그때 價格에 관해서는 (①)~(⑮)는 消費者物 價指數의 各各의 項目(⑯)은 消費 者物價指數「食料」(⑰)은 都賣物價 指數「食料品」을 使用하여 加重値中 (①)~(⑮)에 관하여는 家計 調査로 부터 算出한다.</p>
	<p>飲食費綜合=以上의 deflator로 農家, 非農家別 實質額 의 合計를 求하여 이를 근거로 名目額을 除하여 算出</p>	
(2)被服費	<p>(①)被服費, (②)自衛隊 現物給与로 나누어, 固定加 重値로 綜合化한다. 物價指數에는, (①)은 農 村物價指數「被服」, (②) 는 都売物價指數「衣類」를</p>	<p>(①)非農家の 경우를 分 類하면 非農家 { 被服費 { 身辺品指數 (d) 被服費 指數 (b) { 衣料指數 (e) deflator 自衛隊現物給与指 (a) 數(c)로 되어있다.</p>

5 大費目	農 家 部 門	非 農 家 部 門
	使用	<p>(②) (b) 의 算出에는 (d) , (e) 를 家計調査를 근거로 移動加重値를 使用하고 物價指數는 消費者物價指數 「身辺品」 (d) 「衣料」 (e) 를 使用한다 .</p> <p>(③) (b) , (c) 의 綜合化는 農家の 경우에 準한다 .</p>
	被服費綜合=飲食費의 경우에 準한다 .	
(3) 光熱費	農村物價指數「光熱」을 使用의 을 使用	消費者 物價指數「光熱」을 使用
	光熱費綜合=飲食費의 경우에 準한다 .	
(4) 住居費	<p>(①) 地代家賃 , (②) 設備修繕 , (③) 家具什器로 나누어 各 項目의 消費者物價指數 「小都市 町村」에서 實質化하여 그 合計로 名目額 合計를 除하여 算出</p>	<p>(①) 地代家賃 , (②) 設備修繕 , (③) 家具什器 , (④) 水道料로 나누어 各 項目의 綜合化에 關係서는 農家の 경우에 準한다 .</p> <p>그때 物價指數는 , 各 項目의 消費者 物價指數를 使用한다 .</p>

5 大費目	農 家 部 門	非 農 家 部 門
	住居費總合=飲食費 場合 準	
(5)雜 貨	<p>(①) 雜費의 項目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 <p>農 家 雜 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家雜費 (家計調査分)(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健医療(f) — 交通通信(g) — 教育 (h) — 教養娛樂(i) (a) 医療現物給与(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融機關 歸屬 — 서어비스(d) — 其他 現物給与(e) <p>(②) (b) 是 Pasche 式으로 計算하지만 加重値는 農家經濟調査 또는 農村水産統計月報 로 부터 求하고 物價指數는 各項目別로 農村物價指數를 使用한다 .</p> <p>(③) (c) , (d) , (e) 是 각각의 各目値를 農村物價指數의 「保健医療」(e) , 「總合」(d) , 教育(e)로 實質</p>	<p>(①) 以下의 作成牛順中, 非農家雜費(家計調査分)는 項目數에 相違가 있지만, 牛順은 農家의 경우에 準한다 . 또 加重値는 家計調査報告 (f) ~ (k) 의 項目이 表示하는 消費者 物價指數를 使用한다 .</p> <p>非 農 家 雜 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家計調査分)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健医療(f) — 理容衞行(g) — 交通通信(h) — 教育 (i) — 文房具 (j) — 教養娛樂(k) (A) 歸屬서어비스(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其他 現物給与(e) <p>(②) , (c) , (d) , (e) 에 關해서는 消費者物價指數의 「保健医療」(c) 「總合」(d) , 「教育」</p>

5大費目	農家部門	非農家部門
	<p>화한다. (a)의 綜合化에 관해서는 (b)~(e)의 各目値의 合計를 實質値의 合計로 除함으로써 求하여진다.</p>	<p>(e)를 使用하여 實質化한다. ③綜合化에 있어서 는 (b)-(e)의 實質額合計로 名目値의 合計額을 除함으로써 求한다.</p>
	<p>雜費綜合=飲食費의 경우에 準한다.</p>	
<p>(6) 家計消費支出綜合</p> <p>以上の deflator에 의거 算出된 實質額 合計로 名目値의 合計를 除함으로써, 家計消費支出의 deflator를 求한다.</p>		

또 住居費의 取扱方法, 理論上 未解決되고 있는 金融의 歸屬서비스 또 自衛隊의 現物給付등의 支出項目의 性質에 依存하는 것등은 家計消費支出의 deflator 作成에 關한 項目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deflator는 支出額等의 經濟變量도 同時에 고려할 必要가 있지만 이런 뜻에서 現行國民所得統計에 있어서 家計支出額에 關하여 記述코자 한다.

家計支出額의 系列로써는

(i) 前述한 deflator에 對應한 5大費目의 系列

(ii) 舊 SNA의 系列에 準하는 12個品目의 系列

(iii) 耐久財 : 非耐久財 서-어비스形態別의 系列

의 3가지 系列이 存在한다.

7 圖 Commodity flow - 法에 의한 消費支出의 推計過程

①	製造工場出荷額	①	通関輸出額
②	拡大率 ※	②	商社마진率
③	輸出額 (輸出諸手数料等控除를 마친 것)	③	輸出額 ①' × (1 - ②')
④	国内産分国内向出荷額 ① × ② - ③	④	運賃率
⑤	都売業在庫変動率	⑤	運賃 ③' × ④'
⑥	都売業販売原価 ④ × (1 - ⑤)	⑥	輸出原価 ③' - ⑤'
⑦	都売運賃率	⑦	特需額
⑧	都売運賃 ⑥ × ⑦	⑧	生産価格表示의 輸出總額 ⑤' + ⑦' = ③
⑨	都売마진率		
⑩	都売마진 ⑥ × ⑨		
⑪	都売業国内産分販売額 ⑥ + ⑧ + ⑩		
⑫	輸入額 (輸入諸 等加算済)		
⑬	都売業販売總額 ⑪ + ⑫		
⑭	都売業에서 小売業에 대한 販売比率		
⑮	" 消費者에 "		
⑯	" 工場・官公庁에 대한 "		
⑰	小売業購入額 ⑬ × ⑮		
⑱	小売業在庫変動率		
⑲	小売業販売原価 ⑰ × (1 - ⑱)		
⑳	小売運賃率		
㉑	小売運賃 ⑱ × ⑲		
㉒	小売마진率		
㉓	小売마진 ⑱ × ㉒		
㉔	小売業販売總額		
㉕	小売業販売額의 消費者에 대한 販売比率		
㉖	小売業販売額의 消費者에 대한 販売額		
㉗	⑲ × ㉖		
㉘	都売業販売總額의		
㉙	⑬ × ㉘		
㉚	耐久消費財消費額 ㉙ +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註) ※ 拡大率은 工業統計表등의 確定報告資料가 未発表된 時点에서 生産動態統計를 使用하여 暫定推計를 行한 경우에 使用하는 比率 (確定報告資料 ÷ 暫定資料의 最近 3年次의 平均) 이다. 따라서 確定報告資料를 使用하는 경우는 拡大率은 1이다.

出處: 「新規 統計系列에 關한 調査報告書」 (三菱經濟研究所) 1970年 3月

이들 3系列은 각각 目的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위에 現在의 基礎統計의 狀況 및 分析目的에서 判斷하면 合理的인 系列이라는것을 알 수 있다.

系列(i)은 住居費를 除外하면 人的推計를 基調로 하여 一次統計의 農家經濟 調査, 農村物價指數 家計調査報告 消費者 物價指數와 調整시킨 系列이다.

이는 現在의 基礎資料 推計方法 推計時間으로 보아 가장 精度가 높은 系列이 될 것이다.

따라서 deflator도 이 系列에만 作成되고 있으며 또 作成이 可能하다. 그리고 住居費에서는 Commodity flow approach (財貨流通 追跡法)이 人的法과 調整되어 使用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家計消費支出의 推計에는 크게 支出主体(그 예로는 家計)에서 直接的으로 支出額을 推計하는 人的法과 第1圖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商品의 流通段階에서의 margin을 거쳐 家計에 어느程度 販賣되었는가하는 商品(Commodities)의 flow(흐름)를 포착하여 行하여 Commodity flow法(略稱 Commo法)이 있다.

兩推計方法은 各其 長短점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産業聯関과 國民所得의 總合이라고 할때는 (이는 國際的인 動向도 있지만) 概念的으로는 Commo法쪽이 바람직하며 또 基礎統計도 工業統計 貿易統計 商業統計等 全數調査에 가까운 統計를 基礎로 하는 點에서 「만일 이들 基礎統計의 対応이 明白하다면」 程度가 높은 推計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實際로는 이들 諸統計의 対応 流通 margin의 精度 商品의 流通段階에서의 回轉率 家計에의 配分係數等 몇 가지의 難問題를 지니고 있으며 게다가 이들의 bias (偏倚性)는 推計手順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消費에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되는 欠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人的法の 경우에는 支出面에서 直接 推計한다고 하는 점에서 「消費支出에 관한 限은」 Commo 法の 難點을 除去하고 있다.

그러나 人的法の 경우에는 基礎統計가 標本調査에 의한것으로 調査設計와 実査에 있어 bias는 없는가하는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新 SNA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各個別計定의 統合이라고 하는 長期的 觀点에서는 Commo 法이 바람직하고 消費의 實態反映이라고 하는 点에서는 人的法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Commo 法の 경우에는 商品의 確定에 力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相對關係에 있는 價格도 數量의 確定方法에 의존한다.

다음으로 (ii) (iii)의 系列을 보기로 한다.

(ii)의 系列의 文献에 의하면 農家經濟調査(農家生計費統計), 家計調査報告의 個個의 品目を 12個의 費目에 관련시킨 것이 (ii)의 系列이며 形態別로 相關시킨것이 (iii)의 系列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推計方法은 基本的으로는 人的法에 屬한다.

(i)과 (ii)와의 相異點은 費目を 取하는 方法의 相異에 기인한다. (이 意味에서는 多費目消費函數에 있어 重要함)

그러나 費目的 選定에 관하여는 (ii)의 쪽이 國際比較의 點에서
도 훨씬 우수(舊 SNA 分類에 準하여볼때)함에도 不拘하고 主系
列으로써 (i)을 採用하고 있는 理由는 基礎統計의 費目分類에 의
존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iii)의 系列은 經濟 '모델'의 構築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今後
重要性을 더하여가는 系列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序論에서 敘述한바와 같이 消費函數의 動學化에 있어서 特히 耐
久消費財의 意義는 컸었다.

이른바 macro '모델'에 있어서도 美國에서는 '부록킹스모델'
'와 -튼모델'等 耐久消費財를 別途로 表示하는 경우가 많고 日本에
있어서도 master model 에서는 特別히 나타내고 있으며 今後 漸
次 形態別 情報가 必要하게 되고 있으며 (다만 現在의 상태로는
價格 stock 等의 情報를 얻기어렵고 使用하기 어려운 面도 있음)

推計上의 觀點으로부터는 一次統計의 品目的 形態別關聯이 不明하
지만 商品의 形態는 大略 그 物理的性質에 의존하는 것으로 基本
的으로는 Commo 法の 擴充方向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新 SNA 에서는 後述하는바와같이 費目-形態(耐久性)가 複合한
形態로 處理되고 있으므로 (ii) (iii)에 관한 一般論은 그때 論
하기로 한다.

2. 新旧 SNA 에 있어서의 家計消費支出

家計消費支出에는 (i) 産業關聯表와 對應한 商品別消費와 (ii)

日本の 国民所得統計에서 볼 수 있는 目的別消費가 存在한다 .

本節에서는 (ii)에 있다 . 即 旧 S N A로부터 改訂案을 거쳐 新 S N A에 이르는 過程으로 消費需要가 어떠한 方向에서 整備되고 있는가를 보려는 것이다 .

新 S N A에 있어서는 産業聯關과 国民所得과의 統合 經濟主体中 家計와 關聯되는 「民間非營利団体」의 特別掲載의 拡大 또는 새로이 經濟分析에 有用한 情報提供이라고 하는 觀點도 있어 整理하면서 展開하여가기로 한다 .

첫째 産業聯關과의 關係에서는 産業聯關表本來의 「商品×商品」에서 「商品×産業」과 「産業×商品」과 交差 形式으로 變換되어 이것과 家計消費支出과의 列과의 交差部分에 政府서어비스와 民間非營利団体の 서어비스(兩表를 합쳐서 公共서어비스가 된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있다 .

即 從來의 産業聯關表에서는 公務를 비롯한 各種의 公共서어비스가 商品的으로 處理되어왔지만 新 S N A에서는 새로이 「活動計定」을 導入하여 이를 商品으로부터 分離하여 「目的別 消費支出」= 「商品支出」+ 「公共서어비스에의 支出」로 하고 있다 .

이러한 分離의 妥當性은 今後의 分析如何에 의하지만 적어도 消費支出의 側面에서는 商品의 範圍를 限定한 것으로 된다 .

둘째 移轉支出과의 關係이다 .

이는 家計의 意思決定에 관한 問題이며 예컨대 一般政府와의 關係를 例示하면 第3表와 같이 된다 .

即 一般政府의 財貨와 서어비스의 購入은 原則的으로는 旧 S N A

와 같이 財貨와 서어비스의 受取와 支払에는 明確한 対応이 存在하고 또한 自由意思에 근거한것에 限하고 있지만 그 格을 매기는 것은 政府에 支払하는 受業料, 医療負擔金과 같이 새로이 移轉으로부터 消費支出에 다시 짜여진 去來가 存在한다.

對民間非營利團體와의 去來에 있어서도 原則的으로는 一般政府의 경우에 準하고 있다.

이러한 計定設計에 수반하는 變更點(上記의 諸點外에 金融의 歸屬去來도 있으나)을 除外하면 新SNA의 커다란 特徵은 UN改訂案 E/CN.3.56에서 個別的으로 列擧된바와 같이 크지는

- ① 財貨와 서어비스에 대한 支出目的의 明確性
- ② 서어비스 非耐久財, 半耐久財, 耐久財의 区分
- ③ 家計의 目的別 分類와 一般政府 民間非營利團體의 目的別 分類와의 対応性의 3가지 點을 들 수 있다.

이들 3가지 點이 新SNA라고 하는 實質的 活用の 側面에서 어떠한 長點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手段的 活用の 視點에서 어떠한 問題를 日本에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려할 必要가 있다.

後者에 관해서는 家計調査報告를 例로 들어 後述하기로 한다. 우선 實質的 活用の 側面에서는 新SNA가 明示하고 있는바와같이 消費需要의 分析이다.

消費需要의 分析에도 몇가지의 局面이 있다.

- 即
- a. 消費函數의 動學化
 - b. utility separability
 - c. 換價指數

(第3表) 家計와 一般政府와의 去來

	舊 S N A	新 S N A
(A) 財貨 서 서비스의 購入(最終消費가 相異한 部門間的 配分)의 原則	現實적으로 購入이 있었던 部門의 支出로써 財貨 서 서비스의 購入을 表記한다.	原則으로써는 舊 S N A 와 同一하다. 다만 購入者의 決定에 關하여 自由選擇을 原則으로 하지만 그때 舊 S N A 와 若干의 飛離가 생긴다.
(B) 具体例(1) (①) 博物館의 入場料, 郵便엽서 等 Passport ② 裁判費用 ③ 政府에 支出하는 授業料 醫療負擔金	①에 關하여는 家計의 消費支出 ②에 關하여는 家計로부터 政府에 對한 移轉 ③에 關해서는 家計로부터 政府에 對한 移轉	①은 家計의 消費支出 ②는 經常移轉 ③에 關해서는 家計의 消費支出
(C) 具体例(2) 自動車稅	舊 S N A 에서는 主로 歲入目的을 위한 賦課로 보고 間接稅로써 處理. (但, 舊 S N A 에서는	自動車의 家計에 의한 使用은 生産的 活動으로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直接稅로 取扱하고 있다.

	舊 S N A	新 S N A
	生産活動은 政府에서 間接稅를 課하는 對 象으로 되어있다 .	

(第4表) 新SNA와 舊SNA의 費目分類

코-드	項 目 名	코-드	項 目 名
1	食料, 飲料, 담배 (N.D)	1	食 料
1.1	食料		
1.1.1	빵 밀 穀類	1 (a)	빵 밀穀類
1.1.2	肉 類	1 (b)	鳥獸肉類
1.1.3	魚 類	1 (c)	魚介類
1.1.4	밀크, 치즈, 계란	1 (d)	밀크, 치즈 및 鳥卵
1.1.5	油 脂	1 (e)	油 脂
1.1.6	果実 및 野菜 (但, 감 자 및 이와 類似한 根 菜類는 除外)	1 (f) *	果実 및 野菜
1.1.7	감자 이와 類似한 根 菜		
1.1.8	砂糖	1 (g) *	糖類 貯藏食品 및 菓 子類

코 - 드	項 目 名	코 - 드	項 目 名
1.1.9	커피, 茶, 코코아	1 (h) *	커피, 茶, 코코아等
1.1.10	其他 食品 (통조림 및 菓子類를 包含한다)	1 (i)	其他의 食料
1.2	非알콜 飲料	2 (a)	非알콜 - 食料
1.3	알콜 飲料	2 (b)	알콜 飲料
1.4	담배	3	담배
2	衣服 및 신발류 (S.D)		
2.1	신발류 以外의 衣服 (修理를 包含)	4 (b)	신발류 以外의 衣類
2.1.1	신발류 以外의 衣服		
2.1.2	신발류 以外의 衣服에 대한 修理		
2.2	신발류 (修理를 包含 한다)	4 (a)	신발류
2.2.1	신발류		
2.2.2	신발류의 修理		
3	總家賃 및 光熱費		
3.1.	總家賃 및 水道料	5	家賃 및 請負擔金
3.1.1	總家賃 (S)		
3.1.2	水道料 (N.D)		
3.2	光熱費 (N.D)	6	光熱費
3.2.1	電 氣		

코-드	項 目 名	코-드	項 目 名
3.2.2	개 스		
3.2.3	液体燃料		
3.2.4	其他의 燃料		
4	家具, 裝備品, 家庭器具 및 家計雜費		
4.1	家具, 裝備品, 주단, 其 他의 갈개修理費	7(a) *	家具 및 備品
4.1.1	家具, 裝備品, 주단, 其 他의 갈개		
4.1.2	4.1.1의 修理		
4.2	家庭用纖維製品, 기타의 備品 및 修理費(S.D)	7(a) *	家具 및 備品
4.2.1	家庭用纖維製品, 기타의 備品		
4.2.2	4.2.1의 修理		
4.3	暖房具 및 料理器具, 冷藏庫, 洗濯機 및 類 似한 主要器具(付屬品 및 修理를 包含함)(D)	7(b) *	家庭用具
4.3.1	暖房具 및 料理器具, 冷藏庫, 洗濯機 및 類 似한 主要器具(付屬品 을包含)		

코-드	項 目 名	코-드	項 目 名
4.3.2	4.3.1의 修理		
4.4	器具類 食器類 家庭用 器具	7(b)*	家庭用具
4.4.1	器具類 食器類 家庭用 器具		
4.4.2	4.4.1에 對한 修 理		
4.5	家事서비스以外의 家 計雜費		
4.5.1	家庭用非耐久財 (N.D)	8(b)*	성냥 Cleaning用品 紙製品 電球等의 家屋 用非耐久財 및 家庭用 耐久財의 修理
4.5.2	家事서비스以外의 家計 서비스 (S)	8(c)	家計에 對한 서비스
4.6	家事서비스 (S)	8(a)	家事서비스
5	医療, 保健費	9(b)	保健費
5.1	医療, 醫藥製品 (N.D)		
5.2	治療用器具入 및 機器(D)		
5.3	醫師, 看護婦 및 關聯 治療師의 서비스(S)		

코-드	項 目 名	코-드	項 目 名
5.4	病院에 대한 諸支払金 (a) (S)		
5.5	復害保險料 및 健康保 險料		
<p>註 (a) 料理店, 커피店, 旅館, 病院, 기타의 醫療施設의 경우 食料 品, 飲料, 담배 등의 支出은 別途로 區別하여 計上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종류의 支出이 教育서비스의 支出 에 包含되는 場合도 同一하다.</p>			
6	輸送 및 通信		
6.1	個人輸送機器 (D)	10 (a)	個人輸送機器
6.2	個人輸送機器關係雜費	10 (b)	個人輸送機器의 運營費
6.2.1	타이야, 추-부, 部品 및 付屬品修理代 (S·D)		
6.2.2	개솔린, Oil, 潤滑油等 (N·D)		
6.2.3	기타의 支払 (S)		
6.3	輸送料 (S)	10 (c)	運 賃
6.4	通 信 (S)	10 (d)	通信料
7	recreation, 娛樂, 教 育 및 文化서비스		
7.1	機器 및 付屬品 (修理 包含)		

코-드	項 目 名	코-드	項 目 名
7.1.1	라디오, TV셋트 및 蓄音機(D)	7(b)*	家庭用具
7.1.2	写真機器, 樂品 및 기 타 耐久財(D)	11(d)*	기타의 recreation
7.1.3	기타의 recreation 用 品(S.D)	11(d)*	기타의 recreation
7.1.4	recreation 用品의 部 品 및 修理(S.D)	8(b)*	非耐久家計用品
7.2	娛樂 recreation 및 文化的인 서어비스(S)	11(a) 11(d)*	娛 樂 기타의 recreation
7.3	書籍, 新聞 및 雜誌 (N.D)	11(c)*	書籍, 新聞 및 雜誌
7.4	教 育(S)	12(b)	教育 및 研究
註) (a)에 관하여는 (5)의 醫療保健費의 項과 同一함.			
8	기타의 財貨서어비스		
8.1	化粧서어비스 및 化粧 品	9(a)	化粧費
8.1.1	理髮店, 美容院等の 서 어비스料(S)		
8.1.2	個人的인 裝身用具(S. D)		

코-드	項 目 名	코-드	項 目 名
8.2	기타 分類되지않는 기 타 財貨		
8.2.1	寶石 손목時計, 반지및 보석 (D)	4 (c) *	化身品
8.2.2	기타 個人的 所有物 (S . D)	4 (c) *	기타의 身辺品
		7 (b) *	家庭用具
8.2.3	筆記用機器 및 製圖用 設備 (S . D)	11 (c)	書籍, 新聞 및 文房具
8.3	料理店, 커피店 및 旅館에서의 支出 (s) (a)	11 (b)	旅館, 料理店 및 茶房 의 서비스
8.3.1	料理店, 커피店에서의 支出		
8.3.2	旅館 및 類似한 宿泊 業所에서의 서비스		
8.4	一切의 旅行 (s) (b)		
8.5	기타의 金融서비스 (s)	1 (a)	金融
8.6	기타의 서비스 (s)	12 (c) *	기 타

(註 (a)에 관하여는 医療保健費 (5의 項)를 参照.

(b)에 관하여는 交通, 宿泊, 食料 및 기타의 項目에 대한 總支
출의 分割에 關한 資料가 있으면 그것을 扞하는것이 좋을것이
다.

(註 1) 旧 SNA의 코드중 '코드에 있어서 *印은 対応이 없는 費目を 나타내고 있다.

(註 2) 表中 新 SNA의 (註)는 簡略化하여 表記하였다.

(註 3) 新 SNA의 形態別 記号는

S = 서비스, ND = 非耐久財, SD = 半耐久財, D = 耐久財로 되어있다.

d. 國際比較

e. 行動主義로부터의 接近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중 e는 이른바 經濟資料(即 社會計定에서 規定되고 있는 變量)의 범위를 넘는것이며 一応度外視하면 a~d의 4分野이다.

新 SNA는 經濟資料整備의 guideline으로서의 意味를 갖지만 만일 各國의 体系가 新 SNA에 따른다는것을 前提로 하면 d의 要件도 여기서는 充足하게 된다.

따라서 a~c의 3分野가 新 SNA에서 分析 가능한가 어떤가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a~b의 分野는 選好函數 乃至는 消費函數의 計測에 관하여 同時에 고려하여들 課題이다.

現在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하여도 各種의 假說이 存在하여 그 確定은 未解決인체 있다.

I章에서 敘述한 R. Stone의 消費函數와 新 SNA는 相當한 程度로 一致性이 있으나 다른 假說에도 新 SNA의 分類意圖는 旧 SNA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費目뿐만 아니라 (特徵①)形態別 情報(特徵②)를 짜넣은 것은 a의 分析에 있어 非常히 有益한 情報가 된다.(作成上 問題點은 後述한다.)

新SNA의 消費支出의 分類意圖는 우수하다. 할지라도 具體的인 例示의 水準에서 그것이 適當한가 어떤가는 別個의 問題이다.

前述한 新SNA의 特徵①을 살펴보기 위하여 新旧SNA의 費目을 筆者나름대로 整理한것이 第4表이다.

以下 新旧SNA, 家計調查報告의 対応으로부터 新SNA의 特徵에 관한 筆者의 견해를 記述코자 한다.

第4表에서 알수있는 바와같이 特徵①과 特徵②는 Converter의 形式을 取하고 있으며 이 點에서는 問題는 없으나 重點을 두는 方向은 '코-드' 1-6이 ①에 있고 7과 8은 ②에 있다.

예컨대 '코-드' 2는 旧SNA '코-드' 4로부터 4(c)를 除外한 範圍로 되어있으나 이는 4(c) 自体가 雜種的 性格을 갖고 있으며 日常적으로 몸에 지나는 것만으로 限定하고 있다.

한편 形態別 觀点에서보면 明確히 서어비스(S)를 包含한다고 생각되는 「신발류 以外의 衣服에 대한 修理」(2.1.2), 「신발류의 修理」(2.1.2), 「신발류의 修理」(2.2.2) 등을 一括하여 半耐久財(SD)로 處理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코-드' 分割時 大分類의 支出目的이 優先하여 加重值가 높은 項目에 相當하는 部分만에 관하여서만 耐久性을 考慮한 結果이다.

耐久財의 重要部分을 占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新SNA '코-드' 4에 관하여도 같다.

여기서는 2行 '코-드' 以下에 관하여 形態에 差異가 表示되어 있지만 目的別 支出의 觀點에서도 不自然하지는 않다.

(예컨대 4.1과 4.3을 比較하여 보면 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新SNA '코-드' 7을 例로 들면 여기서는 比較的 形態別로는 注意를 하고 있는 製圖, 文房具의 取扱等 目的別로는 整理하기 어려운 品目이 存在한다.

또 新SNA에서는 一貫하여 「修理」의 處理가 徹底히 되어있지 않고 形態別 觀點에서는 問題를 남기고 있다.

다음으로 特徵③의 結果는 費目分類에도 反映되어 「医療, 保健費」는 旧SNA에 있어서 中分類에서 大分類에 바꾸어 짜서 넣었다.

3가지 去來主体의 同的別 分類로 부터 그 支出去來를 對應시키면 第5表와 같이 된다.

그리하여 그 結果 이러한 家庭以外에서의 支出의 取扱이 新旧SNA에서는 크게 다르게 된다. (例컨대 8.3)

即 旧SNA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支出도 食料 飲料 等等으로 分類되어 그 以外의 支出만이 計上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新

SNA에서는 우선 目的別로 分類하여 그것을 食料 飲料 等等의 內訳으로 表示하는 것이 要求되고 있어 處理方法이 크게 다르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新SNA가 表示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一応은 特徵 ①-③이 導入되어 現在 展開되고 있는 多費目 消費函數의 分析 (특히 特徵①과 ②) 및 公共消費의 分析 (특히 特徵③의 導入)에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거꾸로 이러한 「多目的 主義」의 分類方式에는 어느 것을 優先하여 整理할 것인가 하는 別個의 問題點을 發生시키고 있는 것이다.

3. 新 SNA 를 base로 한 deflator의 作成

1節에서 叙述한 바와 같이 現行國民所得統計의 家計消費支出의 主系列을 人的法으로 base로 하여 이에 対応하여 消費者物價指數, 家計調査報告(모두 非農家에 限定한것)와의 關係가 重要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新 SNA에 移行한 뒤에도 人的法이 採用되면 (Commo法의 現狀을 考慮하면 그 可能性은 強하다고 생각되지만)

家計調査報告와 新 SNA와의 対応關係를 明白히 해 두는 것은 重要한 意義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第5表) 3去来主体의 目的別 分類의 対応性

家 計	一 般 政 府	民 間 非 營 利 団 体
医療, 保健費, 5. 4 病院에 대 한 諸文攄金 recreation, 娛樂 教育 및 文化的 서어비스 7. 4 教 育 8. 기타의 財貨서어 비스 8. 3 restaur- ant 茶房 및 호텔에 서의 支出	4. 保 健 4. 2 病院 및 診療所 3. 教 育 3. 2 学校, 大学 및 기타의 教育施設 3. 3 補助的 서어비스 7. 1 recreation 및 關聯된 文化的 서어 비스	3. 医療 및 기타 의 保健서어비 스 2. 教 育 5. recreation 및 關聯된 文 化的 서어비스

本節에서는 家計調査報告와 新 SNA를 品目段階에서 対応시켜 1節에 叙述한 implicit deflator 方式으로 新 SNA의 分類에 맞는 費目別 implicit deflator 를 試驗적으로 作成해 보았다.

이는 一次統計를 근거로 하여 社会計定の 統計(支出額 및 deflator)를 作成하는 경우의 統計間的 非難을 생각한다는 一般的目的과 만일 新 SNA에 移行한 경우 基礎統計에 該當하는 家計調査報告, 消費者物価指數에서 어떤 點을 考慮하여 두어야 할 것인 가 라고 하는 特殊한 目的을 지니고 있다.

帰屬賃貸料, 移転去來의 取扱法은 前者의 例에서 볼 수 있고 (이런 意味에서는 一次統計의 問題點은 아니다) 費目에 있어서 形態別觀光은 後者の 例가 된다.

여기서는 新 SNA와 家計調査와의 対応으로 특히 다음의 2가지 點을 指摘하고자 한다.

첫째는 形態別 分類點이다.

形態別 情報가 여러가지 意味에서 重要하게 되고 있으며 家計調査報告의 品目別分類, 消費者物価指數의 特殊分類에서 取扱하여야 될 項目의 하나이다.

특히 이 問題는 各種의 「其他項目」의 點檢과 같이 重要한 問題이다.

둘째는 人旧 SNA로부터 新 SNA로 轉換함에 따라 특히 公共消費의 分析의 意味에서 教育等 몇가지 費目の 把握方法(3章)이 다르게 되었지만 이는 基礎統計로부터 再構成할 必要가 있다.

旧 SNA의 경우에는 現在의 「品目分類」의 取扱方式에 가깝지만

新 SNA의 경우에는 費目과 品目間의 mini-converter를 必要로 하는 項目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것이든 試作的인 意味에서 新 SNA의 費目分類에 다시 添어 implicit deflator를 作成하여 보았다.

第 6表가 그 結果表이다.

即 第 6表에는 新 SNA의 分類에 맞추어 家計調査報告의 加重值를 取하였다.

作成順序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① 家計調査報告의 品目分類를 新 SNA의 例示品을 参照하여 다시 撰다.

그때 「其他」項目의 配分은 關聯項目에 同一한 加重值로써 配分했다.

② 物價指數에 관하여는 1965年을 基準으로 하고 比較時點은 1970年으로 했다.

③ 計算式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X = \sum_j \frac{\Pi_{ij}^t}{p_{ij}^t / p_{ij}^0}$$

단, Π 는 名目額, X 는 實質額

i 와 j 의 關係는 $j \in i$

0 과 t 는 基準時와 比較時임.

따라서 i 類別의 deflator는

〈第 6 表〉 新 SNA 分類에 근거한 Implicit deflator의
結果表 (試作)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備 考
코 - 드	deflator	코 - 드	deflator	코 - 드	deflator	
1	1.294	1.1	1.312			(deflator 는 全部 10.0 倍하여 써주시기 바람)
				1.1.1	1.299	
				1.1.2	1.304	
				1.1.3	1.555	
				1.1.4	1.156	
				1.1.5	0.967	
				1.1.6	1.353	
				1.1.7	1.795	
				1.1.8	1.078	
				1.1.9	1.353	
		1.1.10	1.169			
		1.2	1.061			
		1.3	1.135			
		1.4	1.188			
2	1.296	2.1	1.301			
				2.2	1.256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備 考
코-드	deflator	코-드	deflator	코-드	deflator	
				2.2.1	1.254	
				2.2.2	1.310	
3	1.206					
		3.1	1.431			
				3.1.1	1.460	
				3.1.2	1.201	
		3.2	0.999			
				3.2.1	1.003	
				3.2.2	0.979	
				3.2.3	0.905	
				3.2.4	1.187	
4	1.125					
		4.1	1.154			
		4.2	1.187			
		4.3	1.034			
		4.4	1.202			
		4.5	1.119			
				4.5.1	1.093	
				4.5.2	1.158	
		4.6	1.437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備 考
코 - 드	deflator	코 - 드	deflator	코 - 드	deflator	
5	1.150	5.1	1.157			
		5.2	1.113			
		5.3	1.150			
		5.4	1.150			
6	1.203	6.1	0.941			
		6.2	1.006			
				6.2.1	0.932	
				6.2.2	1.068	
				6.2.3	1.004	
				6.3	1.417	
				6.4	1.463	
7	1.229	7.1	1.020			
				7.1.1	0.924	
				7.1.2	1.154	
				7.1.3	1.290	
				7.1.4	1.019	
		7.2	1.169			

外
2
計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備 考
코-트 deflator	코-트	deflator	코-트	deflator		
8	1.317	7.3	1.493			
		7.4	1.380			
		8.1	1.269			
				8.1.1	1.489	
				8.1.2	1.071	
		8.2	1.236			
				8.2.1	1.181	
				8.2.2	1.276	
				8.2.3	1.191	
		8.3	1.380			

	名 目	実 質	deflator
D	54891	54313	1.011
S D	127409	106109	1.201
N D	400369	319122	1.255
S	175255	128798	1.361

$$D_i = \frac{\sum_j E_{ij}^t}{X_i^t}$$

로 算出하였다.

다음으로 対応關係에서 特別 問題가 되는 項目을 表示하면 第7表와 같이 된다.

이의 處理方式에는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特別 修理는 無視했다) 試作的 段階이며 本格的으로 行하기 위하여는 個別票의 作成 段階에서 出発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러한 大体的分割 및 概念上 除外한 品目は 第8表에 一括하여 表示하였다.

그 結果 特別 影響을 미친 項目은 新 SNA '코-드' 8 이다.

〔参 考 文 献〕

- (1) 高木新太郎「社会合計定에 있어서의 物価統計의 位置」(總理府統計局)의 「物価關聯情報体制」 1972年3月)
- (2) 「解説： deflator의 推計方法」
(季刊 国民經濟計算 No 25)
- (3) 總理府統計局 「家計調査 参考資料, 第23号」 1972年 3月
- (4) 經濟企劃庁編 「国民所得年報, 1972年版」
- (5) 經濟企劃庁編 「1965年基準, 改訂 国民所得統計 (推計資料集)」
1970年
- (6) 「自動車 需要予測 '모델'에 관한 研究」
(運輸 經濟研究中心) 1970年
- (7) 「家計調査, 収支項目分表 内容例示 便覧」
- (8) A System of Revised National Account UN, 1968.
(總理府 統計局)

〈第7表〉 新 SNA 와 家計調查報告의 対応難이 어려운 重要한 品目處理

新 SNA 別紙의 關聯項目 FIES (1969年)

	項目名	FIES 內容 → 新 SNA 에 대한 対応處理
1.1.1	빵 및 穀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 加工賃 (S) 目的別基準에서 1.1.1. 에 • 289 其他 乾物 (N.D) 內容的으로는 多樣性이 많지만, 具體的으로는 1.1.1 라 1.1.6 에서 2 等分 • 335 스-푸의素 (ND) 이것은 1.1.1.0 에서 處理. 1.1.2, 1.1.6 은 無視 • 339 其他調味料 (ND) 이것도 1.1.1.0 에서 暫定的處理 本來는 1.1.2, 1.1.3, 1.1.4, 1.1.6, 1.1.10
1.1.2	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2 其他 통조림 (ND) 內容이 오면 1.1.6 이지만 一応은 價格과의 關係에서 1.1.2, 1.1.3, 1.1.6 에서 3 等分 • 318 튀김, 후라이 (ND) 內容的으로는 1.1.2, 1.1.3, 1.1.6 에서 3 等分

外
3
국

	項目名	FIES 内容 → 新 SNA 에 対応 处理
1.1.3	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X 그린 만두 (ND) 豚肉 鳥類 等 번거롭기 때문에 1.1.2 에서 处理 ◦ 319 其他의 調理品 (ND) 多様하여 处理가 困難, 一応은 1.1.1, 1.1.2, 1.1.3, 1.1.4, 1.1.6 에서 配分 (5 等分) ◦ 339 其他의 調味料 (ND) 前述한 바와 같이 1.1.10 에서 处理 ◦ 289 其他의 乾物 (ND) 前述한 바와 같이 1.1.1 과 1.1.6 에서 2 等分 ◦ 305 其他의 野菜조림 → 1.1.6 (ND) ◦ 318 튀김, 후라이 → 1.1.2, 1.1.3, 1.1.6 ◦ 31 X 그린 만두 → 1.1.2 ◦ 317 他調理食品 → 1.1.1 ~ 1.1.4, 1.1.6
1.1.6	果実 및 野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9 (ND) 一部 生 等 1.1.1 無視 1.1.6 处理 ◦ 289 他 乾物 (ND)

前
出

	項目名	FIES 内容 → 新 SNA에 對한 對應處理
1.1.7 1.1.10	감자「마니 옥크, 및 기타의 根 菜類」 其他의 食品	<p>前出 1.1.1, 1.1.6 平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5 他野菜 煮物 煮 (ND) <p>前出 1.1.3 無視</p> <p>1.1.6 處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2 其他 통조림 (ND) <p>1.1.2, 1.1.3, 1.1.6 에서 等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5 사라다 (ND) <p>여기서는 모든 '사라다'를 포함함으로써 分割이 必要하다 暫定的으로는 1.1.6, 1.1.7 에서 分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9 其他 菓子 (ND) <p>이分割도 困難하므로, 主体는 1.1.6 과 1.1.10 이지만, 一応 번거롭기 때문에 1.1.10 에서 處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9 其他의 根菜 <p>1.1.6 과 1.1.7 等에 分割하기 쉽다. 不可能하면 2等分하여 操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9 其他의 調味料 이는 問題를 包含하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1.1.10 에서 處理 • 330 마요네즈 <p>이것도 1.1.4 (乳卵의 加工), 1.1.5 (油脂),</p>

	項目名	FIES의 内容→新 SNA에 对한 对応处理
5.4) 特 7.4) 殊 8.3) 項 8.6) 目		<p>1.1.10 (調味料)와 關係되지만, 暫定的으로 1.1.10</p> <p>◦ 389 其他의 飲料 内容은 1.1.9와 1.2이다. 따라서 2等分 5.4.8.3</p> <p>390 麵類外食 } 8.6, 7.4와의 複合休, 391 其他 主食外食 } 中心은 8.3으로 생각 392 其他의 外食 } 되므로 8.3</p> <p>393 学校給食 → 7.4 (教育)에 包含된다. 또 이들의 項目은 全部, 非耐久財 (ND)로써 处理했다.</p>
1.2	非알콜飲料	<p>◦ 389기 其他의 飲料 前述한 바와같이 1.1.9와 1.2에서 2等分</p>
2.2.1	신발류 (SD)	<p>◦ 750 스포츠 用品 2.2와 2.1에서 2等分</p>
2.2.2	신발류修理(S)	<p>◦ 707 修理代 其他 一応 2.2.2에서 处理 (S)</p>
2.2.1	신발류外的 衣服 (SD)	<p>◦ 650~659 (양말, 손가방)類는 全部 2.1에 包含시켰다.</p> <p>◦ 670 毛絲 이것은 4.2.1 (SD)라외 区分이 問題로 되지 但 基本的으로 몸에 걸치는 것을 만든다라고 생각되므로 2.1에서 处理</p> <p>◦ 739 衣服 裝飾小品 (SD) 2.1과 8.2.2로 한다. (價格과의 關係</p>

	項目名	FIES 內容→新 SNA에 對한 對應處理
2.1.2	衣服의修理(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0 裝身具 (SD와 D로 分離) 2.1과 8.2.1에서 等分 ◦ 750 스포츠用品 (SD) 2.1과 2.2에서 2等分 <p>全部 無視했다. 修理를 包含하는 項目은 609 (其他 和服) 629 (其他 洋服), 649 (其他 內服), 659 (其他), 749 (其他 服飾品)</p>
8.2.1 特殊 項目	寶石, 손목時 計, 반지 기타 高價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0 時計 (D와 SD) 8.2.1과 8.2.2로 等 分한다. ◦ 740 裝身具 (SD와 D) 前述한 바와같이 2.1과 8.2.1에서 等分 ◦ 484 時計修理代 8.2.2에 包含
8.2.2	其他個人的 所有物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9 衣服裝飾 小品되는 것은 8.2.2로 생각 되지만 손수건이 價格에 使用되고 있으므로 8.2.2와 2.1로 等分 ◦ 749 其他 服飾品 嚴密히 생각하면 2.1.1, 2.1.2, 4.2.2, 4.5.1, 8.2.2, 8.2.3이지만 主된 것을 取하여 8.2.2.에서 處理
3.1.1	總家賃(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409 (家賃 地代) 別荘等의 取扱이 8.3과의 關係에서 問題 가 되지만 一応無視

	項目名	FIES 内容→新 SNA 에 對한 對應處理
4.1	家具 裝備 品, 휴대기, 칼개 및 이들의 修 理費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0 ~ 419 (設備修繕) 의 大部分 11 과 414 를 除外한 項目은, 形態가 다르지 만 여기에 一括 編入했다. 勿論 形態는 각각 다르게 處理했다. ◦ 841 清掃代 (S) 問題 項目으로써 4.5.2 에서도 處理可能 따라서 3.1.1 과 4.5.2 에서 等分 ◦ 原則적으로 修理費가 分離되지 않으므로 2 자리에서 處理 ◦ 489 其他의 家具 (D 또는 SD) 4.1, 4.2, 4.4.1, 4.5.2 와 重復된다. ◦ 暫定的으로는 4.1 과 4.4.1 로 2 等分 ◦ 保留項目 (其他의 關係로 뒤에 決定) 485 ' 스토브 ' 一応은 4.1 과 4.3 의 2 等分 509 其他의 雜用品 候補로써는 4.2, 4.4, 4.5 ◦ 919 其他의 教養娛樂 914 가 4.1 에 包含된다.

코 드	項 目 名	FIES 内容→新 SNA 에 대 한 对 应 处 理
4.2	家庭用纖維 製品 및 其他備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9 其他의 原糸類 4.2 와 4.5.1 로 2 等分 ◦ 919 , 509 는 保留
7.1.2 特殊項 目	写真機器 樂品, 船舶 其他 主要 耐久財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修理 (7.1.4) 는 無視 ◦ 911 其他의 樂品 7.1.2(D) 와 7.1.3(SD) 의 2 等分
4.3	暖房具, 料 理器具, 冷 藏庫, 洗濯 機 및 이 와 類似한 主要器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9 其他의 주방용품 4.3 과 4.4 와 중복되지만, 4.4 에서 处理 ◦ 459 其他의 電氣器具 電氣를 使用하는 商品도 包含하지만, 이른바 電動이라고 하는 觀念과 다르므로 一括하여 4.4 에서 处理. ◦ 479 其他의 電動器具 4.3.4.4, 7.3.1, 8.1.2 와 중복되지만 内容的으로는, 4.4 와 8.1.2 가 主된 것으로 생각되어 兩者의 2 等分

코-드	項目名	FIES 内容→新SNA 에 대한 対応処理
4.4	유리器具, 食器類 및 家庭用工具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7 家庭用工具 4.3, 4.4, 4.5.1이 주된 것은, 4.3 과 4.4이므로 兩者를 2等分한다. ◦ 485 스토-부, 電氣스토-부는 455 (電氣화로)에 包含되고 있으므로, 範圍를 扞하는 方式이 問題. 一応은 4.1 과 4.3 의 2等分으로 한다. ◦ 443 개스 器具 이것은 4.3 과 4.4 에 넣을수 있으나, 一応 4.3 ◦ 449 其他 주방용용품 이것도 4.3 과 4.4 에 넣을수 있으나, 一応 4.4 에 包含 ◦ 450 電球, 螢光등 電球는 4.5.1 (非耐久財), 螢光등은 4.4 (半耐久財)로 생각되므로 兩者의 2等分

코-드	項 目 名	FIES 内容→新 SNA 에 대한 対応处理
	라디오 , T.V 셋트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7 其他 <p>7.1.2 를 除外한 7.1 , 7.2 와 關聯되지만 中心은 7.1.1 과 7.1.4 이므로, 兩者의 2 等分</p>
4.5.1	家庭用非耐 久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9 其他의 電動器具 <p>前述한바와같이, 問題를 包含하지만, 暫定的으로 는 4.4 와 8.1.2 에서 处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5 化粧비누, 826 샴푸 ◦ 829 차약 <p>目的別 意圖 (個人이 아니고 (家庭共通使用) 와 耐久性의 關聯에서 4.5.1 에서 处理</p>
4.5.2	家事서어비 스以外的 家計서어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險關係의 取扱이, 어렵다. 特殊項目 ◦ 970 損害保險料
		<p>4.5.2 , 5.5 , 6.3 , 8.5 , } 特殊处理 로 4 等分</p>

코 드	項 目 名	FI ES 内容→新SNA에 대한 対応处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 火災保險料 4.5.2, 8.5로 2等分 ◦ 994 自動車損害保險料 이에 관해서는, 一応 6.2.3 과 6.3으로 分割 이것 以外에는 5.5의 關係에서 健康保險, 生保 問題가 存在한다.
5.1	医療, 医薬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4 其他의 衛生材料 修理를 無視하고, 5.1, 5.2로 2等分
6.1	個人輸送機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6 其他의 차량 6.1과 7.1.2로 2等分 ◦ 999 其他 6.2.1, 6.2.3, 6.3과 3等分
6.2.3	其他의 支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9 其他 6.2.3, 6.3, 7.2와 關聯되므로 3等分

코-드	項目的	FIES 内容→新SNA에 대한 対応处理
8.2.3 7.1.1 ~7.1.4	筆記用機器 製函用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9 其他의 文房具 <p>7.5.2 와 8.6에 關聯되지만, 7.1.2가 主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7.1.2에 处理 原則적으로 7.1.4를 無視하지만, 其他 2 차의 項目과 接할때만 分離한다.</p>

(第8表) 家計調査報告 品目으로 除外한 品目

家計調査報告		除外한 理由
코드	品目名	
509	其他雜用品	4.1.2, 4.2, 4.4, 4.5.1, 5.2, 8.2.3 과 多項目으로 關聯되고 또 상당한 加重值의 差가 있기 때문에 無視
919	其他의 教養娛樂品	4.1, 4.2, 7.1.2, 7.1.3, 7.1.4, 7.3 과 多數의 項目과 關聯한다. 따라서 509 와 類似한 理由가 있다.
920	其他의 教養娛樂費	이 部分은 旅行費(921)等 新SNA 外 이른바 Miniconverter 를 必要로 하는 項目으로 一括하여 無視했다.
950	遊學仕送金 其他 仕送金	이른바 移轉支出에 相當하는 項目이므로 概念 概念的 理由에서 無視했다.
960	負擔費	
970	損害保險料	保險의 取扱이 制度上의 理由에서 新SNA
971	火災保險料	와의 対応이 困難하기 때문에
980	増与金	移轉支出때문에
982	雜費	內容的으로는 対応시키는 데는 再檢討를 要한다.
983	交際費	
989	其他	

第3章 資料의 質的檢討方法

— 특히 品質變化의 處理에 關하여 —

1. 資料의 質的檢討에 關하여

物價關聯 情報體制가 蒐集된 統計資料의 性格에 關하여 充分한 檢討를 行하고 또 널리 統計資料의 作成·蒐集·加工·分析·提供·利用에 關한 研究를 行하는 것은 體制가 正確한 情報서비스를 行하기 위한 必要不可缺한 前提이다.

왜냐하면 만일 體制의 情報서비스가 利用者의 要求에 對하여 단순히 現在 갖추고 있는 統計系列中에서 機械的으로 適當한 系列을 뽑아 그 資料를 無批判的으로 提供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統計資料의 性格과 利用上의 限界에 對한 反省을 전혀 못하고 있는 資料利用을 促進하며 따라서 統計資料의 誤用을 增大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利用者에 對한 眞實하고도 正當한 情報서비스는 利用者의 要求를 正確히 理解하여 그 要求에 合致하는 統計系列을 뽑아 그 資料數字와 더불어 올바른 利用上 必要한 文字情報도 提供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爲하여는 事전에 體制自体가 蒐集한 統計資料의 性格에 關하여 充分한 檢討를 行하여 그 性格을 正確히 理解하여 資料利用上의 限界를 正當히 評價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統計資料의 性格을 檢討하는 方法으로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① 統計資料 作成方法에 관한 情報의 蒐集.

이의 作成方法은 統計調査의 方法과 調査結果를 加工하는 方法으로 나누어진다.

物價指數의 例를 들면 物價指數의 目的과 對象範圍, 價格調査品目과 商品(特定 maker)의 選定 價格調査地域과 店舖의 選定, 1商品當 價格調査數의 決定, 價格調査期日의 選定, 價格調査의 具體的 方法(訪問調査인가·郵便에 의한 調査인가 等)

商品變更, 品質變化, 新商品出現의 處理方法, 指數算式, 加重值, 資料의 調査法, 및 加重值의 算定等에 관하여는 詳細한 情報를 蒐集하는 것이 必要하다.

境遇에 따라서는 統計調査, 加工品種의 實態를 살펴보는 것도 必要할 것이다.

② 資料作成方法의 理論的·實際的 檢討.

物價指數를 例로 들면 調査品目, 商品調査地域, 店舖 期日等이 代表的인가 아닌가의 檢討, 割引等を 고려한 實務價格을 把握하고 있는가의 檢討 商品變更, 品質變化, 新商品出現에 관한 處理가 合理的으로 行하여지고 있는가 어떤가의 檢討等이 重要하다.

標本理論의 觀点에서 標本設計의 妥當性이나 標本誤差에 관한 檢討도 必要하다.

③ 資料相互間的 比較可能性 또는 一致性的 檢討 .

같은 用語의 定義의 異同이나 標本抽出方法의 異同等에 關하여 檢討함과 同時에 金額系列과 數量系列과 價格系列間의 一致性을 「체크」하는 것이 重要하다 .

④ 關聯있는 統計資料 相互間的 比較에 의한 信賴度의 ‘체크’ ,

예를 들면 同一品目 乃至 商品의 生産者價格 · 都壳價格 · 小壳價格을 比較한다든지 家計調査等에 의한 品目別 平均小壳價格과 小壳物價 統計調査等에 의한 品目別 小壳價格을 比較한다든지 工業 統計調査等에 의한 品目別 平均 生産者價格 乃至 都壳價格을 比較하는 것에 의하여 實勢를 正確히 反映하지 않은 價格資料를 發見할 수가 있을 것이다 .

⑤ 다른 情報에 의한 信賴度의 ‘체크’ ,

家計의 消費行動 企業의 生産 · 販賣行動 · 市場構造 · 政府의 政策 海外의 經濟事情 等に 關한 情報를 蒐集하여 이에 의하여 統計資料의 正確性을 ‘체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

以上과 같은 檢討를 行하면 各 統計資料에 關하여 工作成目的에서 본 適合性, 利用者의 仕意의 利用目的에서 본 適合性 및 利用上의 限界等을 正確히 評價하여 利用者에 대하여 資料利用上 必要하고도 適切한 文字情報를 提供하는 것이 可能할 것이다 .

2. 品質變化의 處理에 關하여

物價指數作成上에 있어 많은 困難한 問題中 最近 特히 注目되고 있고 理論的으로도 實證的으로도 活潑히 研究하기에 이른 한가지 問題는 價格調査의 對象이 되고 있는 商品의 品質變化의 影響을 除外한 「純粹한 價格變化」를 把握하기 위하여는 觀察된 價格資料를 어떻게 調整하면 좋은가 하는 問題이다.

物價安定 政策會議의 提言인 「物價統計의 改善에 關하여」에도 發表되고 있는것처럼 各統計作成機關을 처음부터 體制自体에 있어서도 'Hedonic' 指數法, 費用評價法, 性能点数法等의 品質變化處理法에 關하여 「實驗的 研究를 一層蓄積하여 그 實用化를 向한 意慾의 努力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物價指數를 計算하기 위하여는 우선 採用品目的 價格의 變化를 測定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 個別價格의 變化를 測定한다고 하는 一見 단순한 作業이 予想外로 복잡한 問題를 包含하고 있다.

그것은 「價格」이라고 하는 概念이 一見 日常的인 단순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實은 相當히 複雜한 性質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點에서 「今日 一般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價格의 '스카라' 概念은 '백타' 概念에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Morgenstern'의 主張은 매우 示唆的인 것이다.

即 通常의 價格의 概念은 商品의 一定한 物理的 數量單位에 대하여 支拂되는 貨幣額이라고 하는 '스카라' 的 概念이지만 올바른 '價格'의 概念은 그와 같은 貨幣支拂額 뿐만 아니라 그와 병행하

여 그 商品의 品質・支払條件・ after service 等の 諸項目을 包含한 ‘백타’ 概念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價格의 變化를 貨幣支払額의 變化로써 測定할 때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貨幣支払額의 變化를 觀察하는 것만으로는 不充分하며 同時に 品質 支払條件, after service 等の 다른 價格構成 要素의 變化도 觀察하여 이들 變化의 影響을 除한 「순수한 價格의 變化」를 測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어떤 商品이 通常의 意味에서의 價格이 2 倍로 上昇하여도 同時に 그 商品의 品質이 (그 어떤 尺度로 測定하여) 2 倍로 向上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商品의 通常의 意味에서의 價格이 30 % 上昇하였다. 하더라도 同時に 品質이 20 % 向上하고 있다면 品質을 一定하게 한 境遇의 價格變化 即 「순수한 價格變化」는 10 % 上昇이라고 測定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 日本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地價의 騰貴도 各種土地開發事業의 結果 같은 土地가 以前보다도 便利하게 되었다면 그 土地의 品質을 그만큼 向上한 것이며 그 品質 向上分에 該當하는 地價의 上昇을 差引한 나머지의 「순수한 地價上昇」을 測定할 必要가 있다.

品質 向上에 該當하는 價格 上昇을 「순수한 價格 上昇」 또는 「實質的 價格 上昇」이 아니라는 생각의 근거는 ‘Frisch 以來의 效用基準 物價指數의 理論이 明白히 하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들이 貨幣를 支払하여 購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商品의 物理的인 數量이 아니고 購入한 商品의 消費에서 얻어지는 效用의 크기이며

商品の品質이 向上하면 그 商品과 같은 物理的數量的 消費에서 얻어지는 効用이 比例的으로 增大한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價格」이나 「眞實한 價格」이라고 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効用一單位當價格은 不變이므로 「순수한 價格」은 不變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어떤 商品의 基準時에 있어서 觀察된 價格을 P_0 , 比較時點에 있어서의 價格을 P_1 으로 하고 基準時點에서 比較時點까지의 이 商品의 品質의 變化를 表示하는 「品質指數」를 g 로 하면 이 商品의 「순수한 價格」의 指數 P_{01} 은

$$P_{01} = \frac{P_1}{P_0} \times \frac{1}{g} \times 100 = \frac{P_0}{g} \dots\dots\dots (1)$$

로 計算된다.

여기서 P_{01} 은 視察된 價格의 指數이다.

이 商品의 品質이 向上하고 있는 경우에는 $g > 1$ 이므로 $P_{01} < P_0$ 로 된다.

即 品質이 向上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價格指數는 通常의 價格指數보다도 적게된다.

따라서 많은 商品의 品質이 向上하는 경우에는 品質向上에 관하여 價格資料를 全然 또는 充分히 調整하지 않고 計算된 物價指數는 「순수한」 物價上昇을 過大評價하게 된다.

그런데 「品質指數」 g 를 計算하기 爲한 一般的인 方法은 아직 確立되고 있지 않으므로 物價指數計算時·品質變化에 관하여 充分한 考慮를 하고 있지 않는것이 各國의 共通實情이다.

勿論 各国의 指数作成当局과 同一하게 日本의 指数作成当局도 品質變化에 관하여 價格資料를 調整할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으며 可能한 限 「순수한 價格變化」에 따라 物價指數를 計算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그 實際方法이 恣意的이고 客觀的인 組織的인 方法이 아니라는 것이 큰 欠點이 있다.

品質을 固定하여 價格을 調整하기 위하여 現在 採用하고 있는 基本的인 方法은 이른바 「明細規定에 의한 價格調整」(Specification Pricing)이다.

即 最初로 價格調査의 對象으로 할 具體的인 商品의 品質上의 重要한 特徵을 明確히 規定하여 두고 實際의 價格調査에 있어서는 每回 이 明細規定에 合致하는 商品의 價格을 調査하는 方法이다.

加重值 採用品目을 1年마다 變更하는 連鎖基準指數方式을 採用하는 경우는 別途로 하고 一般的으로 基準時 以後 5年부터 10年에 걸쳐 加重值를 採用品目에 固定하는 通常의 Laspeyres 型 指數의 境遇에는 不可避的으로 調査對象 商品의 品質의 變化가 생긴다.

결국 所期의 明細規定에 完全히 合致되는 商品이 市場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는 事態가 發生한다.

이 境遇에는 從來의 明細規定에 表示된 品質에 可急的 가까운 商品이 새로이 調査對象 品目으로서 採用되어 明細規定도 이에 따라 改訂된다.

이른바 調査商品의 變更이 그 代表的인 事例이다.

이 境遇에 있어서 價格資料 處理의 實際的 方法으로써는 다음의

5가지를 열거 할 수 있다.

첫째 新規採用商品의 價格을 過去에 소급하여 調査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今月부터 調査對象을 新商品으로 바꾸었다고 할때 1個月前의 旧相態의 價格이 P_{oa} 이고 新商品의 價格이 P_{ob} 라고 하면 重複價格의 相違는 兩商品의 品質의 相違에 關한 市場의 評價를 反映하고 있다고 생각 되므로 旧商品에서 新商品으로 옮기는 것에 의한 이 商品의 品質의 變化는

$$g = \frac{P_{ob}}{P_{oa}}$$

라고 하는 상태로 評價된다.

따라서 今月の 新商品의 價格이 P_{ib} 라고 하면 前월에 대한 今月の 價格指數는

$$P_{oi}^* = \frac{P_{ib}}{P_{oa}} \times \frac{1}{g} \times 100 = \frac{P_{ib}}{P_{oa}} \times \frac{P_{oa}}{P_{ob}} \times 100 = \frac{P_{ib}}{P_{ob}}$$

로 計算된다.

둘째로 新規採用商品의 價格을 過去로 소급하여 調査할 수 없는 境遇에는 (以下 같음) 新商品과 旧商品의 品質上의 相違가 非常히 적고 實際 同一한 品質로 생각 될 때는 (어떤 基準에 의하여 그렇게 判斷하는가는 問題이지만), 旧商品의 價格 P_{oa} 와 新商品의 價格 P_{ib} 와를 直接 比較한다.

即 $g = 1$ 로 判斷되기 때문에

$$P_{oi}^* = \frac{P_{ib}}{P_{oa}} \times \frac{1}{g} \times 100 = \frac{P_{ib}}{P_{oa}} \times 100$$

으로 計算된다.

이 處理方式을 「直接接統」(substitution)이라 일컫는다 .

세째로 新商品과 旧商品의 品質上의 相違가 매우 크고 兩의 價格差는 全部品質上의 差를 反映한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어떠한 基準으로 그와같이 判斷하는 가는 問題이지만), $g = \frac{P_{1b}}{P_{0a}}$ 가 되므로

$$P_{01}^* = \frac{P_{1b}}{P_{0a}} \times \frac{1}{g} \times 100 = \frac{P_{1b}}{P_{0a}} \times \frac{P_{0a}}{P_{1b}} \times 100 = 100$$

으로 計算된다 .

이의 處理方式은 「保合接屬」(splicing)이라고 일컫는다 .

直接接統의 경우 이든, 保合接統의 경우이든 品質差에 관한 判斷의 基準은 明白하다 .

事例別로는 當局者의 慾意的인 判斷에 依存하고 있는듯 하다 .

네째 新商品과 旧商品과의 品質差가 無視할 수 없는 것이고 同時에 兩商品의 價格差가 모든 品質差를 反映한다고 判斷되지 않는 境遇에는 旧商品으로 부터 新商品에로의 品質의 變化의 尺度 g 를 獨自적으로 推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

通常은 當該商品의 製造業者가 販賣業者로부터 品質의 變化에 相當하는 生産費의 變化에 관한 情報를 入手하여 g 를 推定하여

$$P_{01}^* = \frac{P_{1b}}{P_{0a}} \times \frac{1}{g} \times 100 \quad \text{을 計算한다 .}$$

이 方法은 「費用 評價法」이라고 불리운다 .

이 方法의 難點은 生産者側이 品質의 向上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모든 消費者側에 依하여 그와같이 評價된다는 保證은 없고 또 生産費의 變化를 수반하지 않는 品質의 變化가 고려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費用評價法에서의 g 의 推定法으로서 「代表的 品質指標法」이라고 부를수 있는 方法이 있다.

이는 商品別로 그 品質을 가장 잘 代表한다고 생각되는 한개의 品質指標(예컨대 '밀크'의 경우 脂肪含有量, '위스키'의 경우 '알콜'含有量과 같은 것)를 選定하여 이 代表的인 品質指標의 變化를 가지고 g 를 推定하여

$$P_{o,1}^* = \frac{P_{1b}}{P_{0a}} \times \frac{1}{g} \times 100$$

을 計算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의 難點은 商品의 品質이 오직 한가지의 品質指標에 依하여 잘 代表되는 境遇가 적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研究에 의하여 各國의 物價指數作成當局은 品質變化의 問題를 處理하려고 努力하고 있지만 그 方法이 愆意의 인 性質의 것이기 때문에 實際로는 物價指數計算時에 品質變化에 關하여 充分한 考慮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現在의 實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戰後의 一般的 傾向으로서는 技術進前에 依하여 商品의 品質은 向上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이와같은 品質의 向上에 關하여 價格資料를 充分히 調整하지 않고 있는 現行의 物價指數는 「純粹한 指數」를 相當히 上廻하는 傾向, 卽 眞實한 物價上昇을 過大로 表現하는 傾向이 있다고 一般的으로 믿어지고 있다.

1961년에公表된 美国의 '스티구타'委員會의 報告書의 한가지 特色은 이와같은 現行 物價指數의 커다란 欠陷을 指適하여 品質變化問題의 重要性을 強調했다는 것이다.

同 報告書는 「集中的 持續적인 實驗에 의하는」 品質變化 處理法으로서 特히 이른바 Hedonic approach 를 장려하여 그 一例로서 美国의 乘用車의 新車의 價格에 관한 'Griliches' 의 劃期的인 分析을 紹介하였다.

그 分析에 의하면 1954年부터 1960年까지의 期間에 있어서 美国 乘用車의 品質向上率은 51.7%에 達했다는 結論이 얻어졌다.

美国政府의 消費者 物價指數는 같은 期間의 乘用車의 新車價格은 11.3% 上昇했다고 報告하고 있었다.

'Griliches' 의 이와같은 놀랄만한 結論은 새삼스레히 品質問題의 重要性을 깨닫게 하고 있으며 特히 Hedonic 法의 有用性에 대한 強한 關心을 불러일으키기에 充分하였다.

그 以來 物價指數에 있어서의 品質變化의 處理에 關한 研究 特히 Hedonic 法의 應用에 關한 研究가 美国을 中心으로 各國에 活潑히 行하여지게 되었으며 1971년에는 이때까지의 重要한 研究成果를 'Griliches' 가 編輯하여 「物價指數와 品質變化」라는 題目的 論文集으로 發刊될 만큼 되었다.

Hedonic 法의 基本的인 idea는 比較的 단순한 것이다.

그것은 前記의 代表的品質指標法을 一般化하여 단 한개의 品質指標의 變化가 아니고 여러개의 適當한 品質指標의 變化로부터

g를 推定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各 品質指標의 變化를 經濟的 價値의 數値로 評價하여 그 評價를 加重値로 하여 品質指數 g를 計算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品質의 經濟的 價値의 評價로는 그 어떤 位置에서 特定한 價値 判斷(예컨대 煙草는 健康에 有害하다고 하는 것과 같음)이 아니고 市場에서 客觀的으로 確立되어 있는 評價가 採用된다.

即 一定한 時期에 市場에 있어 어떤 商品의 여러가지 種類가 各各 다른 價格으로 販賣되고 있는 事實에서 이러한 價格의 相異는 이들 種類別 品質에 대한 市場(消費者)의 評價의 相違를 反映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各種類別 品質은 몇가지의 共通의 「品質指標」의 特定値의 集合으로서 把握된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t年에 있어서 各種類別 價格 P_t 가 m 種類의 品質指標 α_j ($j = 1, 2, \dots, m$)에 의하여 說明된다
고 보고

$$P_t = f_t(\alpha_{1t}, \alpha_{2t}, \dots, \alpha_{mt}) \dots \dots \dots (2)$$

이라고 하는 「品質評價函數」가 假定된다.

이 品質評價 函數에 관하여도 品質의 相違(또는 變化)에 의한 價格의 相違(또는 變化)를 求하여 보면

$$\Delta P_t = \frac{\partial P_t}{\partial \alpha_{1t}} \Delta \alpha_{1t} + \frac{\partial P_t}{\partial \alpha_{2t}} \Delta \alpha_{2t} + \dots \dots \dots \\ \dots \dots \dots + \frac{\partial P_t}{\partial \alpha_{mt}} \Delta \alpha_{mt} \dots \dots \dots (3)$$

가 된다.

$\frac{\partial P_t}{\partial \alpha_{jt}}$ 는 t 年에 있어서의 品質指標 α_j 의 經濟的 評價額 即 「品質의 價格」이다.

Hedonic 法이란 具體的으로는 t 年에 關於하여 觀察되는 P_t 와 α_{jt} 의 交叉・텍크・資料에서 多元回歸分析의 方法에 의하여 品質評價函數의 媒介變數 (Parameter) 말하자면 「品質의 價格」을 推定하여 여기에 대하여도 새로운 種類 即 새로운 品質指標의 集合의 價格 (새로운 品質에 對한 市場의 評價)을 推定하여 이 評價額과 舊種類的 價格과를 比較하여 品質指數 g를 計算하여 이 g를 써서 「순수한」 價格指數

$$P_{01} = \frac{P_{1b}}{P_{0a}} \times \frac{1}{g} \times 100$$

을 計算하는 方法이다.

이와 같이 計算된 「순수한」 價格指數는 Hedonic 價格指數라고 일컬어지며 Hedonic 價格指數에서 算出된 綜合物價指數를 Hedonic 物價指數라고 부른다.

Hedonic 라고 하는 形容詞의 뜻을 「快樂의」라고 하는 것이지만 Hedonic 物價指數란 快樂(效用)의 水準을 一定하게한 物價指數라는 意味로 理論的으로는 이른바 「참다운 生計費指數」 내지 「效用基準 物價指數」와 같은 것이며 具體的으로는 「品質變化 調整을 마친」 物價指數라고 할 수 있다.

回歸分析을 行하기 爲하여는 品質評價函數 (2) 를 簡單한 形態의 函數로써 特定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般的으로 다음의 3 가지 形態中 適當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가 採用되고 있다.

$$P = a_0 + a_1\alpha_1 + a_2\alpha_2 + \dots + a_m\alpha_m \dots\dots\dots (4)$$

$$\log P = b_0 + b_1\alpha_1 + b_2\alpha_2 + \dots + b_m\alpha_m \dots\dots\dots (5)$$

$$\log P = c_0 + c_1 \log \alpha_1 + c_2 \log \alpha_2 + \dots + c_m \log \alpha_m \dots\dots\dots (6)$$

여기서 \log 는 通常 自然對數이다.

(各 變數의 添字 t 는 省略되고 있다.)

이 3 가지의 形態中 어느것이 가장 適當한가를 現實的으로 예기 할 수는 없다.

實際로 3 가지 形態에 關하여 回歸分析을 試圖하여 보고 決定係數가 가장 크게 되는 形態를 採用하는 것이 普通의 方法이다.

(4) (5) (6) 式으로 부터 各各

$$\frac{\partial P}{\partial a_i} = a_j$$

$$\frac{\partial \log P}{\partial P} \cdot \frac{\partial P}{\partial d_j} = \frac{1}{P} \cdot \frac{\partial P}{\partial d_j} = b_j$$

$$\frac{\partial \log P}{\partial \log d_j} = \frac{a_j d_j P}{P d_j} = c_j$$

라고하는 關係式이 導出된다.

(4) 式의 回歸係數 a_j 는 「品質의 價格」 그 自体를 부여하고

(5) 式의 回歸係數 b_j 는 當該品質指標가 1單位增加하는 것에 의하여 야기되는 當該商品의 價格全體의 變化率이라고 하는 形態로 「品質 價格」을 부여하고

(6) 式의 回歸係數 c_j 는 當該品質指標의 1%의 增加에 의하여

야기되는 當該 商品의 價格全體의 變化率이라는 形態로 「品質 價格」을 부여한다 .

結局 (t)年에서 (t+1)年에 ~걸쳐서의 物價指數採用品目的 品質 Q의 變化는 商品 r의 品質指標의 集合 ($\alpha_1 r_t, \alpha_2 r_t, \dots, d_{mrt}$)로 부터 商品 S의 品質指標의 集合 ($d_1 s_{t+1}, \alpha_2 s_{t+1}, \dots, d_{mst+1}$)에의 變化로써 把握된다 . 回歸分析에 의한 品質評價函數 (2) 의 推定式

$$\tilde{P} = \tilde{f}_t (d_1, d_2, \dots, d_m) \dots \dots \dots (7)$$

이 부여되어 있으면 이들 2개의 品質指標의 集合에 對하여, t年에 있어서의 評價函數에 근거한 經濟價值 $\tilde{P}_{rt}^t, \tilde{P}_{st+1}^t$ 를 다음과 같이 推定할 수가 있다 .

$$\tilde{P}_{rt}^t = \tilde{f}_t (d_1 r_t, d_2 r_t, \dots, d_m r_t) \dots \dots \dots (8)$$

$$\tilde{P}_{st+1}^t = \tilde{f}_t (\alpha_1 s_{t+1}, \alpha_2 s_{t+1}, \dots, d_{mst+1}) \dots \dots \dots (9)$$

여기서 그 商品의 品質變化를 나타내는 品質指數 $\tilde{q}_{t,t+1}^t$ 는

$$\tilde{q}_{t,t+1}^t = \frac{\tilde{P}_{st+1}^t}{\tilde{P}_{rt}^t} \dots \dots \dots (10)$$

로 推定된다 .

이 商品의 觀察된 價格의 變化를 이 品質指數로 deflate 하는 것에 의하여 이 商品의 「純粹한 價格」의 指數 即 Hedonic 價格指數의 推定值

$$\tilde{P}_{t,t+1}^t = \frac{P_{st+1}}{P_{rt}} \times \frac{1}{\tilde{q}_{t,t+1}^t} \times 100 \dots \dots \dots (11)$$

을 얻을 수 있다. 또는 「品質의 價格」의 推定値 $(\frac{\partial \tilde{P}}{\partial d_j})_t$ 를 사용하여, 品質變化分 (正確히는 品質變化에 따르는 價格變化分) $\Delta Q_{t, t+1}$ 를

$$\tilde{\Delta Q}_{t, t+1} = \sum_{j=1}^m \left(\frac{\partial P}{\partial d_{jt}} \right) \Delta d_j, (\Delta d_j = d_{jst+1} - d_{jrt}) \dots \dots \dots (12)$$

라고하는 形式으로 推定하여 이 商品의 (t+1)年의 觀察된 價格의 變化分에서 이 品質變化分을 控除하는 것에 의하여 「純粹한」 價格變化分の 推定値

$$\tilde{\Delta P}^* = \Delta P - \sum_{j=1}^m \left(\frac{\tilde{I}P}{I d_j} \right)_t \Delta d_j, (\Delta P = P_{st+1} - P_{rt}) \dots \dots \dots (13)$$

을 얻을 수도 있다. 또 (5) 式의 回歸係數 b_j 의 推定値 $(\tilde{b}_j)_t$ 를 얻었었을 때 t年에서 (t+1)年으로의 品質의 變化率 q_{tt+1} 의 推定値는

$$P_{t, t+1} = \frac{P_{st+1}}{P_{rt}} + \frac{1}{q_{tt+1}} \times 100 \dots \dots \dots (14)$$

로 計算할 수가 있다.

그런데 一般的으로는 「品質의 價格」은 해마다 變化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해의 資料를 써서 回歸分析을 行하는가에 의하여 「品質의 價格의 推定値는 다른 값이 된다.

第一 t年과 (t+1)年의 2年間에 걸친 「品質의 價格」이 不變이라는 假定이 許容되면 이 2年間の 資料를 한번에 써서 回歸

分析을 行할 수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2年間の 品質의 變化와는 獨立하여 일어나는 價格의 變化 即 「순수한 價格變化」도 資料에 反映되어 있으므로 이 點을 고려하기 위하여 觀察된 價格의 說明變數로서는 各品質 指標外에 t年에는 0이 되고 (t+1)年에는 1이 되는 年次 ㆍ대미 變數 D를 追加할 必要가 있다.

이 경우에는 (4) (5) (6) 에 對應하는 回歸方程式은

$$P = a_0 + a_1\alpha_1 + a_2\alpha_2 + \dots + a_m\alpha_m + u D \dots\dots\dots (15)$$

$$\log P = b_0 + b_1\alpha_1 + b_2\alpha_2 + \dots + m\alpha_m + v D \dots\dots\dots (16)$$

$$\log P = c_0 + c_1 \log \alpha_1 + c_2 \log \alpha_2 + \dots + c_m \log \alpha_m + v D \dots\dots (17)$$

이 된다.

이 方法은 「隣接2年 回歸方式」이라고 일컫는다.

이에 대하여 (4) ~ (6) 의 方式은 「單獨年回歸式」이라고 부른다.

(15) 式의 年次 ㆍ대미 變數 D의 回歸係數 V는 t年에서 (t+1)年에 걸쳐 모든 品質指標가 不變이라고 한 경우에 일어났어야 할 當該商品의 平均價格變化額의 推定值를 부여한다.

(16) 式과 (17) 式의 年次 ㆍ대미 變數 D의 回歸係數 V는 같은 意味의 當該商品의 平均的 價格變化率의 推定值를 부여한다.

이와같이 年次 ㆍ대미 變數를 使用하는 回歸分析을 行하면 個個

外
5
현

의 品質指標의 變化로 부터 品質指數를 計算할 것 없이 直接 「순수한 價格變化」 다시 말하면 Hedonic 價格指數의 推定値를 얻을 수 있다는 커다란 長點이 있다.

만일 t 年에서 (t+T) 年 까지의 T 年間에 걸쳐 「品質의 價格」이 不變이라고 假定하는 것이 許容되면 그 期間에 觀察되는 各年次의 資料를 한번만 써서 回歸分析을 行할 수가 있다.

다만 그때는 品質變化 以外の 要同에 의한 價格資料의 年次別 變化分을 說明하는 變數로써 T 個의 年次 代表 變數 P_t

($t = 1, 2, \dots, T$: 이 값은 $t+T$ 年에 1이 되고 다른 모든 해에는 0이 된다)를 使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4) (5) (6) 에 対応하는 回歸方程式은

$$P_o a = a_o + \sum_{j=1}^m a_j \alpha_j + \sum_{\tau=1}^T U_{\tau} D_{\tau} \dots \dots \dots (18)$$

$$\log P = b_o + \sum_{j=1}^m b_j \alpha_j + \sum_{\tau=1}^T V_{\tau} D_{\tau} \dots \dots \dots (19)$$

$$\log P = c_o + \sum_{j=1}^m c_j \log \alpha_j + \sum_{\tau=1}^T r_{\tau} D_{\tau} \dots \dots \dots (20)$$

이 된다.

이 방식은「通年 回帰方式」이라고 일컫는다.

(18) 式의 年次·대미, 變數 $D\tau$ 의 回帰係數 $U\tau$ 는 t 年에서 $(t+\tau)$ 年에 걸친 모든 品質指標가 不變이라고 본 경우에 일어났어야 했을 當該 商品의 平均的 價格變化額의 推定值를 부여한다.

$(t+T)$ 年에서 $(t+T+1)$ 年 까지의 變化額의 推定值는 $U\tau+1-U\tau$ 로 부여된다.

(19) 式과 (20) 式의 年次·대미, 變數 $D\tau$ 의 回帰係數 $U\tau$ 는 같은 뜻의 當該 商品의 平均的 價格變化率의 推定值를 부여한다.

$(t+T)$ 해로부터 $(t+T+1)$ 年 까지의 變化率의 推定值는 $V\tau+1-U\tau$ 로 부여된다.

이 「通年 回帰方式」에 의하면 t 해서 $(t+T)$ 年 까지의 全期內에 걸쳐 年年의 「순수한 價格變化」 환언하면 Hedonic 價格指數의 推定值가 品質指數의 作成을 經由하지 않고 直接的으로 얻을 수 있다는 커다란 長點이 있다.

그런데 Hedonic 法에 관한 前記의 1961 年의 Griliches 의 先驅的인 研究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即 Griliches 는 1937 年 1950 年 및 1954 年에서

1960年 까지의 各年度에 있어서의 乘用車의 多數의 新車 · 모델, 의 表示價格과 品質指標와의 關係의 回歸分析을 行하였다.

品質指標로서 選擇된 것은 H (馬力: 單位: 100 馬力), W (重量: 單位 1,000 파운드) 및 L (길이: 單位: 10 인치) 라고 하는

3 種類의 數值變數와 V (V-8 · 엔진, 인가 아닌가), T (hard-top 인가 아닌가), A (自動變達機인가 아닌가) P (Power steering 인가 아닌가) B (Power brake 인가 아닌가) 및 C (Compact car 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6 種類의 品質 · 대미 · 變數였다.

또 回歸方程式의 形을 特定化 시키기 위하여 選擇한 것은 半對數形으로 「單獨年回歸方式」 「隣接2年回歸方式」 및 1954年 - 1960年의 「通年回歸方式」의 3가지 方式의 回歸分析이 試圖되어 그 어느 경우도 良好한 推定結果를 얻을 수 있었다.

〈第1表〉 美国의 乘用車의 各種價格指數 및 品質指數의 變化
(Griliches)

	WPI	全 模 型				CPI 用 모델					
		表示價格의 幾向平均	Hedonic 價格指數		表示價格의 幾向平均	CPI	品質指數		品質變化調整		
			隣接2年回帰方式	通年回帰方式			隣接2年回帰方式	通年回帰方式	隣接2年回帰方式	通年回帰方式	
	%	%	%	%	%	%	%	%	%	%	
1954-1955	2.7	-3.3	-9.3	-4.4	2.5	-1.7	5.7	0.7	-8.0	-2.4	
1955-1956	4.1	13.7	2.0	2.9	5.4	-0.9	2.9	2.2	-3.7	-3.0	
1956-1957	4.7	7.7	2.7	3.4	9.9	5.1	4.8	4.1	0.3	1.0	
1957-1958	0.6	9.6	2.7	2.5	6.7	4.2	3.4	4.4	0.8	-0.2	
1958-1959	5.1	3.6	0.5	0.0	-	-	1.4	2.3	-	-	
1959-1960	0.1	-11.9	-2.3	-2.1	0.2	0.1	0.3	2.0	-0.2	-1.9	
1954-1960	19.7	18.7	-4.2	2.3	34.4	11.3	20.0	16.1	-7.8	-4.1	

(註) WPI = 都売物價指數.

CPI = 消費者物價指數.

单独年回帰方式의 結果는 省略.

(出處) : Griliches의 研究論文.

第1表는 Griliches의 分析結果를 要約한 것이다.

即 1954年에서 1960년까지의 期間에 있어 全모델의 資料를 使用한 回帰分析의 結果에 의하면 乘用車의 Hedonic 價格指數는 隣接2年 回帰方式에 의하면 4.2%의 下落되고 通年回帰方式에서는 2.3% 上昇에 지나지 않는다.

表示價格의 平均値의 18.7%의 上昇率-또 勞動統計局 發表의 乘用車의 WPI (都賣物價指數)의 19.7%의 上昇率에 比較하면 이 期間에 있어서 乘用車의 品質向上은 현저했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 標本範圍의 CPI (請妥者物價指數)에 맞춘 경우의 品質指數의 變化率을 品質指標 H.W 및 L의 年年의 變化와 각각의 品質指標의 回帰係數에서 (14)式에 의거 計算한 結果에 의하면 그 期間 全体로서의 品質指數의 上昇率은 隣接2年回帰方式에 의하면 20.0%, 通年回帰方式에 의하면 16.1%로 현저히 높고 이에의거 當該 期間의 乘用車의 CPI의 上昇率 11.3%를 調整하면 品質調整을 마친 CPI는 4.1% 내지 7.8% 下落한 것이 된다.

이리하여 乘用車의 品質向上을 고려하지 않은 勞動統計局作成의 乘用車의 CPI는 乘用車의 「순수한」 價格變動을 현저히 過大表現하여 왔다는 것이 明白하게 되었다.

이 Griliches의 研究를 契機로 하여 美國을 비롯한 各國에서 Hedonic法에 관한 實驗的 研究가 活潑히 行하여지게 되었는바 日本에 있어서의 研究例는 아직 極히 적은 듯하다.

筆者가 알고있는限 日本에서 Hedonic法에 관하여 公表된 實驗例로써는 公團住宅의 一棟當 工事費에 관한 降矢憲一, 鈴木孝雄 兩氏의

作業이 唯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筆者等이 創価大学物価問題研究센터에 있어서 日本의 乘用車의 價格에 Hedonic 法을 適用한 實驗結果는 第2表와 같다.

分析에 使用한 資料는 自動車工業振興協會의 「自動車 guide book」에 掲載되고 있는 1965년부터 1971년까지의 「4 door sedan 小形乘用車」의 “모델”別 小売價格과 各種品質指標에 관한 情報이다. 14種以上에 達하는 品質指標와 價格間의 予備的인 回歸分析의 結果, 最終적으로 採用된 品質指標는 H(馬力)와 W(重量)이라고 하는 2個의 數值變化 및 A(3段自動變速機가 있는가 어떤가)와 B(直空倍力裝置附 主 부르레 - 크, 가 있는가 어떤가)라고 하는 2개의 品質 “대미” 變數이다.

回歸方程式의 形은 Griliches 를 따라 半對數型으로 하고 单独年回歸方式, 隣接2年回歸方式, 1965年~1971年の 通年回歸方式 即,

$$\log P = b_0 + b_1 H + b_2 W + b_3 A + b_4 B \dots\dots\dots (21)$$

$$\log P = b_0 + b_1 H + b_2 W + b_3 A + b_4 B + r D \dots\dots\dots (22)$$

$$\log P = b_0 + b_1 H + b_2 W + b_3 A + b_4 B + \sum_{\tau=1}^6 V_{\tau} D_{\tau} \dots\dots\dots (23)$$

의 推定을 試圖하여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比較的 良好한 結果를 얻었다.

〈第2表〉 日本の乗用車の価格指数 Hedonic 価格指数 및
品質指数

	価格指数 表示小売 価格幾何 平均	価格指数		品質指数			
		隣接 2年 回帰 方式	通年 回帰 方式	deflation 方式		回帰計算方式	
				隣接2年 回帰方式	通年 回帰方式	隣接2年 回帰方式	通年 回帰方式
1965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6	99.1	98.1	98.9	101.0	100.2	101.0	100.2
67	93.9	94.4	95.1	99.5	98.7	99.7	98.6
68	92.4	92.2	93.4	100.2	98.9	100.6	98.9
69	92.1	89.9	91.7	102.4	100.4	102.7	100.3
70	94.4	91.1	93.2	103.6	101.3	104.1	101.3
71	96.1	91.2	92.9	105.4	103.4	105.8	103.3

同上変化率(%)

1965~66年	-0.9	-1.9	-1.1	+1.0	+0.2	+1.0	+0.2
66~67	-5.2	-3.8	-3.8	-1.5	-1.5	-1.3	-0.6
67~68	-1.6	-2.3	-1.8	+0.7	+0.2	+0.9	+0.3
68~69	-0.3	-2.5	-1.8	+2.2	+1.5	+2.1	+1.4
69~70	+2.5	+1.3	+1.6	+1.2	+0.9	+1.4	+1.0
70~71	+1.8	+0.1	-0.3	+1.7	+2.1	+1.6	+2.0
65~71	-3.9	-8.8	-7.1	+5.4	+3.4	+5.8	+3.3

註：①は小型乗用車 ②単独年回帰方式の推定結果を省略。

(出処)：中村氏の研究報告

第2表에 表示한바와 같이 1965년부터 1971년까지의 期間内に 있어서의 日本의 小形乗用車の 小売價格의 平均値는 3.9% 下落하고 있지만 筆者等이 計算한 Hedonic 價格指數는 隣接2年回帰方式에서는 8.8%의 下落, 通年回帰方式에서는 7.1%의 下落으로 되어있다.

即, 이 期間에는 乗用車の 品質이 向上하였으므로 「순수한 價格」은 觀察된 價格의 下落以上の 率로 下落했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價格指數를 Hedonic (價格指數로 deflate하여 品質指數를 計算하여 보면 當該期間中の 品質指數의 變化는 隣接2年回帰方式의 경우에는 5.4%의 向上, 通年回帰方式의 경우에는 3.4%의 向上이라는 結果를 얻을수 있다.

또 H (馬力)와 W (重量)의 平均値 및 A (變速機 “대미”)와 B (“브레이크 “대미”)의 “平均値” (1이 되는 標本の 比率)의 年年의 變化와 回帰係數로 부터 年年의 品質變化를 計算하여보면 當該期間全體로는 5.8% 내지 3.3%의 向上이라고 하는 結果를 얻을수 있다.

1965年~1971年間に 가장 높게보아도 6%弱의 品質向上이라고 하는 筆者等の 結論은 乗用車を 実務로 運轉하고있는 Owner-driver의 平均的인 느낌으로써의 品質向上率에 比較하여 相當히 낮은 率이라고 評價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確實히 筆者等の 結論은 品質向上率을 過少評價하고 있는 可能性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筆者等이 扱한 標本資料에 있어 W (重量)의 平均値가

해마다 低下하여 이 期間全体에서 11.4%나 低下하여 있고, 이것이 品質의 惡化要因으로써 評價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W의 平均値의 年年의 低下는 과연 乘用車의 品質의 惡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解釈하여 좋은가 어떤가는 다시 慎重한 檢討를 必要로 하는 問題이다.

特定年度에 있어서 乘用車의 여러가지 “모델”을 比較하여보면 確實히 “엔진”이 크게 되었는가 부속품이 붙어났는가, 内部裝置가 호화롭게 되었는가 하는 이른바 deluxe 型이 되어 品質이 좋아졌는 만큼 W (重量)는 상당히 크게 되어 이에 対応하여 價格도 높게 된다는 關係가 推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 그自體는 乘用車의 屬性으로서는 반드시 중요하다고 할수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品質指標로써 有効한 役割을 한다는 것은 W가 參다운 品質構成要素 (Z_1, Z_2, \dots, Z_x)의 우수한 代理變數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即,

$$W = K (Z_1, Z_2, \dots, Z_x) \dots\dots\dots (24)$$

라고 하는 代理關係가 있어 처음으로 價格과 品質과의 本來의 關係

$$P = r (Z_1, Z_2, \dots, Z_x) \dots\dots\dots (25)$$

가 價格과 W와의 關係 (品質評價函數의 가장 단순한 形態)

$$P = f (W) \dots\dots\dots (26)$$

로써 把握될 수 있는 것이다.

交叉資料에 근거하여 推定된 (26) 式의 關係가 W의 時間的인 變化에 관하여도 適用되어 이에 의하여 참다운 品質構成要素 Z_1, Z_2, \dots, Z_x 의 變化에 対応하는 價格의 變化가 推定되기 위하여는 W의 代理關係(24) 式이 當該期間中 安定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自動車産業에 있어서의 技術進前(輕量化)에 의하여 같은 品質의 乘用車가 以前보다 더 가볍게 되었다고 하는 事態가 發生한다고 하면 W의 代理關係(24) 式에 變化가 일어났기 때문이므로(26), 式은 (25) 式의 間接的인 表現으로서 解釋할 수는 없게 된다.

결국, 이 경우에는 W의 減少를 品質의 惡化라고 解釋할 수 없게 된다. 筆者等の 結論이 品質向上率을 過少評價하고 있는 可能性이 없지 않다고 말한 뜻은 이점에 있다.

그러나 이 問題에 깊이 파고들어 檢討하는 것은 別途의 機會로 미룰 수 밖에 없다.

現段階에서는 Hedonic 法에도 未解決의 問題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物價指數의 作成에 있어 이를 機械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避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物價指數 作成에 있어 品質變化에 관하여 價格資料를 調整하는 것은 必要한 일이며 Hedonic 法이 이를 爲한 有力한 方法이라는 것은 의식할 余地가 없다.

實際 Hedonic 法은 다시 이를 자세히 檢討하면 많은 問題點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수있으나 従来物価指数 当局이 品質變化에 關하여 價格資料를 調整할때 直觀的이고도 非体系的으로 積用하여온 方法을 論理的으로 明確히 再編成 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統理庁 統計局은 1970年基準消費者 物価指數에 乘用車가 包含되게 된것을 契機로 事例別 方式에 의한 乘用車價格의 品質調整結果를 때때로 Hedonic法에 의하여 Check하고 있다고 하는바 그 詳細한 內容을 公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既述한바와 같이 物価指數의 作成에 있어서 品質變化의 処理가 國際적으로 重視되고 있으므로 日本의 物価指數 当局에 있어서도 物価關聯情報體制에 있어서도 이 問題에 關한 加一層의 研究가 課題로 되어 있다고 할수있을 것이다.

引 用 文 獻

- [1] 物価安定政策会議 「物価統計의 改善에 관하여」 1970年12月.
- [2] Frisch, Ragnar, "Annual Survey of General Economic Theory ; The Problem of Index Numbers" *Econometrica*, January 1936, PP. 1 ~ 38
- [3] 降失憲一 鈴木孝雄 「建設 deflator에 있어서의 生産性的 問題에 관하여」 (經濟分析) 第28号 1969年 7月) 24 ~ 48 Page
- [4] Griliches, Zvi, "Hedonic Price Indexes for Automobiles = An Econometric Analysis of Quality Change", *NBER*[9] PP. 173 ~ 196, Griliches [5] PP 55 ~ 87에 再録 [5] PP, 55 ~ 87 再録.
- [5] Griliches, Zvi, ed, *Price Indexes and Quality Change: Studies in New Methods of Measuremen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6] 加藤寛孝 「物価指와 品質變化」 「創価經濟論集」 第2卷 第2号, 1972年 9月 13 ~ 41 Page
- [7] Morgenstern, Oskar, *On the Accuracy of Economic Observations*, 2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渋崎敬治・山下邦男是永純弘訳 「經濟觀測의 科学—經濟統計의 正確性」

(東京；法政大学出版局) 1968年。

- [8] 中村厚史 「Hedonic 価格指数의 計測 (自動車)」(創価大学物価問題研究センター 研究資料 No 1) 1972年6月。
- [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rice Statistics Review Committee, The Price Statistics of the Federal Government : Review, Appraisal, and Recommendation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1, 日本銀行統計部長訳「連邦政府物価統計의 檢討, 評價 및 勸音」(統計研究資料 18号 1972年 5月。)

第 4 章 精密資料의 分析例

細部資料까지 거슬러 올라가 加工을 必要로 하는 data bank 의 利用例를 叙述함에 있어서는 이런 作業이 data bank 의 重要한 役割의 하나이며 또 이런 作業의 必要性 때문에 複數個의 data bank 가 併存하는 意義를 認定하는 것이 重要하다.

다만 이런 種類의 作業은 相當한 多量의 計算時間과 經驗을 必要로 하는 것이며 그 體制化는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주어진 적은 時間으로 이런 種類의 代表的인 分析例를 든다는 것은 더욱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本論에서는 지금까지 行하여진 「特殊物價指數」의 計算例를 data bank 利用의 立場에서 다시 보기로 했다.

이들 特殊物價指數의 計算은 data bank 를 意識하여 行하여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經驗은 今後의 data bank 設立을 위하여 매우 有用한 것을 包含하고 있다.

今後 이런 種類의 作業을 進行시킴에 있어서는 data bank 機能의 一還으로써 作業을 進行시키는 편이 보다 有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本論은 分析例라고 하기보다는 問題의 整理面에 力점을 두고 있다.

1. 問題의 所在

data bank에 대한 期待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르겠지

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3種의 要請으로 集約하여 列挙하는 것에 異議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型의 要請은 過去 個別的으로 뽑아내어 利用되어 온 情報를 data bank 에 進中的으로 制御하여 보다 迅速한 處理를 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그 data bank 의 主要目標인 分野의 變數는 勿論 그 分析이 要求하는 主要한 關聯資料도 集中管理하여 外部의 依賴에 따라 加工·計算이 行하여지는 體制가 必要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種類의 機能에 대한 要請도 점차 增大하고 있으므로 早速한 対応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型의 要請은 從來 一般的으로는 不可能했거나 不可能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困難했던 特殊作業을 data bank 에 期待하게 된다.

이러한 作業은 매우 多様할 것이며 各作業에 迅速히 適應할 수 있는 體制를 事전에 準備하는 것은 困難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要請을 可能な 限 體制化의 見地에서 整理하여 蓄積하여가는 경우 長期的으로는 매우 有益한 data bank 가 形成되어 갈 것이다.

即 첫째의 要請에 応하기 위한 data bank 의 機能은 規模의 擴大에 따라 相互類似性이 增大하여 가는 것에 대하여 둘째의 要請에 応하는 機能은 特殊化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將來에 있어서는 後者の 機能의 有効성이 併存하는 各 data bank 의 存在價值를 確認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意味에서는 예컨대 速効性은 期待할 수 없어도 둘째의 要請에 대한 研究도 進行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째의 要請은 위의 두가지 要請과 排反的인 것이 아니고 補完的인 것이다. 從來부터 各種의 分析을 進行할 경우 適當한 資料를 찾을 수 없다는 不滿이 提示되어 왔다.

이러한 不滿의 一部는 適切한 資料의 存在를 나타내는 情報가 不足하기 때문에 發生된 것이며 data bank 에 의한 情報의 提供 서비스에 의하여 Cover 할 수 있는 性格의 것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事例에서 現實的으로 資料가 存在하고 있지 않다는데서 起因하고 있다.

이와같은 不滿과 情報體制下에서 整理하여 統計調査의 改善을 위한 勸告를 하는것도 data bank의 重要한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本論의 課題는 둘째 要請에 관한 一例를 드는것을 目的으로 하여 叙述한 것이다.

둘째의 事例는 매우 多様하다는 것은 이미 記述한바 있거니와 筆者의 個人的인 見解로서는 特殊한 몇가지의 事例가 興味를 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後述하는 바와 같이 「特殊物價指數」^①의 몇가지는 過去에 統計局에서 作成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먼저 檢討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되어 이 問題를 다루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理由에서 다음에 記述하는 大部分은 統計局으로부터 提供된 情報에 의거하였음을 미리 말하여 두고자 한다.

2. 「特殊物価指数」란?

現行의 主要한 物価指數는 各各 그 目的에 対応한 調査를 先行시키고 있다. 例컨데 消費者物価指數는 「小売物価統計調査」와 「家計調査」를 背景으로 作成되고 있다.

이들 調査는 理想的인 形態로 비추어 보면 보다 많이 改善되어야 할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豫算規模나 調査環境을 고려한 경우 可急적으로 有効한 情報蒐集이 可能하도록 設計되어 있다.

이런 種類의 物価指數로써는 都売物価指數, 農村物価指數, 輸出入物価指數等を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이러한 物価指數를 편의상 「基本的인 物価指數」로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分析이 이와같은 基本的인 物価指數로 處理되지는 않는다.

分析目的이 多様化하여 分析의 精度의 高度化가 要求됨에 따라 여러가지 種類의 物価指數가 必要하게 되고 있다. 例컨데 老令年金의 物価 Slide 制를 實施하려는 경우 第1次近似値로써는 「消費者物価指數」를 利用하는 것도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嚴密性を 찾는 分析者는 高令者의 家計에 対応할 수 있는 消費者物価指數의 作成을 要求하게 될 것이다. 이런 種類의 問題를 本格的으로 解決하는 것은 最初부터 그 目的에 適合한 調査를 設計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 設計가 豫算的 制約等에 의하여 不可能한 경우에 있어서

도 從來의 調査를 補完하기 위한 特殊調査를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例에서는 老令世帶에서 많이 購入하는 特殊商品의 價格調査 등이 여기에 該當한다.

그래서 現實的으로 이와같은 方式으로 物價指數가 作成되는 例도 적지는 않다. 「工業製品生産者 物價指數」 등은 그 一例이다.

그러나 大多數의 分析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補充調査를 實施하는 것조차 不可能하다.

따라서 이들 分析者에게는

- a. 既發表된 指數中 自己의 分析目的에 可急的 가까운 것을 利用한다.
- b. 既存調査結果를 可能な 限 自己의 目的에 合致되도록 加工하는 것에 의하여 「特殊 物價指數」를 作成한다.

라고 하는 2가지의 選擇에 直面하게 된다.

위의 例에서는

- ① 消費者物價의 平均指數를 利用한다.
- ② 高年令者間の 消費者物價指數를 小売物價調査 및 家計調査를 利用하여 試算한다.

라고 하는 2가지 方式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小売物價調査, 家計調査는 老令世帶의 分析用으로는 設計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의 結果는 本來의 存在形態에서 보면 相當히 不充分한 것이 된다.

過去の分析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研究者는 a의 方式을 採用하여 왔다. 이는 a, b의 2가지 方法을 檢討하여 a의 方式이 우수하기 때문에 採用한 것은 아니다.

고려할 수 있는 原因으로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i) 公表資料의 範圍内에서는 그 作業이 不可能하였다는 點.

특히 現行統計法이 이런種類의 作業을 制約하고 있다.

(ii) 加工作業이 꽤 複雑한 手續을 必要로 했다는 點.

(iii) 利用하여야 할 資料의 整理가 充分히 行하여지지 않았다는 點.

(例컨대 特定品目에 관한 價格指數를 長期에 걸쳐 作成하는 것은 相當한 作業量을 要한다)

이中 (i)의 問題는 今後 一層 重要性을 갖게 될 것이다.

歐美의 例를 보더라도 各種調査에 民間의 協力度는 低下하여가고 있으며 調査精度를 維持하기 위하여는 細部에 관한 資料의 公表가 漸次 困難하게 될 것으로 본다.^②

이와같은 狀況下에 있어서 特殊物價指數의 作成은 data bank의 重要한 業務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特殊物價指數의 例

上述한 바와 같이 特殊物價指數 作成의 目的은 事例別로 다르기때문에 모든것을 미리 豫想하는 것은 不可能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作業上의 觀点에서 이들의 指數를 整理하여 보면 表1과 같이 될 것이다.

同表에서 橫欄은 使用된 價格資料의 範圍를 나타내고 있다.

即 事例(A)에서는 物価指數의 作成이 特定한 基本的 物価指數에 利用되고 있는 價格資料만으로 可能하게 되는 경우이다.

<表 1> 特殊物価指數의 例

	(A) 特定한 指數의 範圍	複數個의 指數의 範圍
(a) 既發表된 加重值의 再分類	購入頻度別 消費者 物價指數	
(b) 加重值作成을 위한 原資料의 再集計	5 分位階級別 消費者 物價指數	
(c) 加重值作成에 其他의 資料가 必要	小売業売上高를 위한 deflator	建築費指數 GNE deflator 等

(表 1 에는 消費者物價指數의 範圍內에서 作成된 特殊物價指數의 例가 表示되고 있다.)

勿論, 이런 種類의 試圖는 消費者物價指數의 範圍에 關하여서만 行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都売物價指數나 農村物價指數等에 있어서도 充分히 고려될 수 있다.

한편 事例(B)에서는 複數個의 物價指數作成을 위하여 實施된 價格 調査를 利用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同表에 表示된 建築費指數는 消費者物價指數作成을 위하여 小売物價調査와 賃金指數等を 結合하여 作成된 것이며 GNE deflator 는 보다 많은 價格調査를 Cover 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말하여 事例(A)쪽이 作業으로써는 훨씬 容易하며 data bank 의 機能으로서는 事例(A)에 關한 大部分의 要請에 答할 수

있는 準備가 必要하게 될 것이다.

한편 事例(B)에 관하여는 比較的 單純한 것으로부터 複雜한 作業을 要求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므로 모든 要請에 答할 수 있는 體制를 미리 準備하여 두는 것은 困難할 것이다.

그러나 各作業이 共通的으로 要求하고 있는 機能을 整備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具體적인 作業 '스케줄'에 着眼하여 보면 縱欄에 表示한 3 段階의 分類가 可能하게 된다.

既述한 바와 같이 「特殊物價指數」의 作成을 위하여는 追加적인 價格調査를 前提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作業의 複雜性은 어떻게 加重値를 作成하는가에 主로 依存하고 있다.

事例(a)는 「特殊分類指數」의 一種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는 各調査商品에 붙인 品目別加重値는 原則으로서 變更되지 않고 目的에 따른 分類別로 加重平均한다고 하는 作業을 進行할 수 있다.

한편 事例(b)에서는 價格資料와 加重値作成을 위한 原資料는 本來의 指數와 同一한 것이 使用되지만 各價格系列에 붙인 加重値는 原資料에 소급하여 再計算되지 않으면 안된다.

例컨데 消費者物價指數에 관하여 (b)에 屬하는 作業을 實施하는 경우에는 家計調査個表의 再集計가 必要하게 된다.

事例(c)의 計算에 있어서는 加重値作成을 위한 資料를 外部로부터 찾아올 必要가 있다.

예를들면 表 1에 表示된 小売業의 活動에 대한 deflator의 作成에 있어서는 商業 센서스에 관한 情報가 要求된다.

本論의 以下의 部分은 이들 各事例에 対応하여 고려되는 各体制을 檢討하기로 한다.

우선 各事例의 例를 들어 거기에 対応하는 体制을 고려하여 問題點을 整理한다고 하는 形態로 議論을 進行하기로 한다.

4. 事例 (A, a)

以下 表 1의 分類에 따라 対応하는 体制을 고려하기로 한다. 우선 가장 간단한 事例(A), (a)의 組合으로부터 始作하기로 한다.

(1) 代表例……「購入頻度階級別 消費者物價指數」^③

事例 (A, a)의 指數에서는 基本的인 物價指數로 利用되고 있는 價格係例와 어떤 種類의 特性으로 分類하여 各分類別로 加重平均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代表例에서 表示된 指數는 消費者物價指數의 基本指數의 作成을 위하여 採用되고 있는 品目에 관하여 100 世帶의 年間購入頻度を 調査하여 그 크기에 따라 再分類한 것이다.

이 指數에 利用된 品目別加重値는 基本指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自体로서는 安定性을 갖고 있으며 總平均指數는 基本的指數와 一致하고 있다. 그 結果를 表 2에 參考로 表示하였다.

그러나 이 指數에도 本來의 分析目的에서 보면 若干의 相違가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

即 이 指數의 作成에 있어 使用된 品目別 加重値는 「價格變動

型的 類似性」에 注意하여 作成된 基本指數用的 「家計調査集計項目
의 指數品目에 로의 分割統合表 1 (以下 「分割統合表」로 칭함) 에

<表 2 - 1> 5大費目別購入頻度階級別上昇率
(1965-1969 年) 全世界

	綜合	食料	住居	光熱	被服	雜費
全品目	21.2	22.9	18.7	2.0	17.2	24.8
年1回未滿	16.3	-	13.9	-	18.3	17.9
1~4 "	17.5	12.2	14.1	17.3	17.6	20.5
4~12 "	21.4	24.8	16.3	12.4	17.7	15.2
12~24 "	26.1	25.2	33.6	-0.7	6.3	34.9
24~	19.2	20.8	-	-	-	14.2

<表 2 - 2> , 購入頻度階級別加重値 (全世界) 1965 年

	綜合	食料	住居	光熱	被服	雜費
全品目	100.00	42.45	107.3	4.96	12.80	29.06
年1回未滿	14.86	-	6.48	-	6.41	1.97
年1~12回	33.03	14.61	1.68	1.21	5.54	9.99
1~4	15.37	2.58	1.21	0.92	5.00	5.66
4~12	17.66	12.03	0.47	0.29	0.54	4.33
年12回以上	52.11	27.84	2.57	3.75	0.85	17.10
12~24	33.80	14.07	2.57	3.75	0.85	12.56
24~	18.31	13.77	-	-	-	4.54

근거하여 作成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加重値作成法은 本來의 目的에서 보면 반드시 適當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들면 食糧과 '샌드위치'의 價格變動型은 類似하다고 생각되지만 購入頻度에는 相當한 差異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點은 作成된 加重値表에서도 一部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種類의 指數는 약간의 制限下에서 使用되는限 充分히 注目할 가치가 있다.

事例(A, a)에 屬하는 特殊分類指數로써는 上記例外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미 發表된 것으로는

總理府統計局 「1回當 支出金額階層別 消費者物價指數」^④가 있고 同局 「所得彈力性值, 階級別 消費者物價指數」^⑤도 같은 性格을 가지고 있다.

또 新SNA과의 關聯에서도 必要性이 豫想되는 「耐久年限別 小売物價指數」^⑥도 이 事例에 屬한다고 생각된다.

(2) 豫想되는 體制

事例(A, a)에 屬하는 作業은 거의 表3과 같은 順序로 進行될 것으로 본다(여기서는 消費者物價指數의 재편성을 念頭に 두고 記述되고 있으나 다른 指數의 경우에도 큰 差는 없을 것이다) 우선 需要者側에서는 最小限 그 目的에 따른 特殊分類와 品目的 対応表가 必要하다.

가장 간단한 事例는 基本指數의 加重値를 그대로 利用하는 것이
며 本論의 (1)에서 열거한 諸事例는 이와같은 경우에 屬한다.

data bank 完成時에 있어서는 적어도 主要한 指數의 品目別
指數와 対応計는 加重値는 file (計算機內에 蓄積되고 있는)의
形式을 事전에 定하여 두면 特定の '프로그램'을 事전에 完成하
여 두는것도 可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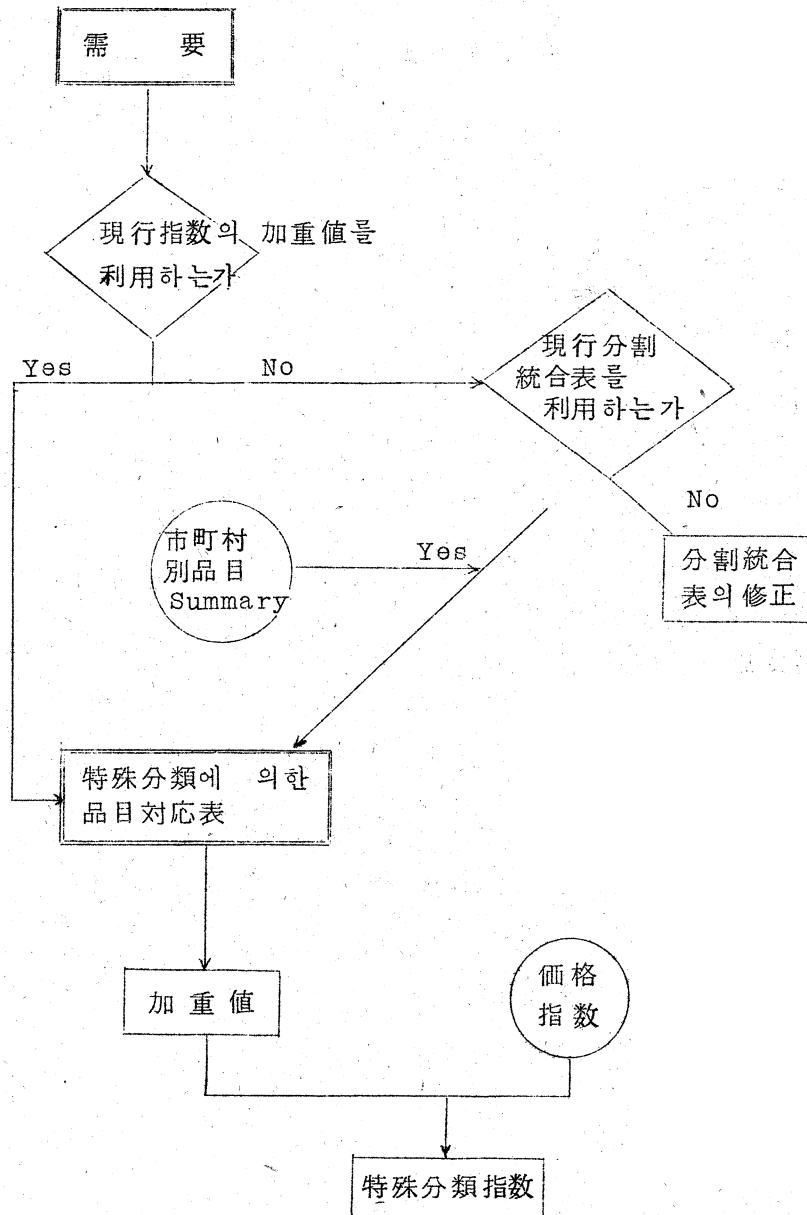
다소 複雜하게 되는것은 原則으로서는 基本指數의 加重値體系에
따르면서 약간의 研究를 要하는 事例가 豫想된다. 例컨데 最近과
같은 經濟狀況下에서는 輸出入物價指數를 基準年次의 加重値에 의하
는 것이 아니고 보다 가까운 時点의 加重値로 計算하여 보고자
하는 것을 極히 當然한 일이다. (이와같은 意味에서는 加重値에
관한 綜合은 基準時点에 관한것 뿐만 아니라 各年에 관하여 file
化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또 分析目的에 따라서는 「分割統合表」의 一部修正을 要求하는
事例도 생각할 수 있다.

例컨데 前節의 例에서 食糧과 '샌드위치'의 購入頻度가 상이하
다고 하면 食糧의 加重値를 그 分類에 分割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技術은 基本指數作成의 그것과 큰 差
없으므로 data bank 에 하나의 體制로써 導入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表 3> 事例 (A, a) 의 体制化



5. 事例 (A, b)

이 경우에는 基本指数로 Cover 되고 있는 異質集團間에 物價變動의 影響에 어느程度的 差가 생기는가를 보기 위하여 作成되는 것이며 이런 種類의 要請은 物價問題에 關心이 높아감에 따라 一層 增大되고 있다.

그래서 data bank의 하나의 새로운 必要性으로써 이런 種類의 作業이 꽤 많이 實施될 것이 豫想된다.

(1) 代表例—「年間実收入 5分位階級別 消費者物價指數」^⑧

이는 世帯類型別·特殊物價指數의 代表的인 指數이다. 이 指數의 目的은 物價의 變動이 家計에 미치는 效果를 測定함에 있어 所得水準의 差가 어떻게 作用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作成된 것이며 「家計調査」에 있어서는 各階層別로 加重値가 計算되어 加重平均되는 点에서 消費構成의 相違가 物價指數에 미치는 影響에 關하여는 相當한 程度로 反映하는데 成功하고 있다.

그러나 附帶調査를 수반하지 않는 特殊物價指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制約이 있는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a. 各分位階級에 屬하는 世帯의 地域分布는 相互 틀리기 때문에 全國平均個別 指數는 分位別로 相異할 것이다.

그러나 計算上은 共通指數가 使用되고 있다.

b. 各分位階級에서는 購入品目, 購入商品이 상이함에 關係없이 共通의 「分割統合表」 利用되고 있으며 各分位の 特色이 나타나 있지 않다.

c. 「家計調査」의 標本을 5 가지로 分割한 경우 品目別 加重值의 安定性이 充分히 保障되는가 어떤가에 대한 檢討가 充分히 行하여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특히 購入頻도가 적은 品目에 관한 加重値는 分位에 의하여 相當히 不安定한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 豫想된다.

이와같이 다소의 問題를 包含하고 있는 指數일지라도 現在에 있어서는 準公式指數의 位置를 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指數의 作成이 當時 「定說」이라고 主張(物價上昇이 低所得層에 의하여 不利하게 作用하고 있다고 하는 主張)에 어느 程度의 反論을 加한일도 있고 特殊物價指數에 대한 必要性을 增加시키는 契機가 된것은 確實하다.

現在 이 事例에 屬한다고 생각되는 物價指數로써는 總理府 統計局의 「標準世帯消費者物價指數」^⑨가 發表되고 있다.

이 외에 總理府 統計局에서 「住居所有關係別 消費者物價指數」 「世帯主의 年令階級別 消費者物價指數」^⑩ 「世帯主의 職業別 消費者物價指數」^⑪ 등을 作成中에 있다고 하며 「家族類型別 消費者物價指數」^⑫도 企劃中에 있다.

以上은 消費者 物價指數의 例이지만 이와같은 要求가 다른 物價指數에도 波及하여 올것이 豫想된다.

例를 들면 輸出入物價指數로써 契約形態別(円建 弗建等)의 指數가 要求될지도 모른다.

이들의 計算은 필시 消費者 物價指數의 경우보다 複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事例 (A, b)에 관하여는 消費者 物價指數의 領域보다 實驗을 始作하는 것이 能率的이 될 것으로 본다.

(2) 豫想되는 体制

事例 (A, b)에 屬하는 要求의 形態는 対象指數에 따라 多少 다르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消費者 物價指數에 관한 要求를 念頭に 두면서 体制를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表 4는 現在 実行되고 있는 作業過程에 將來 豫想되는 要求形態를 附加하여 圖表로 만든 것이다.

우선 特定の 特性을 가지는 '그룹'에 관한 物價指數에 대한 要求가 있을 경우 먼저 既成 file 中에서 이 要求에 대략 應할 수 있는 分類가 加重値作成을 위하여 原資料에 대하여 行하여졌는가를 檢討하는 것이 能率的인 것이다.

現在の 家計調査年報에 公表된 品目分類의 世帯特性別 集計에 現在計劃中の 것을 加하면 表 5와 같이 相當한 範圍를 Cover 하는 것이 된다.

data bank 完成時에 있어서는 이들 情報는 當然히 file의 対象이 되므로 이러한 加重値를 利用하여 計算되는 特殊物價指數의 計算体制는 比較的 容易하게 作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⑬

한편 需要가 既成 file 內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品目

別 分類世帯綜合内訳까지 소급하여 再集計가 必要하게 된다.

이 경우 分類基準이 原資料의 '코-드'에 限定되는 것은 當然 하지만 特殊物價指數의 研究의 進行과 더불어 各種의 新'코-드'에 관한 調査要求도 發生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와같이 再評價된 品目別支出金額은 「分割 統合表」에 의거 指數加重値로 轉換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加重値의 安定性이 充分히 保障되는가 어떤가 라고 하는 問題가 發生한다.

특히 購入頻度가 적은 品目에 관하여는 標本數의 減少에 따라 不安定하게 될것이 豫想된다.

이와같은 問題는 各地域別 指數의 作成에 있어서 意識되고 있지만 特殊物價指數의 作成에 있어서 充分한 檢討가 行하여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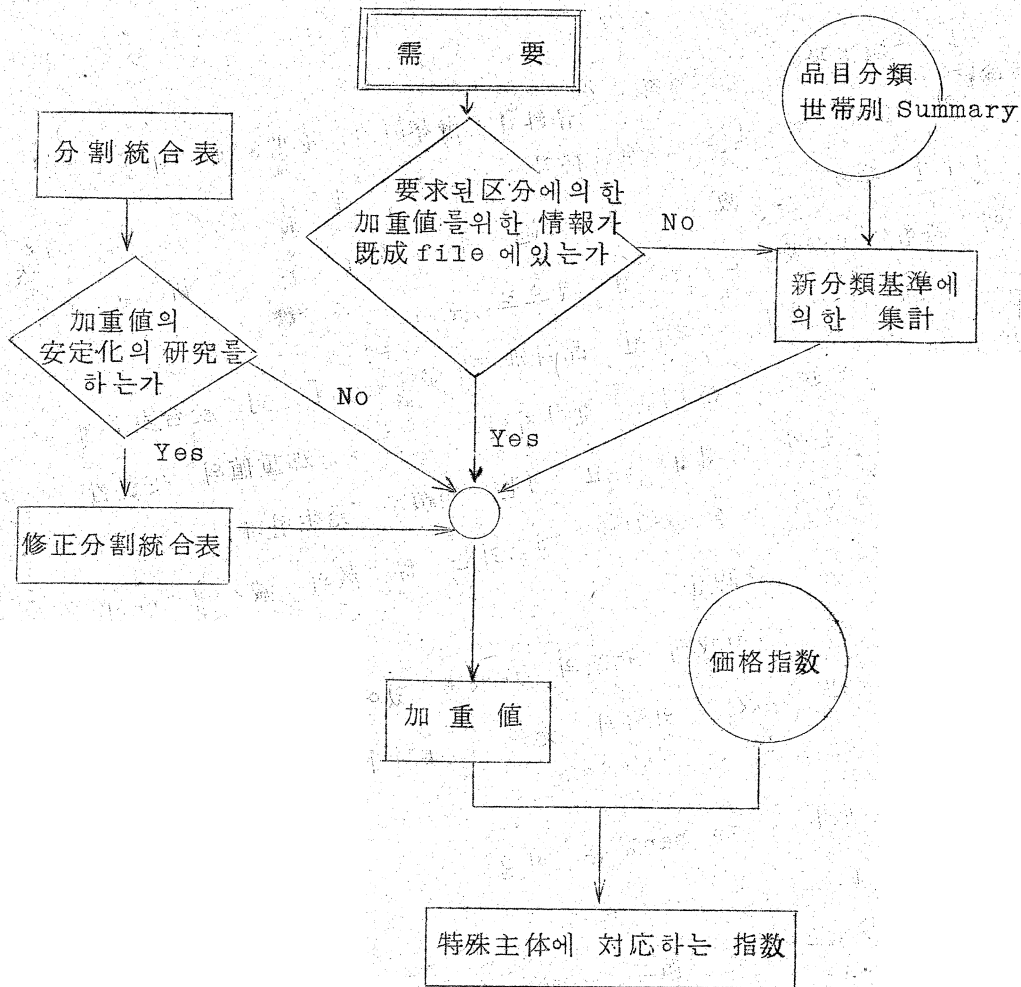
이와같은 事實에서 data bank는 다음과 같은 機能도 갖추고 있을것이 要望된다.

- (1) 指定된 特殊階級の 加重値의 一般的 安定性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는것.
- (2) 특히 問題가 되는 品目別 加重値를 指摘하는것.
- (3) (2)를 補正하기 위한 補助情報를 提供하는것.

이러한 機能을 完備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制度上의 研究에 그치지 않고 指數上 自体의 精度에 관한 研究도 要求될지도 모른다.

以上の 議論에서는 主로 年單位로 特殊物價指數를 作成하는 것을 念頭に 두고 叙述하였다.

<表 4> 事例 (A , b) 의 体制化



<表 5>

家計調査品目分類特殊集計

地 域	都市階級, 地方
所 得	年間收入階級, 同 5 分位
世 帯 特 性	世帯人員, 標準世帯 住居形態
世 帯 主 特 性	年令, 職業

그러나 物價에 대한 関心이 높아감에 따라 月別指數에 대한 要求도 發生할 것이 豫想된다.

다만 이 問題를 取扱함에는 季節加重値를 둘러싼 複雜한 議論까지 波及될 必要가 생기므로 여기서는 言及을 避하고자 한다.

6. 事例 (A, c).

事例 (A, c)에 대한 需要는 從來에는 比較的 그 例가 적었다.

그러나 이는 潛在的 需要가 근소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意味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受入体制의 整備와 더불어 이런 種類의 需要는 더욱 增大될 것으로 본다.

그 一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分析例……東京商工会議所「東京小売物價指數」^⑱

小売物價指數는 都売物價指數와 더불어 物價指數의 歴史上 重要な 役割을 하여 왔다. 그 代表的인 것으로는 日本銀行에 의한 指數를 비롯하여 東京, 大阪等の 重要都市에 있어서 商工会議所에 의한 系列 發表等を 들 수 있다.

이들 指數는 初期段階에서는 消費者 物價指數의 代用으로써 利用되어 왔으나 消費者 物價指數의 充實化와 더불어 그 相對的 地位가 漸次 低下하여 오늘날은 小売活動分析을 위한 deflator 로써의 地位에 限定되고 있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理由에서 우선 日本 銀行 指數가 廢止되었고 뒤이어 東京商工会議所指數도 1971年 12月에 廢止되기에 이르렀다. 그 結果 流通經濟研究所 委員이 發言한 바와 같이 小売業販賣에 관한 deflator가 欠如되어 있는 狀況이 出現하고 있다.

東京商工会議所指數의 廢止의 主된 理由는 그 價格情報의 殆半이 小売物價調査에 의거 代用可能하다는데 있는듯하다.

確實히 表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 種類의 指數의 採用品目이 상당한 共通性을 갖고 있고 小売物價調査에서 代用할 수 있는 面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採用하고 있는 加重値는 商業센서스를 基礎로 하고 있기 때문에 消費者 物價指數의 採用品目과는 다르게 되어있다.

表 7 은 兩者의 物價指數의 加重値를 對比한 것이지만 상당한 相違를 볼 수 있다.¹⁹⁾

重複된 調査를 整理하여 效率的인 統計調査體制를 作成하는 것은 國民經濟的으로 보아도 有効한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는 東京商工会議所가 取한 方向은 肯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指數廢止에 따른 利用者의 不便은 어떤形態로 補充되지

<表 6> 東京商工会議所指数採用品目과 小売物価調査
品目の 対応

	東商採用品目数	小売物価調査에 대한 対応品目이 있는것	小売物価調査에 類似品目이 있는것
食 料 品	95	92	3
織 維 品	28	19	9
建 材 建 具	13	9	1
燃 料	7	6	0
機 械 器 具	16	15	0
雜 品	43	34	5

<表 7> 東京商工会議所の 加重値와 消費者
物価指數의 加重値 比較

(合計 1,000)

	東 商 指 数	消 費 者 物 価 指 数
食 料 品	421.0	511.0
織 維 品	209.6	109.3
建 材 建 具	108.5	29.3
燃 料	26.3	10.9
機 械 器 具	68.8	42.4
雜 品	165.8	297.1

않으면 안된다.

다행히 表 6 에 나타난 바와 같은 品目対応이 可能하며 商業센서스에서 加重値를 算出하는 것도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指數의 算定은 data bank 의 손쉬운 작업으로서 檢討하여볼 價値있는 課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例는 極히 特殊한 것이지만 今後、各種統計의 整理統合이 進行되는 過程에서 data bank 의 役割을 表示하는 뜻에서 興味있을 것으로 보고 例示한 것이다.

(2) 豫想되는 体制

事例 (A , c) 에 있어서는 指數加重値는 需要者 自身에 의거 作成되든지 아니면 原資料 및 그 加工法이 指示되는 狀況下에서 作成되므로 data bank 로서는 價格系列과 이를 加工하기 위한 ' 프로그램 ' 만을 提供하면 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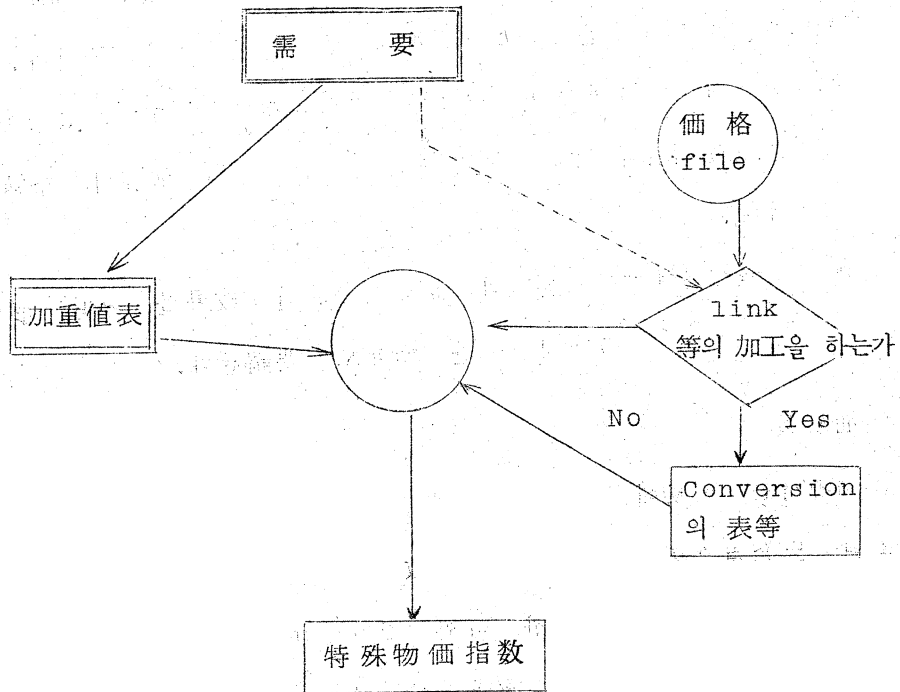
事例 (A , a) , (A , b) 와 比較하면 單純한 体制로써 可能하다. 다만 價格系列에 관하여는 改訂時点を 넘어 連續性이 要求되는 事例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1) 同一品目에 관한 價格系列은 (비록 商品의 變更이 있어도) 相互 link 하는 것에 의거 長期系列을 作成한다.

(2) 同一品目の 系列을 求할 수 없는 경우에는 類似品目 價格等을 利用하여 可能한 限 長期系列을 作成한다.

7. 事 例 (B)

<表 8> 事例(A, e)의 体制



事例(B)에 屬하는 要請으로서는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代表的인 例를 드는것 만으로도 推測컨데 相當한 每數를 必要로 할 것이다.

例컨데 GNE deflator 中の 政府消費 deflator 는 消費者 物價 指數, 都売物價指數 料金指數, 賃金指數의 合成系列로 作成된다.

또 産業關連表의 最終需要를 變化시켜서 分析을 行하는 試圖도 꽤 많이 行하여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deflator 의 作成에는 各指數의 再追計가 必要하게 된다.

이와같이 事例 B에 대한 需要는 多面的이고도 大規模의 作業이 要求되므로 이러한 需要에 全面的으로 充足할 수 있는 体制를 미리 開發하려고 하는것은 그다지 能率的인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마다 되풀이하여 생기는 需要(例컨데 GNE deflator의 作成, 建設費 指數의 作成)를 充足할 수 있는 体制의 整備가 重要할 것이다.

또 漸次 增大하여 가는 各種의 需要에 答한 成果를 어떤 形態로 組織적으로 남겨 두는 方向에 대한 研究도 要請된다.

8. 当面施策

本論에서는 最初에 記述한 둘째의 要請을 들어주기 위한 data bank의 出發点으로서의 特殊物價指數의 作成体制를 考察하여 보았다. 그러나 以上에서 叙述한 바와 같이 이와같이 限定된 範圍内에서도 이의 体制化는 一朝一夕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여기서 当面施策으로써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提案하고자 한다.

- (1) 1965年以後의 主要物價指數의 品目別 價格指數를 file 한다. 1970年以後의 指數와는 可能的인 것은 品目別로 link 시키고 対応品目を 찾을 수 없는것에 관하여는 指定된 處理가 可能的인 形態로 保存한다.
- (2) 1965年, 1970年 指數의 算出에 使用된 基本加重值, 特殊加重值를 file 한다.
- (3) 1965年, 1970年의 指數加重值 算出에 使用된 原資料를 個

票 image 까지 소급하여 file 한다.

지금당장 消費者 物價指數로 限定하는 것이 能率的일 것이다.

(4) 指數의 綜合에 使用하는 '프로그램' 및 細部資料의 再集計에 使用되는 '프로그램' 을 整理하여 一般이 利用 可能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것이 完成된 후 漸次 過去의 資料까지 소급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利用者의 立場에서 보면 指數改訂에 의한 不連續性의 修正, 상이한 指數間의 比較可能性의 增大等を 위한 充分한 配慮가 期待된다.

[註]

- ① 여기서 말하는 「特殊物価指数」는 「消費者物価指数 年報」 등에서 말하는 「特殊分類 物価指数」보다도 다소 넓은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例컨데 「小売物価調査」의 情報를 利用하여 小売業販売額의 deflator 를 作成했다고 하면 이 指數는 特殊分類 物価指數 에는 들어가지만 特殊分類 物価指數는 아니다.

- ② 現在까지 各調査의 品目別指數는 發表되고 있으므로 技術上의 制約은 주로 加重値面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一部西歐諸国에서는 個別指數 그 自体의 發表가 困難하게 되어있다.

日本에 있어서도 製藥業界等에는 自己会社の 商品이 價格調査의 対象이 되는것을 기피하는 風潮가 있으며 個別指數의 公表가 困難하게 되는것도 充分히 豫想할 수 있다.

- ③ 總理府 統計局 「消費者物価指數 參考資料, 第3号」參照

- ④ 註 ③ 參照

- ⑤ 註 ③ 參照

그리고 同 報告書에서는 「標準世帯의 年間收入 5分位階級別 所得彈性性値 階級別 消費者 物価指數」의 形式을 取하고 있으므로 事例(A, a)와 事例(A, b)의 混合形으로 되어 있다.

- ⑥ 高木委員의 指摘에 의함.

- ⑦ 이와같은 努力은 近年 重視하게 된 連鎖指數計算을 할 수 있는 길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日本에서 連鎖指數를 作成하기 위한 試圖로서는 統計硏究會 消費統計部令의 作業의 形態로 總理府統計局試算이 發表된 것이 最初이다.

(統計硏究會 「統計硏究會 20年史」參照)

이 試算은 東京都區部の 消費者를 對象으로 한것이 있었으나 1970年 以後에 있어서는 全國 base의 指數도 豫定되고 있는듯 하다.

- ⑧ 總理府統計局 「消費者 物價指數, 1969年版에 의함.

- ⑨ 註 ③參照

- ⑩ 年令別 物價指數는 美國의 BLS에 의하여 상당히 硏究가 行하여지고 있다.

- ⑪ 歐美에서는 特히 은퇴한 家族에 대한 消費者物價指數의 硏究가 進行되고 있다.

日本에 있어서도 今後年金問題와 관련시켜 이런種類의 硏究가 促進될 것으로 본다.

- ⑫ 諸外國에 있어서 特殊物價指數로써는 民族別 指數가 있다.

이와같은 指數는 日本에서는 必要없지만 特殊 物價指數作成上의 技術에 限하여 보면 어느 程度 參考되는 것도 적지않다.

- ⑬ 現在 이런일에 要請되는 것은 手作業으로 指數를 計算하는 쪽이 보다 能率的인 狀況下에 있는듯 하다.

그러나 将来 多様な 需要形態를 想定한 경우 電算機械化의 方向으로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⑭ 地域別(市町村別)加重値의 作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研究 行하여지고 있다.

(i) 購入頻度は 적으나 一回의 支出金額이 큰 耐久消費財에 관하여는 全国都市階級別로 平均加重値를 求하여 各都市階級內의 全地域에 共通적으로 使用한다.

(ii) 購入頻도가 다소 적은 品目에 관하여는 都市階級內를 다시 地域別로 나누어 平均加重値를 求하여 当該市, 町, 村에 共通적으로 利用한다.

⑮ 적어도 既述의 「年間実收入 5分位階級別 消費者 物価指數」의 作成에 있어서는 加重値의 安定性的의 '테스트'는 行하고 있지 않는듯 하다.

이 指數作成에 있어 各階級에 全標本의 $\frac{1}{5}$ 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標本數에 관하여는 問題가 적다.

다만 低所得層에 관한 耐久消費財等의 加重値가 安定的인가 아닌가等에 관하여는 檢討의 餘地가 있다.

이런 種類의 問題는 今後 作成하려고 計劃되고 있는 各指數에 관하여 보다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될것이다.

⑯ 이런 種類의 情報으로써는

(i) 過去數年의 合計値를 利用하는 方法

(ii) 「全国消費実態調査」와 같은 大標本에 의한 結果를 補正하

여 이용하는 방법

(Ⅳ) 回歸方程式의 理論値를 이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⑬ 特殊物價指數와 基本的인 物價指數와의 一致性도 考慮하면서 季節加重値를 作成하여가는 作業은 꽤 번거로운 手續이 豫想된다.

이와같은 問題는 既述한 連鎖指數의 作成에 있어서도 發生한다. . 이에 관하여는

Government Price Statistics,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Economic Statistics of the Joint Committee, Congress of the USA 參照

- ⑭ 東京商工会議所 「東京小売物價動向」 1971年 11月.

- ⑮ 이 加重値의 比較에 있어서는 消費者 物價指數의 加重値를 小売物價指數의 分類에 맞추어 再集計하여 対応되는 것만의 加重値總計로 除하였다.

따라서 消費者 物價指數에 包含되는 서비스關係의 加重値는 当然히 除外되고 있다.

- ⑯ 經濟企劃庁編 「1965年度基準, 改訂國民所得統計(推計資料)」

第 5 章 流通研究와 物價資料

1. 物價와 流通

商品이 生産者로 부터 最終需要者에게 直接販賣되는 경우와 末端價格까지 生産者가 決定하여 嚴重히 再販賣價格維持를 行하는 경우를 除外하면 거의 대부분의 商品은 流通段階에서 價格이 形成된다.

價格形成의 方法은 同一하지 않다. 生鮮食料品과 같이 多數의 賣買參加人에 의거 公開競売價格形成이 行하여지는 것도 있고 相對方間에 價格形成되는 것도 있다.

또 購入價格에 諸經費와 利潤을 加算하는 形態로 流通業者가 獨自적으로 價格 決定을 行하는 例도 적지 않다. 都売物價이건 小売物價이건 流通段階에 있어 多様な 價格形成方法을 通하여 實現된 結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物價問題에 있어 流通研究가 重要한 意味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곧 理解할 수 있다.

結果로써의 物價變動이 아니고 物價變動의 mechanism에 파고 들려고 한다면 流通研究는 不可欠하다. 物價와 流通의 關係를 國民經濟的立場에서 糾명한 勞作은 現在까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流通이 物價上昇의 原因이라는 意見도 아직까지 理論的實証을 欠한 「추측」의 領域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研究가 늦어지고 있는 理由로써는

- ① 従来の 經濟學에서는 流通을 獨立된 經濟過程으로 보지않고

生産過程中에 포섭시켰다는 것.

② 여태까지 流通 研究를 行하여 온것은 商業學이나 marketing 等 주로 個別經濟的 觀點에 서서 行한 것으로 經濟學에 있어서의 理論 構成이나 分析 道具를 使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③ 研究 素材가 될 수 있는 諸 統計가 充分히 整備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諸 統計의 整備에 관하여 약간 說明하면 最近 個々の 商品의 價格 形成을 流通 經路를 追跡하면서 糾明하려고 하는 調查 資料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한개의 '그룹'은 農林省에 의한 生鮮 食料品의 價格 形成에 관한 追跡 調查이며 다른 한개의 '그룹'은 通産省이나 經濟 企劃 廳에 의한 輸入品의 價格 形成에 관한 追跡 調查이다.

이들 調查는 個々の 商品이 如何히 하여 價格이 形成되는가 그 mechanism을 알기 위하여는 매우 有益한 資料를 提供하여 주지만 他面 流通 機構를 全體的으로 把握하여 物價 變動의 mechanism을 解明하는 目的에서 보면 반드시 充分하다고 할 수 없다.

物價 變動에 流通過程이 커다란 關聯을 맺고 있다는 것이 明確한 以上 流通過程의 關聯 狀況을 어느程度로 나타낼 수 있는 物價 資料가 用意되고 있다는 것은 單純히 物價 問題뿐만 아니라 流通을 全體的으로 研究하는 立場에서도 그리고 物價 變動의 mechanism을 糾明하려는 立場에서도 極히 重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流通 研究에 관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는 諸 統計에 관하여

一応 살펴보고자 한다.

2. 流通關聯 統計를 둘러싼 問題

1) 流通關聯統計

流通을 売買의 綜合概念으로써 規定한 경우 이를 어떤 方法을 써서 數量的으로 把握할 것인가 하는것이 問題가 된다.

이 경우 便宜上 流通을 流通活動의 面에서 보아

(1) 商去來活動과

(2) 物的 流通活動으로 二分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3) 情報流通 活動으로 3分)

各領域에 있어서 實現된 流通機能의 成果 即, 流通現象을 統計로써 表示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現在 作成되고 있는 流通關係의 諸統計를 檢討하여 보고자 한다.

林周二 教授에 의하면 「一般的으로 流通關係 諸統計의 作成은 大別하여 長期·短期의 2가지의 目的에 奉仕하고 있지만 前者는 國民經濟計算의 目的 또는 流通部門 그 自體의 量的表章의 細部費 目を 얻기 위한 것으로 그 目的을 위한 統計調査는 센서스의 일 것을 要하는 反面, 調査間隔은 그다지 짧게 할 必要는 없다…… 後者에 關하여는 景氣動向 내지 去來市況의 把握에 도움을 줄 目的으로 行하여지는 것이다.

이 目的에 貢獻하는 統計調査는 標本調査로 充分한 反面, 調査間 隔은 4分期 내지 每月일 것을 要하며 그 結果 公表도 可急的

迅速히 할것이 要望된다」(註)

그리고 林教授는 兩者의 相違點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後者(短期的 目的에 奉仕하는것)의 統計調査는 橫斷面的인 信賴性보다 오히려 繼續 時系列的으로 使用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 資料가 速報的인가 아닌가가 問題로 된다. 이에 대하여 前者 即 第1의 目的(長期的目的)은 速報性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細部的인 橫斷面的正確性이 要請된다」註(3)

流通關聯統計의 目的의 相違에 따라 이와같이 長期·短期의 2가지로 区分한 後 林教授는 兩者의 具體的인 例를 必要한 情報를 獲得하는 方法別로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① 長期的 目的에 대하여

- a. 「流通部門의 大部分을 調査하고 또 細目에 걸쳐 資料를 얻을 수 있는 流通事業所센서스에 의한 方法」에 의한것(具體的例……「商業統計」等)
- b. 「流通部門이 限定된 特定部分을 調査하고 또한 統計的인 資料를 提供하는 調査에 의한 方法」에 의한것(具體的例……「纖維流通統計」 「洋紙流通統計調査」等)
- c. 「人口센서스, 勞動力調査, 資本費用調査와 같은 보다 広範한 調査의 一部에 包含시켜 流通部門을 調査하는 方法」에 의한것(具體的例……上述한것 外에 「畜産物調査」 「品目別輸送機關別 地域相互間貨物輸送量調査」等)
- d. 「法務, 稅務關係의 業務統計를 利用하는 方法」에 의한것

(具體的例……「各種通關統計」 「稅務統計」 「交通關係統計」
等)

e. 「特別히 그 目的을 위하여 設計된 實態調查를 行하는 方法」에 의한것 (具體的例……農林省에 의한 「農產物 流通統計調查」 (그 內容은 流通構造調查, 青果物 流通統計調查, 食肉 流通統計調查, 生鮮食料品 需要動向調查 등이다)

② 短期的 目的에 대하여

a. 「總売上高等의 出荷數字, 內國消費稅, 去來高稅等의 資料를 모은것을 行政的으로 分類 再集計하는 方法」에 의한것.
(具體的例……호주, 挪웨이 등 西歐의 一部에서 볼 수 있다)

b. 「이 目的을 위하여 特別히 設計된 繼續統計調查에 의거 直接調查하는 方法에 의한것 (具體的例……「商業動態統計」 「百貨店販賣統計」)

註「流通情報」 流通經濟研究所刊 論文引用

2) 統計에 관한 몇가지 問題

壳買를 中心概念으로 하는 流通의 諸機能에 관하여 考察하여 보면 위에서 指摘한것 以外에도 關聯이 많은 統計는 여러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일일이 그 內容을 파고들지 않고 오히려 現行統計 中에서 流通과 가장 關係가 깊은 「商業統計」 (指定統計 第 23 号) 에 관하여 이를 利用하는 立場에서 몇가지 問題點을 指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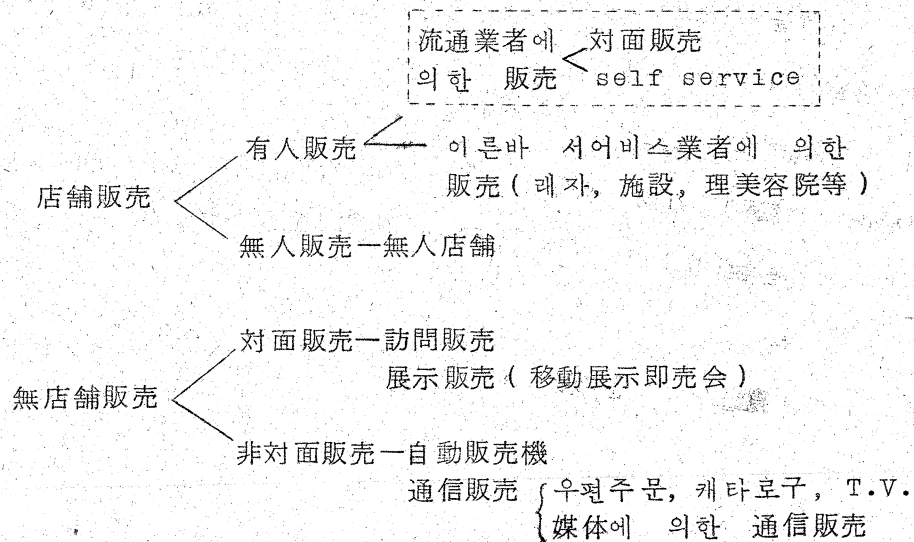
「商業統計」를 利用하여 流通現象의 分析을 行하려고 하는 경우

가끔 문제가 되는것은 調査対象이 「日本標準産業分類」의 都売業, 小売業에 屬하는 全國의 事業所에 限定되어 있으며 게다가 다음에 掲記하는 것은 調査対象에서 除外되고 있다.

- (i) 國家 및 公共企業체에 屬하는것
- (ii) 營業場所가 一定하지 않는것 또는 營業을 위한 固定的設備 없는것
- (iii) 出入에 許可 또는 入場料의 支払을 要하는 等の 制限이 있는 事業所内に 設置되어 있는것 (그러나 上記에 구매됨이 없이 生活協同組合은 調査되고 있다.)
- (iv) 繼續 3 個月以上 休業하고 있는것

따라서 예컨대 '호텔' 이나 駅에 있는 売店 등을 調査와 範圍外에 있으며 이러한 場所에서의 流通은 統計에 反映되지 않고 있다.

2. 販賣方法의 分類



또 圖2에 表示한 바와 같이 商品流通은 販賣方法(購賣方法)에서 보면 반드시 商店을 通하여 行한다고 限定할 수 없다. maker의 消費者直売(無店舖販賣)等도 增加되고 있다. 그러나 商業統計에서는 이러한 形態의 流通現象을 把握할 수가 없다(現行 調査에서는 店舖有人販賣의 流通業者에 의한 販賣가 主로 調査되고 있다)

이런 問題는 「商業統計」가 원래 全國的인 商品의 總流通狀況을 포착하는 目的의 것이 아니고 또 商去來 企業의 實態를 表示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商去來 事業所라고 하는 屬地的인 存在의 實態를 量的으로 表章하는데 그 意義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起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全國的인 流通現象보다는 流通事業所 그自體의 調査에 加重值를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商業統計로 부터는 본래 부터 國民經濟的인 macro 的인 流通現象을 完全히 把握하는 것을 不可能하다.

이것이 「商業統計」가 갖는 問題點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關聯統計間에 볼 수 있는 品目分類의 不一致도 統計의 利用上 不便할 때가 많다.

日本의 경우 農林統計表, 國內鉅業趨勢, 工業統計表에 使用되는 「生産諸統計의 品目分類」와 商業統計表에 使用되고 있는 「商業統計의 商品分類」와는 分類原理가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商業統計」와 「工業統計」를 相互比較하자면은 매우 困難할 때가 있다.

아와 같은 問題는 商業의 年間販賣額을 時系列分析하는 경우, 消費者 物價指數나 小売物價指數를 deflator 로써 使用하려고 해도 「商業統計」의 分類에 該當하는 物價指數를 찾는것은 어렵고 表 1 에 表示된바와 같은 苦心의 作業을 거쳐야 얻게 되는 것이다.

원래 消費者 物價指數나 小売物價指數는 그 作成目的에서 보면 全國의 消費者世帯가 購入하는 各種의 商品과 서비스의 價格을 綜合한 物價의 變動을 時系列的으로 把握하여 消費生活의 實態를 把握하는 한개의 基礎資料가 되는 것이며 流通活動을 測定하기 위한 deflator 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流通活動을 測定하는 基準이라는 것을 作成할 必要가 있다.

이외에 「商業統計」에 관하여는 速報性이나 信賴性等 여러 가지 問題를 指摘할 수 있지만 要約하면 流通現象의 統計的인 把握을 위하여는 現行의 「商業統計」만으로는 不充分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流通關聯諸統計의 整備 및 体系化가 必要하게 되는 事情을 찾아볼 수 있다.

品目別 物価指数

(1965年 = 100)

※指数는 다음의 統計調査資料를 參考로 했다.
 「農器具」「肥料・飼料」는 「農村物価賃金
 統計」「自轉車」는 「小売物価統計」
 기타는 「消費者物価指数」人口 5萬以上の
 都市中分類指数

	S.35	S.43	S.44	S.45	※消費者物価 指数類別
1 洋服地	84.1	111.3	116.1	126.2	衣料
2 寝具					
3 男子洋服					
4 婦人兒童服衣服					
5 신발類, 가방	73.6	113.1	118.7	130.0	身辺品
6 洋品雜貨					
7 各種食料品	63.5	115.4	121.9	139.3	加工食品
8 술,調味料(乾物)	99.5(66.7)	109.8(129.7)	113.2(150.1)	115.4(145.9)	酒類(乾物)
9 菓子	75.0	108.1	113.5	122.7	菓子
10 自轉車	92.3	107.9	110.4	118.2	※自轉車 (小売物価統計)
11 家具	71.1	126.6	134.7	149.8	設備修繕
12 建具					
13 金物	93.5	105.5	106.7	110.2	家具什器
14 荒物					
15 陶器,유리그릇類					
16 家電	(73.6) 84.9	(112.2)107.8	(117.8)106.8	(126.9)115.3	(理容衛生) 保健医療
17 家庭用機械					
18 医薬品(化粧品)	97.6	104.9	106.5	109.9	「農村物価 ※賃金統計」
19 農器具					
20 肥料・飼料					
21 紙・文房具					
22 運動具	94.7	105.0	114.4	123.9	文房具
23 玩具娛樂用品					
24 樂器	68.6	122.0	132.0	142.2	教養娛樂
25 카메라写真材料					
26 時計,안경,光学機	93.5	105.5	106.7	110.2	家具什器

註：鹿島県 商業近代化報告 (I)에서 引用

3. 物價資料에 대한 期待

流通研究를 위한 代表的資料가 되고 있는 商業統計가 屬地的인 商去來事業所에 關한 統計라는 것은 流通研究 그것을 이른바 機關別 接近으로 유도하는 하나의 原因이 되고 있다.

前述한 商品別 追跡調査나 物資所管官庁에 의한 物資流通 統計는 이른바 商品別 接近을 可能케 하고 있지만 나머지 機關別 接近에 關하여는 物價資料에 期待하는바가 크다.

왜냐하면 物價變動의 實態를 把握하고 그 背後에 있는 物價變動의 體系를 解明함으로써 流通機構가 갖고있는 構造的인 問題點과 同時에 流通活動(또는 流通機能)의 遂行方法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을 明白히 찾아내는 것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一例를 들어 보면, 物價上昇의 하나의 原因으로서 流通部門의 勞動生産性이 生産部門의 그것에 比하여 時系列的으로도 橫斷的으로도 현저하게 낮고 이것이 經濟全體의 勞動生産性의 向上을 방해하고 있는것이 指摘되고 있다.

여기서 流通部門의 勞動生産性을 測定할 必要가 생긴다.

通常 勞動生産性의 測定은 常時從業員數(또는 時間勞動者(Parttimer)를 加한것)로 年間販賣額을 除하는 形態로 行하여지지만 이를 時系列比較할 때는 年間販賣額은 小売物價指數 또는 都売物價指數를 deflator로 使用하고 있다.

또 迂回流通의 實態를 解明하기 위하여는 都売物價指數와 小売物價指數의 乖離의 程度를 나타내는 資料가 有益하다.

以上과 같이 物價資料 그 自体가 流通 研究에 있어 特히 機能的 接近이나 構造的 接近에 있어서는 아주 有益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지만 더욱 研究의 進展을 促求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點에서 物價資料의 存在形態를 改善할 것이 要望된다.

그 主된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生産部門과 流通部門의 勞動生産性比較를 위하여는 物價資料에 있어 品目別 一致性이 配慮되어야 한다.
- ② 同時에 國際的 比較를 할 수 있도록 調査品目の 選定에 配慮가 있어야 한다.
- ③ 時系列比較를 行함에 있어 適切한 deflator가 必要하다.
- ④ 迂回流通의 實態解明을 위하여도 小売物價와 都売物價에 있어서 品目の 一致가 必要하다.

以上은 主로 調査品目이 一致에 관한 問題이지만 보다 特殊的인 問題로써는

- ① 流通 Cost 指數의 開發
- ② 標準的 商品에 관한 全流通過程을 포괄한 價格變動 '모델' 의 開發과 그 繼續的 操作의 2가지가 data bank 와 他機關(官庁 및 學術研究機關)의 協力에 의하여 實現될 것을 期待한다.

結 言

物価關聯資料를 몇개로 組合시킨 複合的 利用方法의 具體的인 例를 第1部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多樣한 利用方法中에서 極히 限定된 例이지만 이 情報体制 및 一般的인 統計 data bank 의 存在形式에 대하여 상당한 示唆를 內包하고 있다.

統計資料의 利用方法에 관한 이들 要請을 充足시키는 일은 統計資料의 解析技術의 進歩나 利用技術의 發展과 더불어 情報体制의 有用性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本体制實現을 위하여는 情報의 提供이나 이에 關聯된 必要한 諸處理를 適切히 行하여 利用을 適時에 充足시켜가는 機能이 必要하다. 昨年度의 基本設計를 받아 今年度の 研究에 있어서는 情報處理体制로써 期待되는 data base 의 作成, 維持機能, 統計情報의 抽出加工, 分析, 處理機能, 그리고 統計資料의 整備·蓄積에 있어서의 要件等에 관한 具體的인 存在形態外에 今後의 發展에 따른 必要한 事項이 指摘되었다.

그 結果, 物価關聯情報体制의 實現方案을 고려할 段階에 達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最初로 이 情報体制와 統計 data bank 와 의 關係를 揭記하여 보기로 한다 (圖 3 - 1 參照)

即 本情報体制는 物価關聯統計資料를 둘러싼 data base 와 統計 data bank 와 다른 data base 에 共通的機能을 다하는 情報處理体制와의 連結에 의거 運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情報体制의 實現을 期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data base 와 이와 密接한 關係를 갖는 情報處理体制에 대한 利用者側으로 부터의 要請을 如何히 充足시켜 가는가에 考察의 焦點을 두었다.

1. 物價 關聯情報体制 稼動을 위하여

本情報体制의 基本的 要素로써는 利用者外에 data base 와 情報處理機能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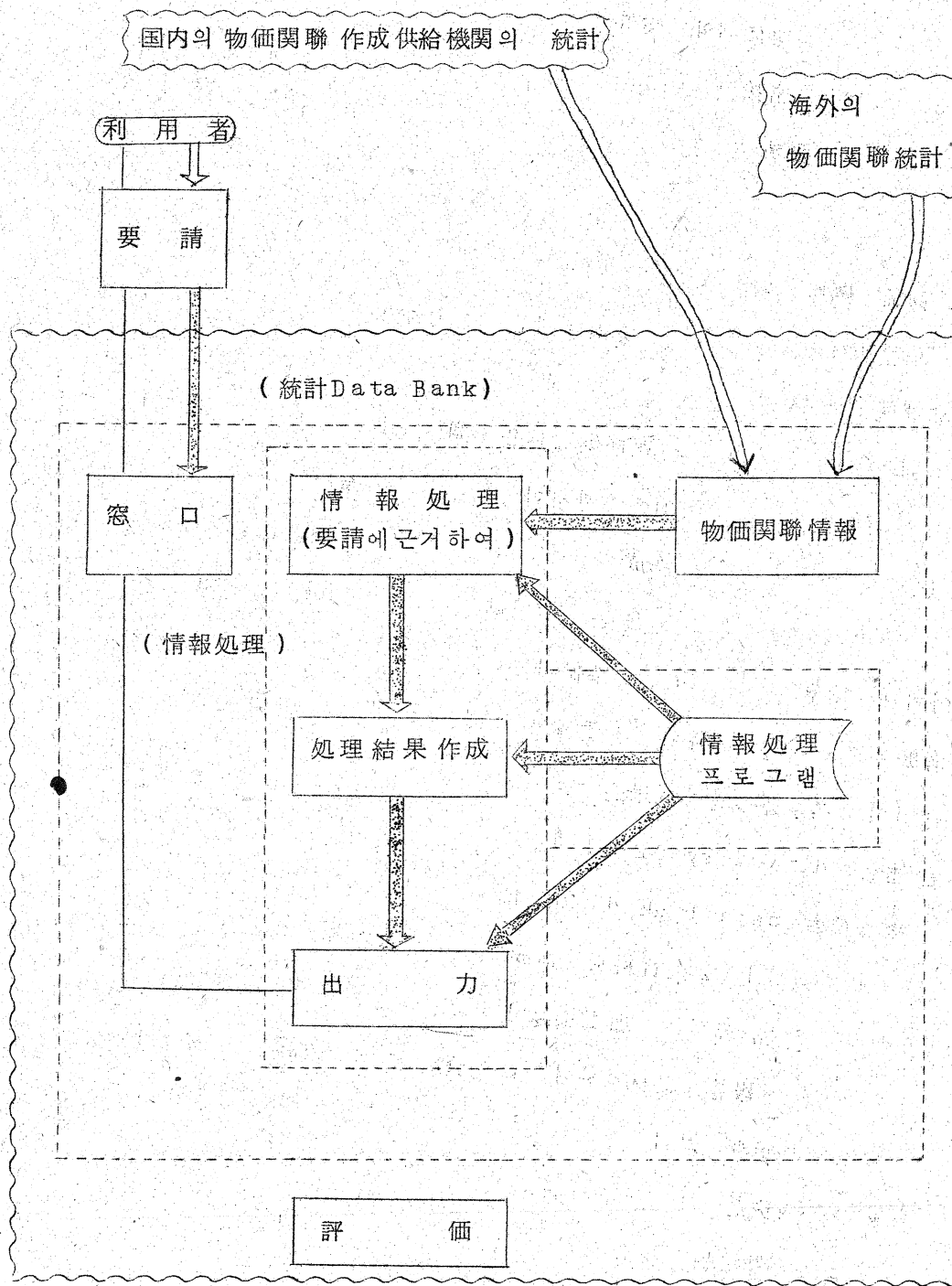
當面하고도 早速히 情報提供活動을 開始하는 觀點에서 이들中 特別히 配慮를 要하는 事項에 관하여 다음에 考察하고자 한다.

(1) data base 의 作成

data base 의 構成은 「提供對象素材가 되는 數値資料 및 여기에 附帶하거나 또는 準備하여 두어야 할 統計情報」로 부터 構成되는 第1次資料와 「要請에 따라 1次資料에서 '컴퓨터'를 通하여 對象情報를 效果的으로 뽑아내기 위하여 一次資料의 構成을 記述한 directory file」의 二次資料가 基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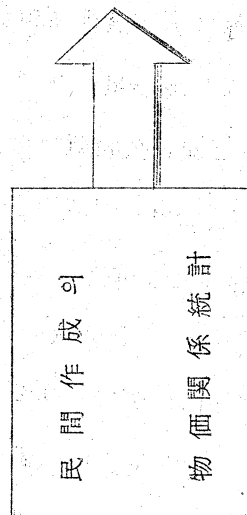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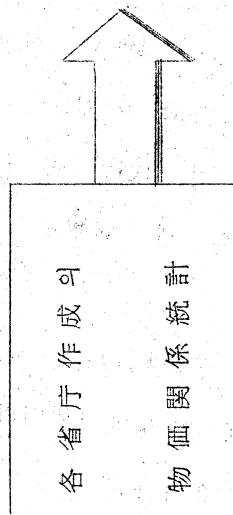
即 統計 data bank 가 이 情報体制用으로 準備하는 data base 는 1次資料와 2次資料로 構成되며 1次資料는 統計作成 機關이 公表하는 統計資料와 加工集計한 結果資料 및 이에 關聯하여 提供되는 統計情報를 素材로하여 2次資料는 情報体制中에서 1次資料의 處理를 可能케 하기 위한 directory data 및 統計資料相互間의 接統連結關係를 나타내는 資料를 素材로 한다.

이들의 關係는 다음과 같이 圖示할 수 있다.



(圖3-1 物価關聯情報体制의 構成圖—바람직한 方向)

1 次 資 料	2 次 資 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数值資料 ○ 数值資料에 附带 또는 用意하여 두고 提供하는 統計情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ectory file ○ 接統用 file



(圖 3 - 2 素 材 資 料 와 data base 와 의 關 係)

i) 統計資料의 整備·蓄積의 推進에 關하여

物價關聯 情報體制를 早期에 發足시킬 必要性은 이미 前年度의 研究에서 明白히 되고 있으며, 利用上 必要한 統計말, 이미 目錄으로 묶어 data base 의 對象이 表示되고 있다.

이들 統計資料는 經濟活動의 廣範圍한 分野에 걸쳐 있을뿐만 아니라 많은 統計作成機關으로 부터 供給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各 統計作成機關에 있어서 各 機關別 統計의 整備, 蓄積의 狀況은 반드시 同一하게 進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本情報體制를 早速히 運用하기 위하여서는 設置하려는 統計 data bank 에 있어 1次資料의 蒐集, 整備·蓄積을 機關自体別로 行하는 것이 우선 重必要하다.

한편 統計作成機關에 있어서는 將來의 資料交換體制의 整備에 對備하여 所管統計資料의 整備蓄積을 段階적으로 進行시켜가야 할 것이다.

本 研究中에서 報告된 바에 의하면 '컴퓨터' 處理를 前提로 한 資料利用者는 現在 公表資料를 가지고 獨自적으로 入力作業을 하고 있는 狀況에 있으며 이것을 統計 data bank 가 代行하여 所要資料의 提供을 圖謀한다고 하면 利用者의 入力負擔은 꽤 輕減될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統計 data bank 가 最初로 收錄하여야 할 統計資料는 利用上 基本資料로 간주되는 消費者物價指數와 都売物價指數外에 利用의 優先順位가 높고 널리 使用되는 性格의 것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統計資料의 蒐集對象에 대하여 時間적으로 어느程度까지

소급할 것인가 하는 範圍問題도 利用者の 立場에서는 重要한 關心事
가 되고 있다.

統計 data bank 가 資料蒐集活動을 行하는 것은 当初에는 最近時点
의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그 整備를 마련 利用者에게 提供할 수
있게 된 뒤 時系列을 過去에 소급하여 가는 方法을 扞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具體적으로 어떤 統計資料를 選擇하고 또는 어느年度까지 소급하여
資料를 蒐集·蓄積하는가는 1970年度의 「統計資料에 대한 需要性調
査」, 前年度의 本研究報告書에 대한 需要 및 今後 開發運用하는
過程에서 일어날 實際의 需要를 銳意觀察하면서 決定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統計資料는 여러機關에서 作成되고 많은 資料가 印刷되어 刊行物로
公表되고 있다.

統計資料에 대한 利用上의 要請은 細密한 資料의 迅速한 入手外에
'컴퓨터' 處理를 前提로한 高度하고도 複雜한 加工分析까지 包含하여
漸次 增大하는 傾向에 있다. 이에 対応하기 위하여는 이들 統計作
成供給機關이 整備蓄積한 資料의 磁氣'테이프'資料를 利用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磁氣'테이프' 내에서 資料의 記述을 可能な 限 統一하
여 두는것이 重要하다.

또 個々の 統計의 整備에 있어 利用者가 信賴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質的인 檢討를 加하여야 할 것이다.

그 檢討方法中

① 統計資料作成方法에 관한 情報整備

② 資料作成方法의 理論的·實際的 檢討

는 적어도 統計作成機關의 專門的知識을 必要로 하는 分野이다.

따라서 本情報체제의 data base의 基礎資料整備를 위한 統計作成機關에 있어서의 所管統計資料整備가 要請된다.

第 I 部の 具體的利用例는 이른바 수많은 利用方法中 極히 少數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表 1 參照).

限定된 例이지만 利用對象으로써 열거된 統計의 種類는 約 22 種類에 達하고 있으며 이들 統計의 作成機關의 數는 9 個機關에 이르고 있다.

특히 物價關聯統計資料는 여러機關으로부터 供給되고 있으므로 統計data bank가 이들 資料를 包括적으로 蒐集하여 入力을 하고 整備·蓄積하는 것은 꽤 힘든 作業이 될 것으로 본다.

統計data bank의 初期段階에서 스스로 公表資料에 의한 資料蒐集, 蓄積活動을 積極적으로 行하고 data base의 維持, 更新, 管理를 進行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와같이 하여 蒐集할 수 있는 資料量은 極히 限定된 것이다.

將來 data base를 充實히 하여 利用者의 要請에 充分히 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資料作成機關과의 資料交換체제의 確立에 의거 보다 整備된 資料를 效率적으로 蒐集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要望된다.

<表 1>

具體的利用例로 본 統計資料

課 題 名	利 用 資 料 名
利用面에서 본 物價關聯情報等에 對한 要請	消費者物價指數, 都壳物價指數 産業關聯表
物價, 賃金, 生産性的 分析에 있어서의 資料 利用方法에 關하여	都壳物價指數, 工業統計 生産動態統計, 每月 勤勞統計, 生産性指數 勞動生産性指數
畜産短期모델에 있어서의 價格資料	農村物價賃金統計, 都壳物價指數, 牛乳 乳製品價格調查 食用鳥類流通統計中央都壳年報(東京都), 消費者物價指數
燈油의 價格分析과 資料에 關하여	都壳物價指數 消費者物價指數, 小壳物價統計, '消費者價格' 모니터' 調查 景氣警告指標, 國民所得統計, 鉍工業生産指數, 氣溫, 暖房度日數, 輸出入物價指數通關輸入價格勞動生産性
消費者物價指數 物價關聯資料에 關하여	消費者物價指數, 都壳物價指數, 生産動態統計, 日本外國貿易統計 産業關聯表, 工業統計, 輸出入物價指數(日銀)

ii) 參考資料의 整備에 關하여

統計 data bank 가 檢討된 數值資料를 提供한다고 해도 利用者의 利用目的에 對하여 그것만으로는 不充分할 때가 있다.

특히 物價에 關한 諸統計의 細部資料를 各種으로 組合시켜 利用하는 경우는 統計의 性格的 相異外에 統計作成過程에 있어서 '책

크'의 基準, 또는 共通的이고 類似한 概念이라고 볼 수 있는 統計表章項目의 定義의 差異等에 관한 情報를 容易하게 入手할 수 있도록 項目의 概念, 定義 기타의 說明情報를 數值資料와 함께 整備하여 提供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必要하다.

또한 標本調査 結果資料의 경우는 細密한 資料의 利用程度에 따라서는 信賴性的 範圍를 넘지 않도록 標本誤差의 資料를 나타내는 것도 必要하다.

이러한 問題는 物価에 관한 觀察을 細密히 行하려는 利用者에게는 數值資料 提供만을 받아서는 解決안되는 問題이며 數值資料의 올바른 利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러한 問題를 說明하는 參考資料의 提供도 必要하다.

더구나 利用者の 要請에 따라서 提供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한다. 따라서 統計 data bank는 蒐集·蓄積하는 數值資料와 더불어 이들 資料를 1次資料中에 包含시켜 整備하여 두는것이 必要하며 이를 위하여는 統計作成機關에 있어서의 素材整備가 前提가 된다.

또한 이러한 具體的인 參考資料의 說明은 第2編 第3章에 詳述되고 있다.

iii) data base의 維持, 更新, 管理에 관하여

本 情報体制의 data base의 1次資料는 數值資料와 參考資料인 非數值資料等이며 이른바 提供對象이 된다는 것을 叙述했다.

이러한 1次資料에 관하여는 資料量의 多少를 不問하고 利用要請에 대하여 迅速히 提供할 수 있도록 統計 data bank가 適切히

이를 維持管理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最新資料에 關하여도 公表와 同時에 data base 에 追加 登錄하고 또 過去의 系列資料에 修正 部分이 생긴 경우에는 迅速히 補正하는等, file 의 內容을 常時 更新하여 두는것이 必要하다.

이러한 作業을 컴퓨터에 의거 円滑하게 運營하는데는 1次資料의 維持, 更新作業을 指導하는 directory file 에 의거 記述된 1次 資料의 構造에 關하여도 維持, 更新, 管理하여 두는것이 必要하다.

예를들면 特定한 分類項目이 어떤 時期에 統合 또는 分割되었을 때 數值資料의 構造가 變更되기 때문에 以後의 資料蒐集 蓄積으로 이 情報를 補完하여 數值資料의 系列을 整備하고 동시에 directory file 을 訂正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일은 다시 接統用 file 에도 影響을 미친다. 이 file 은 基本的으로는 2種類가 있으며, 그 하나는 「同一系列의 數值資料를 '컴퓨터' 內에 넣을때 旧系列資料에 新資料를 追加하기 위한 資料의 対応關係를 指示하는 機能을 갖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상이한 統計의 共通 類似한 概念의 數值資料를 統計表章項目單位에 對比시키는 項目對比表」로 이것 역시 '컴퓨터' 內에 넣어두고 同時에 많은 統計數值資料를 抽出할때 使用한다. 兩者共히 關係되는 directory file 로부터 다시짜서 作成하는 것이 때문에 數值資料의 構造變更에 따라 이 接統 file 의 內容을 訂正하여 適切히 管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統計 data bank 는 그 活動을 円滑히 하기 위하여 保有하는

data base 를 規模의 大小에 關係 없이 完全히 掌握하고 있을 必要가 있다.

(2) 情報處理体制의 開發推進

圖表 3-1 에서 明白한 바와 같이 情報處理体制은 統計 data bank 內의 software 體系의 一環을 이루고 있다. 이를 利用者의 立場에서 보면 統計 data bank 가 保有하는 software 는 利用者가 要請하는 情報을 수시로 提供할 수 있도록 裝置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를 위하여 基本的으로 要請되는 software 機能은

- ① data base 의 維持·更新·管理
- ② 迅速한 檢索이 可能할것
- ③ 資料에 대한 加工과 分析이 可能할것
- ④ 進歩된 software 의 利用이 漸次 可能하도록 할것

의 4 가지이다.

특히 統計檢索에 있어서는, 高度의 技術開發을 實現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統計利用者의 要請을 正確히 把握하여 適切한 情報을 正確히 抽出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機能이다.

그리고 加工分析計算技術에 관하여는 이미 各種의 應用計劃이 開發되어 供給되고 있으므로 그 利用이 크게 期待되고 있다.

한편 月別資料나 4分期別 資料에 대한 季節調整法은 이미 EP A法이나 센서스局法의 '프로그램'이 開發되고 있으나 이들은 반드시 原資料에 대하여도 適切히 適用할 수 없다는 것이 第4回分

科會에서 指摘되고 있다.

따라서 今後의 프로그램開發에 있어서 이런種類的 問題에 관하여도 檢討를 加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統計資料 利用上 比較的 一般的인 '프로그램'에 關係하는 問題이며 統計解析用 프로그램과 같은 系統의 研究課題이다. 이에 대하여 特殊研究에 있어서 細部資料로부터 集計하여 새로운 統計資料를 作成하는 利用例가 있다.

그 方法論은 第Ⅱ部 第4章에 叙述되고 있다.

統計data bank는 이러한 利用要請에 대하여 即應하는 體制를 갖출 수 있는가의 문제는 別途로 하고서도 將來 이러한 種類的 計算體制를 想定하여 두는 것이 統計資料의 效果的利用促進을 위하여 必要하다.

以上을 要約하면 첫째 当面한 '서어비스' 提供體制로써 data base에 蓄積하고 있는 數值資料 그 自体의 提供을 可能케 하는 것.

둘째, 다음段階로서는 簡易한 檢索을 可能케하고 簡易한 加工分析 計算結果를 提供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將來에 data base의 擴充에 수반한 高度의 技術 서어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繼續 指向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統計data bank 運用에 關한 諸問題

物價關聯統計 資料의 主된 利用者는 物價行政 및 이에 關聯된 行政을 다루는 中央省庁과 關係機關이며 다음으로 大學研究所라고

생각된다.

中央省庁은 대부분이 統計의 利用者인 同時에 作成者이며 또한 이들 資料는 分散的으로 作成되어 있는것은 그 利用에 있어 他機關이 作成한 것을 組合하여 利用하는 事例가 매우 많다.

그리고 利用者에 따라서는 '컴퓨터' 利用을 前提로 하는 경우 또는 利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利用者の 要請에 應하여야 할 統計 data bank 는 이중 어느 利用者에게도 適切히 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物價關聯統計資料를 널리 利用토록 하기 위하여 統計作成機關이 그가 保有하는 資料를 外部로 부터의 要請에 대하여 要請에 合당한 形態로 迅速히 提供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資料作成機關에 있어서 資料를 整備蓄積할 必要性을 指摘했지만 이것을 다시 他機關이 利用토록 提供함으로써 利用者相互의 便宜를 圖謀하고 磁氣 '테이프' 의 媒体에 의한 細部資料의 迅速한 提供을 위한 準備를 進行할 것을 提唱하는 바이다.

(i) data base 의 充實에 관하여

本情報体制은 그 發足段階에 있어서는 少數의 統計와 少量의 資料量으로 또한 基本的인 統計資料를 対象으로 하여 利用者の 勞力節減을 도우는 方法으로 磁氣 '테이프' 에 의한 統計情報의 提供을 行하는 것이 差實한 進行方案이라고 생각된다.

그 위에 資料作成機關의 資料整備狀況도 昨年度의 調査實施以後 短時日에 현저히 進歩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얼마동안은

統計 data bank 自身の 資料蒐集, 整備活動을 期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數值資料뿐만 아니라 非數值資料도 모아 이를 提供 가능한 形態로 整理하여 다시 directory file 이나 接統用 file 의 開發도 行하려고 하면 相當한 作業을 必要로 한다. data base 는 利用者側에서 보아 尙足當時의 規模로 언제까지나 充分하다고는 볼 수 없다.

統計 data bank 의 活動이 開始되면 將來에는 利用자가 여태까지 삼가하고 있던 利用方法 몇가지가 實現될 것으로 본다.

이에 수반하여 潛在的 需要가 漸次 顯在化할 것이다.

이것은 同時에 data base 의 擴大充實과 不要하게된 資料의 整理를 促求하게 될 것이며 統計 data bank 는 이것을 可能하게 하는 體制를 當初부터 豫定하여 두는것이 重要하다.

data base 의 充實度에 대한 一般的인 基準에 관하여는 1972 年度에 提起된 具體적인 問題點을 들어보기로 한다(表 2)

① 畜産 短期 모델

肉豚, 肉牛, 牛乳 및 乳製品, 계란, '부로이라'의 각각에 共通한 價格 資料, 數量資料의 抽出을 可能케 하는것

② 燈油價格形成의 分析

燈油를 共通項目으로 하여 關聯資料의 抽出을 可能케 하는 것.

의 2가지 例가 接統用 file 中, 項目對比表의 形態를 示唆하고

있다.

③ 社会計定과 物価資料에 관하여 家計品目の 代替

④ 細部資料의 分析利用例

消費者 物価指数用 特殊加重値中 「年間收入 5分位 階級別 消費者物価指数」는 既存分類를 特殊 特殊目的에 附合하는 結果의 數値資料를 要請한 것이며 이러한 利用 形態에 대하여 보더라도 data base 에 所要事項을 包含시켜 即応性있는 体制를 取하는 것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表 2>

利用上의 要請事項

課 題 名	要 請 事 項
利用面에서 본 物価關聯 情報等에 對한 要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財와 消費財의 對應시켜 利用 ○ 磁氣테이프에 의한 資料의 迅速한 提供 ○ 各種指數의 長期時系列化 ○ 簡易하게 利用되는 檢索 및 加工分析 体制 ○ 數値資料의 性質, 使用上의 制約等 情報의 提供
物価, 賃金, 生産性分析에 있어서의 資料利用方法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規模別 勞動生産性, 都壳物価指數의 推計
畜産短期 '모델' 에 있어 서의 價格資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計量經濟學的推定法의 整備 ○ 各種의 季節變動調整法의 整備

課 題 名	要 請 事 項
燈油의 價格分析과 資料에 관하여	○ 指數 基準時의 調整等에 의한 最新 base ○ 指數의 長期系列의 整備
消費者物價指數와 物價關聯資料에 관하여	○ 長期時系列資料의 整備 特히 價格資料 ○ 即時的提供体制의 確立 ○ 利用하기 쉬운 形式에 의한 資料出力 ○ 各種加工分析計劃機能의 充實
細部資料의 分析例	特殊物價指數의 作成体制
社會計定과 物價資料에 관하여	公表資料의 分類를 새로짚 結果의 作成

註：以上은 主로 software 体制에 대한 要請事項을 掲載하였다.

(2) 統計作成機關에 있어서의 窓口体制에 관하여

統計 data bank 가 当初의 段階에서는 data base 를 作成하기 위하여 印刷刊行物에 의거 公表되는 資料를 獨自的으로 入力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利用要請을 充足시키고 점차 充實시켜가기 위하여는 資料作成機關이 所管統計資料의 整備蓄積을 行하고 統計 data bank 의 利用者가 되는 同時에 資料提供者가 되는 것으로써 相互利用体制에 參加할 것이 必要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統計 data bank 研究会에 參加하고 있는 各省 庁의 研究員中, 이미 共通적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나 現狀態下에서는 資料作成機關으로서의 各省庁에서는 外部로 부터의 資料提供

依頼를 받아들이는 体制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中央省庁間에 있어서도 資料의 相互利用을 組織적으로 實施하는 것은 困難하다.

이를 그대로 放置하여 두면 이러한 研究成果가 具體化되어도 發展할 수 없고 中央省庁間의 相互利用도 進展되지 못한다. 이것을 避하고 有効하게 發展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資料作成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統計資料를 提供하고 外部統計資料의 入手를 担当하는 窓口를 設置하여 相互協力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 窓口体制의 進展方法에 관하여는 第4 分科會에서 考察研究되고 있으나 物價關聯統計資料에 관하여도 그 必要性은 꼭 같다는 것을 強調하는 바이다.

(3) 將來의 擴張性에 관하여

統計 data bank 및 物價關聯情報体制는 利用者로 부터의 要請에 대하여 늘 最適한 情報提供을 使命으로 하는 体制이라야 한다. 社會經濟의 進步發展 및 統計利用技術의 高度化에 따라 利用者로 부터의 必要性은 한편으로는 基本的統計利用의 技術을 促進하면서 다른편으로는 流動적으로 變化하여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物價關聯統計資料의 種類, 質에 관하여 要求되는 것도 있고 data base, software 에 要求되는 것도 있다.

이들에 대하여 統計 data bank의 情報提供機能은 硬直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 機能自体의 必要性에 대하여 再考하여 不充分한 部分은 修正함으로써 機能의 改善을 圖謀하고 擴張하면서 充實化를 指向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適合한 体制評價機能도

아울러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統計 data bank 및 物價關聯情報 體制는 이 評價를 通하여 利用者의 要請을 언제나 適切히 対応할 수 있도록 對備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今後 同體制의 發展을 위하여 本情報體制의 評價順序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4) 今後에 남겨진 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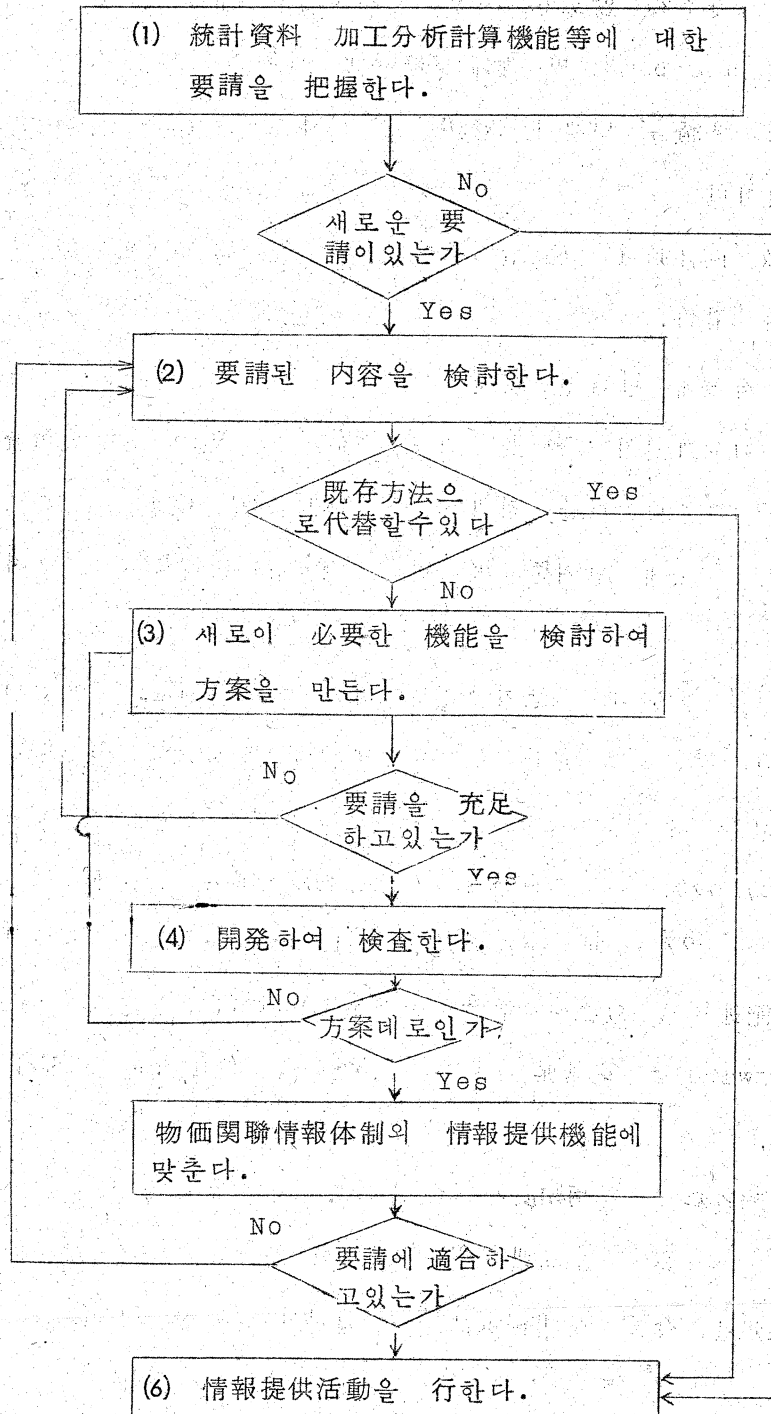
이때까지의 研究를 通한 考察의 對象은 物價關聯統計資料의 利用面이었으나 이를 한개의 情報體制로써 實施하여 發展시키기 위하여는 今後에 남겨준 問題點에 관하여도 言及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問題는 檢討의 餘地가 깊고 넓고 크기 때문에 相當한 部分에 대하여 充分한 檢討를 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一部를 여기서 指摘하고자 한다.

(i) 物價關聯統計資料의 具體的利用・形態의 把握

1971年度 報告第2章(9-12 Page)에 統計資料의 利用方法이 記述되고 있으나 各々 어떠한 統計資料를 對象으로 어떠한 software를 必要로 하고 있는가는 具體적으로 把握되고 있지 않다.

關聯資料의 利用頻度가 data base의 對象統計를 示唆하며 利用方法은 所要 " 프로그램 " 을 示唆하고 있지만 이들의 實際的 서어비스提供은 今後 情報提供活動을 通하여 차차 具體化하여 갈것이 要



(图 3 - 3 情報提供機能評價順序)

望된다.

(ii) micro 資料와 macro 資料

本情報体制研究가 企圖하는 目的의 하나로 物價分析等の 作業이 一般的으로 macro 資料를 主体로 한것에 대하여 적어도 公表資料를 主로하여 詳細하고도 有効한 利用을 하는데 있다.

따라서 다른 macro 資料를 主体로하는 data bank 와는 資料上의 差異가 있다. 그러나 日本의 統計体系에 있어서는 macro 資料와 micro 資料와의 相互關係가 理論적으로 連結되어 있지 않으므로 物價關聯統計와 社会計定과의 相互關係가 明確히 되어있지 않으며 그 自体가 커다란 研究課題로써 指摘되어 왔다.

그러나 研究의 目的上 위와같은 問題解決을 위하여 파고들기보다 오히려 deflator 作成面에서의 要請을 紹介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分野의 問題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iii) 細部資料에 관하여

本情報体制의 主된 資料의 한가지인 消費者物價指數와 그 加重値作成用 資料인 家計調査資料를 利用하여 特殊指數를 作成하는 경우의 方法論을 열거했다.

이에는 集計結果를 利用하는 方法과 細部資料를 利用하는 方法이 있지만 特히 後者에 관하여는 個票의 識別을 必要로 하지않고 따라서, 個票의 秘密問題를 侵害함이 없이 資料 利用에 대하여 最大限으로 情報提供을 圖謀하는 것이 統計 data bank 의 今後の 重要な 役割이므로 이 観点에서 法規에 저촉하지 않고 個々の

統計調査에 影響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實現하는 方法을 새로이 法制面과 技術面에서 檢討할 必要가 있다.

(iv) 一致性問題

상이한 統計를 共通 類似하는 統計表章項目單位를 觀察하는 경우는 그 項目의 定義上의 差異에 의한 數值資料의 比較力의 低下, 또는 調査商品의 品質變化에 의한 乖離分의 測定等 同一系列資料의 一致性이나 共通類似概念項目間의 一致性을 維持할 必要가 있다.

前者의 例는 第Ⅱ部 第3章의 Hedonic 指數法의 例示가 있으며 後者에 關하여는 畜産物價格의 循環' 모델'에 있어서의 價格資料와 이에 對應하는 生産數量資料의 例를 열거했다.

一般的으로는 生産者價格, 消費者價格, 消費者價格을 包含하는 購入者價格, 段階別 都売價格, 輸出入價格等 여러가지 概念에 의한 價格資料나 關聯資料間의 一致性은 價格資料의 體系化에 連結되는 問題가 있다.

특히 獨立된 資料出處로부터 찾을 수 있는 價格資料間의 一致性에 關하여는 資料處理上의 問題를 떠난 解決이 必要될때도 있어 今後의 重要課題의 하나로 되고 있다.

(v) 一致된 資料의 欠如

利用者가 各자의 用途나 概念構成에 附合되는 資料를 提供하는 데는 一般的으로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利用頻度를 勘案한 資料出處나 資料提供体制의 開發로 可能한限 널리 利用者의 要望에 應

하기 위한 施策이 必要하다.

예를 들면 價格資料에 關聯하여 家屋이나 特定 機械類와 같이 注文에 따라 生産되는 商品에 관한 價格指數의 開發서비스生産에 관한 deflator의 開發等과 같은 觀點에서도 適當한 資料提供이 要望되고 있으며 適當한 資料의 欠如를 매꾸는 問題로써 再檢討할 것이 要望된다.

그런데 欠如된 統計에 관하여는 1971年度報告書에 物價安定政策 會議의 提言이 掲載되고 있다.

(㉖) 以上の 事項外에 關聯되는 問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分科會에 의한 研究 또는 他機關에 의한 檢討実績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것에 관하여는 言及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남은 課題로써 指摘된 事項은 다음表에 掲載한다.

<表 3> 資料에 대한 要請事項, 남겨진 問題

課 題 名	남 겨 진 問 題 點
利用面에서 본 物價 關聯情報等에 대한 要請	○物價資料의 on line 에 의한 入手
物價, 賃金, 生産性의 分析에 있어서 利用方法에 관하여 畜産短期모빌에 있어서의 價格資料	○調査対象範圍의 一致性 ○勞動·賃金關聯資料의 詳細性確保 ○欠如된 統計의 充足 ○價格資料와 數量資料와의 一致性의 問題 ○加工, 分析用 software 의 充實

課 題 名	남 겨 진 問 題 点
燈油 價格 分析 과 資料 에 관 하 여 消 費 者 物 價 指 數 와 物 價 關 聯 資 料 에 관 하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指 數 의 長 期 繼 續 性 의 確 保 ○ 關 聯 資 料 의 蒐 集 및 資 料 提 供 體 制 의 確 立 과 充 實 ○ 資 料 加 工 分 析 技 術 等 의 充 實
資 料 의 質 的 檢 討 方 法 社 會 計 定 과 物 價 資 料 流 通 研 究 과 物 價 資 料	物 價 統 計 의 整 備 과 質 的 檢 討 의 實 施 macro 資 料 과 micro 資 料 와 의 理 論 的 連 繫 關 係 를 研 究 하 는 것 商 業 活 動 分 析 을 위 한 deflator 의 作 成

附

録

結 言

本 分科회는 1971年度 및 1972年度の 調査研究를 通하여 本 情報体制에 關하여 當場의 實現을 爲하여 必要한 方向을 提示함과 同時에 將來의 目標도 示唆했다

今後는 本 体制의 實現을 爲하여 우선 可能한 分野로부터 差手 하여 關係各機關의 協力과 本 体制의 自己評價機能에 依하여 차차 이를 育成하여 그 充實을 期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를 爲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提唱하면서 結言을 삼고자 한다

(1) 統計 Data Bank 또는 이와 類似한 業務를 担当하는 國家機關에 있어서는 Data Base 의 作業에 差手하여 利用技術을 整備하여 早期에 情報를 提供할수있도록 할것.

(2) 物價 關聯 統計作成機關(특히 中央部処)에 있어서 所管 統計의 整備蓄積을 行할것

그리고 物價關聯 統計資料의 具體的 利用例를 第I編에 揭記하였으나 그것은 實際의 利用例中 아주 小數의 例이며 利用方法은 아주 多樣하다

(利用의 形想에 關하여는 1971年度 物價關聯 情報体制 調査研究報 考 9 - 12 Page 參照)

따라서 情報体制가 活動을 開始함에 따라 더욱많은 需要가 懸在 化될것이 豫想되므로 資類裝備를 더욱 促進할것

(3) 物価關聯統計作成機關은 整備蓄積한 所置物価關研統計資類를 磁氣테이프, 等の 컴퓨터, 解讀媒体에 記錄하여 統計 Data Bank 의 Data base 에 登錄함과 同時に 利用者相號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提供可能한 体制을 實現할것

그리고 統計 Data bank 는 物価에 관한 海外統計資類의 蒐集裝備를 行하고 提供이 可能하도록 할것

(4) 物価關聯 情報体制은 行政的利用 및 研究的 利用面에서 이의 早速한 發足이 크게 要請되고 있어 國家에서 이의 充實을 위하여 힘쓸것

<附 錄> 分科會議 議事錄要旨

第1回分科回

日 時 : 1972年 12月28日 (日 午後2時-5時)

場 所 : 統理府 統計局 2층會議室

出席者 : 委員 5名 關係各部處 11名

議 題 :

(1) 1971年度 研究結果의 報告

(2) 1972年度研에 關하여

配付資料 :

(1) 綜合 Software 에 관한 調查研究報告書

—物価關聯 情報体制—

(2) 物価關聯情報体制에 관한 研究要綱

(3) 1972年度 物価關聯情報体制에 관한 研究項目(案)

(4) 1972年度 物価關聯情報体制分科会檢討事項 参考資類

說明事項

(1) 1971年度 研究結果의 報告(事務局)

(2) 1972年度 研究等에 관한 說明(事務局)

議事事項

○ 社会計定の Deflator作成과 物価關聯資料의 情報体制
化를 別個로 고려하는것이 좋다

○ 研究(案)의 I(物価關聯資類의 利用方法의 考察)과
II(資類利用에 따른 諸問題)의 어느것에 重点을 두는
나 그리고 III(統計情報活動準備를 위한 当面必要한 事
項)이 I과II에 어떻게 連結시키는가를 檢討하는것

○ 現在通計局이 자신을 갖고있는 分野인 CPI에서 出發
하는것이 効率的이다

○ 統計Data bank의 存在形想 및 必要性和 이에 対応하
는 資料에 관하여 그리고 統計資料의 迅速한 提供에
관하여 다시 考察할것

○ 利用者側으로써 가장 長点이될것으로 느끼는것은 CPI
과 WPI의 共通性이다

CPI와 WPI의 共通品目에 관한 品目別 長期時系列資
類의 整備가 必要하다

○ 供給되는 I次資料를 有効히 利用한다

- 數字에 附帶한 情報提供을 必要에 따라 提供하는것도 생각된다
- 統計作成段階에서 Macro와 Micro間의關係가 充分히 檢討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Macro와 Micro間에 gaP이 생기고 있다
物價關聯情報體制에서 物價統計의 利用을 고려함에 있어 社會討定體系內에서의 利用을 念頭에두어 생각할것
- GPI와 WPI의 關研性에 관하여 將來의 問題로 이때까지 調査하여온것에 관한 問題는 어느 程度區別하여 고려할 必要가 있다
- 品目別長期時系列은 所屬기간을 充分히 고려하는것이 重要하다

第2回 分科會

日 時：1973年 1月30日(大) 午前9時30分—12時30分

場 所：總理府統計局7층中央會議室

出席者：重査委員5名 關係各部處9名

議 題：委員 및 研究員의 担当課題의 要旨紹介

配付資類：

- (1) 物價關聯情報體制分科會(第1回) 議業錄(事務局)
- (2) 1972年度 第2回 物價關聯情報體制分科會議 要旨(事務局)
- (3) 物價關聯情報體制分科會(第2回) 參考資類(事務局)

(4) 「된장」의 價格分析에 관하여 (事務局)

說明事項

- (1) 第4分科会 (統計資類의 蒐集, 利用)에 關한 研究상황소개
- (2) 前回分科会 指摘問題의 要旨說明
- (3) 事務局準備資類의 說明
- (4) 各部處의 課題依賴狀況

各委員, 研究員의 研究課題의 發表 (發表順)

- (1) 「物価, 賃金, 生産性의 分析에 있어서 資料利用方法에 關하여」 大城研究員

參考가되는 分析例

- (1) 物価所得生産性 委員會報
- (2) 勤動白書 (1970, 1971年)
- (3) 労働省「学動生産性 統計」

討議事項

- 이들의 分析例에서 賃金費用의 動向이 檢討의 重要な Point가 된다
- 物価關聯資料로서는 賃金費用指數를 算出할때의 賃金指數 勤動生産性指數에 關하여 그 性格 利用 實際의 問題點의 檢討가 中心課題가 된다.
- 物価, 賃金, 生産性의 分析을 進行함에 있어 物価關聯資料의 利用面에서 個別資料 (品目別)의 整備, 規模別 勤動 生産性, 都買物価, 雇傭構成變化의 影響을 除外한 賃金指

數의 作成方法策이 問題로 생각된다.

(2) 「된장」價格의 觀察에 관하여」 大戶研究員

討議意見 :

- 流通段階別 價格을 調査하려면 當場은 流通經路가 簡單한것을 選擇하는것이 介依되는問題를 確實히 把握하기 쉽다.
- 流通經路全部를 調査하는것이 아니고 1段階의 價格의 相關을 調査하면 어떤가
- 流通經路에 去來經路, 價格形成經路, 物質的인 物件의 흐름의 經路等이 있으므로 問題를 보는 觀點에 따라 經路의 表現을 생각하는것이 必要하다.

(3) 「細部資料의 分析例」 講口委員

- Data bank의 한가지 機能으로써는 細部的인 資料提供 機能을 생각할수 있다.
- 特殊物價指數를 作成하는 方法論을 考察하고 問題點을 指摘한다. 例컨데 所得強力性別 CPI, 年令階層別, 購入頻度別, 支出金額別 指數를 作成할 경우의 計算體制上的 問題點을 생각한다.
- 加重置의 組合에 있어 加重置의 安定性에 관하여 檢討한다.

(4) 「調査統計情報體制의 概要와 運用에 관하여」 山田委員

討議意見 :

- 資料의 整備修正은 生産指數와 銀行券에 관하여는 發

- 表後 곧 펀치, 入力하고 있으나, 資料全体에 관하여는 1年
 에 1回行하고 기타는 分析의 必要에 따라 行하고있다.
- 時期에 適切한 分析을 行하기 위하여는 資料의 收容能力
 処理能力이라는 面에서 大型의 컴퓨터가 必要할것이다.
 - 人員은 資料의 最新整備를 各係에서 行하기 위하여 機
 構를 管理하고 있는곳에 File管理者 3名이 있다.

第3回 分科会

日 時 : 1973年 2月 16日 (金) 午後 2時 - 5時

場 所 : 統理府 統計局 2층會議室

出席者 : 主査, 委員 5名, 關係各部處 8名

議 題 : 各委員 및 研究員의 担当課題 紹介.

配付資料 :

- (1) 物価關研情報体制分科会 (第2回)
 議事錄 (事務局)
- (2) 物価關聯情報体制分科会 (第3回)
 議事要旨 (事務局)
- (3) 消費者 物価指數의 加重値作成概要 (統理府 統計局)
 特殊指數算定을 위한 加重殊作成에 관하여 (同上)
 家計調査의 世帯収支表樣式 (同上)
- (4) 物価關聯情報体制에 대한 使用上の 要求 (江崎研究員)
- (5) 燈油의 價格分析과 資料에 관하여 (元森研究員)
- (6) 「資料의 檢討」에 관한 메모 (加騰委員)

說明事項：

- 前回会分科会 要旨의 說明
- 前回講口委員으로부터의 報告 (資料 (3)에 의함)

議議事項：

- 特殊指數를 만들기 위한 加重値를 짜서넣는것은 品目에 따른 加重値의 利用方法을 말하는것이며 單純한 利用은 아니다.
- 이 問題와 관련되어 支出函數等으로 耐久性別 加重値가 重要하다고 생각 된다.
현재의 指數에서는 이러한것이 누락되고 있다.
- 特殊指數를 만들때, 品目の 分割統合表가 어디까지 使用되는가 또는 特殊分類 指數를 만든경우 地域指數와의 關聯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特殊分類指數를 作成하기 위한 情報은 거의없는가 例컨대 GPI의 全數値에 必要한 資料만을 코-딩하였을때 그것이 새로운 調査를 하지않고 어느程度까지 延長하여 使用할수 있는가의 可能性의 問題等이다.
- 여태까지 試驗的으로 作成한 指數에 관하여는 世帶數에 關係없이 짜넣은것이있다.
所得階層別 指數는 世帶數를 5개의 “그룹”으로 均等하게 나눈것 뿐이다.
- 이 分割表는 全國의것이며 地域別 또는 細部的 條件에

대한것은作成하자 않고 있다.

- 統令 分割되는것의 加重値는 全体로 보아 매우 적다.
- 現在 指數의 付表度는 83%정도이며 나머지 17%가 問題로 되어있다. 이것이 階層에 따라 어느程度差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各委員, 研究員의 研究科題의 發表(發表順)

(1) 「物價關聯情報體制에 대한 使用上の 要求」 江崎研究員
討議事項:

- BTN이나 SITC에서 分類된 資料와 物價關係資料와를 対応시켜서 使用하려는 것인가
- 一致性있고 対応될수있는 資料供給이 있으면 좋다.
- 1對1의 対応은 반드시 行해지지 않는다.
Data Bank에서 保管하는 資料에 대한 要求와는 多小를 認된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한것은 家計調査의 分類에 連結시키려면 一応, 商品, 即, 最終財로 되돌려 分類하여 이것을 CPI와 연결시키면 어떨까.
- SNA나 그러한 立場에서 日本의 統計組織中에서 이러한 資料가 必要하다고 指摘된것을 고려하면 形態, 例컨데 報考書, Offline Online 등으로 利用하는가 等은 널리 檢討할 必要가 있다.

(2) 「燈油의 價格分析과 資料에 관하여」 元森研究員

討議事項 :

- 最小自乗法の 説明変数は 몇개 정도인가
 - 最大 10 개까지 説明変수를 넣을수 있으므로 説明変수는 60 系列이 있지만 여기서 적당히 뽑아내어 10 개씩 넣었다.
相關係수는 0.648 이었다.
外國의 例도 調査했으나 신통한것이 없었다.
 - 都売物価資料에 時差(前日指数)를 考慮하면 CPI 와의 相關係수는 0.974 였다. 이로 보아 CPI 는 前期의 都買物価指数와 높은 相關이 있다.
이를 豫測에 쓰게 되면 다음기의 다른 指数도 豫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되면 꽤 어렵게 된다.
- (3) 「資料의 檢討에 관하여」 加藤委員
- (4) 「流通研究와 物価資料」 田島委員

討議意見 :

- 小売商業의 中分類는 商業統計에 의하면 5 가지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豫測하려고 하면 適當한 Deflator 는 없다. 그래서 消費者物価를 取하여 그 指數를 利用하여 生鮮食品의 경우는 農林省의 農村物価指數를 利用하는것과 같이 便宜的으로 하고 있다.
- 小売價格을 全部調査하는것과 같은 小売物価系列이 있는가 없는가. 都売調査는 一応 都売價格을 調整하고 있다. 即 流

通의 흐름이라든지 都売物価와 小売物価와 小売物価의 Margin 을 포착하여 그商業活動指數에 対応하는 資料가 없다는것으로 이와 같은 事實은 産業聯關表를 만들때 가장 큰 虛點이 되고 있다.

이는 商業活動實質額을 求하는 Deflator-를 求할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 Margin 을 調整하는 것은 都売物価段階의 價格이다.

(5) 「新 SNA와 家計調査」...商木委員

第4回 分科会

日 時：1973年3月10日(土)午前9時30分—12時30分

場 所：統理府 統計局 7층中 會議室

出席者：主査 委員4名 關係各部処10名

議 題：報告書の 編成 및 關聯事項에 관하여

配付資料：

- (1) 物価關聯情報体制分科会(第3回)議事錄(事務局)
- (2) 議事豫定(事務局)
- (3) 1972年度 物価關聯 情報体制研究報告目次案(事務局)

說明事項：

○ 前回(第3 分科会)의 說明

○ 議事內容의 說明

研究員의 研究科題의 發表

- (1) 「畜産短期 모델에 있어서의 價格資料」唯是研究員

討議事項 :

- 供給側에서 輸入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 輸入은 外生變數로 부여되고 있다.
畜産物の 價格安定帶를 만들어 그안에 들어가도록 操作했다. 따라서 그만큼 直接的으로 輸入價格의 効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문에 數量을 약간 外生的으로 부여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 資料를 順調로이 얻을수 있었는가
- 價格에 관하여는 問題는 없지만 數量에 관하여는 약간 問題가 있다. 예컨대 畜産物에는 一定한 定義式이 成立된다. 出産量과 屠殺量과의 量과 期首의 量을알면 期末의 量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現實資料는 定義式을 滿足시키도록 作成되어 있지 않다. 그때문에 「一致性 테크」를 하고 間接推計를 하든지 하여 數量上에서는 資料를 完全히 하는데 매우 苦心했다
- Data bank를 만들때 季節變動修正을 要請에 따라 提供할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이 모델을 豫測에 쓸때 “모델”을 使用하는 資料의 頻度에 관하여는 어떤가.
- 4월에 1回, 1年間の 數測을 行하고 秋期에도 1回修正하고 있다. 이런點에서 보면 半年 周期가 좋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보다 可能한 限 새로운 時點의 資料가 必要하다.

- 數量資料가 뒤늦어지므로 價格資料의 最近性和 數量資料의 最近性에 차이가 있다.
- 最近 美國에서도 都売物價가 小売物價에 대하여 變動이 적다고 하므로 이를 研究하고 있다. Deflator 에 CPI 를 쓴것은 이러한 意味에서인가
- 日本銀行에서 季節商品에 대한 都売의 取扱方法이 以前과 달라졌다. 畜産 “모델”에서 에는 별로 影響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野菜等を 取扱할 경우 어떤 影響이 미치게 되는가
- 季節園芸의 影響이 가장크다고 본다. 이것은 季節性を 年 1 回밖에 取하지 않았던 오이가 年 3 回 또는 4 回 取해지고 또 季節園芸가 周年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다시 出席時期를 意識的으로 避하는것 等이다.
- 計量 “모델”關係에서 物價係에 問題가 있다고 하면 數量과 價格과 支出額이다.
이 一貫性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모델”이 되지 않는다.
- 農場價格과 都買物價의 水準이 같게되면 Margin이 없게 된다.
- 資料의 問題이지만 都季價格의 季節變動을 修正하여 한편으로 農場價格의 季節變動을 修正한다. 兩쪽을 합치면 무언가 理

致가 맞는것이 된다.

- 流通 Margin 을 알수없다.
- 流通部門의 調査가 보다 正確히 行하여지면 무언가가 될것이다.
- 季節 調整法의 定義式에 맞지않는 資料가 있기때문에 2개의 定義式을 使用하여 乖離를 計算할수 있게 될것이다

研究報告의 目次編成에 관하여

委員會議

日 時：1973年3月20日(火)午後3時30分—6時30分

場 所：總理府 統計局 7층特別會議室

出席者：主査・委員5名

配付資料：

- (1) 物価關聯情報體制委員會議事豫定(事務局)
- (2) 具體的 利用例에 있어서의 統計資料(事務局)
- (3) 物価關聯情報體制1972年度 研究報告書 目次(案)

說明事項：同上 配付資料에 관한 說明

討議事項：

- (1) 研究報告의 目次編成等에 관하여
 - 委員 및 研究員으로부터 提出된 報告의 配列은 內容과 報告書 全體의 構成과를 勘案하여 決定한다.
 - 提供對象이 되는 資料에 관하여 「公表에 있어서는 加公을 條件으로 하며 提供된 情報」라고하는 表現을 追

加한다 .

- 0 Data Base 에 乖離할때는 Format 의 統一을 期할것을 強調 한다 .
- 0 Deposit library 에 관하여도 言及한다 .
- 0 蓄積하는 資料의 年次範圍에 관하여도 言及한다 .
- 0 一次資料 2次資料의 定義를 記述한다 .
- 0 數値以外로 表現되는 Mode 情報等の 取扱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하여 言及한다 .
- 0 特殊指數 計算 “서 - 비스 ”를 同體制가 取하는 것이 可能할것인가 어떤가 가 問題이다 .
- 0 一致性의 問題에 관하여 言及할 必要가 있다 .
- 0 商品變化와 價格과의 關係를 어떻게 포착하는가
- 0 都売段階에 관하여 어느段階를 扱하는가가 問題가 된다 .

* 本 冊字는 日 總理府 統計局의 統計 Data Bank *
* *
* 研究報告書 (Series 21 , 24 , 33) 를 번역한 *
* *
* 것임. *
